

한국 언론법제 교육의 현실과 쟁점

-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을 중심으로 -

이 재 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
- 미 Univ. of Iowa 석사, 미 Southern Illinois Univ. 박사
-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한국언론학회 이사, 방송학보 편집위원
- 현(現)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한국방송학회 연구이사,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 논문 및 저서: 『언론 자유와 인격권』, 『언론과 명예훼손 소사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언론소송 10년의 판례연구』 외 다수

1. 문제제기

언론법제 영역은 언론과 법의 접점에 위치하여 언론에 대한 이해와 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전문분야이다(이재진, 2002). 따라서 언론법제 교육은 교육 담당자와 교육 내용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된다. 한국 대학에 있어서의 언론법제 교육은 여타 신문방송학 교육과 그 역사적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언론법제 교육이 시작된 지 50년 이상 경과하였다(차배근, 1997).¹⁾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언론법제 교육이 실시되어 왔으나, 언론법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장호순, 1998; Lee, 2005).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언론법제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어 왔는가를 정리해 보는 것은 언론법제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언론법제 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곳은 언론현업이지만 언론현업에서 별도의 언론법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언론의 윤리나 법적인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거나 특정 언론사가 거론될 때 형식적이고 임시적으로 언론법이나 윤리교육이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 이외의 언론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언론법제 교육은 한국언론재단의 기자연수 프로그램과 언론재단 산하 한국언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겸임교수 과정과 주제별 전문 과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²⁾ 따라서 언론법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쟁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남재일·최민재, 2005).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체계적인 언론법제 교육은 결국 대학에서 예비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1) 미국의 경우 언론법제가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라는 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경우 언론법제 교육의 시작은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다(Gillmor & Dennis, 1989).

2) <http://www.journalismschool.kr>. 한국언론재단에서 개설한 저널리즘 스쿨. 2007년도 겸임교수 과정과 전문분야 과정에서는 주로 언론보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다툼에 대한 것과 법률 실무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언론의 사회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한
환경속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언론법제 교육 필요성 높아져**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³⁾ 적어도 한 학기 이상에 걸쳐 앞으로 언론에 진출하고자 희망하는 예비언론인들에게 언론법제와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이론적이고 현실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대학이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어 왔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한국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은 법학계통의 전공에서 실시되기 보다는 언론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언론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언론법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염규호, 1999). 실제로 언론법제 교육은 저널리즘 교육과 함께 실시되어야 하는 특성상 한국 대학에서의 교육도 법학분야보다는 저널리즘 분야에서 그 자리를 잡게 되었다. 비록 최근 언론법제와 관련된 과목들이 법학분야에서 간헐적으로 개설되고 있으나 이는 대개 헌법이나 법학개론에서 일부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언론학 분야에서의 언론법제 연구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언론법제 교육의 필요성은 지난 20여 년 간 특히 강조되어 왔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언론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언론매체가 수적으로 증가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이승선, 2005; 이재진, 2002). 이는 언론보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개인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인권의식이 확대되고 문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확장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Park, 1993; Youm, 1996; 정진석, 1999). 아울러 언론의 공적 기능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소송 건수의 증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이재진, 2006). 이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피해, 특히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은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언론에 대한 규제가 개인들의 법적 대응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Smith, 1980).

이처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한 환경 속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언론법제 교육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소송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신청건수도 증가하면서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줄여보려는 언론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점증하는 소송이나 중재신청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언론법제나 윤리 교육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배태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직 언론인들에 대한 재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대학의 예비언론인들이 언론법제 수업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수강하면서 언론법제의 본질을 체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요청되고 있다.⁴⁾

3) 남재일·최민재(2005, p. 59)의 연구에 따르면 특수대학원인 언론대학원에 재학 중인 언론인들에 대한 조사의 경우 언론법제 관련 과목에 대한 기대는 높은 편이지만 실제 만족도가 여타 분야의 과목에 비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언론실무와도 가장 관련이 많은 언론법제 교육이 수강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물론 언론대학원에 다니는 현직 언론인들의 재교육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부과정에서의 언론법제 교육만을 다루기로 한다.

4) 비록 국가나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의 규제는 아니지만 언론에 대한 인격권 소송은 언론에 있어서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뿐 아니라, 언론인에 있어서는 취재·보도과정상의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인들의 경우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소환되는 등의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불편함을 겪게 된다.

2. 언론법제 교육의 역사와 현황

1) 언론법제 교육의 발전과정

한 사회의 언론법제는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 사이의 관계지형을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언론법은 한국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보여준다. 따라서 언론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의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Bedeski, 1994). 동시에 주어진 환경에서 언론법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고찰이 바로 언론법제 연구이며 이러한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언론법제 교육과 직결된다.

한국의 언론법제 교육은 1950년대 여타 언론학 영역의 교육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교육의 중요성이 대학과 언론현업에서 실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장호순(1998)에 따르면 이렇게 오랫동안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한 이면에는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문제 해결방식으로 '법치'의 전통이 결여되어 있었던 이유가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 법원은 오랫동안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의 공정한 적용에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1980년대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언론법제 교육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저널리즘 교육 중의 한 영역인 언론법제 교육이 한국 대학에서 시작되었을 때 이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들은 대개 언론업계 경험이 있으며, 일본을 배경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⁵⁾ 즉, 현업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언론관련 학과를 세우고 신문학회를 창설하였으며 언론학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언론법제 교육을 담당하였다. 1953년 홍익대학교에 한국 최초의 신문학과가 창설되었고, 1955년 커리큘럼에 '신문윤리법제'라는 과목이 4학년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었다(이재진, 2002).

당시 언론법제 과목의 내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언론법제 과목은 저널리즘과 법 분야의 지식을 모두 요구하는 상급생(4학년) 교과목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법과대학에서 개설하는 '법학개론'을 4학년 전에 선행과목으로 수강해야 했다. 즉, 구체적인 언론관계법 분야에 대한 수업을 위해서 기초적인 법적 지식을 먼저 요구하였는데, 현재의 한국 대학의 언론법제 교육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

언론법제 교육은 1962년 홍익대학교 신문학과가 당시 새롭게 제정·반포된 교육조례 위반으로 폐과되면서 중단된다. 그러나 신문방송관련 학과들이 점차 설립되면서 언론법제 교육은 조금씩 더 많은 대학들에 의해서 수용된다. 1956년 중앙대학교, 1960년 이화여자대학교, 1963년 한양대학교, 1965년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그리고 1966년 성균관대학교에 신문방송 관련 학과가 각각 문을 열었다. 홍익대학교 이후 설립된 신문방송 관련 학과들이 어떻게 언론법제 교육을 실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1963년 개설된 한양대학교 신문학과와 경우 개설 초기부터 현재까지 언론법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현재 전국의 4년제 대학 중 약 69개 학교에서 언론법제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일본의 소피아 대학은 1932년, 한국보다 약 21년 앞서 언론관련 학과를 개설하였다(Lee, 2005).

〈표 1〉 언론법제 강의 개설 학과 현황

번호	대학명	교과목명	담당교·강사	학부·학과
1	강원대학교	언론법과 윤리(4-1)	정 윤 식	정치외교신문방송학과(신문방송학과)
2	건국대학교	언론윤리론(3)	유 일 상	신문방송학과
3	경기대학교	매체법제론	윤 성 옥	다중매체영상학부(정치매체관리학전공)
4	경남대학교	언론윤리법제	김 영 주	정치언론학부(언론홍보학/정치외교학)
5	경북대학교	언론윤리법제론	김 재 홍	신문방송학과
6	경성대학교	커뮤니케이션윤리법제	이 의 자	신문방송학과
7	경운대학교	언론윤리와 법제	민 정 식	신문방송광고학부(매체정보학전공)
8	경주대학교	언론법제론(4-2)		방송언론광고학부(광고법제론)
		광고윤리법제론(4-2)		
9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윤리법제	임 병 국	언론정보학부
10	계명대학교	언론정책 및 법제론	김 세 철	신문방송학/광고홍보학/디지털영상학전공
11	고려대학교	언론법제		언론학부(언론, 정보/방송, 영상/광고홍보)
12	고신대학교	광고심리와 윤리(4-2)	김 은 진	광고홍보학과
13	광운대학교	미디어윤리법제	주 동 황	미디어영상학부(신문방송/멀티미디어/방송연예)
14	광주대학교	언론윤리법제		언론광고학부(신문방송전공)
15	국민대학교	미디어법과 윤리	조 연 하	언론정보학부(언론학전공)
16	극동대학교	미디어윤리법제(3-2)		방송영상학부(영상산업학전공)
17	단국대학교	언론윤리법제론	손 태 규	언론영상학부(언론홍보학전공)
18	대구가톨릭대	언론윤리법제	최 경 진	언론광고학부(언론영상전공)
19	대구대학교	언론윤리법제	엄 기 열	국제사회언론학부(언론매체학전공)
20	대진대학교	미디어법제론	황 우 권	신문방송학과
21	동명정보대학교	미디어정책법제론	유 승 관	신문방송학과
22	동서대학교	방송윤리법제(2-2)	구 종 상	디지털영상매스컴학부(디지털방송)
23	동아대학교	언론법제론	이 진 구	신문방송학과
24	동의대학교	언론법의 이해와 활용	문 종 대	언론광고학부(신문방송학전공)
25	목원대학교	광고윤리법제(4-1)	이 승 선	광고홍보학
26	부경대학교	언론윤리법제론	차 용 범	신문방송학과
27	부산대학교	언론윤리법제	김 문 수	신문방송학과
28	서강대학교	언론법제론	김 영 주	신문방송학과
29	서울대학교	언론윤리법제	김 서 중	언론정보학과
30	서울여자대학교	미디어윤리법제(3-2)	임정수/조연하	정보영상학부
31	선문대학교	언론윤리법제론	이 연	언론광고학부
32	성공회대학교	미디어법과 정책	김 서 중	신문방송학과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최 영 목	신문방송학과
33	성균관대학교	방송법제윤리연구		신문방송학과
34	세명대학교	언론윤리법제론		미디어창작학과

특집 / 언론법제 교육의 현실과 과제

번호	대학명	교과목명	담당교·강사	학부·학과
35	세종대학교	언론법제		신문방송학과
36	수원대학교	언론윤리법제	김 광 옥	언론정보학과
37	숙명여자대학교	언론법제 및 윤리		정보방송학과
38	순천향대학교	언론법제론	장 호 순	신문방송학과
39	송실대학교	언론광고윤리법제		언론홍보학과
40	신라대학교	광고홍보윤리법제		광고홍보학과
41	연세대학교	미디어법제론		신문방송학과
42	영남대학교	방송법제와 정책		언론정보학과
43	영산대학교	방송법제론		영상미디어전공
		언론윤리법제론		신문방송전공
44	우석대학교	언론윤리법제론		신문방송학과
45	원광대학교	언론윤리법제론	김 병 국	정치행정언론학부 - 신문방송학전공
46	이화여대	표현의 자유와 언론윤리		사회과학부 - 언론정보학
47	인제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법제 I, II	나 낙 균	언론정치학부 - 언론광고학과
48	인천대학교	미디어윤리 법제론(3-1)	반 현	신문방송학과
49	인하대학교	언론정보법제론(3-1)		사회과학부 - 언론정보학
50	전남대학교	언론윤리법제		신문방송학과
51	전북대학교	언론윤리법제		언론심리학부 - 신문방송학
52	제주대학교	언론법제론	김 경 호	언론정보학과
53	조선대학교	미디어윤리(3)	이 동 근	신문방송학과
54	중부대학교	언론윤리법제		언론방송영상학부 - 신문방송학과
55	중앙대학교	광고윤리법제		정경대학 - 광고홍보학과
56	창원대학교	언론윤리법제		언론정보학과
57	청운대학교	광고윤리법제		광고홍보학과
58	청주대학교	광고법제윤리		언론정보학부 - 광고홍보학
		언론윤리법제론		언론정보학부 - 신문방송학
59	충남대학교	커뮤니케이션윤리법제	이 승 선	언론정보학과
60	한국디지털대	언론윤리와 법규		언론영상학과 - 언론정보전공
61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와 법제		영상이론과(영상기획)
		방송윤리와 법제		방송영상과
62	한국외국어대학	미디어윤리와 법(4-2)	김 우 룡	언론정보학부
63	한동대학교	미디어윤리와 법제		언론정보학과
64	한림대학교	미디어윤리	김 옥 조	언론정보학부 - 언론전공
65	한서대학교	언론법제론	이 용 성	신문방송학과
66	한신대학교	광고윤리법제		광고홍보학과
67	한양대학교	언론법제	이재진/박영상	신문방송학과(서울/안산)
68	협성대학교	광고윤리와 법		경상학부 - 광고홍보학과
69	호남대학교	언론윤리법제		신문방송학과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 중요성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

2) 언론법제 교과목 개설 상황과 강의 내용

언론법제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서 2005년 3월부터 5월에 걸쳐서 언론법제 강의가 실제로 개설되고 있는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언론 관련 학과(광고관련 학과 포함)를 가지고 있는 83개 대학 중 70개 대학이 언론법제 관련 강의가 학부 커리큘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84.3%의 언론관련 학과에서 언론법제 관련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5).

이러한 결과는 2001년 5월 18일 ~ 19일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언론학회 봄철 학술대회 기획세션에서 발표된 언론법제 교육현황에 비추어 보면 차이가 있다. 2001년 당시 발표된 언론관련 연구와 교육에 대한 백서에 따르면 언론관련 학과가 있는 72개 대학 중 49개 대학에 언론법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학회, 2001). 즉, 언론 관련 학과 중 약 68%가 언론법제 교육을 정식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있다. 4년이 경과한 후 그 비율이 84.3%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은 현재 한국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간략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007년 커리큘럼에 언론법제 관련 과목을 두고 있는 학교는 전체 69개교에 이른다. 그러나 얼

마나 많은 학교들이 언론법제 과목을 실제로 개설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표 1〉에서 보듯이 언론법제 관련 과목의 교과목명이 다양하다. 가장 많이 사용된 교과목명은 '언론윤리법제(론)' 이었고 다음으로 '언론법제론' 과 '광고윤리법제(론)' 그리고 '미디어 윤리법제(법제윤리)' 가 뒤를 이었다. 교과목명은 대개 언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방송, 광고와 함께 법, 법제, 윤리법제, 정책 등이 다양하게 결합되어 교과목명이 임의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교과목명 만큼 언론법제 교육은 누가 강의를 맡는가에 따라서 강의 내용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2005년 당시 언론법제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거나 또는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교·강사들에게 강의계획서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18개 학과에서 강의계획서를 보내왔다. 여기에 2007년 새롭게 강의계획서를 보낸 3개 학과와 인터넷으로 강의계획서의 내용이 확인 가능한 1개 학과를 포함하고 2005년 교·강사들에게 강의 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강의계획서에 교과내용을 살펴보았다.⁶⁾

이를 토대로 언론법제 과목에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교육되는 10개의 주제를 선택하였다. 이들은 (1) 명예훼손, (2) 사생활 침해, (3) 표현의 자유와 언론 이론, (4) 정보공개법과 알권리, (5) 광고관련법, (6) 음란, (7) 방송관련법, (8) 저작권법, (9) 뉴미디어

6) 강의계획서를 분석한 대학은 건국대(언론법제론), 경남대(언론윤리법제), 경북대(언론윤리법제론), 경성대(커뮤니케이션윤리법제), 경희대(미디어윤리법제), 고려대(언론법제), 광운대(미디어윤리법제론), 대구대(언론윤리법제론), 대전대(미디어법제론), 동명대(미디어정책법제론), 동의대(언론법의 이해와 활용), 목원대(광고윤리법제), 부경대(언론윤리법제론), 부산대(언론윤리법제), 서강대(언론법제론), 순천향대(언론법제론), 원광대(언론윤리법제론), 이화여대(미디어법제론), 인천대(미디어윤리법제론), 청운대(매체법제론), 한양대(언론법제) 등 21개 대학이다. 이에 대한 문의는 jilee@hanyang.ac.kr로 하면 된다.

어 및 사이버 언론법 그리고 (10) 언론중재제도 및 반론권 제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법제 교육이 체계화 되어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Dines, Levin & Lind, 1997) 2005년의 분석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5).

미국의 경우 다인스(Dines, 1997) 등에 따르면 언론법제 교육에서 가장 빈번히 다루어지는 10개 주제는 (1) 명예훼손, (2) 프라이버시침해, (3) 수정헌법 제1조 이론, (4) 언론 자유와 공정한 재판, (5) 정보공개법, (6) 저작권법, (7) 방송 규제법, (8) 보도의 자유와 취재원 보도, (9) 광고법제 그리고 (10) 뉴미디어 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개 주제 중에서 공정한 재판, 음란, 알권리, 언론중재제도와 반론권 영역에서만 제외하고는 상당히 강의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겠다.⁷⁾ 외형적으로 볼 때 한국과 미국에 있어 언론법제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즉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언론현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 불필요한 언론관계 소송을 피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파악된다.

최근 들어 교과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에서의 언론법제 관련 쟁점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법적 쟁점들과 이의 해결책에 대한 논의들이 강의 내용의 점차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모욕죄, 반론권 등과 관련된 언론법 적용상의 문제는 무엇이며 법의 제·개정 필요성 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 외에도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저작권, 성 표현,

스팸메일 규제 등에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은 점점 더 확대될 전망이다(이재진, 2006).

언론법제 영역에서 언론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해서 가장 복잡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공인' 또는 '공적 존재'(public figure)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공인의 개념을 점차 미국 언론법에서 지칭하는 공인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서도 실제로 그 법리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어 공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진실입증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언론 측에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법에서의 공인들은 손해배상을 얻기 위해서는 언론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증명해야 하는 반면 한국 법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단지 보도된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에 관한 경우에만 면책이 된다(표성수, 1997). 그럼에도 2000년 이후의 판결에서는 공적인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게 보도하도록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요건을 완화시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차용범, 2002; 이승선, 2005; 이재진, 2006).

주목할만한 것은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민의 알권리와 반론권 제도는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는 언론중재제도 또는 반론권 제도가 한국에서는 언론법제 교육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Lee, 2005). 또한 알권리의 경우 미국에서는 이를 명확히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비록 현행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⁸⁾ 아울러 독특한 언론중

7) 독특한 점은 광운대(미디어윤리법제론)와 한양대(언론법제)의 경우 교과내용에 '혐오언론'(hate speech)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혐오언론이란 인종적, 문화적, 성적, 장애인 유무의 차별에 따른 비하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의미한다(이재진, 2002).

8) 1991.5.13. 선고 90헌마133 결정. 알권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재진(2006, pp. 27 ~ 67) 참조.

한국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반론권,
언론중재제도 등이 언론법제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 되고 있어

재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피해구제 체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특히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반론권 신청자의 당사자 적격의 문제, 인터넷에서의 반론권 적용의 문제, 반론권 적용의 범위 등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과 내용 중 언론윤리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몇몇 대학은 언론윤리에 대한 독자적인 강의를 개설하고 교육하고 있으나 미국과는 달리 언론인들에 대한 윤리교육은 법제교육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윤리와 관련된 교재는 번역서를 제외하면 김지운의 ‘글로벌시대의 언론윤리’ (2004), 김옥조의 ‘미디어 윤리’ (2004)가 거의 전부인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윤리교육을 미국에서처럼 별개의 독자적인 과목으로 교육하기보다는 언론법제 교육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법제 교육에 언론윤리가 포함되어 1주 또는 2주 정도에 걸쳐 교육이 할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언론법제 교육 담당자

대학에서 언론법제 교육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이며 현재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가? 언론법제 분야가 언론과 법 영역의 지식과 경험을 골고루 갖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을 전공하거나 언론사의 경험이 있으며 동시에 법학 영역을 공부한 사람 또는 법 전문가 중에서 언론학으로 학위를 한 사람들이 언론법제 교육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언론관련 학과에서 언론

법제를 강의하는 사람들은 언론사 경험이 있고 법과 대학에서 J.D.(Juris Doctor/법무박사)나 법학박사 학위를 한 사람들 또는 언론을 전공하고 이후 J.D.를 취득하거나 적어도 법과대학에서 필수적인 교과목을 수강한 후 언론법제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염규호, 1999).

우리의 경우 미국의 언론법제 교육 담당자들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물론 전공분야로서 언론법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언론법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언론 현업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언론법제 교육이 비교적 일찍 시작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한양대학교의 경우 ‘언론윤리법제’ 과목은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언론법제 분야 최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장용 교수가 담당하였다. 장 교수는 1969년 ‘언론과 인권’이라는 언론법제 관련 최초의 전문서적을 출간하였는데 당시 미국의 언론법제 분야의 쟁점들과 논의들을 책에서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법 현실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체적으로 장 교수는 책에서 미국의 언론자유론, 알권리, 명예훼손과 공직자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다루었고 법 규정보다는 언론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소개하였다. 한국의 경우 법체계가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판례분석 연구는 거의 전무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새로운 시도였다고 하겠다.

장용 교수 이외에도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언론학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기존의 일본 저널리즘 교육의 영향을 받은 언론학 커리큘럼도 변화하게 된다. 언론법제 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후 점차 미국에서 언론법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다(한국언론학회, 2001). 장 교수가 1977년 작고한 이후 한양대학교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은 팽원순 교수에 의해 이어졌다.

현직 언론인 출신인 팽원순 교수는 한양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한국 언론법제 교육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팽 교수는 언론법제 관련 최초의 교과서를 출간하였다. 1984년 집필한 '매스컴유통이론 윤리법제'는 출간 후 20년이 넘도록 언론법제 교육이 실시되는 대학에서 널리 읽히고 있다. 팽 교수는 또한 언론법제 교육을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에까지도 도입하는데 공헌하였고 실제로 다양한 언론법제 관련 과목들을 대학원 커리큘럼에 개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토대는 장용 교수와 팽원순 교수에 의해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두 사람 이외에도 이화여자대학교의 김동철 교수, 경희대학교의 한병구 교수 그리고 원광대학교의 김병국 교수 등이 대학에서 언론법제 교육을 담당했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한국 언론법제 교육을 담당한 '제1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제1세대 교육자들의 공통점은 대개 언론 현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저널리즘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쟁점과 관련된 주제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언론법제 교육의 핵심적 내용이었다.

제1세대 교수들의 대부분이 은퇴하거나 작고한 상황에서 '제2세대' 언론법제 교육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중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경우와 한국이나 여타 국가에서 학위를 한 경우로 양분된다. 소위 2세대 교육의 초기는 한국에서 언론법제를 전공하거나 강의를 담당하던 건국대 유일상 교수, 경희대 임병국 교수,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 한일장신대 김동민 교수, 경남대 김영주 교수 등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그러다가 중반 이후에 들어와 현재 순천향대에 재직

중인 장호순 교수가 1993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대학의 언론법제 교육은 그 교육방식에 있어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언론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언론학 전 분야에 걸친 변화와 무관치 않다. 2002년 조사에 의하면 서울에 위치한 대학 중 언론학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115명 중 96명이 미국에서 학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2). 단지 20명의 교수들이 한국(n=12), 독일(n=3), 일본(n=1), 프랑스(n=1) 그리고 영국(n=2)에서 학위를 하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서울지역 19개 대학의 언론관련 학과 교수 중 약 85%의 교수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한 것이다.

지방대학의 경우에도 역시 196명의 교수 중 미국에서 학위를 한 교수들이 압도적이었으며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 학위를 한 사람들은 30%에 머물렀다.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학위를 한 사람들은 10명에 지나지 않았다. 2005년 조사연구에서도 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Lee, 2005). 현재 이러한 비율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나 전체적인 상황은 여전히 미국에서 학위를 한 교수들이 연구나 강의에 있어 압도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언론법제 교육 담당자들이 관련분야 전공으로 학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논문을 쓴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관련된 수업을 듣고 훈련을 해가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교육철학이나 커리큘럼 등 교육적인 배경이 차후에 강력히 작용하게 된다. 이는 미국 중심의 실증주의적 연구방법과 미국식의 커리큘럼 그리고 교과서가 언론학 분야의 주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언론법제 교육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국에서 Ph.D.나 J.D.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언론법제 강의를 하는 교수의 수가 조금씩 늘어났다. 비록 전공은 하지 않았으나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경우 자신이 수강했던 언론법제 관

상당수의 언론학 및 언론법제 전공자들이 미국에서 학위 받아

런 강의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가 한국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7년 11월까지 미국에서 언론법제 영역을 전공하고 귀국하여 언론법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은 장호순 교수(순천향대), 우지숙 교수(서울대), 이재진 교수(한양대), 엄기열 교수(대구대), 김경호 교수(제주대), 손태규 교수(단국대)이다. 이들 중 장호순과 손태규 교수는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이재진과 김경호 교수는 Sou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그리고 엄기열 교수는 University of Iowa에서, 우지숙 교수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우 교수는 New York University에서 J.D. 학위도 동시에 취득한 바 있다.⁹⁾

미국 이외에도 일본이나 러시아 그리고 독일 등에서 언론법제를 전공하고 돌아와서 언론학 분야에서 법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소수 있으나 명확히 집계는 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독일에서 학위를 취득한 나낙균 교수(인제대)와 러시아에서 학위를 취득한 선봉희 박사(외국어대 강사)가 언론법제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에서 언론법제 전공으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언론법제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김서중 교수(성공회대), 김형일 교수(극동대), 조연하 박사(이화여대) 등이다.

실제로 1990년 이후 2004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에서 언론법제 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한 경우는 언론학분야, 법학분야 및 행정학분야 등 모든 분야에 걸쳐 97명에 이르고 이들 중 언론학 전공의 박사학위 취득자는 26명으로 2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선, 2005). 그런데 학위 취득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언론법제를 강의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논문은 언론법제 전공으로 썼으나 차후에 언론법제를 강의하지 않거나 다른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이와 반대로 유사한 전공을 했으나 언론법제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위취득자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법제분야에 정책이나 광고법 전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명확한 수치를 판단하기 힘들게 한다.¹⁰⁾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대학에서 언론학분야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언론법제 전공으로 교수를 채용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단 한 번 서강대학교에서 2000~2001년 사이에 언론법제 전공 교수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현재 언론법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대부분 저널리즘, 언론이론, 또는 뉴미디어 전공으로 대학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비록 언론법제 교육에 대한 현실적 요청은 높았으나 대학에서 이들 언론법제 전공자들을 수용하는 정도는 극히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9) 이승선(2005)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말에서 2005년까지 언론학 관련 저널들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나오는 『언론중재』를 분석한 결과 언론법제 연구는 미국에서 학위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이는 교육에 있어서도 그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10) 한국에서 언론법제 분야에서 학위를 한 교육자들 중 주목할만한 사람은 충남대학교 이승선 교수다. 1999년 박사학위 이후에도 법학 분야에서 다시 학사와 석사를 하고, 언론법제 분야에서 대단히 광범위하고 활발한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언론법제 교육자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연구해야 하는가에 있어 모범이 될만한 사례이다.

4) 언론법제 교재 및 교과서

언론법제 교육에 있어서 교재와 교과서는 언론법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저자가 어떤 내용의 저술을 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강의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언론법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가 된다. 현재 언론법제

의에서 주교재나 부교재로 이용되는 교과서들은 아래 <표 2>와 같다.

이러한 교재들의 대부분은 개인과 국가 사이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기본권을 둘러싼 갈등과 다툼을 다루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법조계 인사나 연구자들에 의해 저술된 교재들도 다수 있으나 언론법제 수업에서 부교재나 참고문헌으로 이용되고 있다. <표 2>는 이러한 참고 도서들은 제외하고 언론학 분야에서 저술된 교재만을 소개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재나 부교재로 쓰이고 있는 책들은 모두 21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권

<표 2> 언론법제 교육 관련 주교재 및 부교재

저 자	제 목	발행년도	출 판 사	비 고
강 준 만	대중매체 법과 윤리	2001	개마고원	편 저
김 동 민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	1993	한나래	편 저
김 동 철	자유언론법제 연구	1987	나남	
김 옥 조	미디어 법	2005	커뮤니케이션북스	
김 옥 조	미디어 윤리	2004	커뮤니케이션북스	개정증보판
류 한 호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2004	커뮤니케이션북스	
유 일 상	언론정보윤리론	2001	아침	
유 일 상	언론법제론	2000	박영사	
이 구 현	미국언론법	1998	커뮤니케이션북스	
이 용 성	신문법 연구	2006	커뮤니케이션북스	
이 재 진	언론 자유와 인격권	2006	한나래	
이 재 진	언론과 명예훼손 소사전	2003	나남	
이 재 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2002	한양대 출판부	
임 병 국	언론법제와 보도	2002	나남	개 정 판
장 용	언론과 인권	1969	선명문화사	절 판
장 호 순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2007	개마고원	개정증보판
장 호 순	언론의 자유와 책임	2004	한울	
팽 원 순	언론법제신론	1989	나남	
팽 원 순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 이론	1984	법문사	
한 병 구	언론법제이론	1987	나남	
한 병 구	언론과 윤리법제	1995	서울대 출판부	

언론법제 교재 내용의 변화는
언론법제가 정치·사회적 체제 변화
반영한다는 방증

(약 62%)이 2000년 이후에 출간되었으며, 1990년대 4권, 1980년대 또는 그 이전에 4권이 출간되었다. 1990년대까지 언론법제 교육과 관련된 교과서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언론법제 교육이 관심을 끌게 되고 언론법제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이승선, 2005) 교과서의 출판도 급증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모든 교과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석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이 책에 실려 있는 것인가는 판단하지 못했지만 그 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각 시기별 교과서의 특징을 구분해 보면 1980년대 또는 그 이전의 책들은 주로 관련 법률을 제시하고 이들 법률의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들로서 많은 부분을 언론자유론에 할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중심으로 한 언론법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 법과 비교하면서 한국 언론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여전히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였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여 진다.

1990년대 발간된 교과서들은 점차 국가와 개인 기본권 그리고 국가와 언론 간의 문제와 함께 개인과 언론과의 다툼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 논리적 논의들을 다루었는데 이러한 점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언론의 자유가 확립되어 가고 또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해 법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노력들이 늘어난 것을 반증한다. 2000년대 이후 쏟아진 언론법제 관련 저서들은 기존 주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한 학술적 접근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 동안 판례가 집적되어 판례연구를 통한 논의들이 확산된 것 또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다루고 있는 점이다. 인터넷과 관련된 제반 언론법제에 관한 논의들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론법제 교재 내용의 변화는 언론법제가 정치·사회적 체제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언론법제 강의계획서를 문의한 대학에서 보내 온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교과서들 중에서 언론법제 시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5종의 교과서는 '대중매체 법과 윤리'(강준만, 2001), '언론법제와 보도'(임병국, 2002), '언론 자유와 인격권'(이재진, 2006),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이재진, 2002), '언론법제론'(유일상, 2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강의계획서를 보내 온 대학들에 나타난 주교재만을 중심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¹¹⁾

법조계 학자들이 저술한 언론법제 관련 저술들도 때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 그 사용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언론법'(신평, 2007),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한계'(문재완, 2002), '명예훼손법'(신평, 2004), '언론정보법연구 I·II'(박선영, 2002), '표현의 자유'(박용상, 2002), '언론정보

11) 이들 5종 교과서의 내용을 그 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언론자유론,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저작권, 방송법, 성표현물 규제, 언론중재제도(반론권 제도), 언론윤리, 언론보도, 인터넷 관련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법' (성낙인, 1998), '언론과 개인법익' (박용상, 1997), '미디어법학' (방석호, 1995)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저서들은 언론학분야의 법제시간에는 부교재로 이용되거나 이용 빈도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 분야의 교육에 있어서는 헌법학에서의 부교재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들 이외에도 최근에 언론법 관련 교재들의 출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이 언론법제 교육과 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증거라고 할 수 있다.¹²⁾

실제로 2002년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는 언론법제 교육에서 주로 사용되던 교재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약 10여 종이 주교재 또는 부교재로 이용되었다(Lee, 2002). 이는 지난 5년간 교재의 종류와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교재들이 실제로 언론법제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이용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¹³⁾ 그럼에도 언론법제 강의계획서에서 교재로 소개된 책들이라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양적으로 상당히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언론법제 관련 교재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빈약하게 보인다. 미국 최대의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www.amazon.com)을 통해서 키워드 검색을 실시한 결과 2007년 11월 말 현재 'Mass Media Law' 관련 서적은 2,029종, 'Media Law' 관련 서적은 10,042종 그리고 'Communications Law' 관련 서적은 13,294

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우리 언론법제 교육과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승선(2005)은 한국의 언론법제 교육의 교과서들은 미국의 언론법제 교과서들과 달리 앞부분에 기본적인 법률체계에 대한 소개가 없다고 지적한다. 어쩌면 언론법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체계나 법 적용 절차와 방식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미비점은 빨리 보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또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 언론법제 교육이 한국의 경우처럼 언론학 관련 학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이용되는 교과서는 법학계의 연구자나 교육자들이 저술한 것이든 언론학계의 연구자들이 저술한 것이든 교육에 필요한 경우 골고루 이용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법조계 연구자들이 저술한 언론법학 저서는 언론학계의 언론법제 시간에 많이 이용되지 않으며 대학원 수업에서 부교재로 읽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언론법 분야의 법제교육과 법학 분야의 법제교육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법학 분야의 경우에도 언론법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강의를 마련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따라서 언론법제 교육에 있어 법 적용의 논리만을 살피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법제 교육의 본질은 언론과 법이라는 상이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다.

12) 예를 들어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김옥조, 2006), '언론분쟁과 법' (윤재운·함석천, 2006), '인터넷 언론과 법' (김영석 외, 2004), '인터넷·언론·법' (한국법제연구원, 2002),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 (이광범 외, 2002), '언론 명예훼손 핸드북 Q & A' (이구현, 2002), '언론소송 10년의 판례연구' (이구현·이재진, 2001), '언론과 명예훼손' (차형근 외, 2000), '법을 알고 기사쓰기' (언론연구원, 1997) 등이 있다.

13) 드물게 학부 수업에서 원서가 부교재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Media Law(Barendt, 1993), First Amendment Handbook(인터넷 사이트), Fundamentals of Mass Communication Law(Gillmor, 1996) 등이다.

언론법제 교육의 제1목적은
언론관련법 조항들이 어떻게 적용되며
실제 사례에 작용되는지를 터득하도록 하는 것

3. 언론법제 교육의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학 교육 과정에서 언론법제 교육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신문방송 관련학과가 설립되어 있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언론법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론법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수요는 많으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공자가 부족한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언론법제 교육은 전문언론인 양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분야이지만 이처럼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불분명하다. 문제는 학교를 벗어나면 언론법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한국언론재단의 언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언론인연구과정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언론재단에서는 현재 3개 부분에서 언론법제 및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의는 대부분 언론관련 변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언론사에 처음 입사한 수습기자들이나 또는 예비언론인들을 위해서 언론윤리법제 강의를 1~2회 정도 실시하고 1회당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한다. 그 외에 중견급의 경력기자들을 위한 언론법제윤리교육도 2~3일 정도에 걸쳐 하루 1~2시간 정도 실시된다. 아울러 언론재단에서는 위탁교육 형식으로 언론인들에게 1회에 걸쳐 언론윤리법제

를 강의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나 회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각 프로그램에서 1회 정도 언론법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¹⁴⁾

이처럼 대학 외부의 언론법제 교육은 상당히 제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으며 강의시간도 짧아서 어느 정도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언론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법제에 대한 재교육이 개인들의 인격권을 좀 더 보호하도록 하는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한다(남재일·최민재, 2005). 즉, 언론법제 교육은 단지 1회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언론윤리법제 교육이 책임 있는 언론인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언론법제 교육은 아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장호순, 1998). 늘 지적되는 언론법제 교육의 현실 적합성의 문제와 함께 교육을 위한 환경과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법제 과목을 듣는 수강생들 대부분이 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법체제와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개별적으로 지식을 쌓지 않으면 언론법제 강의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흥미를 갖기 힘들다. 특히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지식의 흡수에 익숙하다 보니 법적인 원리를 논의하고 권리나 의무에 대해

14) www.kpf.or.kr. 이외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중재제도에 대한 특강(1회 2 ~ 3시간)이나 언론관련 시민단체에서 개설하는 아카데미 과정에서 언론법제 관련 강의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일회성의 언론법제 교육이며 언론법제의 단편적 분야를 강의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서로 논의하는 것이 힘들게 된다. 결국 언론법제 시간에는 현재의 법체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언론자유 의 이론적 및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교육해야 한다.

즉, 언론법제 교육의 제1의 목적은 언론관련 법 조항이나 판례를 무조건 외우거나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법 조항들이 어떻게 적용되며, 그래서 자유를 어느 정도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법적인 원리를 터득하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법제라고 하면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법적인 논리의 적용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학부 수업의 대부분은 언론법제와 관련된 법 조항이나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여기에는 무엇보다 언론법제가 대단히 복잡하고 딱딱한 과목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한다. 따라서 언론법제 교육의 시작은 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기 초반에 언론법제와 관심을 이끌만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법적인 논리를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언론법제 분야가 법전의 조문을 외우고 시험 보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언론계에 진출해서 실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기회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언론법제 분야가 그 이미지와는 달리 대단히 역동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방법에는 최신의 중요 판례를 소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비록 우리 법체계가 성문법 중심의 법체계가기는 하지만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판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법제 교육에서 판례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조항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러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형평성에 맞도록 적절히 법이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의식도 길러주어야 한다. 결국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언론이 다른 개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상충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법제 교육을 담당할 사람들의 부단한 학습 및 연구를 통한 자기발전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중요한 사안을 이해할 수 있고 관련 판례를 적절히 분석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해석하고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판례를 분석할 때 필요한 보편적인 분석의 틀이 중요한데 이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통해 판례를 세밀히 분석하여 어떤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법 제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적용대상이 되는 법 조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 판결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아울러 비록 한국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미국의 법체계에서 발전해 온 언론자유에 대한 원칙론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도 필요하다.

15) 이러한 측면에서 순천향대 언론법제론 강의에 있어 언론법정 방식의 강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생들로 하여금 3인 1조 형식으로 조를 짜고 언론과 관련된 법적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 또는 검사가 되어 재판에 준비하고 담당교수는 재판장을 맡고 무작위로 선발된 5명의 학생들을 배심원으로 하여 재판결과를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발표하게 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하도록 하여 법적인 논리를 현실적으로 체득하게 한다.

언론법제 교육 담당자들은 자기노력 통한 내실화 달성에 힘써야

4. 결론 및 제언

언론법제는 언론과 관련된 현상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임병국, 2002)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언론(표현)의 자유와 다른 개인 기본권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교형량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언론법제 교육은 언론의 자유에서부터 개인 권과의 충돌을 해결하는 법적 규정을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법제 교육의 목적이란 언론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어 적절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이론적인 시각에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즉, 단순히 언론현업에서 바라는 형태의 언론법제 교육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론법제 교육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가? 언론법제 교육은 지난 50년이 넘는 상당한 시간 속에서 실시되어 왔고 양적·질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즉, 언론자유론 영역에 대한 교육이나 명예훼손 영역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점차 취재보도의 자유와 책임, 사생활 침해, 공정한 재판, 정보공개, 반론권, 성표현물, 저작권에서 광고법제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범위와 다양성이 강화되어 왔다. 이는 언론법제 관련 연구가 늘어나고 관련된 연구서나 교재들이 2000년 이후 급증한 것과도 연관된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법제 교육이 나름대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법제 교육은 다른 언론학 관련 교육에 비해서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 언론법제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언론법제 교육이 변화해 가는

언론환경에 부응해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언론법제 교육은 교육 담당자들이 자기 노력을 통한 내실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내실화는 언론에 진출할 학생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에 대한 교육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심도 있는 지식전달이 어려워져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언론법제 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켜 줄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법제 영역에 있어 언론윤리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언론학 관련 교원 충원에 있어서도 미국에서와 같이 언론법제 분야를 하나의 독립된 전공분야로 인정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관련 교원들을 대학에서 더욱 많이 수용할 때 한국 언론법제 교육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남재일·최민재(2005). 『한국의 언론교육과 저널리즘 스쿨』.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방석호(2004).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 평(2007). 『언론법』. 서울: 삼영사.
- 염규호(1999). 미국 대학의 언론법 교육 현황. 『언론중재』, 18권 가을호, 17-26.
- 유일상(2001). 『언론법제론』. 서울: 박영사.
- 원우현·유일상(2003). 『세계의 언론학 교육』. 서울: 삼영서관.
- 이승선(2003).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소송에 있어서 '공적 지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방송학보』, 18권 3호(가을호), 293-334.

- 이승선(2005). 언론법제 연구의 현황과 특성.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1호), 227-262.
- 이재진(2002).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양대 출판부.
- 이재진(2006).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임병국(2002). 『언론법제와 보도』. 서울: 나남.
- 장 용(1969). 『언론과 인권』. 서울: 선명문화사.
- 장호순(1998). 언론법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언론중재』, 18권 가을호, 6-16.
- 정진석(1999). 언론법제연구 동향. 『언론중재』, 19권 겨울호, 48-69.
- 차배근(1997). 정보화시대에서 언론학 교육의 방향과 과제. 『저널리즘비평』, 22권, 44-46.
- 차용범(2002).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 추세. 『한국언론학보』, 46-3 (여름호), 414-445.
- 한국언론학회(2001). 『언론학 교과목 현황 자료집』. 서울: 한국언론학회.
- Bedeski, R. E. (1994).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London: Routledge.
- Koo, C. Y. (2000). "The changing media environment and implications for communication." In Ang, P. H. and Remanathan, S. (eds.) *Communication Education in ASEAN*. Singapore: AMIC and NTU.
- Dines, C. T., Levine, L., & Lind, R.C. (1997). *News gathering and the law*. Charlottesville: Michies.
- Gillmor, D. M. & Dennis, E. (1989). Legal research in mass communications. In Stempel, G. & Westley, B. eds. *Research methods in mass communica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Lee, J. (1998). Press freedom,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and sociopolitical changes in South Korea: 1981-1996.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Carbondale.
- Lee, J. (2005). An impact of the U.S. on Korean media law education: Korean media law education in the last half-century. A paper presented in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Taipei, Taiwan, July 26-28, 2005.
- Mowlana, H. & Chin, C. (1971). Libel laws of modern Japan and South Korea are compared. *Journalism Quarterly* 48, 326-30, 348.
- Park, K. S. (1993). "South Korea". In Jon V. Heuvel and E. Dennis eds. *The unfolding lotus*. New York: Freedom Forum Studies Center.
- Smith, J. A. (1981). Further steps toward a theory of press control. *Journalism History* 8 (Autumn-Winter), 93-95.
- Youm, K. (1996). *Press law in South Korea*. Ames, IA: Iowa State Univ. Press.

미국의 언론법제 교육현황

- 현장 지식 제공 및 참여하는 민주시민
양성 목표, 이해와 적용 중심으로 교육 -

김민정

하와이 퍼시픽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 조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석사
- MI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저널리즘 및 매스커뮤니케이션 대학 석·박사
- 현(現) 하와이 퍼시픽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 조교수 및 대학원 주임교수
- 논문 및 저서: 『Numbers tell part of the story: A comparison of FOIA implementation under the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외 다수

1. 서론

미국 언론법제 교육의 기원은 염규호 교수가 『언론중재』에 기고한 논문에서 상세히 밝혔듯이 1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펜실베이니아대 비즈니스 대학(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1893~1894년 교과과정에는 명예훼손법(Law of Libel)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미국 최초로 저널리즘 대학(School of Journalism)을 설립한 미주리 대학(University of Missouri)은 1908년 신문법(Newspaper Jurisprudence) 과목을 개설(염규호, 1998) 하였는데 이 과목은 주로 명예훼손법과 우편물에 관한 연방규제(federal mail regulations)를 다루었다고 한다(Henderson, 2006). 이후 미국의 언론법제 교육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였는데 그 발달 단계는 크게 네 시기 -고전기(the Traditional: 1904~1930), 과도기(the

Transitional: 1931~1943), 성장기(the Developmental: 1944~1968) 그리고 현대(the Contemporary: 1969~지금) - 로 나눌 수 있다(Marler, 1990).

현재 미국 언론학(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교육¹⁾에 있어서 언론법제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언론학과 인가 심의위원회(The Accrediting Council on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 이하 “ACEJMC”라 지칭)의 인가 기준 2번째 항목인 교과과정 및 교수법(Curriculum and Instruction)은 언론학과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표현과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 and press)에 관련된 원칙(principles)과 법(laws)을 이해(understand)하고 적용(apply)하는 능력이 그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ACEJMC, 2005). 즉, 언론학과의 교과과정 및 교수법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권리

1)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영역이 확대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같은 커뮤니케이션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디지털 영상학과 등등 학교들마다 이름도 다르고 중점을 두는 분야도 다르다. 미국에서도 저널리즘과 광고홍보를 포함하여 매스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 중심의 학과들이 있고 정보통신에 초점을 맞추는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s) 중심의 학과들 그리고 수사학, 대인 커뮤니케이션, 문화연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studies) 학과 등등이 있는데, 이 글에서 “언론학”이라 함은 저널리즘 및 매스커뮤니케이션(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분야에 초점을 맞춘 언론학을 의미하며, 이 글 전체는 저널리즘 및 매스커뮤니케이션 시각에서 쓰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들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학생들의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 법제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해와 지식이 학생들이 실제로 해당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CEJMC의 인가를 받은 미국 내 104개 언론학과들은 언론법제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ACEJMC의 인가를 받지 않은 언론학과들 역시 교육부, 지역별 교육 평가위원회, 대학 내 평가위원회 등의 교육평가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언론법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다(Henderson, 2006). 일례로 필자가 대학원 교육을 받은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저널리즘 및 매스 커뮤니케이션 단과 대학(School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은 학부생과 석·박사 과정생 모두에게 세부전공과 상관없이 언론법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필자가 언론법제를 강의하고 있는 하와이 퍼시픽 대학(Hawaii Pacific University) 커뮤니케이션 단과대학(College of Communication)은 언론법제 과목을 학부생에게는 선택과목으로 석사 과정생에게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글은 우선 미국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본 후 언론 “현장”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을 위한 언론법제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에 대해서는 먼저 언론법제 교육의 목표 및 주제 그리고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본 뒤, 언론법제 전공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언론법제 분야의 연구 활동은 어떠한 지에 대해 개관하고자 한다.

2. 미국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

1) 언론법제 교육의 목표 및 주제

언론법제 교육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언론학과 졸업생들이 전문 언론인(a professional communicator)으로서 현장에서 일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식(working knowledge)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현장을 취재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광고 문구를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기만광고 금지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취재 정보원에게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등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차후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되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목표로 언론학과 졸업생들이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참여하는 시민(engaged citizen)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즉 언론법제 교육을 통해 자유와 책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언론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문제의식을 가지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절감함과 동시에 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다른 중요 가치들과의 갈등양상에 대해 심사숙고 해 봄으로써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cultivation of critical thinking skills)해 궁극적으로는 민주사회의 참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법제 교육의 목표라 하겠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론법제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실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우

미국 대학의 언론법제 교육목표는
언론인으로서 필요한 지식 전수 및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것

선은 법의 출처(sources of law)와 연방 및 주 법원의 체계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기본 배경지식을 제공해야 하고, 수정헌법 1조의 역사, 관련 이론들, 주요 개념들을 소개함으로써 기본토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특히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자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억제(prior restraint)와 사후처벌(subsequent punishment)의 차이, 표현 내용에 근거한 규제(content-based restriction)와 표현내용과는 상관없이 시간, 장소, 방식만을 규제하는 표현중립적인 규제(content-neutral restriction: time, place, manner restriction)의 차이, 상징을 통한 표현(symbolic speech) 및 특정집단에 대한 증오를 담은 표현(hate speech)에 대한 규제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는 학생 언론(student press), 명예훼손법, 프라이버시 관련법, 뉴스 취재 시 장소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places), 정부 문서 및 정부 회의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government records and meetings), 재판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courts), 취재 정보원 익명성 보장(confidential sources) 등 기자특권(reporter's privilege)에 관한 법, 재판 관련 보도의 쟁점(free press/fair trial)들을 다루게 되고, 저작권법(copyright) 및 상표권법(trademark),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송 및 통신에 관한 규제(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광고에 관한 규제, 기업체 및 법인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corporate speech)에 관한 규제 및 선거관련(campaign speech) 규제, 음란물 규제 등을 주제별로 다루게 된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한 학기 안에

모두 소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강의계획서에서 내세운 주제들을 모두 다루지 못하고 한 학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어떤 주제들은 아주 간략하게 다룬 후 넘어가게 된다. 게다가 한 학기 동안 언론법제의 모든 부분을 소화하는 일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첫째로는 학생들의 전공분야가 날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어 각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야만 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및 저작권 보호 등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생겨나고 각종 규제기관들(연방통신위원회, 연방통상위원회, 연방의약청)의 규제사항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언론법제 과목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의 양이 날이 갈수록 방대해지고 있으며, 셋째로 강의(lecture) 위주의 수업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강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요구되는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Ekstrand, 2007).

그리하여 사실상 한 학기 동안 어떤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칠 것인가는 해당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의 재량 및 선택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지게 된다. 필자가 언론법제 공부를 한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에는 언론법제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가 세 명이 있는데 그 중 두 사람은 신문기자 출신인 자신들의 경력 및 초창기 언론법제 학풍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언론법의 주제들, 특히 명예훼손법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신입교수이자 변호사 출신인 나머지 한 명의 교수는 광고 및 상업 관련 표현(commercial speech)을 중심으로 강의를 한다. 필자는 온라인상에서의 표현 및 저작권에 관심이 많아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 및 저작권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강의를 하곤 한다.

전공별 학생들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또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세부전공에 따라 언론법제 과목 내에서 내용에 차별화를 둔 과목들을 개설,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다. 일례로 시라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의 경우 10년이 넘게 세 가지 종류의 언론법제 과목들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첫째는 인쇄 및 방송매체 저널리즘 전공자들을 위한 언론법제(Communications Law for Journalists), 둘째는 광고 및 PR 전공자들을 위한 언론법제(Communications Law for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그리고 셋째는 텔레비전과 영화 제작 전공자들을 위한 언론법제(Communications Law for Television, Radio, Film)이다. 시라큐스 대학에서 언론법제를 다년간 강의하고 있는 제이 라이트(Jay Wright) 교수는 현재 시라큐스 대학은 전반적인 교과과정을 재정비하고 있는 중이지만 세 가지 종류의 언론법제 과목들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본인들의 세부 전공 및 세분화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언론법제 과목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J. Wright,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25, 2007).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역시 2년여 전부터 저널리즘 전공자들을 위한 언론법제와 광고 및 PR 전공자들을 위한 언론법제로 세분화하여 학부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맞춰 언론법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언론법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제공하는 학교들 중에도 세부전공에 맞춰 언론법제 과목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노던 켄터키 대학(Northern Kentucky University)과 오클라호마 주립대학(Oklahoma State University)이 일례라 하겠다(Ekstrand, 2007).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두어 수업을 한다는 것은 그 분야는 2 ~ 3주에 걸쳐 다루는 등 다른 주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강의한다는 것을 뜻할 뿐 전문화된 과목이 아닌 다음에야 한 학기 내내 몇 분야만을 다룬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의 법제를 다루되 판례법 중심인 미국법의 특징에 따라 저널리즘에 관련된 판례들을 주로 논의하느냐 아니면 광고에 관련된 판례들을 예제로 활용하느냐로 차별화를 두는 정도라 하겠다. 그리고 같은 판례를 다룬다 할지라도, 만약 그 판례가 특정 기업체에 대한 언론의 탐사보도가 문제가 된 경우라면 언론의 입장에 중점을 두어 바라보느냐 아니면 기업의 대응 및 PR전략 입장에서 판례를 해석하느냐에서 차이를 두기도 한다(Ekstrand, 2007).

아무리 간략하게 다룬다고 해도 언론법제 관련 주제 모두를 한 학기 내에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매번 불가피하게 몇 가지 주제 분야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하고 학생들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넘어가도록 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선택은 때로 여타 과목을 가르칠 때와는 다른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특정 언론법 분야를 다루지 못하고 넘어갈 경우 학생들이 나중에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미비하여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일은 필자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 간략하게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2006년 가을학기에 언론법제 과목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정치 광고에 있어 기업체들이 갖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학기말 주제발표 분야로 선정해 놓은 뒤 수업시간에는 다루지 않았었다. 그런데 당시 필자의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 중 소규모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의 광고회사가 하와이 주 지역신문들에 게재한 정치 광고가 문제가 된 것이었다. 이 정치 광고는 당시 주 행정부가 해양자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

전공분야의 세분화와 새로운 법적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언론법제 과목에서
가르칠 내용 계속 늘어나

며 해양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낚시행위만을 금지하는 법령을 운영하여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무시하고 있다며 “낚시의 미래는 당신의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11월 7일에 변화를 만듭시다(The future of fishing depends on your VOTE! Make a difference on NOVEMBER 7th)”라는 내용을 담아, 하와이 주 총선거(general election) 이틀 전에 지역신문들에 게재됐다. 문제는 이 광고의 하단에 “하와이를 걱정하는 낚시꾼들과 그들의 가족들로부터(Paid by Hawaii’s concerned fishermen and their ohana)”라고 광고게재자의 신원이 밝혀져 있었는데 이는 선거관련 정치광고 규제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우선은 하와이 주의 선거운동 자금운용 위원회(State of Hawaii Campaign Spending Commission)에 등록하지 않은 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광고게재자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선거 다음 날인 2006년 11월 8일에 이 정치 광고에 대한 정식 고소가 이루어졌고 수사에 들어간 선거운동 자금운용 위원회는 낚시꾼들을 대변해서 광고 게재를 요청했던 필자 학생의 광고회사에 책임소재를 묻게 되었다. 다행히도 2007년 6월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정치광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입장을 취한 판결(Federal Election Commission v. Wisconsin Right To Life, Inc.과 McCain v. Wisconsin Right to Life)을 내림에 따라, 하와이 주 선거운동 자금운용 위원회는 지난 11월 초에 1년여 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필자 학생의 광고회사가 게재한 정치 광고는 불법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1년여의 기간 동안 필자의 학생은 은행계좌에 소환영장이 발부되고 기존의 고용 경력들을 조사받

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1년여 동안 학생이 겪었을 불편 및 심리적 고통을 생각할 때 그리고 법이 최근에 바뀌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경제적 손실을 생각할 때 필자로서는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2) 언론법제 과목에서 사용하는 교육방법

언론법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표현 및 언론의 자유 관련 원칙과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육방법 및 학생들의 학습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은 강의를 통해 주요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언론법제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의 성격상 전문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고 또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방대하여 많은 시간을 강의에 할애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서 법과대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크라테스식 교수법(끊임없는 질문들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미리 수업 전에 내용을 숙지한 후 수업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필자의 경우에는 매주 읽기과제를 내 준 후 해당 과제에 관련된 퀴즈 20문제를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풀게 하는 방식을 최근에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교과서를 미리 충분히 숙지한 후 수업에 임하게 되어 수업 시간에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강의 중간 중간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요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모의재판(mock trial)을 실시하기도 한다. 3~4명이 한 조가 되어 특정 판례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친 후 원고, 피고 그리고 법원의 입장을 각각 대변하는 것이다. 물론 학생수가 많은 강의의 경우 사용하기 힘든 방법이지만 필자의 경우 보통 한 과목에 20명 미만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주는 “모의 재판의 주”로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법을 수업시간에 다룸과 동시에 간략한 모의재판을 진행하는데 단순히 교과서에 요약된 판결 내용만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이 도출된 배경 및 논리를 심도 있게 짚어 볼 수 있는 방법이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필자는 학생들이 최신 언론법제 관련 뉴스를 찾아와서 매시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발표 과제는 언론법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나 변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최신 동향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언론법제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단순히 교과서에만 있는 정형화되고 고리타분한 규칙들이 아니라 실제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살아있는 주제임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외에 학기말에는 개인별로 혹은 조별로 발표를 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 중에서 개인별로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인별 발표를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그럼 언론법제 과목에서 학생들의 학습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앞서 서술한 교육 목표에 비취볼 때 평가방

법 역시 학생들의 이해도와 적용능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다. 또한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연관된 원칙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 용어의 정의나 주요 판례 그리고 각 분야의 법률을 숙지하는 것도 언론법제 과목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판례요약(case brief)이나 법령요약(statute summaries) 등을 과제로 제출하기도 하고 학기말 연구 발표 및 연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시험이 주요한 형태의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다.

언론법제 과목에서 사용하는 시험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Henderson, 2006). 첫째는 단순 정의를 묻는 문제들로 예를 들어 “청원자(petitioner)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의 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주요 법률 용어들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단답형 문제로 “서술하시오(describe)”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재판관할권이 쟁점이었던 판례 두 개를 예로 들어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재판관할권 문제에 대해 서술하라”고 묻는 것이다. 이 역시 학생들이 주요 법률들을 이해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 형태라 하겠다. 셋째는 서술형 문제인데 특정 분야의 주요 판례 3 ~ 4개를 나열한 뒤 이들을 “비교 및 대조하라(compare and contrast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n...)”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 정의나 단답형 문제들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요하는 문제 형태라 하겠다. 넷째는 가상 판례 문제로서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련의 사실 관계들을 제시한 후 법적 소송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유추 설명하라는 형태의 문제이다. 결론보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 과정이 더 중요하며 또한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판례 및 법령들을 근거로 제시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형태이다. 하지만 법에 대한

미국 언론법제 분야는 여러 학과가
각기 고유한 학문적 성격 살려
표현 및 언론 자유 탐구하는 특징있어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을 요구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시험형태이므로 언론법제 과목의 교육 목표를 감안할 때 가장 유용한 형태의 평가 방법이라 하겠다.

3) 언론법제 전공자들을 위한 언론법제 교육

앞서 서술한 내용들은 일반적인 언론법제 과목의 주제 및 교육 방법들로 언론학 전공자들 모두가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언론학 전공자들 중 언론법제 전공자들이 추가적으로 받는 교육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언론법제를 세부 분야로 정하고 언론학 석·박사 공부를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하었는데 석사 첫 학기에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필수과목으로 선정되어 있었던 언론법제 과목을 수강한 후, 저널리즘대학 내에 개설된 언론법 세미나 과목들을 수강함과 동시에 정치학과와 법과대학에서 수업들을 수강하였다. 법과대학의 수업은 관련 법 분야를 전문적으로 상세히 다룬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는데 특히 저작권법(Copyright Law)과 인터넷법(Cyber Law) 수업이 기억에 남고, 정치학과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 의사 결정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 대법원(The U.S. Supreme Court)이라는 과목은 한 학기 내내 미국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 및 대법원의 의사결정과정을 탐구하면서 대법원 판사들이 법적 원칙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고유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기반을 두고 투표를 하며 상호 간의 의견 교환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입장을 취한다는 시각에서 법원의 판례들 및 의사결정과정을 탐구하였는데 불편부당한 기관으로서 법원의 공정성에 대해 크게 무게를 두고 있었

던 필자에게는 법원 역시 다른 가치체계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 전략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정치적인 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법과대학이나 정치학과 외에도 언론법제 관련 수업을 제공하는 곳은 역사학과가 있었다. 수정헌법 1조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짚어가면서 표현 및 언론의 자유가 시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어 왔는지 탐구하는 수업들이었다.

이처럼 미국 언론법제 분야는 법학 전공자들만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도 법적 문제를 탐구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한 연구 분야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각 전공자들이 자신의 전문 영역에 맞추어 아주 작은 부분만을 공부한다는 점에서 세분화된 학문 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러 학과가 각기 고유한 학문적 성격을 살려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탐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언론학과에서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이해 및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원칙들을 공부하는 반면, 법과대학에서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지식 및 판례들을 숙지함으로써 실제 언론관련 법적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고객(client)을 대변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고, 정치학과에서는 법원의 의사 결정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관련 판례들을 탐구하며, 역사학과에서는 언론법제의 변천과정을 역사연구의 한 분야로 선정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필자가 “언론법제” 전공이라고 말하면 “왜 변호사가 아니라 언론학 박사 학위 소지자가 법을 공부하느냐”는 질문을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흔히 받고는 하는데 이는 아직 한국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법조인들만의 분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인 듯하다.

물론 미국에서도 언론학 박사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법학박사 소지자가 언론학과에서 언론법제를 강의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언론법제 과목을 강의할 교수를 찾는 임용 공고가 날 경우, “언론학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법학 박사 소지자”라는 자격요건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언론학과 대학원과 법과대학이 공동으로 학위 과정을 개설, 두 분야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공동 학위과정(joint degree program)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양쪽 단과대학, 즉 언론대학원과 법과 대학의 입학조건을 동시에 충

족시켜 양쪽 단과대학에 동시에 합격해야 한다. <표 1>은 공동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들을 간략히 요약한 것인데, 지배적인 형태는 언론석사와 법학박사 공동 학위과정이다. 이는 5년 - 2년의 언론 석사과정과 3년의 법학 박사과정 - 에 걸쳐 두 분야의 학위를 따로 취득하는 대신 4년으로 꾸며진 공동학위 과정을 통해 언론석사와 법학박사(Juris Doctor: J.D.)를 동시에 취득하는 형태이다. 한편 노스웨스턴 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은 언론석사와 법학석사 공동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미주리 대학은 언론석사·박사 및 법학석사·박사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공동학위 과정들을 개설하고 있다.

<표 1> 공동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들과 각 대학별 공동 학위과정(가나다순)

대 학	공 동 학 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저널리즘·매스컴 석사(M.A.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 법학박사(J.D.)
노스웨스턴 대학 (Northwestern University)	- 저널리즘 석사(M.S. in Journalism)/ 법학석사(Master of Legal Studies)
리전트 대학 (Regent University)	- 커뮤니케이션석사(M.A. in Communication)/ 법학박사(J.D.)
	- 저널리즘석사(M.A. in Journalism)/ 법학박사(J.D.)
미주리 대학 (University of Missouri)	- 저널리즘석사(M.A. in Journalism)/ 법학석사(Master of Law in Dispute Resolution)
	- 저널리즘석사(M.A. in Journalism)/ 법학박사(J.D.)
	- 저널리즘박사(Ph.D. in Journalism)/ 법학석사(Master of Law in Dispute Resolution)
	- 저널리즘박사(Ph.D. in Journalism)/ 법학박사(J.D.)
시리큐스대학 (Syracuse University)	- 공공커뮤니케이션석사(M.S. in Public Communications)/법학박사(J.D.)
아이오와대학 (University of Iowa)	- 저널리즘석사(M.A. in Journalism)/ 법학박사(J.D.)
	- 커뮤니케이션박사(Ph.D. in Communication Studies)/ 법학박사(J.D.)
인디애나대학 (Indiana University)	- 저널리즘석사(M.A. in Journalism)/ 법학박사(J.D.)
	- 텔레커뮤니케이션석사(M.S. in Telecommunications)/법학박사(J.D.)
캔사스대학 (University of Kansas)	- 저널리즘석사(M.S. in Journalism)/ 법학박사(J.D.)
콜럼비아대학 (Columbia University)	- 저널리즘석사(M.S. in Journalism)/ 법학박사(J.D.)
플로리다대학 (University of Florida)	- 매스커뮤니케이션석사(M.A. in Mass Communication)/ 법학박사(J.D.)

* M.A.(Master of Arts)/ M.S.(Master of Science)/ Ph.D. (Doctor of Philosophy)/ J.D.(Juris Doctor)

미국의 주요 언론학회들은
산하에 언론법제 관련 연구 분과를 두고
활발히 연구활동 펼쳐

4) 언론법제 전공자들의 연구 활동

지금까지는 대학에서의 수업을 중심으로 언론법제 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석사 그리고 특히 박사과정의 학생들에게는 언론법제 관련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그 성과물을 학회 및 학술지 발표를 통해 공유하는 것도 교육의 중요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언론법제를 강의하는 교수들 역시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서로 간의 연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언론학회 단체들인 저널리즘 및 매스컴 교육 학회(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이하 AEJMC라 지칭)와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회(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이하 ICA라 지칭)는 각기 법과 제도 연구분과(Law and Policy Division)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커뮤니케이션 학회(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이하 NCA라 지칭)는 표현의 자유 연구분과(Freedom of Expression Division)와 커뮤니케이션과 법 연구분과(Division on Communication and the

Law)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회는 제출된 논문들을 3인의 심사위원들이 익명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통해 우수한 논문들을 뽑아 학회에서 공개 발표토록 하는데, 2007년 8월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AEJMC의 법과 제도 연구 분과의 논문 통과율(acceptance rate)은 29%에 불과했을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한 연구 분과 중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AEJMC의 법과 제도 연구 분과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법과 제도 (Communication Law and Policy:이하 CL&P라 지칭)라는 전문 학술지²⁾를 1년에 4번 발행하고 있으며 미디어 법 노트(Media Law Notes)라는 이름의 소식지를 발간하고 이메일 리스트 서브(listserv)를 운영함으로써 언론법제 전공자들과 교육자들이 끊임없이 학술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언론법제 전공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연구 분야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히 지난 3년간 CL&P에 실린 논문들과 AEJMC 전국학술대회와 ICA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법과 제도 연구 분과의 논문들의 주제를 살펴보았다. <표 2>에 요약되어 있

2)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이외의 언론법제 관련 주요 저널들의 명칭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 CommLaw Conspectus: Journal of 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 Communications and the Law
-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 Entertainment Law Journal
-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Law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 Journal of International Media & Entertainment law
- Journal of Media Law and Practice
- Media Law and Policy
- Michigan Telecommunications & Technology Law Review
- Telecommunications Policy
-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 Villanova sports & entertainment law journal

듯이 정부 관련 정보공개법, 지적재산권법 그리고 광고 및 상업관련 표현 관련 규제, 이 3가지 주제가 CL&P과 AEJMC 발표 논문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연구 분야였고, ICA 발표논문들의 40% 이상은 무선통신, 인터넷 등을 포함한 다양한 통신(telecommunications) 관련 정책, 방송통신 융합관련 정책, 정보화 관련 정책(information policy) 등에 대한 논문들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발표된 논문 주제는 방송규제 및 언론 소유 규제에 대한 것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하였다. 또한 ICA는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국 이외의 외국의 언론법제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상당수 발표되었는데 앞서 말한 통신관련 정책 분야 등에 대한 연구논문 67편 중 30편은 유럽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소개한 논문들이었다. 기타 주제에 포함된 논문들 46편 중 32편 역시 미국 이외의 사례를 소개한

논문들이었는데 한국의 언론법제에 대한 논문 5편, 중국의 언론정책에 대한 논문 5편, 유럽의 언론기관들의 자율규제 및 다양성 보장을 위한 규제에 대한 논문 14편 그리고 국제화 시대의 언론규제에 대한 논문 3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간략히 소개할 것은 각 학교별 언론법제 연구소 현황이다. 규모가 큰 대학들을 중심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언론 대학 내 부속기관 - 혹은 언론대학과 법과대학의 공동 부속기관 - 으로 언론법제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 <표 3>은 언론법제 연구소의 명칭 및 인터넷 주소를 표시한 것인데 완전한 목록은 아니지만 한국의 언론법제 연구자들 중에 미국의 언론법제 연구소 동향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보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표 2> 최근 3년(2005~2007년) 사이에 발표된 언론법제 관련 논문들의 주제별 편수

주 제 분 야	CL&P 게재	AEJMC 발표	ICA 발표
정부관련 정보공개법	8 (20.51%)	13 (15.66%)	3 [2] (1.82%)
지적재산권법	3 (7.69%)	14 [2] (16.87%)	15 [2] (9.09%)
방송규제 언론소유규제	2 (5.13%)	3 (3.61%)	27 [7] (16.36%)
텔레커뮤니케이션정책 및 정보화정책 관련	0	4 ³⁾ (4.82%)	67 [30] (40.61%)
광고 및 상업 관련 표현	4 [1] (10.26%)	4 (4.82%)	2 (1.21%)
명예훼손법	2 [1] (5.13%)	6 [2] (7.23%)	1 (0.61%)
취재원의명보장권	1 (2.56%)	7 [2] (8.43%)	0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	2 (5.13%)	11 (13.25%)	4 (2.42%)
학생언론	3 (7.69%)	2 (2.41%)	0
다른 여타주제들	14 (35.90%)	19 [2] (22.89%)	46 [32] (27.88%)
합 계	39 [2] (100.0%)	83 [8] (100.0%)	165 [73] (100.0%)

* []안의 숫자는 미국 이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다룬 논문들의 편수이다.

3) 이 4편의 논문은 모두 네트워크 중립성(net neutrality)에 관한 논문들이었다.

<표 3> 미국 대학들의 언론법제 연구소 목록 및 웹사이트 주소(알파벳순)

대학 단과대학	연구소명칭	웹사이트주소
Kent State University: School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Media Law Center for Ethics and Access	http://jmc.kent.edu/cfp/cfp.htm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Communication Art and Sciences	Quello Center for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 Law	http://quello.msu.edu/
New York Law School*	Media Center	http://www.nyls.edu/pages/107.asp
New York University:School of Law*	Brennan Center for Justice: Free Expression Policy Project	http://www.fepproject.org/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Communications	Pennsylvania Center for the First Amendment	http://www.comm.psu.edu/first/index.html
Southwestern University: College of Law*	Donald E. Biederman Entertainment & Media Law Institute	http://www.swlaw.edu/academics/biederman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Law*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http://cyberlaw.stanford.edu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4)	Berkeley Center for Law and Technology	http://www.law.berkeley.edu/institutes/bclt/
University of Florida:College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s	Brechner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http://brechner.org/
University of Minnesota:School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Silha Center for the Study of Media Ethics and Law	http://www.silha.umn.edu/
University of Missouri: School of Journalism	Freedom of Information Center	http://foi.missouri.edu/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 & School of Law	Center for 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CCLP)	http://cclp.usc.edu/

3. 언론 현장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을 위한 언론법제 관련 단체

지금까지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마지막으로 현업 언론인들을 위한 언론법제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언론인들은 주제별로 열리는 워크숍에 참가하는 형태로 언론법제 관련 재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 일례로 대학들은 지역 언론인들을 위해 주 정부 문서 접근 관련법을 교육하는 워크숍을 주최하곤 한다 - 전국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

고 있는 언론법제 관련 단체들이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언론인들을 위해 언론법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 중에 가장 활동이 왕성한 단체들 중의 하나는 1970년에 설립된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들의 위원회(The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이하 RCFP라 지칭)이다. RCFP는 익명을 약속하고 취재에 임했던 기자들이 법원에 소환되어 정보원의 신원을 밝히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던 시기, 그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던 시기에 생겨났다. RCFP의 설립 기원은 익명 취

4) *이 표시된 이들 5개 대학들은 언론학도가 아닌 법과대학이 단독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제 분야가 밀접하여 목록에 포함하였다.

재원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최근 미국 언론법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부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한 비관을 무마하기 위해 미 정보국(CIA) 비밀공작원의 신분을 누설한 것과 관련해서 익명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려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뉴욕타임즈 기자가 85일 동안 감옥살이를 한 것을 시작으로 취재원 비밀 보호법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부상. 기자들에게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보호할 특권을 주는 연방 차원의 법률(federal shield law)을 제정하는 문제를 놓고 현재 미국회의사당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기 때문이다.

RCFP는 언론관련 법률 소식을 수집, 분류하여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보도하는 잡지를 최초로 발간하였고, 언론법제 관련 책자들을 끊임없이 발간해 왔는데 이러한 책자들은 교과서 및 학술지에서 다루는 내용들과는 달리 기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들을 손쉽게 설명하고 있는 가이드(guides) 형태의 책자들이다. 예를 들어 연방 및 주 정부로부터 문서 공개를 요청하려면 어떤 편지를 보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정부가 문서 공개를 거절할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하는 책자가 있다.

RCFP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로는 “법률 변호 긴급선(Legal Defense Hotline)”이 있는데 정부의 회의나 기록 공개와 관련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언론인과 언론 관련 변호사들이 언제나 전화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RCFP의 변호사들이 해당 지역의 변호사를 찾는 일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기자들이 정부와 어떻게 직접 협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RCFP가 주체가 되어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청구하기도 하

는데, 닉슨 대통령이 보관하고 있던 백악관 문서 및 음성 녹음테이프 공개에 관한 법률 소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법제 관련 법률 소송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기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창립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RCFP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한다(RCFP, n.d.).

1974년에 설립된 학생 언론 법 센터(Student Press Law Center: 이하 SPLC라 지칭)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언론인들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단체로서 RCFP의 연관 단체이지만 학생 언론 문제에 초점을 맞춘 개별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SPLC는 수정헌법 1조에 내재된 권리와 책임에 대해 학생 언론인들을 교육하고, 학교에서 행해지는 검열에 맞서 중요한 사안들을 보도하고자 하는 학생 언론인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SPLC는 무료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저렴한 가격의 교육 책자를 학생 언론인들을 위해 보급하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과 지역 변호사들을 연결해 주는 변호사 소개 망(Attorney Referral Network)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2,500여 명의 학생 언론인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SPLC에 연락을 취해온다고 한다(SPLC, n.d.).

전문 기자 협회(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는 법률 변호 기금(Legal Defense Fund) 운영을 통해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자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있는데 주로 정부 기록이나 회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소송들을 개시하거나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언론법 연구 센터(Media Law Research Center)는 프라이버시 관련법, 명예훼손법, 공표권(right of publicity) 관련 법 등을 주로 다루며 이들 분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관련 소송 현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단체인데 전신은 명예훼손 변호 센터(Libel Defense

현업 언론인들을 위해
언론법제 정보 및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여럿 활동해

Center)였다. 마지막으로, 수정헌법 1조 센터(First Amendment Center)는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자유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데 표현 및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에 청원할 자유에 대해서도 함께 다룬다는 특징이 있으며 매일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는 웹사이트(<http://www.firstamendmentcenter.org/>)는 수정헌법 1조 관련 최신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정보원이 되고 있다.

해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Congress shall make no law...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the press...") - 에 대한 미국인들의 존중이었다. 200년이 넘도록 수정헌법 1조의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며 그와 더불어 그 속에 내재된 가치를 존중하는 미국의 언론법제 교육이 '표현 및 언론의 자유'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현실 속의 강력하고도 살아있는 힘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미국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 현황과 현업 언론인들을 위한 언론법제 단체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다. 언론법제 관련 교육 역시 미국의 실용주의 경향을 반영하여 언론학 전공 학생들이 차후 언론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및 교수법이 꾸려져 있고, 현업 언론인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들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용성이 미국 언론법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법제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민주사회의 참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적절히 행사하며 더 나아가 그 자유들에 내재된 가치들을 보존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언론법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겠다.

필자가 미국에 와서 언론법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놀란 점은 1791년에 승인된 수정헌법 1조에 담긴 간략한 문구 - 국회는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침

〈참고 문헌〉

염규호(1998). 미국 대학의 언론법 교육현황. 언론중재. 가을호.
Ekstrand, V. S. (2007). The challenges of teaching media law in one semester. *Media Law Notes*, 35(1), 3-5.
Federal Election Commission v. Wisconsin Right To Life, Inc. (docket #: 05-969) (2007).
Henderson, J. (2006). Law and policy. In W. G. Christ (Ed.), *Assessing Media Education: A Resource Handbook for Educators and Administrators* (pp. 53-82).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Marler, C. (1990). The legists. In Wm. D. Sloan (Ed.), *Makers of the Media Mind: Journalism Educators and Their Ideas* (pp. 178-225).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McCain v. Wisconsin Right to Life (docket #: 06-970) (2007).
Student Press Law Center (n.d.). "About the Student Press Law Center." Retrieved November 23, 2007, from <http://www.splc.org/default.asp>
The Accrediting Council on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2005). "ACEJMC accrediting standards." Retrieved November 11, 2007, from <http://www2.ku.edu/~acejmc/PROGRAM/STANDARDS.SHTML#std2>
The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n.d.). "The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A short history." Retrieved November 23, 2007, from <http://www.rcfp.org/about.html>

언론현장에서 본 언론법제 교육 실태(I)

안 혁
KBS 법무팀 변호사

1. 프롤로그

KBS의 사내변호사로 있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KBS에 소송이 많은가”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답은 늘 “방송사가 오히려 동네 북이다”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가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겠지만, 최근의 경향은 분명 다르다. 물론 필자의 대답은 과장된 수사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방송사에 제기되는 송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방송사가 분쟁에 휘말릴 경우 입게 되는 손해는 유·무형으로 다양하다.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뿐만 아니라 방송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게 될 수 있고, 또 프로그램 제작이나 취재에 열을 쏟아야 할 기자, 피디 등이 소송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등(실제 기자, 피디들은 이 점을 가장 우려한다) 계량화 할 수 없는 손실 역시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고양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도 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가장 주된 요인은 방송 자체의 문제점일 것이다. 앞서의 두 가지 요인은 방송 외적인 요소인데 반해 방

송 자체의 문제점은 방송 내적인 요소이며, 방송 외적인 요소는 방송사가 제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방송 내적인 요소는 제어가 가능하므로 방송사는 이를 관리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곧 앞서 본 유·무형의 손실로부터 방송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길이기 때문이다.

방송사가 방송 내적인 요소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내부 인력의 의식고양이며, 이는 내부 인력에 대한 언론법제의 충실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즉, 기자, 피디를 비롯한 방송사 내부인력들이 언론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규제를 담고 있는 언론법제에 관하여 충실히 알게 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송이 나가는 것을 예방하고, 방송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적절한 대처는 방송에 대한 압력단체나 개인의 부당한 압력과 요구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원인진단과 유용성에 입각하여 각 언론사들은 사내 인력의 법적 지식이나 의식 고취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KBS도 다양한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언론법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KBS에서 진행되고 있는 언론법제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함으로써 언론현장에서의 더 나은 언론법제 교육체계 확립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언론법제 교육의 대상과 접근 관점

신입기자나 피디들은 언론법제 교육보다는 담당 업무에 대한 교육과 적응이 우선이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제작, 기사 작성의 실무적인 부분은 신입사원 교육이나 수습과정에서 많이 배우게 되지만 언론법제에 대한 교육은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또 방송과 관련된 분쟁들은 선형적으로 예측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적은 신입기자, 피디들로서는 문제의식을 능동적으로 가지기 힘든 측면이 있다. 다만 이들은 취재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언론법제 교육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

이른바 데스크를 비롯한 중견 기자, 피디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문제의 인식’을 결여케 하는 ‘관성’이다. 그냥 해오던 대로 고민 없이 취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혹 후배들의 취재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 방향으로 지도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데스크는 신입기자들의 리포트에 대해 검토하는 입장에 있는데, 데스크들이 모자이크나 음성 노출 등 화면처리에서의 법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지없이 분쟁으로 이어진다. 한편 중견 기자, 피디들은 다년간의 취재경험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해결방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 짧은 이론교육에도 많은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최근의 방송종사자들의 언론법제에 대한 지식 정도는 결코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많은 분쟁사례들을 경험하면서 개별 사안들에서 습득하는 지식들이 늘어나고, 예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언론법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식과는 별개로 아직도 언론법제에 대한 시각은 개선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많은 사례들에서 언론법제의 취지를 마치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예훼손의 법리를 비롯한 각종 법 이론이나 사례들을 이해함에 있어 언론이 제약당한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언론법제 교육에서는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균형’이라는 근본적 관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언론법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3. KBS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현황과 평가

현재 KBS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내 언론법제 교육 방식은 다양하다. 현황을 간단히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KBS의 사내 언론법제 교육 방식

분류기준	내 용	대 상	교육주체	장 소
교육유형별	특 강	전 직원	사내변호사	대강당
			외부강사 (변호사, 판사)	
	직무교육	직급별	사내변호사	KBS연수원
교육주제별	명예훼손, 초상권 기타 인격권 분야			
	저작권 분야			
	방송금지가처분제도 등 분쟁제도 분야			
교육대상 특화 유형	저작권과 초상권 중심으로		자료관리 담당직원 대상	

(1) 교육유형별 분류 - 특강/직무교육

① 특강은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은 피디, 기자뿐만 아니라 경영 직종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본관 5층 국제회의실(대강당)에서 강의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강사는 사내변호사와 외부강사(사외변호사 또는 언론사건 담당 판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외부강사만 강의하기도 한다. 2007년에는 7월에 방송금지가처분제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가처분 담당 부장판사를 초빙하여 사내변호사와 공동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피디, 기자 등 현업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를 마련한바 있으며, 11월에는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를 주제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언론전담부 부장판사를 초빙하여 강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 바 있다.

2007년도 특강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이전 연도의 통상 참석 인원은 30~50명 내외였으나 2006년 9월에 실시한 강의에는 75명이, 2007년도 7월 강의에는 68명의 현업 제작자가 참여하여 최근 들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된 점에서도 청중들의 호응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특강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의견 청취 방식으로 수집한 결과에 따르면 '현업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KBS 연수팀 분석 결과).

② 직무교육은 연중 직급별 직무연수교육 중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다. 교육대상의 직급구분은 신입사원, 4직급(교육이수시기 : 통상 입사 5년차 정도), 3직급(통상 입사 10년차 이상 정도), 2직급(을)(통상 입사 14년차 이상 정도)로 구분되는데, 신입사원 교육은 신입사원 중 기자(촬영기자 포함), 피디직종에 대해서만 언론법제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나머지 직급의 교육에서는 직종에 구분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다. 다만 직무교육 프로그램 전체 구성에서 보면 저작권 교육과 언론분쟁관련 교육은 같은 법제 교육의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양 교육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한편 표상의 '교육대상 특화유형'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 업무의 특성상 양 교육을 종합할 필요성이 높은 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한 강좌로 묶어 함께 실시하고 있음).

직급별 직무교육 시간은, 1달 간의 신입사원교육 중 2주정도가 강의교육으로 편성되는데, 그 중 3시간을 언론법제 교육으로 할애하고 있고, 3, 4직급의 직무교육은 3박 4일 일정의 교육 중 1시간 반을 할애하고 있으며, 2직급(을) 직무교육은 2박 3일 일정 중 1시간 반을 할애하고 있어 그 비중을 상당히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직급(을) 연수의 경우 경력이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직종의 구분 없이 진행되어 직무관련교육보다는 리더십 교육을 비롯한 교양교육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교육대상에 기자나 피디가 적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뚜렷한 언론법제 교육을 교육연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07년도의 2직급(을) 대상 직무연수교육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에 대한 통계를 보면, 5월부터 9월까지 5차례 실시되었으며, 각 2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강의에 대한 피교육자의 만족도는 매우불만족을 1점으로 매우만족을 5점으로 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3.97점으로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KBS 연수팀 분석 결과¹⁾).

1) 연수팀 연수담당자 : "직급별 기본연수는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제별' 세미나와 달리 다양한 직종을 모아서 '직급별' 필요 역량 배양을 목표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연수이므로 연수생중 '방송분쟁 강의'와 직무 연관성이 낮은 연수생이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3.97점의 설문 결과를 기록한 것은 '강의'가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본연수에서 '방송분쟁'에 대한 강의 시 다른 교육시간과 달리 시사 보도에 제작하는 현업자들의 질문 내지 상담이 많았다는 것도 강의 주제에 대한 관심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2) 교육주제별 분류

① 언론법제 교육의 주된 주제는 명예훼손, 초상권 기타 인격권 관련 분쟁사례 교육이다. 명예훼손에 관한 간단한 이론전달과 함께 사례를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주로 KBS가 피고가 되었던 사례를 소재로 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피교육자들의 사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교육자가 직접 관여한 사례를 다루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후결과에서는 알기 힘든 제작 당시의 경위들을 오히려 피교육자로부터 듣게 되는 경우도 있어 사례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저작권 분쟁은 방송사와 관련되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분야인데다가 KBS는 법무 담당부서와 저작권업무 담당부서와 분리·운영되고 있어 명예훼손 분야 교육과는 별도로 담당을 달리하여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③ 2007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 가처분 재판부는 CBS의 경인방송 관련보도 사건에서 종래의 기각/인용 유형의 주문에서 벗어나 별지목록에서 일부 제외사항을 명시하는 형식으로 일부인용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KBS의 <추적 60분> 한화 회장 관련 보도사건, <KBS스페셜> 나노기술 관련 보도사건, MBC <불만제로> 고추장 관련 방송사건 등에서 같은 방식으로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KBS 피디연합회에서는 달라진 가처분 결정 유형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고려에 따라 법무팀과 공동으로 방송금지가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한 특강을 기획하여 실시하였다(위 교육유형별 분류에서 특강 중 2007년 7월 강의). 이 특강은 현업 제작진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기획하여 실시를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높아진

방송분쟁에 관한 관심도를 알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방송금지가처분제도에 대해 별도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어 그 이해를 보다 깊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표 2> KBS 2005년 ~ 2007년 언론법제 관련교육 개관

연도	강사	교육명(교육대상)	회수
2005	사내전문직원	보도영상과 초상권(신입사원 연수)	1
	사내변호사	언론중재사례(신입사원 연수)	1
	사내전문직원	방송과 저작권(신입사원 연수)	1
	법무팀장	방송분쟁사례와 예방(신입사원 연수)	1
	법무팀장/사외변호사	방송보도에 관한 소송유형과 예방대책(특강)	2
2006	사내변호사	방송법상의 KBS의 지위(신입사원 연수)	1
	법무팀장/사내변호사 2인	분쟁예방특강(특강)	1
	사내전문직원	저작권이해(직무 연수)	12
	법무팀장	방송분쟁예방(신입사원 연수)	1
	법무팀장	방송분쟁예방(2직급 기본연수)	1
	법무팀장	방송분쟁예방(수시 공채사원 연수)	1
2007	사내변호사/판사	방송금지가처분 결정경향과 예방	1
	판사	방송금지가처분 사례와 예방	1
	사내변호사 2인	방송분쟁예방(신입사원 연수)	1
	사내변호사 2인	방송분쟁예방(2직급 기본연수)	1
	사내전문직원	저작권이해(3직급 기본연수)	13
	사내전문직원	저작권이해(수시공채사원 연수)	1

한편 명예훼손 기타 인격권 분야에 대한 교육에서는 분쟁의 내용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절차 등 제도에 관한 이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반론 보도청구는 방송내용의 진위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는 것, 정정·반론보도청구는 방송사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현업 제작자에게 주요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반론보도청구를 검토할 때 기자, 피디들은 보통 내용이 진실인데 왜 들어 주느냐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 취재당시 진위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3) 교육대상 특화유형

KBS에서는 그간 직종이나 담당 업무를 특화하여 언론법제 교육을 실시해오지는 않았으나, 2007. 10. KBS 방송콘텐츠팀에서는 자료관리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그 중 2시간을 할애하여 초상권 및 저작권관련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별히 자료관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들의 업무가 자료를 관리하면서 제작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나 피디가 아닌 행정담당자들이어서 특강에의 참여도가 낮았고, 특히 KBS 지역국의 자료관리 담당자들은 단순 자료관리 이상의 제작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직원들보다 언론법제 교육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은 자료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유형과 사례를 중심으로 함으로써 내용에서도 맞춤형

의 강의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자료관리 업무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취재의 근거 등이 주로 쟁점이 되는 명예훼손 사례는 배제하고 초상권 관련 분쟁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내용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표 3〉 자료 관리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내용 및 평가

대상인원		교육내용		평가(1~5)	
업무분류	수	초상권 사례	저작권 사례	강의필요성	강의만족도
지역국소속 자료관리	10	자료화면 부적절사용 사례 (고가 웨딩드레스 사건) 등 사례 4건	야생화사진 무단사용 사건 등 사례 4건	4.3	4.5
본사소속 자료관리	3				
뉴스영상편집 및 관리담당	1				
총	14				

이 강의는 교육대상자를 한정하고 그에 맞는 한정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²⁾

(4) 그 외 언론법제 관련 교육 현황

KBS 법무팀에서는 상시적인 언론법제관련 지식전

2) 교육담당팀 평가보고 :

보고직무교육 실시결과 종합

1) 자료관리 직무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이었음.

- 방송콘텐츠팀 현장 견학 확인과 지역 영상/음반자료 관리 프로그램 활용, 도서관 마케팅, 방송콘텐츠 활용 관련 저작권 분쟁사례 등 관심이 높았음.

2) 소외되었던 지역자료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

3) 기본 직무교육에 이어 영상, 음반자료 정리 상세한 후속교육 추진 필요.

- 일부 지역은 음반자료 등록방법을 오해하여 상세 분류를 생략하고 있음.

- 차기 교육 시 교육일정, 강의시간 확대하여 충분하고 상세한 교육 필요.

달을 위해 2007. 3.부터 매주 목요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법률나침반'이라는 이름으로 언론관련 분쟁사례에 관한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다. 주로 명예훼손에 관련된 개별 쟁점들을 사례형식으로 구성하여 이해를 돕고 있으며, 정정·반론보도 제도 및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도 게시하고 있다. 2007. 11. 29. 현재까지 총 31회를 연재 중에 있으며, 주요게시 주제를 보면 ① 도청취재의 문제, ② 범죄수사결과 보도의 문제, ③ 피해자 특정의 문제, ④ 편집권의 한계, ⑤ 인터뷰 동의의 문제, ⑥ 공인에 대한 보도의 문제, ⑦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 등이 있다. 게시물들의 조회가 평균 800회를 넘어 해당 정보가 사내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례 중심으로 하여 이해를 돕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KBS의 9개 지역총국에 대한 보다 긴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요청되나, 지역총국과의 협의를 거쳐 사내변호사와 법무담당 직원이 지난 9월에는 춘천총국을, 11월에는 제주총국을 각각 방문하여 지역국 소속 기자, 피디 등에 대한 언론법제 교육을 실시하였다. 역시 사례 중심의 강의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춘천총국 교육에서는 15명 내외가 참여한데 반해, 제주총국 교육에서는 30명 이상의 현업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4. 분쟁예방을 위한 사내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한 교육

KBS 법무팀은 현재 사내변호사 4명과 법무담당 직원 3명이 각종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드라마, 연예분야 등 다양하게 자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침마당>, <좋은나라 운동본부>와 같은 오락

성 교양프로그램에서도 명예훼손 등 분쟁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추적 60분>이나 <소비자고발>과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편집단계에서부터 사내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취재단계에서부터 사내변호사의 자문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개별 뉴스기사에 대해서도 문의가 있는 경우 사내변호사가 자문하고 있다. 한편 KBS 보도팀은 법무팀과는 별도로 20인의 외부변호사로 구성된 보도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바, 담당 변호사가 매일 보도팀을 찾아 보도내용을 스크린하고 자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자문을 통하여 수시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등의 쟁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즉시적인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바, 일례로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최초 기획단계에서 사내변호사가 직접 제작진을 찾아 피디 및 작가들에게 탐사프로그램에서 주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강의하고 질의 응답하는 기회를 가진바 있다.

5. KBS 사내언론법제 교육의 한계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KBS는 다양한 형태의 언론법제 교육수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도, 수용도 및 만족도면에서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언론사에 대한 분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과 교육 전후로 그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언론법제 교육이 분쟁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상과 같은 KBS의 교육방식들은 전반적으로 언론법제의 이해에 대한 사내의 높은 관심도와 필요성에는 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론현장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은 다음과 같은 한계요소가 존재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비단 KBS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첫째, 현업종사자들의 시간적 한계이다. 기자, 피디들은 사내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취재라는 것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간과 장소에 이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세분화해서 교육을 기획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을 마련하는 데에 지나친 부담이 따르게 된다.

둘째, 일시적 교육의 한계이다.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듣는다고 해서 모두 이해될 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이고 짧은 시간의 교육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선택교육으로서의 한계이다. 언론법제 교육이 분쟁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하더라도 그 교육의 수강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본연의 업무 외의 업무이기 때문에 중요도나 우선순위에서 차후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넷째, 지역국 직원들에 대한 한계이다. 지역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취재하여 방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 지역국 보도로 인하여 제기되는 분쟁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국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에서 본바와 같은 지역국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6. 에필로그 - 현장에 다가서는 언론법제 교육의 모색

KBS에서는 내부적으로 언론법제 교육을 통한 분

쟁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에 맞추어 특강이나 직무교육, 법률정보게시 및 법률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법제에 대한 방송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기자, 피디를 비롯한 방송제작 참여자들의 언론법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언론사에 대한 분쟁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분쟁에 대해 대처하는 자세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심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법제 교육의 현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위에서 본 한계요소들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히 극복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현행의 언론법제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론법제 교육이 방송제작 현장에 다가서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앞으로는 교육대상에 대해 보다 세밀한 접근방법을 취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자, 피디들의 업무방식에 따라 ① 단발성 사건·사고보도를 주로 담당하는 '사회팀', ② 기획취재를 주로 하는 '시사보도팀', '추적 60분팀', '스페셜팀'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팀의 업무특성에 기인하여 자주 발생하는 유형의 분쟁사례를 팀별로 교육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일방적인 강의 형식보다는 장기적으로 경험상 문제되었거나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사항들을 설문으로 조사하여 이에 맞는 내용의 교육을 도모할 수도 있겠다.

외부의 변화하는 권리의식과 더불어 언론사 내부에서도 개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고, 언론사 내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한, 이 고민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보다 적극적이어야 함은 분명하다. □

언론현장에서 본 언론법제 교육 실태(II)

이 상 언

중앙일보 사회부분 기자

취재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법 사례들

13년간 기자 생활을 하며 직·간접적으로 경험 또는 목격한 법률 위반 행위에는 대략 명예훼손·절도·주거침입·공무원 사칭·증권거래법 위반·알선수재(또는 변호사법 위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도가 포함된다. 이는 기사 작성 또는 취재 과정에 국한된 얘기다. 기자가 음주운전·폭행·사기는 물론 성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도 본 적은 있으나 이는 대개 취재 활동과는 무관한 것들이었다.

편의상 취재와 관련해서 가장 흔히 겪는 법과의 충돌인 명예훼손 부분은 가장 뒤로 미루고 다른 위법 행위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다.

▶ 절도 = 기자들이 훔치고 싶어 하는 것은 통상 돈이나 값나가는 물건이 아니고 자료다. 그것은 문서화된 서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일 수도 있다. 취재원 또는 주변의 책상에 놓여 있는 서류에는 욕심이 나게 마련이다. 약 10년 전 한 기자가 이른 아침에 텅 비어 있는 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 나오다가 적발돼 사법처리를 당한 일도 있었다. 절도 상황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갖게 되는 법률적 의문은 '공익적' 목적의 절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느냐, 법적 제재도

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에는 문서 절도 행위가 상당히 빈번히 일어났고 발각이 돼도 해당 기관과의 타협에 의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이른바 '취재 선진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공서에서의 문서 절도는 면책이나 타협의 여지가 그다지 없어 보인다.

문제는 통상적인 문서를 보게 된 경우가 아니라 정부나 특정 기관이 중요한 진실을 감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접하게 된 경우다. 기자로서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공익과 준법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많은 기자들은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그 문서를 조용히 들고 나오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선 후보 집 앞에서 김경준 씨가 보낸 편지를 아무도 몰래 혼자 발견했는데도 이를 그냥 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편지를 훔치는 것은 절도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는데도 말이다.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는 기자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그런 문서를 절취했을 경우 어느 정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정상이 참작될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걸 모른다.

▶ 주거침입 = 요즘은 흔치 않지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일이다. 대형 사건의

핵심 관련자 사무실이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취재활동을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일을 고백하자면 열쇠수리 전문가까지 불러 문을 따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적이 두 번 있다(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후배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다. 더 이상 그런 행위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라는 이유다. 그러나 예컨대, 연쇄살인범의 집을 단독으로 확인한 기자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맘을 억누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 그리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 공무원 사칭 = “**경찰서 형사계인 데요”라고 사건 관계자에게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고전적’인 취재수법이다.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지금 그 경찰서에서 여러 분이 전화를 해서 같은 것을 물었는데요”라는 답을 듣는 경우도 많았다. 이미 많은 기자가 같은 기법을 활용해 취재를 했다는 의미다. 예전에 다른 회사 동료 기자가 검사의 집에 경찰관을 사칭해 전화를 해 취재를 하다가 추후 그 사실이 발각돼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사칭은 이제는 거의 사라진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사칭 행위는 남아있다. 요즘에는 ‘꽃 배달 업자’나 ‘택배 배달원’을 사칭하는 것이다. 주로 어떤 중요 취재 대상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알지만 집주소를 모르는 경우 전화 통화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공무원을 사칭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런 것은 위법일까.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증권거래법 위반 = 오래 전에 한 선배가 가전제품 회사의 내부 정보를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주식을 사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사법처리가 됐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도 종종 있을 법한 일이다.

기자라는 직업이 남보다 빨리 중요 정보를 입수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다 보니 이런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위법인지 정확히 아는 기자는 드문 것 같다. 시세 조종 등의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은 물론 처벌 대상이겠지만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산 것도 위법 행위인지, 취재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개인의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면 위법과 적법의 경계는 어디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의 경계가 어디인지 등에 의문이 있다.

▶ 알선수재 = 공무원에게 뭔가를 부탁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엄격히 말해 선배 기자의 부탁으로 관청에 뭔가를 청탁(흔히 기자들끼리는 ‘민원’이라고 부른다)을 하고 수십 만 원 어치의 술대접을 받은 것도 엄격히 말해 처벌 대상이다. 또 비슷한 것으로 배임수재죄도 있다. 홍보성 기사를 써준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경우다. 실제로 수년 전 검찰이 연예기획사나 영화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경계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어디까지가 향응의 범주에 속하는지, 향응과 기사 작성의 대가 관계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등의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 담당 기자가 수백만 원 상당의 해외 출장 비용을 영화 배급사에서 부담하는 취재를 하고 해당 영화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은 위법 행위일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위에서 잠깐 언급한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보는 행위 말고도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몰래 도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최근에 한 기자가 정부 기관의 회의실에

도청기를 설치한 것이 적발돼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또 이른바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한 보도에서 도청 내용을 어디까지 보도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법리적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경우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도청한 내용은 어디까지 보도에 활용해도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기자는 드물다. 또 취재원과 대화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되는 것인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명예훼손 문제는 지식이 아닌 훈련과 태도의 문제

지금부터는 본론 격인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위에서 여러 위법 행위를 열거했지만 그것들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일은 아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매번 기사를 쓸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문제다. 특히 사회부·정치부·경제부와 같은 스트레이트 기사를 많이 쓰는 부서에서 일할 때는 더욱 그렇다.

개인적인 경험 한 가지. 1998년으로 기억된다. IMF 시절에 부도를 낸 뒤에 행상을 하며 빚을 성실히 갚는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미담 기사로 쓴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 신청이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사의 주인공인 기업가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동료 사업가가 낸 것이었다. 요지는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기사 때문에 돈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내가 나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기사에 중재 신청자와 관련된 얘기는 한 구절도 없었다. 그 사람의 논리는 A와 B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A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서 자신은 자연스럽게 나쁜 사람이 됐다는 것이었

다. 억지 논리였다. 다행히 중재위에서 이 사람을 잘 설득해 돌려보내 별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 때 명예훼손 시비는 미담기사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예훼손 문제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이를 출고한 데스크가 법률적 지식을 제대로 못갖추고 있어 생기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정작 문제는 지식이나 정보의 문제가 아니다. 훈련과 태도의 문제일 경우가 많다. 지식은 대개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태도로는 지나친 욕심,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불성실, 데스크 등의 기사 출고 결정권자에 대한 맹목적 복종 등을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목격한 언론 관련 대형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원인은 대략 이 범주 안에 속해있다.

지나친 욕심은 기자나 데스크를 포함한 출고권자 모두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욕심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 미심쩍은 부분까지 기사화를 하면 ‘화’를 입는 경우가 많다. 취재가 부족한데도 세밀한 기사를 쓰면 당연히 틀린 사실이 많이 포함되게 된다. 예를 들어, 부서장이 일선 기자에게 한 비공개 모임에서 오간 얘기들을 기사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때 대화 내용이 취재가 안 되면 기사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부서장이 욕심을 낼수록 거짓 기사가 작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불성실도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팩트 하나하나를 확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다. 요즘엔 기사 작성에 인터넷 정보를 많이 의존하다보니 잘못된 정보가 반복 보도되는 악순환도 나타난다. 전화 한 통 더하고,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줄어든다. 또 특히 당사자의 얘기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상황을 오판하지 않을 수 있다.

데스크에 대한 순종도 오보와 명예훼손 시비에 휘

말리는 주요 요인이다. 취재기자는 데스크가 아무리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고 데스크는 현장 기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언론법제 교육의 범위와 내용, 대상을 보다 넓혀야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것은 이른바 '언론법제 교육'의 잘못된 관행 두 가지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는 언론법제 교육 하면 의례적으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는 발상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교육은 주로 법률적 지식에 대한 것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정작 기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무관한 교육이 이뤄져 왔다는 의미다.

명예훼손도 중요한 문제다. 형사적으로 사법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민사 소송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개 형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취재와 기사작성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됐던 것으로 판단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른바

'위법성 조각'(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절도·알선수재·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같은 죄를 저지르면 '위법성 조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에게는 훨씬 위험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인 것이다. 또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이 많으면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릴 위험을 줄일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많은 기사 관련 시비는 법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와 데스크의 태도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언론법제 교육을 명예훼손이나 언론법과 같은 법률에 대한 교육으로 좁게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것과 명예훼손 문제를 법률적 지식보다 기자들의 태도의 문제로 접근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교육은 위에서 언급한 절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다양한 현장 상황에서 기자들이 판단의 근거로 삼을 만한 사례 연구와 기자들에 대한 태도 교육일 것이다. 특히 태도 교육은 신참 기자뿐만 아니라 데스크 이상의 고참 기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언론현장에서 본 언론법제 교육 실태(Ⅲ)

전 관 석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

언론법제 관련 지식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현실

우선 반성으로 글을 시작해야겠다. '언론 현장에서 본 언론법제 교육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청탁을 받고 솔직히 많이 고민했다. "과연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언론사에서조차, 지난 1년여 동안 언론법제 및 언론윤리 관련 강연회를 연 것은 단 두 차례뿐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위원을 각각 초빙해, 여러 언론보도 사례들을 열거하며 기자로서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취재·편집기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무엇보다도 바쁜 일정이 기자들의 발목을 잡았을 것이다. 교육의 필요성은 줄곧 제기되지만 막상 그 수혜자가 되기엔 참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 기자들의 현실이다.

지난 봄, 네 명의 수습기자들을 뽑았다. 대학생 시민기자 활동을 했던 응모자들에게 가산점을 줬고 다른 회사 전형과는 확연히 다른 입체적 과정을 통해 우열을 가렸다. 회사 안팎에서 호평을 받았던 전형이었다. 하지만 이 수습교육에 언론법제, 윤리, 인권 교육은 쪽 빠져 있었다.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영상 프

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참신하고 신선한 수습 선발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이후 이어진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후배 기자들은 그저 실무와 현장에 쫓겼다. 기자라는 타이틀을 손에 쥐기까지가 고단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풍부하게 쌓아올려야 하는 언론법제 관련 지식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현실. 제법 진보적이라는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백할 것은 또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언론재단, 한국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기관·단체에서 행한 언론법제 혹은 언론윤리 관련 토론회에 우리 회사 기자가 패널로 또는 청중으로 참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몇 해 지난 『언론중재』나 언론법제 관련 서적이 가끔 눈에 띄었지만 거의 새 책과 같았다. 『세계의 언론법제』 등 한국언론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내는 서적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어디 우리 회사뿐만인가. 얼마 전 다른 회사 몇몇 선배 기자들과 어울리는 자리가 있었다. 물었다. "선배 회사 기자들은 공부 좀 합니까?". 1년 동안 고작 두 차례 법제 및 윤리 교육을 시행했던 우리 회사가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었다. 기자생활 15년을 내다보는 선배기자는 단 한번도 '교육'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동석한 2~3명의 기자들 역시 마

찬가지였다. 한 기자의 말. 솔직하다.

“기지만큼 공부 안하는 직업도 없을 거야. ‘기자는 바쁘다’ 이 말 뒤에 숨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안 받잖아. 아마 그 교육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하는 기자들이 대다수일 거다. 이제는 미디어 환경이 확 바뀌어서 공부 안 하면 기자 못하는 시대인데...”

창피한 노릇이다.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자 ‘질’을 하고 있다. 자격이나 있다. 가뜩이나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좋지 않은데 기자들이 이렇게 재교육을 등한시하는 ‘깡무식’이라는 걸 취재원이나 국민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펜으로 여론을 밀고 당기는 기자들, 말쑥한 버버리 코트와 잘 빗어 넘긴 깔끔한 외양으로 투정되지만 이른바 ‘내공’ 수양에는 영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다.

‘언론법제’, ‘언론윤리’, 언론인의 전공 필수 과목

또 다른 이야기 한 토막이 있다. 우리 회사에서는 매년 1~2차례 인턴기자를 채용한다. 우리 회사의 경우 단순하고 추상적인 경험보다는, 언론 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며 ‘글 = 자신감’이라는 명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기본적인 글쓰기와 취재 및 미디어 교육도 어느 언론사 못지않게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인턴기간은 보통 6주. 첫 2주 동안은 기본교육에 집중하고 이후 4주 동안은 현장 및 기획취재를 수행한다. 다른 언론사와는 다르게, 지난 3년여 간 인턴기자들을 교육하며 반드시 넣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이 그것이다.

처음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수준의 교육 정도로 생각했었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 박재선, 구울화 변호사의 강연은 들으면 들을수록 현직 기자인 내 자세를 바로잡게 만들었다. 깔끔한 자료와 분석,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이론과 법제에 녹여 풀어내는 강연을 두 시간 정도 듣고 나니 “이건 인턴기자가 아니라 현직 기자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들어야 하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도 마찬가지. 인권위 홍보담당 김민아 선생이 나서 언론과 인권 사이 연결고리를 잘 채워준 강연. 그동안 녹슬고 빠져대는 기본 소양과 인권의식을 톡톡 건드려주며 나를 자극시켰다. 현직 기자인 것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 여름, 언론중재위원회 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을 받고 사무실에 돌아가 다시 한 번 외부강연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언론이 인권의 선을 너무 쉽게 넘나들고 있다. 언론법제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버릇, 신중한 기사쓰기 버릇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언론 지망생이 대다수인 여러분들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한 인턴기자가 손을 들었다.

“선배는 진짜 그렇게 취재하세요? 기자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기사를 쓰나요?”

그 인턴기자는 당돌했고 나는 당황했다. 인턴기자가 말을 이었다. “제가 아는 다른 언론사 기자 분은 기자가 이것저것 생각하면 기사 못 쓴다고 하시던데요”. 그 인턴기자는 ‘그 기자’의 소속 언론사까지 술술 말했다. 이미 그쪽으로 ‘확’ 쏠려있는 듯 했다.

좀 더 차분하게 언론법제 교육과 인권,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정리해주며 그 상황을 넘겼지만 영 개

운치가 없었다. 물론 인턴기간 내내 조금 튀는 인물 이긴 했고 기자지망의 이유도 다소 위험해 보였지만 다른 학생들도 그 인턴기자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그 인턴기자의 생각이 그리고 그 인턴기자에게 ‘확실히 신중치 못한’ 얘기를 한 그 언론사 기자의 생각이,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대한민국 대다수 기자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 씩씩하기만 했다.

다른 대학생 인턴기자들 중 신문방송학과나 언론정보학과 등 언론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들에게 물었다. 교과과정에 언론법제나 인권, 윤리 등을 다루는 분야는 없냐고. “몇몇 교수가 수업시간에 잠깐 언급하긴 하지만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는 의견이 소수, “전혀 없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

여기서부터 문제다. ‘언론법제’, ‘언론윤리’ 교육, 언론을 지망하는 대학생들이 학사모를 쓰기 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적어도 그 개념을 어렵듯이나마 이해하고 있어야 비로소 언론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점을 예비언론인들에게도 강조해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기자의 사명감, 존재이유와 정확히 맞닿아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가깝고도 먼, 언론과 ‘법·윤리’

이렇듯 언론과 ‘법’, ‘윤리’ 사이에는 확실히 괴리가 있다. 거리가 제법 멀다. 왜일까. 또 어느 정도일까.

우선 우리 언론의 언론법제 불감증은 이미 만성화되어 있다. 기본적인 헌법조항까지도 너무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헌법 조항을 몇 개 살펴보자. 우선 이 조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이다. 또 하나.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등의 조항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는 바로 ‘누구든지’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함을 강조한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존엄성과 법 적용의 형평성을 침해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우리 언론이 이 ‘누구든지’라는 조항에 충실했는가? 방송 TV뉴스에서 흔히 보는 장면. 강도·절도 피의자에게 카메라와 마이크가 밀착된다. 피의자는 수건 혹은 점퍼를 뒤집어쓰고 슬리퍼를 신은 채,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한다. 때로는 책상에 머리를 킁 박은 채, 때로는 형사들에게 팔이나 목덜미를 잡힌 상태다. “돈이 없어서...어쩔 수가 없어서...”,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혹은 침묵 “.....”.

더 심한 장면도 있다. 조직폭력배를 검거했을 경우다. 뉴스 앵커가 관련 소식을 전할 즈음, 시청자는 이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이어질지 예상을 할 수 있을 정도다. 조직폭력배들이 굴비처럼 줄줄이 엮여 끌려들어오거나, 심지어 경찰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장면이 비춰진다. 경찰서 책상 몇 개를 붙여 그 위에 야구방망이, 식칼, 현금 등을 깔아놓는다.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심지어 조폭들의 웃옷까지 벗겨 용이나 호랑이 등의 문신을 보여주거나, 모자이크 처리 하지 않은 맨 얼굴을 다 내보내거나 손에 찬 수갑까지 보여주기도 했다. 이쯤 되면 시청자들의 입이 절로 움직이게 된다. “저..저..저..끔찍한 놈들...죽일 놈들...”. 우리 언론 무감각의 단편적 사례일 것이다. 이리다보니 시청자들도 함께 무감각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 장면들은 모두 위에 적은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여기서 유죄 판결이란 1심, 2심이 아닌 확정된 판결을 얘기한다. 1, 2심에서 유죄를 받고 상소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무죄 추정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어떠한가. 최근의 소위 '변양균 - 신정아' 사건을 위시해 우리 언론이 다루는 민·형사상 사건에 대한 우리의 보도태도는 이런 법조항을 가며 비웃는다. 거칠게 말해, 사람을 '죽이려다'보니 그리고 '장사를 하려다'보니 모든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된다. 이에 비판적인 시각에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를 마치 '전가의 보도'인 양 언급한다. 신정아 사건 당시 「문화일보」의 누드 사진 게재는, 우리 언론이 헌법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점을 일깨워준다.

어느 누구도 피의자를 함부로 다룰 권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 기자들은 스스로를 '예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무죄 추정을 받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다.

수사기관 앞에서 어떤 피해자도 진술 거부권을 갖는다.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진술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그런데 기자들은 그런 피의자들을 기다리며 경찰, 검찰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가 나타나면 그를 둘러싸고 거의 진술을 강요하다시피 한다.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피의자는 아무리 카메라에 찍히고 싶지 않아도 안 찍힐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껏해야 수건을 뒤집어쓰거나 점퍼를 끌어당겨 얼굴을 가리는 것이 고작인데, 사람들은 수건을 뒤집어쓰거나 점퍼로 가린 모습을 보면 더욱 그들이 유죄라고 확신하게 된다. 한 마디 발언도 하지 않으면 '뭔가 쾅기는 게 있어서 말을 못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간다.

모르긴 해도 '검찰이나 경찰 출두 = 유죄'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나 독자들이 꽤나 많을 것인데, 이는 모두 언론 책임이다. 그리고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이는 사회면에 아주 간단히 다루거나 아예 다

루지 않는다. 못된 버릇이다(침언하자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다루는 우리 신문의 속성도 지적해야 한다. 기사는 큼직하게 써 놓고 이에 대한 반론이나 정정보도 혹은 신문윤리위의 결정 등은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작게 박아놓는다. 악습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지낸 경북대 김두식 교수는 저서 『헌법의 풍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나는 국회의원이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언론이 험하게 다룬 것을 본 적이 없다. 함부로 다루었다가는 뒤탈이나 뒷말이 나올만한 피의자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피해자는 유죄로 추정하는 버릇이다. 물론 이는 최종 판결이 처벌이 아닌 구속 자체가 이미 처벌이 되어버린 사회적 상황이 문제일 것이다. 구속은 어디까지나 수사를 위한 수단일 뿐인데 그게 곧 처벌로 변한 사회적 분위기를 먼저 탓해야 할 것이지만 언론 역시 유죄 추정의 심판자가 되어 버린 현실 역시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다".

적확한 지적이다. 또한 검찰과 경찰, 일부 언론은 공명심에 빠진 나머지 피의자들의 신체와 사생활까지 주고받아 이를 보도한다. 이른바 '변양균 - 신정아'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본질은 사라지고 각종 설만 난무했다.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가십이 언론의 주된 취재거리였다. 기자들 사이에서 "검찰 출입 기자 몇 명에게 신정아와 변양균이 구속 기소된 정확한 '죄목'이 뭔지 물으면 즉시 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웃을 수만은 없는, 답답한 현실을 반영한 얘기다. 상황이 이렇진대 '언론법제' 교육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이 든다. 이 원고가 그 어떤 원고보다 부담스러운 이유가 이것이다.

‘내재화된 특권의식’, 언론을 무너뜨리는 치명적 병폐

요즘도 대학생 인턴기자나 대학생 시민기자들에게 맨 먼저 묻는 말은 이것이다.

“왜 기자가 되려고 하니?”

가끔 ‘솔직한’ 대답이 돌아오기도 한다. 막연한 ‘환상’이다.

“뉴스를 보면...멋있잖아요”, “큰 이슈현장에서 취재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상투적이고 식상한 다음과 같은 얘기가 여전히 다수다.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어루만지고 싶습니다”, “약한 자 편에 서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장을 누비고 있는 여러 기자들 역시 소싯적에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지금 왜 이런 지탄을 받고 있는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어루만지기 위해’ 기자가 됐을 그 기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디에서부터 어긋난 것일까. 단언컨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재화된 특권의식’이다. ‘언론고시’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체가 창간되지만 언론계 진입은 여전히 바늘구멍이다. 이 도전을 성취하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권언유착, 국가 통제, 그들이 견어졌음에도 학

연·지연에 엮인 취재원과 출입처 중심의 취재환경. 이 상황 속에서 기자들은 스물스물 이른바 ‘기득권층’으로 편입된다. ‘높은 양반’들과 사적으로 접촉하고, 얘기하고, 밥 먹고 술 먹고 어울리다 보면 긴장감이 풀어지기 마련이다. 수습기자를 떼고 이른바 ‘사쓰마와리’를 돌아 출입처를 배정받으면 온갖 유혹이 기자들을 감싼다.

이 흐름에 저항하기란 쉽지 않다. 또 저항할 뚜렷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모두들 이 특권의식에 빠져 버린다. ‘나’가 쉽게 ‘우리’에 동화되는 것, 기자 초년병들은 모두들 그 함정에 쉽게 빠져 버린다. 우리 언론환경과 취재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러면서 알량한 특권의식은 서서히 ‘내재화’된다. 이 과정에서 언론법제 교육이 투입할 여유와 시간, 공간은 철저히 배제된다. 수습기간에서 풀리면 현장으로 가고, 현장에 가면 대접받고 대우받는데, 그 틈에서 인권이니 법이니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달을 ‘성인’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내재화된 특권의식은 기자정신을 훼손하고 학습의욕을 감퇴시키는 가장 무서운 병폐다. 스스로를 ‘교육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길 수 없는 풍토 아래서 언론법제 교육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신뢰도와도 직결된다. 지난 2004년 한국언론재단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단지 19.5%에 불과했다. ‘다른 사람의 인격권과 권리를 존중한다’, ‘사실을 확인하고 난 후 기사를 쓴다’, ‘높은 직업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 등 기자들에 대한 모든 평가항목에서 평가수치가 대단히 낮게 나타났다.

이뿐만인가. 언론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32.8%, 권력과 유착된 보도가 28.6%, 수용자 입장보다는 언론사 권익을 보호하려는 태도 22.3%가 꼽혔다. 기자들 역시

스스로에게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다. 기자들 가운데 전체 81.4%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17.8%), 많은 편이다(63.6%)라고 응답해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한국 언론 2000년 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기자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역시 준수하지 않고 있다. 기자들을 상대로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명시된 조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제2항의 미확인보도 명시원칙과 관련, 미확인 내용임을 밝힌다는 응답률은 18.1%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제5항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금지 준칙과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검증될 때까지 기사를 보류한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준중 조항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는 것은 무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3.3%, 현행법, 공인, 참고인, 증인 등 공익상 필요하면 모두 촬영하여 보도한다는 응답은 55.0%에 이르고 있다.

‘언론법제’ 교육, 언론의 기본 사명을 지탱하는 주춧돌

어떤 직업, 어떤 직군이든 재교육을 한다. 그 필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기자들은 그 필요성에 선뜻 공감하지 않는다. 대부분 매우 귀찮아한다. 언론 유관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자 대상 세미나나 워크숍은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많은 기자들이 가벼운 친목모임이나 휴식 요양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나머지 본 행사의 취지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한 언론 유관단체 직원이 한 얘기다.

“기자들 상대로 재교육이나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고민

하는데 막상 기자들이 모이면 시키려고 하고 달라고만 하지 생산적인 얘기가 거의 안 나온다. 차장급 기자 50여 명이 참여한 1박 2일 교육이 있는데 이튿날 메인 교육에는 딱 5명만 온 적도 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기자 맞나 라고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기자로서 괴롭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다. 앞서 얘기했던 ‘내재화된 특권의식’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기자들의 귀를 열게 할 것인가. 여기서 또 걱정이 생긴다.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공부하자’고 권유하면 즉각적으로 힐난이 쏟아질 것이다.

“세상 좋은 얘기하고 있네. 출입처 마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육이냐. 현장에 나와 봐라. 그런 얘기 나오나”.

“법제? 우리 회사에는 전담 변호사까지 상주하는데 기자가 법까지? 도대체 왜? 명예훼손 걸릴 것 같으면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하면 되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인권? 법? 그럼 기자들은 무슨 기사를 어떻게 쓰냐. 가뜩이나 기자들 살기 팍팍한데 그것까지 눈치 보면 도대체 기자들을 뭐로 보겠어?”

좀 과장됐지만 이와 유사한 반응들이 나올 것이다. 늘 인력문제로 골치 아픈 우리 회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

허나 강조할 것이 있다. 기자가 언론법제나 윤리,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착실히 받아야 하는 이유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취재원을 반듯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사회의 낮은 곳을 향해 가는 언론의 기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해법은 상투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교육이다. 체계

적이고 확실한 재교육이다. 기자들 재교육을 위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구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 기자협회 등의 단체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늦은 감이 있으나, 언론 재교육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본 따 우리도 유사한 기능의 기관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곳에서 언론법제를 비롯한 각종 재교육 과정을 밀도 있고 입체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지금도 언론재단에서 이러저러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절적이고 수동적인 시스템으로는 언론법제나 윤리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

언론 제 단체가 합의하는 재교육 기구와 프로그램을 잘 짜놓은 후에는, 적절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기자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기자들은 1년에 1 ~ 2차례, 적어도 반년에 한 번 꼴로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언론법제, 윤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언론법제, 언론윤리 교육이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언론 유관단체들이 행하는 내실 있고 무게 있는 교육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기자, 언론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페널티를 줘야 한다.

개인적으로 언론법제, 언론윤리 교육을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기자가 '이달의 기자상'이나 '한국기자상' 등의 수상자로 뽑히고 단번에 '대한민국 최고

기자'가 되는 것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진통이 있을 것이다. 콧방귀도 안 끼는 기자들 많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연차가 짧거나, 교육에 목말라 있는 '낫고', '양심있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호평 받는 교육이 될 것이다. 이들은 회사에 "내일 프레스센터 가서 기자 재교육 받아야 합니다"라고 공가 신청하면서 무척 설렐 것이다. 당장에 회사에서 "사람 없어 죽겠는데 별..."이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자 품성 좋아지는 일이다. 기본기 살피우는 일이다. 신문지면 좋아지고 방송 화면 좋아지는 일이다. 어이없는 보도, 부담스런 소송도 피할 수 있는 일이다. 이름 석 자 걸고 일하는 직업, 그 이름의 가치와 무게 높이는 일이다. 결국 대한민국 좋아지는 일이다.

적절한 교육을 이수한 뒤에는 당연히 적절한 테스트도 이어져야 한다. 테스트? 웃긴다고? 그렇다면 묻겠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이나 언론인 윤리강령을 단 한번이라도 숙독한 적이 있는가? 언론보도의 면책기준과 관련한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에 대해 짚고 굵게 대답할 수 있는가? 도대체 '국민의 알 권리'란 무엇인가? 위법성 조각사유는? 언론이 24시간 매달리며 난도질했던 신정아 씨와 변양균 씨의 '죄목'은 과연 뭔지, 알고나 있는가?

기자들이여, 공부하자. 공부한 만큼 기사 좋아진다. □

프랑스의 언론법제 : "언론 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적 규정

박진우

프랑스 파리 5대학 사회학과 박사과정(사회학 및 언론학 전공)

1. 서론

언론에 대한 프랑스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법제는 바로 1881년에 제정된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¹⁾이다. 1881년 7월 29일에 제정된 이 법은 지난 130년 동안 47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언론 활동 전반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고 또 세부 사항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프랑스의 언론계 종사자들이나 연구자들은 이 법이 16세기 이후 탄생한 근대 국가와 언론의 갈등 양상에 대하여 프랑스 사회가 내놓은 최종 해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이념적으로 이 법은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반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제11조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언론 자유의 권리'²⁾를 완전히 성문화시킨 것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³⁾ 또 현실적으로도 이 법은 구체제 하

에서 이루어진 정부의 직접적인 언론 통제, 또한 19세기의 정치체제의 격변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끊임 없이 통제하고자 시도하였던 정부(왕정, 제정, 공화정)의 기도에 썩기를 박았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이 법에 의거하여, 현재 프랑스에서는 언론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법제의 제정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완전한 언론 자유의 보장이 '언론 자유의 남용'을 전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1881년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은 어떤 경우가 바로 이러한 '언론 자유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본 규정들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이러한 언론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1881년 언론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피해 구제책'들이다. 하나는 반론권과 정정권의 형태로 독자들이 언론 보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며, 다른 하나는 언론법에 의해 이른바 "언론 자유의 위배(infractions)"로 규정된 6가지 사항들

1) 이 법의 원문은 <http://www.legifrance.gouv.fr/texteconsolide/PCEAA.htm> 참조.

2) 제11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들 가운데 하나이다. 모든 시민은 따라서 법에 의해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이를 출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이 점은 프랑스 헌법위원회에 의해서도 재천명된 바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1984년 12월 10일 및 11일자 판결(n° 84-181)은 1881년 법률에 대하여 언론 자유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적인 가치를 가진" 텍스트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에 대한 검토이다. 그 이전에 우선, 이러한 논의의 기본 텍스트로 기능하고 있는 1881년 법률의 몇 가지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간단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1881년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피해 구제 제도

1881년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은 앞서 말한 대로 언론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텍스트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법률로 인해 구조화된 프랑스의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 제도의 대략적인 특징을 우선 간략히 살펴보겠다. 프랑스의 경우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 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른바 ‘사법 원칙(Le principe juridique)’⁴⁾, 즉 언론 보도를 둘러싼 모든 갈등은 100%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으로서, 프랑스의 언론 보도에 대한 각종 피해 구제 제도들 역시 이러한 대전제 하에서 기능하고 있다.

사법 원칙

앞서 1881년 언론법의 탄생 과정에 대해 간략히 지적하였지만, 이 법 자체는 프랑스의 국가가 앞으로 언론 보도의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것이기

도 하다. 따라서 1881년 언론법은 제1조에 “인쇄와 배포는 자유롭다”는 조항을 명시한 다음, 자유로운 언론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요구사항(발행인, 주소, 소유구조 등 독자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정보의 제공 의무)을 규정하고, 이어서 무엇이 언론 자유의 권리에 위배되는가를 규정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는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 당사자가 이를 사법부에 제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가 스스로도 완전한 언론 자유의 구현 속에서 언론 보도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다양하게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언론법을 통해 일단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법에 의거하여”,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이러한 피해로부터 구제받도록 한다는 원칙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프랑스의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 제도의 근본 원칙을 흔히 “사법 원칙(principe juridique)”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는 결국 1881년 언론법을 통해 “실사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직무에 있어 실책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가 다시 개입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만약 저널리스트가 실책을 저질렀다면, 그는 오직 법과 재판관 앞에서만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본 원칙에 대해 국가나 언론계 모두가 동의하였다는 뜻이기도 하다.⁵⁾

프랑스의 언론 관련 재판의 경우 소송의 대상자는

4) 이러한 ‘사법 원칙’은 우리에게 익숙한 영미권의 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언론학자 앙리 피게아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프랑스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강력한 법적 영향력 아래에서 행사된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자연법에 속한다고 판단된 영역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미디어의 활동을 검토하거나 통제하는 자율적인 전문기관을 찾아볼 수 없다. 프랑스에서는 언론 중재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옴부즈맨 제도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이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저널도 찾아볼 수 없다. 언론계 스스로의 자기 비판을 위한 일관되고 꾸준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법적인 개입주의가 강하지만, 직업윤리에 관련된 고민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Henri Pigéat, *Médias et déontologie : Règles du jeu ou jeu sans règles*, Paris, PUF, 1997, p. 215.

5) 장-마리 샤롱(Jean-Marie Charon) 교수와의 인터뷰 중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 11월 5일).

해당 언론사의 발행인⁶⁾이며, 재판은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 지방법원에서 행해진다. 프랑스의 경우 80% 이상의 언론사들이 파리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파리 지방법원에는 언론 관련 소송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 - 언론법정(Chambre de presse) - 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략 연간 4~5천 건의 언론 관련 재판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언론 중재기관의 도입에 관한 논의

언론 관련 소송이 과도하다는 현직 종사자들의 인식은 사실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작업 현장에서 직업 윤리 규정을 보다 엄수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중재 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프랑스의 저널리즘계에서 이러한 주장이 결코 다수의 목소리였던 적은 없었으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다.⁷⁾

이러한 목소리에 대한 대응은 저널리스트 스스로가 오래전부터 마련해 왔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설립된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노조(SNJ, Syndicat National des Journalistes)가 마련한 최초의 저널리스트 윤리 강령⁸⁾은 13개 조항에 걸쳐 저널리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지켜야할 자체적인 규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저널리스트들의 오류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자신들 스스로가 노조 차원에서 자체적인 직업 규율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자 한 시도에 해당한다. 자체 규율을 마련한 것이다. 전후 이러한 노력은 1971년 뮌헨 협약⁹⁾에 의해 전 유럽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위배 조항의 구체적인 명시

1881년 언론법의 가장 큰 특징은 - 법률 제23조부터 - 과연 어떤 행위가 '언론 자유의 남용' 혹은 '언론 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배'에 해당하는지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의 이러한 존재방식 역시 앞서 언급한 대로 1881년 당시의 정부와 언론 간의 갈등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870년 보불전쟁의 패전 이후 수립된 제3공화국 하에서 번성했던 사이비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각종 통제가 초래한 10년 간의 사회적 대논쟁 이후, 바로

6) 반드시 해당 신문사, 방송사의 사장을 대상으로 소송해야만 한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소극적이거나) 일선 저널리스트들을 과도한 사법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특정 언론사의 모든 기사는 데스크와 발행인의 편집 책임 하에서 작성되는 것인 만큼 그 책임 역시 발행인이 져야 한다는 일종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1990년대 이후 언론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언론사의 사장과 더불어 해당 기사의 작성 기자를 함께 소송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7) 중재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는 프랑스의 경제사회이사회(Conseil Economique et Social)를 꼽을 수 있다. 미셸 뮐러(Michel Muller)가 대표 집필한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 〈일간신문의 미래를 위한 다원성과 독립성 보장 방안(Garantir le pluralisme et l'indépendance de la presse quotidienne pour assurer son avenir)〉(2005년 7월)이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의 우리말 번역은 한국언론재단에서 출간된 바 있다(2006년). 원문은 <http://www.ces.fr/rapport/rapsec/RS044430.pdf> 참조. 그 외에도 2000년대 이후 다수 등장한 프랑스의 언론개혁운동 단체들이 바로 이러한 기구를 통한 프랑스 저널리즘의 퀄리티 회복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운동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8) 공식명칭은 〈프랑스 저널리스트들의 직업적 의무에 대한 헌장(La Charte des devoirs professionnels des journalistes français)〉이다. 이 강령은 1938년 1월에 한 차례 개정되어(이 과정에서 1개 조항이 추가되었다)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원문은 http://www.snj.fr/article.php3?id_article=65 참조.

9) 1971년 독일 뮌헨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저널리스트 노조들이 모여 채택한 유럽 차원의 공동의 저널리즘 윤리 강령을 말한다. 원문은 http://www.snj.fr/article.php3?id_article=66 참조.

이러한 방식이 정부와 언론계 그리고 시민사회 전체가 합의할 수 있었던 유일하게 실질적인 언론 자유의 보장 방식이었기 때문이다.¹⁰⁾ ‘사법 원칙’의 도입은 결국 무엇이 언론 자유의 완전한 실현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규정한 다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유를 허용해 주는 형태의 법 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이 법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선언적인 총론을 규정한 다음, 각종 세부조항들의 제약을 끊임없이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법’이라는 오랜 비판이 제기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에서 이러한 ‘기념비적인 법률’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대담한 목소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민사 소송 우선의 원칙

또한 이 법은 만약 특정 언론사가 법률에 명시된 것과 같은 ‘위배’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공권력에 의한 처벌(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처벌 형태로 나뉠 수 있다. 언론법은 사안별로 민사 소송의 대상인지 아니면 민·형사 소송 모두가 가능한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에게 양자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언론법에 의해 규정된 피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민사상의 처벌이 부과되는데, 이는 해당 언론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이 사실을 독자들에게 공지토록 함으로써 언론사에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벌금 지출, 재판에 따른 언론사의 공신력 하락에 의한 독자 수 감소)을 가함으로써 저널리즘 일탈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 그리고 전달해서는 안 되는 각종 정보들에

대한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널리스트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

3. 반론권 및 정정권

프랑스 언론의 역사에서 반론권(le droit de réponse) 제도의 효시는 프랑스 혁명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1799년 ‘500인 회의(Le Conseil des cinq-cents)’에서는 언론 자유의 과잉 분출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언론에 의해 명예를 침해당한 자에게 반론 기사를 허용하는 최초의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반론권 조항은 1881년 언론법에 의해 모든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하여 독자들이 행사 가능한 권리로 확립되었으며, 1993년 1월 1일자 부분 개정을 통해 방송에 대한 반론권 행사도 가능해 졌다. 아울러 1881년 언론법은 정부에 대하여 특별히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1) 반론권의 개시

정기 간행물에 대한 반론권 개시와 그 절차는 언론법 제13조 및 제13-1조에 규정되어 있다. 반론권은 일간지 및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비밀간지 - 그러니까 모든 정기 간행물 - 를 대상으로 “모든 사람들” - 즉 모든 자연인과 법인 - 이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의 반론권은 기사 속에 “지명되거나 지칭된 모든 사람”이 기사의 형식, 내용 및 본질 여하에 관계없이 일단 자신이 기사 속에 거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시가 가능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사실에 반하는 보도 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보상에

10) Christophe Charle, *Le siècle de la presse : 1830-1939*, Paris, Seuil, 2004 참조.

가까운 성격을 가지는 영미권의 반론권 행사 방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프랑스에서의 반론권은 자신의 방어 수단이라는 성격을 넘어서, 언론사에 대한 독자들의 공격 수단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는 제도이다. 이것 역시 1881년 언론법이 제정될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¹¹⁾

(2) 반론권의 행사

요구 (기간, 방법, 크기)

인쇄 매체의 경우 반론권은 1881년 언론법 규정에 의거, 해당 기사가 출간된 이후 1년 이내에만 행사 가능하다. 방송에 대한 반론권은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된 지 1주일 이내에 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프랑스 해외령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일 이내에 반론권을 개시할 수 있다. 인쇄 매체의 경우 1년의 기간은 너무 길다는 비판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의 움직임은 아직 없다.¹²⁾

독자(시청자)의 반론권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기된 경우, 언론사의 발행인(편집인)은 이를 게재할 의무를 진다. 인쇄매체의 경우 반론은 반론권을 야기한 해당 기사와 동일한 수준의 길이로 제한되며, 또한 “최고 50줄에서 최대 200줄”로 제한된다. 즉 원래 기사의 길이가 200줄을 넘길 경우, 반론권은 최대

200줄까지만 가능하다.¹³⁾ 방송의 경우, 1987년 방송법 시행령에 의거, 반론문의 텍스트는 타이프로 30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론 메시지의 전체 방송시간은 2분을 넘길 수 없다.

인쇄매체의 발행인은 반론을 접수한 후 일간지는 3일 이내에, 주간지 이상의 정기 간행물은 접수 다음 날로부터 가장 최신평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1881년 언론법 제13-1조에는 반론은 반론을 야기한 원래 기사와 “같은 위치에, 같은 글자체로” 게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같은 위치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지만, ‘같은 글자체로’는 대단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방송의 경우, 방송사의 책임자는 반론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반론 제기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반론권을 야기한 방송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반론을 방송해야 한다(1987년 방송법 시행령 제5조). 방송의 경우, 반론의 방송 형식은 원칙적으로 반론권 개시자가 요구하는 텍스트가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 또한 반론 메시지는 원래의 메시지와 동일한 시청자들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방송되어야 한다. 그리고 1987년 방송법 시행령은 이와는 별도로, 반론 보도 시에는 반론을 야기한 원래 프로그램과 메시지의 제목뿐 아니라, 방영 일자 및 시간을 자막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반론 게재의 거부권

11) 이는 인쇄매체에 대한 것으로, 방송에 대해서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 1990년 개정 방송법에 의거 제도적으로 확립된 방송에 대한 반론권 개시 조항에 따르면, 방송에 대한 반론권은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이 명예나 명성의 침해를 야기하는 비난을 담고 있을 경우에만 개시 가능하다. 그러니까 방송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미권 식의 ‘소극적 방어’ 및 ‘피해 보상’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

12) 2004년 7월 제정된 전자통신법에 의거, 인터넷 언론의 기사에 대한 반론권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도 인쇄매체와 동일하게 해당 기사의 최초 게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론권 개시가 가능하다.

13) ‘줄(lignes)’이라는 단위는 신문 편집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현재에는 대단히 모호한 규정으로 남아있다. 현실적으로는 ‘글자 수’ 단위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언론법 조항(제13-1조)을 ‘글자 수’ 단위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인쇄매체의 발행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반론권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럴 경우 이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간다. 1881년 언론법 제65조에 따르면, 반론권이 개시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인쇄매체의 발행인은 법원에 반론 게재의 거부 의사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 경우 접수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그 사안이 선거 기간 중 후보자와 관련된 것일 경우,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1982년 이후 반론을 게재할 사유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발행인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원의 관례들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반론권 행사에 대한 법적 소송의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3) 정정권

1881년 언론법은 반론권과는 별도로 정부 기관에 대하여 정정권(le droit de rectification)을 언론매체에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언론법 제12-1조에 의거, 정정권의 행사 주체는 정부 기관들 - 즉 “공권력의 보유자(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이며, 대상은 “공권력의 집행과 관련된 사안들”, 즉 공권력의 집행이 부정확하게 보도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스스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정정권은 현행법상 인쇄 매체에 대해서만 개시 가능하다. 방송에 대한 정정권 개시를 다룬 법조항은 현재까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방송 규제기관의 개입을 통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정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¹⁴⁾ 현재로서

는 민영방송에 대한 정정권 개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인쇄매체 및 공영방송에 한한다.

인쇄매체에 대한 정정권 행사의 개시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언론법 속에 들어있지 않다. 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시해야 한다”는 말만 들어 있는데, 관례를 통해 그 기간 등의 구체적인 절차는 반론권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대신 언론법 제12-2조에는 정정문은 정기간행물의 가장 최신의 다음 호에 게재되어야 하며, 정기간행물의 표지 상단에 실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글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반론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래 기사와 동일한 글자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유추 가능하다. 만약 발행인이 정정문의 게재를 거부하였을 경우, 정부 기관은 반론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언론사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프랑스 정부는 국내 언론에 대한 정정권 행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다. 이는 1981년 5월에 집권한 사회당 후보인 프랑소와 미테랑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였다. 그의 당선 이후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언론에 대한 일체의 정정권 행사를 스스로 중단하였는데, 이것이 프랑스 정치권의 일종의 ‘관례’로 자리잡음으로서 이후의 어떤 후임 대통령도 프랑스 언론에 대하여 정정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다. 다만 이는 프랑스 국내의 정치 현안에 대한 것으로,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프랑스 정부가 정정권을 실행한 사례 - 이 경우의 대다수는 외국 국가원수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모독’의 사례들이다 - 는 다수 존재한다.¹⁵⁾

14) 이는 1990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것이다.

15) 이는 프랑스 정부와 해당 국가의 외교적 친선 유지의 목적에서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4년 유럽에 대한 대륙간 미사일 배치를 선언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시에 프랑스 언론들의 ‘인격모독적인 논평들’에 대한 정정권을 들 수 있다.

4. 언론 자유의 '위배'의 6가지 조항

이와 더불어 1881년 언론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배하였을 경우 민사상의 제재가 가해지는 '언론 자유의 위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론법 및 이후의 추가 조항들을 살펴본 다음, 이를 둘러싼 몇 가지 대표적인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규정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명예훼손

언론 자유의 위배에 해당하는 6가지 조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많은 위배 사례를 가지는 것은 역시 명예훼손이다. 1881년 언론법 제29조에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개인 혹은 법인을 비난함으로써 그의 명예나 평판을 침해하는 모든 주장과 비난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장 혹은 비난을 직접 출판하거나 인용의 형태로 출판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는 명시적으로 당사자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 그 당사자에 대한 추론이 가능할 경우에도 처벌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또한 프랑스 저널리즘계의 수많은 논란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과 비난”에 대한 개념 규정, “명예와 평판”을 해친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가능성 그리고 해당 기사가 과연 특정 인물이나 회사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코 손쉬운 것이 아니다. 다만 여기에는 사실과 가치 판단의 엄격한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실제로 이러한 명예훼손은 엄격히 ‘사실’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따라

서 예컨대 “특정 인물은 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와 같은 형태의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 당사자는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민사 재판 혹은 형사 재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 역시 해당 명예훼손의 유형 그리고 재판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예컨대 피해자가 단순한 개인일 경우 벌금은 1만 2천 유로이지만, 그 피해자가 공직(공무원, 군인, 법관, 정부관료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종사하는 자일 경우 벌금은 4만 5천 유로로 상승한다. 만약 명예훼손의 내용이 인종차별과 관련 있을 경우에도 벌금은 4만 5천 유로이다. 이와 더불어 명예훼손에 따른 금전적 피해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1유로에서 1만 5천 유로까지 다양하게 청구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정은 일반적으로 금전적 배상과 더불어 해당 간행물의 일정한 지면에 벌금 납부에 관한 재판 사실을 독자들에게 공지할 것을 명령한다.

(2) 중상(中傷)

언론사에 대해 적용되는 중상 행위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언어 표현을 통한 것을 가리킨다. 언론법 제29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상에 해당하는 표현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모욕적인 표현, 경멸적이거나 욕설에 해당하는 용어이며, 두 번째는 그것이 식별 가능한 대상을 향한 경우이다. 중상에 대한 소송은 해당 보도로 인한 ‘피해자’ 당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만약 대상자가 이미 고인일 경우에는 유족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1만 2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만약 그 중상이 인종차별인 내용일 경우에는 2만 2천 5백 유로로 그 액수가 늘어나며 또한 6개월의 징역을 함께 선고받을 수도 있다.

(3) 모독

언론법 제26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통령, 외국의 국가 원수 및 행정 수반, 외국 정부의 외무부 장관에 대한 모독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이는 프랑스와 외국 정부 사이의 우호적인 외교관계의 유지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이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언론법은 그 ‘피해자’가 해당 언론사를 민사 소송을 할지 형사 소송을 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으로 결정될 경우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언론사에 4만 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과연 ‘모독’이 어디까지인지, 언론사의 정치적 비판과 모독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중상이나 명예훼손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의 판례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 중상 및 명예훼손의 사례를 포함하면서, 이와 더불어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만평이나 사진 이미지를 통한 당사자의 존엄성이나 신중함을 공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이 조항은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규정된 언론 자유에 관한 규정과 서로 상치된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2001년 가을 프랑스를 방문한 모로코 국왕 하산 2세(Hassan II)에 대한 일간지 <르몽드>의 보도가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판단한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렇지만 <르몽드> 역시 이를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인권법정에 제소, 프랑스의 언론법 제36조가 유럽인권협약에 배치된다는 정반대의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¹⁶⁾

또한 이 문제를 둘러싼 실제적인 정치적 맥락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모독 조항은 앞서 언급한 정정권 조항과 마찬가지로 1981년 미테랑의 집권 이

후 사실상 행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의 수반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권의 행사는 물론, 모독 혐의에 따른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4) 거짓 정보의 전달

1881년 언론법 제27조에는 일체의 수단을 통한 거짓 정보나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작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4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 해당 거짓 정보가 전시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나 혹은 군의 사기와 기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벌금액수는 13만 5천 유로로 높아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항은 거의 집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언론 현장에서의 현실상 거짓 정보와 오보를 구별하고 또 조작된 정보의 ‘의도’를 법적으로 판별해 내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1998년에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유럽을 휩쓸 당시, 많은 언론들은 소비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패닉’ 현상을 보도하면서 이것이 “국가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당시 프랑스의 낙농업자들은 이것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법부의 의견도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파리 지방법원은 낙농업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저널리스트들이 소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공포심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작성한 거짓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반면, 대법원에서는 해당 저널리스트들의 의도성을 명백히 유죄 입증하

16) CEDH 25 juin 2002, Colombani/France, *Légipresse*, 2002-III, p. 159; CA Paris 3 juillet 2002, *Légipresse*, 2002-III, p. 163.

기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¹⁷⁾

(5) 전달이 금지된 정보

간략히 말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일체의 정보나 이미지 그리고 현저히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이미지는 1881년 언론법에 의해 '전달이 금지된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많은 저널리스트는 프랑스 국내의 각종 판례와 유럽 판례의 차이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각급 재판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① 게재 금지된 이미지(사진 및 영상)

우선 언론법에 의해 전달(게재)이 금지된 이미지로 규정된 것은 대략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이 수갑이 채워져 있거나 포박되어 있는 이미지들이다. 이 조항은 2000년 6월 15일자로 제정된 이른바 “무죄 추정의 원칙의 실질화”를 위한 법률에 의해 언론법 제35조 속에 삽입된 것이다. 이 법은 오랫동안 프랑스 언론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이러한 종류의 이미지들을 금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구체적으로 해당 이미지가 해당 범죄(자로 추정되는)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수갑이나 포승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대해 언론법 제48-7조에는 언론사 발행인에게 1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며, 또한 그 이미지의 피해자에게 해당 언론사를 민사 및 형사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명시되

어 있다.¹⁸⁾

두 번째는 범죄 희생자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미지들이다. 이것 역시 위에서 언급한 2000년 6월 15일자 법률 - 이른바 '기구(Guigou) 법' - 에 의한 것으로, 그 발단은 1999년 10월에 발생한 코르시카 경찰 서장인 클로드 에리냐(Claude Erignag)의 피살 사건에 관한 보도 이미지를 둘러싼 소송이다. 당시 프랑스의 주요 언론들은 코르시카 분리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을 받고 도로에 쓰러져 있는 에리냐 서장의 시신을 앞다투어 보도하였는데,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것처럼 도로에 쓰러진 모습을 보도하는 것은 비록 시신일 지라도 희생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1년 2월 20일자 대법원 판결에서는 시신일 지라도 그의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이는 프랑스(및 해외)의 언론계 관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법률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선 저널리스트들은 경찰 서장이라는 국가 공권력의 대표자가 테러리즘 공격을 받은 것은 '사생활 보호'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저널리스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미지들은 언론법에 의해 1만 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그 피해자에게 해당 언론사를 민사 및 형사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¹⁹⁾

세 번째는 사법 재판 시 청증석에서 촬영한 이미지들이다. 이는 법정에서 청증은 일체의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이나 녹음기를 휴대할 수 없다는 형법 제226-1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언론법 제38조에는 이런 형태로 촬영되거나 녹음된 이미지나 음성을

17) TGI Paris 10 juin 1997, et CA Paris 7 janvier 1998, *Légipresse*, 1998-I, p. 149.

18) TGI Paris 17e chambre, Sirven/Paris Match, 20 novembre 2001, *Légipresse*, 2002-III, p. 17.

19) TGI Paris 17e chambre, 24 juin 2003, *Légipresse*, n° 204, 2003-III, p. 120.

보도할 경우에는 언론사에 4만 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촬영 및 녹음의 원본을 법정에서 압수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언론법 제 38조 부록 조항에는 해당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장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촬영이나 녹음을 특별히 허가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²⁰⁾

② 재판 및 수사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의 전달 금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식 자료(경찰의 수사 기록이나 검사의 송고장)의 일부 혹은 전체를 언론사가 전제 보도하는 것은 언론법 제38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저널리스트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취재한 다음 이에 대한 독자적인 기사를 작성한 것은 이 법과는 무관하며, 이는 1931년 7월 2일자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이 조항은 그러니까 언론사가 해당 기록 자체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저널리스트가 취재 과정에서 획득한 경찰이나 검찰의 비공개 자료 혹은 비밀 정보를 보도를 통해 공개하는 것 역시 언론법 제38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사건의 유형에 따라 그 정보 공개 금지의 폭이 보다 포괄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우선 언론법 제38조 2항에는 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활동 및 결정 일체

에 대한 보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는 사법부의 결정이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인데, 언론은 사법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만을 보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만 7천 5십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 구성원들 각자의 의견(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명시적으로 보도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다. 이는 영미권에서 흔히 개별 재판관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을 언론에 표명하는 것과는 지극히 대조적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 가족사(친자관계 확인, 이혼 및 결혼 무효, 낙태, 입양 시 입양 아동의 원래 가족사(史)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재판²¹⁾ 내용의 보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인의 유죄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도 금지되어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명예훼손, 자살, 유기)이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건 자체 및 희생자에 관한 일체의 보도가 금지되어 있다.²²⁾ 마지막으로 군, 경찰, 세관 등의 일부 행정조직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들 역시 언론을 통한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²³⁾

(6) 표명이 금지된 의견

마지막으로 1881년 언론법에 의해 그 표명이 금지된 의견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의견 표명의 자유는

20) 대표적인 사례가 모리스 파퐁(Maurice Papon) 재판이다. 그는 1942 ~ 4년 독일군 점령 당시 보르도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지역의 유대인 색출 작업에 동조한 바 있는데 전후에도 이 사실을 숨기면서 공직 생활을 계속하였지만, 1981년부터 그의 과거가 폭로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그는 보르도 지방법원에 정식으로 기소되었고, 1998년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후세를 위한 역사 교육의 목적”으로 특별히 녹화 및 화면의 TV 방영이 허가되었다.

21) 언론법의 규정과는 달리 ‘가족사’에 해당하는 재판에 대한 보도 금지 조항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난 2001년에 있었던 가수 이브 몽탕(Yves Montand)의 친자 확인 소송을 둘러싼 언론보도 및 법적 분쟁 이후, 이 규정의 적용이 현재는 대폭 강화되었으며 대단히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는 편이다.

22) 이것 역시 관례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다가 최근에 집행이 다시 엄격해졌다. TGI Nanterre 14 mars 2001, Duchemin/Paris Match, *Légipresse*, 2001-I, p. 117.

23) TGI Paris, 17e chambre 8 novembre 1999, *Légipresse*, n° 170-37, 2000-I, p. 104.

앞서 살펴보았듯이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의 금지 조항은 대단히 엄격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한정된 것일 수밖에 없다. 언론법 제정 이후 시대적 변화에 따른 후속 개정 그리고 각종 판례들 속에서 현행법상 표명이 금지된 의견의 종류는 아래 3가지이다.

① 범죄 및 일탈의 선동

언론법 제23조에는 언론 보도가 범죄나 일탈을 선동하여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나왔거나, 아니면 단지 그러한 시도가 행해졌을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 조항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언론 보도가 범죄나 일탈을 직접 선동하여 실제로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인데 이 경우에 언론사는 당연히 언론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만약 해당 언론사가 범죄와 직접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밝혀질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언론법 제24-2조에 따르면, 선동 내용이 다음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 5년 및 4만 5천 유로의 벌금형을 내린다고 규정되어 있다 : 1) 생명에 대한 의도적인 위협, 2) 개인의 인격 전체에 대한 의도적인 위협, 3) 성적인 폭력, 4) 개인에게 위협적인 절도, 강도, 파괴, 훼손 및 손상 행위 그리고 5) 국가의 근본적인 이해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는 범죄 및 일탈.

② 처벌 가능한 변명

또한 공공질서나 개인의 신변에 대한 위협적 행위를 변호하는 언론 기사 역시 언론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변명(apologie)'이라는 개념은 지난 2002년,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재판을 통해 새롭게 규정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변명'이라는 개념은 "독자들에게 전쟁 범죄에 대하여 이 범죄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차원을 제거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호의적인 가치 판단을 유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²⁴⁾ 이후 다음 5개 주제 - 생명 그리고 개인의 인격 전체에 대한 의도적인 위협 및 성적인 폭력이 범죄적인 상황(즉 전시 상황을 말한다) 속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체의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적군과의 내통 범죄 그리고 형법 4부 2항에 명시된 테러리즘 행위 - 에 대한 '변명'은 언론법에 의해 처벌(징역 5년 및 4만 5천 유로의 벌금) 가능하다.

그렇지만 프랑스의 이러한 언론법 조항은 지난 1998년 유럽인권법정에 의해서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1940년 독일군의 파리 점령 이후 수립된 친독·반유대주의적 괴뢰 정부인 이른바 비시(Vichy) 정부의 수반인 페탱(Pétain) 원수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논쟁은 당시 페탱 원수의 보좌관이던 작가 자크 이조르니(Jacques Isomi)가 1985년부터 일간지 <르몽드>에 게재한 일련의 페탱 옹호 논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대법원은 1993년 11월 16일, 자크 이조르니와 <르몽드> 발행인에게 언론법 상의 이 조항을 근거로 처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에 불복한 자크 이조르니는 이를 유럽인권법정에 제소하였는데, 여기서 1998년 9월 23일자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유는 프랑스 법정이 이 사건에 대해 언론법 제24-2조를

24) TGI Paris 17e chambre 25 janvier 2002, *Légipresse* 2002-1, p. 26, n° 190-01.

적용한 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처벌로 판단되지는 않기에 이조르니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럽인권법정은 이 조항에 대하여 회원국 각국의 역사에 대한 평가는 회원국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야 하지만, 이 문제가 보통법 상의 범죄 및 일탈에 대한 변명 조항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③ 반인도적 범죄의 옹호

이 조항은 1990년 7월 13일자로 제정된 이른바 게소(Gayssot) 법 -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및 타인종 혐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는 법안 - 에 의해 언론법 제24조의 부록으로 첨부되었다. 게소 법은 2차 대전 당시의 유대인 수용소의 존재 및 유대인 학살 사실을 부정하는 이른바 ‘수정주의(négationisme)’ 적 주장에 따른 1980년대 프랑스 사회의 논쟁을 반영한 것이다. 언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제24조의 부록에서 모든 형태의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를 옹호하는 주장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1993년 2월 23일자로 이 사항은 유럽인권협약의 제10조 2항에도 추가되었다.

2003년 2월 3일 게소 법의 확장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처벌 대상의 범위는 더욱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인종 차별 및 인종적 증오에 대한 선동, 인종적 모욕 및 상해에 해당하는 언론 보도 역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옹호로 간주된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이러한 주장을 전개한 자가 해당 인종, 민족 혹은 종교 집단에 소속된 자일 경우에 한해서는 ‘인종차별적 의견’으로 간주되지 않는다.²⁵⁾ 언론법 제24-10조에

는 이 조항을 위배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벌금 4만 5천 유로의 형과 아울러, 일시적으로 공민권 정지 및 인쇄 출판의 권리 정지를 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881년 언론법은 프랑스의 언론 활동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지금까지도 그 의미를 잃지 않은 텍스트이다. 이 법은 언론 탄압의 오랜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날로 커져가는 언론 보도의 ‘권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언론 소비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1881년 언론법은 동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언론의 상업주의적 성격에 따른 무책임한 보도, 사생활 침해 등은 일찍이 프랑스 대혁명 직후부터 그리고 19세기 후반기부터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바 있으며, 1881년 언론법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언론 자유가 무제한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만큼, 또한 언론의 거대 기업화로 인해 언론 자유의 수호보다는 언론 자유의 남용이 더욱 문제시될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에서 이 법률은 오히려 후자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언론 보도에 따른 모든 분쟁을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소하고, 또한 언론 자유를 규정한 법 속에 다소 과도해 보일 정도로 세부적인 제

25) 이는 언론법 제24조 6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쉽게 말해서 어느 유대인이 반유대주의적 주장을 펼칠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Légipresse*, n° 199, 2003-IV, p. 15.

한 규칙들을 언론법 속에 설정해 놓은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기본 원칙을 전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최근 프랑스 사회에서는 언론이 '권력에 대한 비판자'를 넘어 마침내 '또 하나의 권력'이 되었다는 비판과 논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언론의 존재 형태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접어든 현대 사회에서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절차의 모색은 이미 전 세계의 공통의 과제로 부상하였으며, 프랑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각국의 사회제도의 특수성 여부를 떠나서 향후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논쟁을 프랑스 사회가 어떤 형태로 수용해 나가고 자국의 제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를 꾸준히 관찰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클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Bigot, Christophe, *Connaitre la loi de 1881 sur la presse*, Paris, Victoires Éditions, 2004.
- Charle, Christophe, *Le siècle de la presse : 1830-1939*, Paris, Seuil 2004.
- Charon, Jean-Marie, *Réflexion et propositions sur la déontologie de l'information*, Rapport à Madame la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1999.
- Derieux, Emmanuel, *Droit de la communication*, 5e éd., Paris, L.G.D.J., 2003.
- Louvier, Jacques et Hovine, Axelle, *Lancer sa publication de presse*, Paris, Victoires Éditions, 2003.
- Müller, Michel, *Garantir le pluralisme et l'indépendance de la presse quotidienne pour assurer son avenir*, Paris,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Juillet 2005.
- Pigéat, Henri, *Médias et déontologie : Règles du jeu ou jeu sans règles*, Paris, PUF, 1997.
- Revue *L'Égipresse*, 1997-2007 (각 연도판).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언론보도의 문제점¹⁾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상담교육팀장, 변호사

I. 들어가며

1. 관점에 대한 해명

본 발제문이 취하고 있는 관점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걸치레를 위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언론보도가 갖는 여러 순기능과 공익에의 기여도를 생각할 때 언론보도는 순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그 문제점만을 지적해야 하는 것은 마음 편치 않은 일이다. '언론의 자유를 죽이는 것은 진리를 죽이는 것이다'라는 밀턴의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언론보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고,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그 정치·사회질서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가치다.²⁾

그러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실의 언론보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보인다. 언론보도라는 것이 헌법 교과서 속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신성하거나, 고결하거나, 완벽하지만은 않다. 언론보

도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 있는 대중들은 언론보도가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고 믿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의도치 않은 오보도 있고, 간혹 오보를 의도적으로 낸 것이 아닐까 의심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언론보도의 속성상 개인의 명예나 초상,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언론보도에 의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상쇄시킬만한 어떤 공익적 이유나 사정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갖는 긍정적 요소에만 집중한 나머지 언론보도에 현존하고 있는 부정적 요소가 부정되거나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처지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언론보도가 제 아무리 신성하고, 필요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가치를 지닌다 하더라도 미시적 관점에서 개개의 언론보도가 공익적 이유나 사정도 없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손해배상이라든가 정정보도 등 법적 책임을 지

1) 본 원고는 지난 1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언론전담재판부)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이다.

2) 허영(2005). 「한국헌법론」(전정신판). 서울: 박영사. p. 540.

는 것이 불가피하다.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경계하는 것이다.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 하나가 겪는 괴로움쯤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야”, “언론보도는 신속성이 생명이라구. 좀 급히 쓰다보면 오보가 생길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이런 주장이 언론보도는 완벽해야 한다거나 무흠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언론보도의 공적 기능도 십분 살리면서 그로 인한 피해 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에 대해서 언론 스스로가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익숙하고 편리했던 기존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히 타파하며 새로운 취재 및 보도 관행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2. 사례들의 출처

본 발제문에서는 피해자 관점에서 문제라고 생각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유형별로 다양하게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실제 피해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언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 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각 사례들의 출처는 대 법원 판결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판결과 필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 센터(이하 ‘상담센터’라고만 하겠다)에 접수된 상담 사건이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 센터는 지난 2004년 4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조직의 일환으로 설치된 언론보도 관련 전문상담기 구다.³⁾ 필자는 상담센터 설치와 더불어 위 센터 상 담교육팀⁴⁾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 만 3년 7개

월 동안 언론보도 관련 피해상담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센터 출범 후 2007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최 근까지 접수, 처리된 상담건수는 대략 8,658건에 이 르고 있다.

이처럼 필자가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상담 을 했거나 다른 상담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본 것들 중에서 특히 살펴볼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 례들을 뽑아보았다. 따라서 약간의 변형이나 수정 과 정을 거쳤지만 거의 실제 존재하고 있는 사례들이라 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피해자 관점 에서는 어떤 보도들이 문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II.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언론보도의 문제점들⁵⁾

1. 불완전한 익명처리의 문제

* (1-1) 서울시 중로문구 소재 언론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았던 양모 교사가 있다. 그런데 이 교사의 학생 에 대한 체벌이 불거져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 중앙일간지 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낸 것이다.

“양모 교사가 서울시 중로문구 소재 언론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중, 과도한 체벌이 문제되어 타 학교로 전출되었다”.

과연 이 기사에서의 익명처리는 해당 교사의 신원을 보 호하기에 충분했나?

* (1-2) 서울대학병원에 거액의 돈을 익명으로 기부한

3) 사무처직제규칙 제2조 제2항

4) 2007. 6. 20. 사무처직제규칙 개정으로 중전의 ‘법무상담팀’에서 현재의 ‘상담교육팀’으로 부서 명칭과 세부적인 업무 내용이 변경 되었다. 현재 공식 명칭은 상담교육팀이고 주로 언론보도 관련 피해에 관한 상담, 언론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언론분쟁 관련 대내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사무처직제규칙 제7조 제3항).

5) 이 장의 내용 상당 부분은 필자가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월간지 ‘신문과 방송’에 기고한 내용과 유사함을 미리 밝힌다.

사람이 있다. 기부자는 익명을 요구했고 이를 존중하여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서울대병원은 17일 서울에 사는 70대 부부가 각각 삼성전자 주식 1만 주씩 2만 주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의 익명처리는 충분했다고 볼 수 있을까?

가. 문제의 제기

일간지 사회면을 펼치면 군데군데 익명 처리된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방송도 마찬가지다.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 기법을 가미한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모두 당사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언론의 조처들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사나 방송을 바라보는 심경은 호못하기보다 다소 불편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안한 말이지만, 언론이 익명보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깊이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신의 가장 큰 이유는 익명처리가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인데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언론의 익명보도가 진정으로 개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보다 더욱더 과감하고, 철저해야 한다.

나. 사례 검토

(1) 사례 1-1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교사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성(姓)과 재직 중이던 학교의 이름 그리고

3학년 담임이라는 사실 정도가 공개되었다. 문제는 이 보도에서 학교 이름이라든가 해당 교사가 3학년 담임이었다는 사실까지 굳이 밝힐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보도의 목적이 교사의 체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사건 자체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름을 제외한 다른 인적 사항이 공개됨으로써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게 되었다. 양모 교사의 자녀와 부모형제, 이웃주민들 그리고 새로 부임한 학교의 동료 교사와 학생들까지 이 기사를 본 사람이라면 그의 신변에 일어난 일들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보도록 한 기사를 두고 단지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익명보도라고 할 수는 없다.⁶⁾

익명보도인지, 아닌지를 단지 보도에 실명이 언급되었는지 여부에 비추어 기계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 즉,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도의 익명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보도의 나머지 내용과 심지어 '주위 사정'까지 고려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문자나 이니셜은 어떨까? 이에 대해서도 판례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⁷⁾이라고 하니 두문자나 이니셜 표시만 했다고 해서 익명성을 항상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 사례 1-2

6) 판례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7)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이 사례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익명처리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라고 생각되어 살펴본다.

해당 보도에는 기부자의 성명이나 주소, 가족관계는 물론 정확한 나이조차 감추어져 있다. 물론, 표시된 약간의 인적사항도 없지는 않다. 기부자들이 삼성 전자 주주였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고, 70대의 노부부라는 사실도 적시되어 있다. 보도 중간에는 기부자 부부의 과거 병력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기부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내용 전개상 꼭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도의 인적사항 표시라면 보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서 사회적으로나 당사자 모두에게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 중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시를 내린 것이 있다.

“기사 작성 상 신원을 밝히지 않고는 사실특정이 곤란한 경우에까지 익명보도를 요구하면 언론매체로 하여금 사실상 범죄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대행하여 충족시켜주는 언론의 공적 과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작성 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원을 밝히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건대,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사에서 적시된 원고의 신원을 추지할 수 있는 요소인 원고의 성 또는 가명, 연령, 학력, 직업과 작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기사 작성 상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익명보도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즉, 소설가인 원고가 컴퓨터 통신에서 글을 발표하고 있던 여성에게 문학에 대해 대화하자며 접근하여 스토킹이 시작되었다는

점, 원고와 같은 연령층의 고학력자로서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스토커로서 독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신원을 추지할 수 있는 위 각 요소들은 위와 같은 기사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⁸⁾

이 판례에 등장한 문제된 사건 기사의 익명처리 역시 불완전했다. 당사자의 신원을 추지할 수 있는 성씨, 가명, 연령, 학력, 직업, 작품명 등이 적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부가 필요한 범위 내로 인정한 것은 범행수법 및 스토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범죄라 할 수 있었던 ‘스토킹’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공익적 의미가 해당 보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사자의 인적사항 기재는 해당 사건 보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선에서 그쳐야 한다.

다. 정리

한 기자의 말을 들어보니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인이건 사인이건 사회면 기사에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실리곤 했다고 한다. 지금은 관행이 많이 바뀌어서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실명을 거의 쓰지 않는다. 그러나 성씨나 나이, 주소, 직업, 직장명 등 당사자를 추지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하지만 그러한 인적사항 기재 역시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 아마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나이의 표시, 상세한 주소의 기재도 많은 경우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해당 인물의 직장명과 직위까지도 최대한 감춰야 한다. 방

8) 서울지방법원 2001.12.26. 선고 2001가합25387 판결

송이라면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 변조를 아슬아슬하게 하지 말고 보다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도에서의 익명처리가 보다 더 과감하고, 완벽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라. 보론

이 익명성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피해자의 특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즉,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보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그 보도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가 불특정 되어있다면 나머지 요건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피해자 특정에 관한 판결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보도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시하면서 정작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읽어 본 사람 중 적어도 원고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기사에서 말하는 ‘최모 교사’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⁹⁾

“이 사건 각 기사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K아파트’ 또는 ‘서울 독립문 K아파트’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과 그 주변사람들로서는 K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인 ‘독립

문 극동아파트’를 지칭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¹⁰⁾

“그밖에 달리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원고 회사를 지칭하는 표현이나 장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반 시청자들이 위 방송 부분을 보고 해당 업체가 바로 원고회사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¹¹⁾

누구를 기준으로 인식가능성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피해자 특정 여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피해자를 잘 모르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성씨나 나이, 주소, 직업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표시한 언론보도에서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잘 아는 주변 인물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피해자 특정은 다소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특정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건으로는, 이 피해자 특정이 결국 명예훼손의 문제인 만큼 피해자 자신이라든가 가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고 직장 동료, 친구, 동창, 이웃 주민들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판례에서 ‘주변 사람’이라고 한 것이 정확히 어떤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을 ‘주변 사람’으로 보는 것도 무난할 것이다.

2. 작위적 익명보도의 문제

* (2-1) 웰빙 붐을 타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이 가운데 한 회사의 돌침대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와 사실

9)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10)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0. 선고 2005가합26111 판결

기관에서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방송이 되었으나 해당 회사의 이름은 익명처리되었다.

* (2-2) 소문으로만 떠돌던 병역비리의 진상이 밝혀지려 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기무부대 소속 현역 장성 3명 정도가 비리에 가담했다고 한다. 이에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 3명이 병역비리에 연루되었다', '기무사 A장군은 보좌관을 시켜 군 병원 진료부장에게 압력을 넣어 친척을 의병 전역시켰다', '모 기무부대장 B장군과 C장군도 입영대상자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자 한다.

가. 문제의 제기

앞에서 익명보도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익명보도만이 능사는 아니다. 때로는 실명보도를 해야 하고, 실명보도를 하지 않고 익명보도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 특히 모든 익명보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익명보도는 취재가 불완전하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보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언론보도의 기본인 진실성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기보다 모호한 익명성 뒤에 숨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익명보도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보도를 두고 '작위적(作爲的) 익명보도'라고 명명하기도 하는데,¹²⁾ 연예인 관련 보도 등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 같다. 이때의 익명보도는 독자나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더욱 부추긴다. 본래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제안되었던 익명보도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변질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익명보도는 양날의 검과 같이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쪽은 당사자를 지키는 선한 칼날이지만, 다른 한쪽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결국엔 당사자를 더욱더 해치고야 마는 무서운 칼날과도 같다. 그러므로 익명보도는 남용되거나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사례 검토

(1) 사례 2-1

특정 회사의 돌침대 제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안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서 매우 공공성이 있으며 국민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공적 관심사라 할 만하다. 즉, 사안의 성격상 일단 보도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보된 내용의 신빙성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돌침대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보아야 하고, 만일 그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면 검증된 연구소라든가 국가 공인 실험실에 제품 실험을 맡겨 귀추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그 결과 해당 제품에서 실제로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이때는 해당 회사의 이름을 '밝혀' 보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기자는 보다 쉬운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제보된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별도의 검증 없이 일단 보도하고 보는 것이다. 단, 해당 회사의 제품명이나 회사 이름은 철저히 익명으로 한다. 이런 보도가 나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돌침대 제품이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의심을 받는 피해상황이 벌어진다. 문제의 심각성은 방사능 방출이 의심되는 제품을 만든 회사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의 이름이 익명처리되는 바람에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

12) 차용범(2002, 겨울). 연예기사의 익명보도와 실명보도. 『언론중재』, 통권 85호, p. 21.

까지도 소비자들의 의심을 받아 판매실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데에 있다. 또, 법률적으로만 생각하면 완전한 익명처리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해자가 없을 수도 있다.

사건으로는, 이와 같은 사안에서 기자나 언론사는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해보고 만일 해당 제보 내용(돌침대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해당 회사의 이름을 밝혀 실명보도하는 것이다.

(2) 사례 2-2

잘 알다시피 지난 99년도에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한 방송사에서 특종을 한 것인데 익명처리에 문제가 있어 그만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소송에서 방송사 측은 “보도에서 원고들을 특정한 바 없고 단지 그 중 일부만을 지칭하여 A, B, C 장군으로 표시하면서 장성 3 ~ 4명이라고 그 수까지 밝혀 보도한 이상 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다투었다. 이 소송은 방송사의 패소로 끝났다. 상당히 일리 있는 항변이었음에도 방송사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사안에서 익명처리 자체는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병역비리에 연루된 장군들의 성(姓)이라든가 이니셜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그저 기무부대 소속의 A, B, C 장군이라고만 표시되었기 때문에 병역비리에 연루된 기무부대 장군이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주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다. 이 사건 보도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병역비리에 연루된 장군들이 아닌 나머지 비리와 무관했던 기무부대 장군들이 방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보도에서 비리에 연루된 당사자들을 특정하지 않은

채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 3명이 병역비리에 연루되었다’고 막연하게 표시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방송사가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보도로 인해 결백한 기무부대 장군들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우리나라 기무부대 장군은 불과 8명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기무부대 장군 8명 중 병역비리에 연루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전원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직업, 학력, 지연, 출신 등에서 유래하는 공통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하여 그 집단에 속하는 일부 구성원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명예훼손 사실이 보도된 경우, 그 보도로 인하여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 모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수(집단의 크기), 그 집단을 다른 집단이나 단체와 구별하게 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공통 요소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¹³⁾

개인적으로 이 같은 사안에서도 관련자들의 이름을 밝혔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최소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기무사 장성 정도면 공인이거나 공적 인물에 해당될 것인데 굳이 신원을 숨겨줄 이유가 없다. 문제는 혐의 사실이 얼마나 믿을 만한 지인데 신빙성만 충분하다면 당당하게 실명보도하는 편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 는 아쉬움을 갖게 하는 사건이다.

다. 정리

익명보도를 할 것이냐, 실명보도를 할 것이냐의

13) 서울지방법원 2000.10.18. 선고 99가합95970 판결

문제를 놓고 기자들 역시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다.¹⁴⁾ 그러나 그 고민의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당사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사실 여부가 불확실할 때 기자들은 실명으로 보도할 것인지, 익명으로 보도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같은 고민의 방향은 좀 잘못된 것 같다.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취재가 미진하다면 보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보도 자체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실명으로 할 것인지, 익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당 내용이 사실임이 확실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public interest)의 범위 문제

* (3-1) 모 대학병원에 거액의 돈을 익명으로 기부한 사람이 있다. 기부자는 익명을 요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담의 주인공을 알고 싶어 한다. 기자인 당신은 기부자의 신원을 공표할 것인가?

* (3-2) 한때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드라마의 여주인공 역할을 맡은 스타였지만 지금은 연예계를 은퇴하여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화제의 드라마가 최근 리메이크되면서 대중적 관심이 이 사람에게로 쏠리고 있다. 여러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고 하는데 기자인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 (3-3) 가수 A씨는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가요계에 입문한 후 여러 차례 10대 가수, 올해의 가수 등에 선정된 바 있는 연예인이다. 이런 그가 최근 한 케이블 TV와의 인터뷰에서 '애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대답했을 뿐인데, 며칠 후 한 신문에서 「A '신부' 공개」라는 제목으로 A씨 및 그의 애인 B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이들이 조만간 결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A와 B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될 수 있을까?

가. 문제의 제기

언론의 사명 내지는 역할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적 관심은 언론보도를 존재케 하고 나아가 정당화해줄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것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 해도 그것이 곧 보도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¹⁵⁾ 다시 말해, 모든 대중의 관심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공중의 관심사 중에서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호기심'(curiosity)이라고 부르고 싶다. 만일 이러한 호기심만으로 인해 누군가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같은 인격권이 훼손되었다면 유감스럽게도 이때의 언론보도는 공공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며 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와 단순한 호기심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나. 사례 검토

14) 최영훈(1999, 가을). 취재현장에서 본 명예훼손소송. 『언론중재』, 통권 72호, pp. 13 ~ 15.

15) 판결에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고 믿는다.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9.4. 선고 96다11327 판결)

(1) 사례 3-1

이 사안은 지난 2005년 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한 노부부가 서울대병원에 암 연구기금으로 써달라며 88억이라는 거금을, 그것도 익명으로 기부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공명심조차 품지 않고 거액을 내놓다니 정말 가슴이 훈훈해지는 미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기부자는 익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기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만 기부 사실만을 보도했다. 그런데 며칠 후 한 중앙일간지는 기부자의 신원을 사진 및 이름과 함께 보도했다.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조차 기부자의 신원을 공표한 것이 보도윤리 위반은 아닌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단지 보도윤리 위반 여부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부사실 자체를 넘어 기부자가 누구였는지까지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일 수 있는 가라는 점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보도의 위법성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기부자의 신원에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기사를 정당하다고 볼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결국, 이 사안은 특종을 노린 기자의 과도한 취재욕이 가져온 인격권 침해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2) 사례 3-2

공인이라든가 공적 인물의 사생활 일부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공인인 사람은 사생활마저도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는 결혼 예정 사실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공인과 사인(私人)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공인의 신분엔 있는 자가 자신의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공개를 거부하며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처럼 과거 공적 인물이었던 사람은 좀 다르다. 오래 전에 전 국민적 관심을 끌던 드라마가 다시 리메이크 되면서 덩달아 종전 드라마의 여주인공 역을 맡은 여성이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여성은 연예계를 떠난 지 20년 가까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과거 연예인이던 시절처럼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곰곰이 음미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원고는 1978년경부터 TV 탤런트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88년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한 후 일체의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아, 원고는 더 이상 공적 인물이 아니라 할 것이고 공적 인물이 아닌 원고의 사생활에 대하여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의 사생활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¹⁶⁾

(3) 사례 3-3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언론사는 A씨의 결혼 예정 사실을 보도했다. 인기 스타의 결혼 예정 사실 정도라면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이기에 설령 그것이 프라이버시에 해당된다고 해도 그것을 공개한 언론사를 비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소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 것이다. 그러면 인기 스타가 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

닌 B씨의 경우는 어떨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B의 경우 역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이 사귀고 있는 A가 인기 스타라는 것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았다면 어느 정도 대중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 B가 1996. 미스코리아 대회에 뉴욕 진으로 참가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원고 B를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원고 A와 결혼할 사이라고 해서 공적 인물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들로서는 원고 A의 결혼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의 실명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달리 원고 A가 결혼할 상대가 바로 원고 B라는 것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¹⁷⁾

다. 정리

언론이 보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때마다 꺼내드는 카드가 ‘국민의 알권리’다. 최근에 논란이 된 바 있는 ‘신정아 누드 사진 보도’ 이후에도 해당 신문사는 “선정성 부분에 대해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고 공익 또는 국민의 알권리에 기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밝혔다.¹⁸⁾ 그러나 언론이 이해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혹시 대중의 호기심을 알권리로 혹은 국민의 정당한 관심(public interest)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위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와

단순한 호기심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확실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한다 해도 그것이 곧 보도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말이 쉽지 특종을 해야 하고, 특종을 요구하는 언론사 내부의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을 단지 그것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재를 거부하고 기사를 쓰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기자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계 전반적인 관행과 분위기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종을 노리거나 낙종을 피하기 위해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언론 스스로가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인지 여부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편집권의 한계와 진실보도

* (4-1)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져 있던 A를 경찰관이 B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병원 측의 진단 결과, A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의존증도 있었다. 그런데 A의 신원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고 하나뿐인 친척집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정신보건법에 따라 병원 측은 A를 4년간 입원치료 해주었다. 입원치료기간 동안, 병원 측은 A의 진짜 이름 대신 경찰서로부터 최초 인계받을 때의 서류에 기재된 C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 사건의 전말을 확인한 기사는 정신보건법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정신병원에 4년간 강제 수용되었고, 영터리 이름으로 관리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

17) 서울지방법원 2001.12.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

18) 2007.9.13.자 기자회견보

를 진실보도라고 할 수 있을까?

* (4-2) 모 시청의 시장이 시의회를 긴급 소집했다. 일정을 살펴보니, 시의회가 소집된 일자가 공교롭게도 해당 시청에 대한 중앙의 감사일정과 겹쳤다. 이에 중앙의 감사를 회피하려고 시의회를 긴급 소집했다며 해당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기사를 보도했다면, 이 기사는 진실한 보도일까?

* (4-3) 다포리(多捕里) 어촌계장 선거에 출마한 갑과 을의 선거전이 치열하다. 서로를 비방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갑 후보의 진영에서 을 후보가 이전 어촌계장 재직 시절 어민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심지어 유용하기까지 했다는 정보가 흘러나왔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구정, 추석 명절 때마다 어촌계 이사, 감사 등에게 지급한 떡값이 도합 8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상세한 사건 내막을 제보 받은 기자는 '다포리 어촌계 보상금 운영 방만', '어촌계원들에게 명절 떡값으로 수천만 원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유용한 돈의 전체 금액은 맞지만 연도별 지급 액수가 사실과 달랐다. 이때 이 기사는 진실보도일까?

가. 문제의 제기

기사는 진실해야 하고, 이를 읽고 보는 독자들도 진실할 것으로 믿는다. 기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만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함 없이 '진실'이라 말하고 싶다. 진실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진실하지 않은 기사는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에 빠지게 한다. 해당 언론사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제 아무리 탁월한 식견과 안목을 가진 논설위원이

나 기자라도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논설이나 해설 기사를 쓸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이쯤에서 진실한 기사가 도대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이 뻔해 보이는 질문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을 느낀다.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신문 지면이나 뉴스 화면에 사실 그대로 옮기는 것이 진실인가?

나. 사례 검토

(1) 사례 4-1

위 사안을 살펴보면, 한 눈에 사건의 많은 부분이 보도 시에는 빠졌음을 알 수 있다. 취재기자가 확인한 여러 사실 중에서 취재의도에 맞는 몇 가지 사실만이 기사화된 것이다. 이 보도로 입장이 곤란해진 B 정신병원으로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기사에서 누락된 것이 무척이나 아쉬웠을 것이다.

- A를 병원 측에 인계한 것은 경찰이었다는 점
 - 진료기록에 A의 이름을 엉터리로 기재한 것 역시 경찰 측의 잘못이 크다는 점
- (경찰이 작성한 행려병자 인계서에 A의 이름이 C로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이러한 점들을 기사에서 누락함으로써 B 정신병원 측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해주지 못한 해당 언론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었을까?

"무릇 방송보도에 있어서는 취재된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인바, ... 이 사건 방송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¹⁹⁾

취재의도에 맞는 기사 작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생략이 가능함을 확인한 판례다. 이 사안의 특징은 생략은 있을지언정 허위는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략을 넘어 허위사실이 기사에 개입되게 되면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2) 사례 4-2

이 사안에서 해당 기사가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사실은 일단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이 시의회를 소집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일정이 중앙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감사일정과 겹쳤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진실했다. 그런데 시장이 추경 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의회를 소집했다는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면 이 기사는 어떻게 될까? 일단, 지방의회를 소집한 이유 부분에 있어서는 참이 아닌 거짓의 사실이 적시되었다. 그래도 기사에 언급된 다른 사실들은 진실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무방하지 않은가?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가 그저 부분의 오류, 지엽적인 오류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기사가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 다시 말해 해당 지자체장의 시정 운영에 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했고 적절한 평가 또한 내리지 못한 셈이다.

몇 가지 사실에 있어서 진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진실해야 진실보도라고 할 수 있다. 부분의 진실이거나 단순한 외형적 진실이 아니라 그 동거나 사건 전체의 올바른 모습을 표현한 것이어야

진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략이 아닌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이 보도에 끼워져 있다면 진실보도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사례 4-3

기사 내용 중 일부분에 있어서의 오류조차 경계해야 함을 위에서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항에서의 오류쯤은 용납될 수 있는 것처럼 판단내린 판결들이 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수는 없다.”²⁰⁾

아마도 기자의 눈에는 이 판시사항 중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부분이 눈에 띄어 들어올 것이다. 우리 법원의 일관된 판시태도이기는 하나 이것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싶다.

사안에서 문제된 기사를 생각해보자. 지면 관계상 자세하게 풀어쓰지 못했지만, 해당 기사에는 총괄적인 사실(떡값으로 지급된 돈의 전체 금액, 대강의 지급처)과 세부적인 사실(연도별 액수와 돈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총괄적인 사실은 맞지만 세부적인 사실은 틀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도별로 누가 얼마를 떡값으로 받았는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실이 바로 위 판결에 적시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점에 해당되어야만 언론사는 면책 받을

19) 부산지방법원 2006.2.15. 선고 2005카합2383 판결

20)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판결

수 있다.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

“(세부적인 사실은) 총괄사실의 근거가 되는 세부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 각각 당시의 여론계 장인 ○○○과 총대인 ◇◇◇, □□□, △△△, ▽▽▽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되는 것으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이라거나, 총괄사실의 세부에 불과하다거나, 혹은 총괄 사실을 다소 과장시킨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²¹⁾

전체적인 대강의 액수가 맞더라도 연도별 액수가 다르고, 특히 돈 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이 받은 액수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 정리

대부분의 세상일은 겉보기와는 달리 복잡하다. 안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복잡하다. 그 복잡한 사건의 전말을 있는 그대로 지면 혹은 화면에 옮기는 것은 여차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보도에서 생략과 취사선택을 위한 편집권의 행사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로 인한 본질적인 진술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이고, 나아가 기사에 오류가 개입되는 것이다. 아무리 편집권이 언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하다고 보아야 한다.

5. 상당성과 언론보도

* (5-1) 유해식품사범 단속을 벌인 검찰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개의 번대기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다. 언론사들은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관련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모두 무죄로 종결되었다. 이 경우, 검찰(대한민국)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언론사는 오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가?

* (5-2) 아직 10대인 조모 양은 가출 후 한 남자를 알게 되어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 중 조모 양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동거남과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모 양의 아버지는 딸을 집으로 데려왔고 혼인신고무효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된 기자는 조모 양의 아버지가 딸을 ‘강제로’ 집에 가두고 ‘일방적으로’ 혼인무효신청을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 문제는 취재과정에서 기자가 조모 양의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조모 양이 집에 있었던 것이나 혼인무효신청을 내게 된 것 모두 그녀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가. 문제의 제기

상당성은 언론의 입장에서 오보에 대비한 안전장치와 같다. 만일 상당성에 근거한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보가 발생한 경우 언론의 입장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상당성을 어떤 근거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나. 사례 검토

(1) 사례 5-1

잘 알다시피 지난 98년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21) 대법원 1999.10.22. 선고 99도3213 판결

포르말린이 나왔다고 보도된 업체들은 모두 도산했다. 언론보도의 과급력은 이처럼 막강하다. 아무리 건설한 기업체라 하더라도 보도 한 번 잘못 타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듯하다. 문제는 당시 보도들이 다 오보였다는 것이다. 검찰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여러 언론사들은 마치 통조림 제조업체들이 포르말린으로 방부처리를 한 것처럼 앞 다투어 보도했지만, 후에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포르말린은 들어있지 않았다. 포름알데히드라는 성분²²⁾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고, 이 성분은 천연상태의 식재료에서도 얼마든지 검출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 포름알데히드가 통조림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곧바로 제조업체들이 인위적으로 넣었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오보를 내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수사를 잘못한 국가(검찰)에 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도에 앞서 좀 더 확인을 해보지 않은 언론사 역시 껴썹할 수 있다. 그래서였을까. 피해자들은 국가와 더불어 관련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 결과,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만 이겼을 뿐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모두 졌다. 특히 '발암 통조림'을 운운했던 두 개 신문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까지 다투어보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언론이 보도에 좀 더 신중했더라면, 다시 말해 당사자 본인에게 확인이라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피해자의 생각일 뿐, 법원은 국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보도의 상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안의 핵심은 국가기관이 작성, 배포하는 보도자료가 상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당성을 인정했다.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은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유해식품에 관한 것으로서 보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보도 자체에도 긴급과 신속을 요한다 할 것이고, 그 취재원이 이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지휘한 부장검사인 데다가 … 수사를 마친 후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위 부장검사가 출입기자 전부를 불러 모아 놓고 …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 일문일답하는 기회를 부여하며, 압수한 통조림을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신뢰도가 높고, 더욱이 … 관련자들에 대한 보충취재를 통하여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분별하여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점, 기타 … 다수의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검찰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관하여 일문일답 과정을 통하여 보충하거나 의문을 해소하는 절차를 나름대로 거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확인하는 취재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 그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²³⁾

지금까지 판례는 대체적으로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나 국가기관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에 대해 상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가 갖고 있는 공신력, 엄청난 인적·물적·법적 체계에서 나오는 신뢰성 등을 고려하면 일응 타당한 결론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경향이 언론의 국가기관 보도자료에의 의존도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회의적인 생각을 품게 된다. 다카츠키 타다나오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이 한국 언론의 취재방

22) 포름알데히드와 포르말린은 전혀 다른 성분이라고 한다. 포름알데히드는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천연성분이고,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야 만들어지는 인공 합성물이다.

23) 대법원 2003.10.9. 선고 2003다24406 판결

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쓴 소리를 했다²⁴⁾는 것을 보면 필자의 의심이 사실무근은 아닌 것 같다. “기자들이 앉아있는 곳까지 당국자들이 찾아오고 배경설명을 빈번하게 해 줍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앓은 채로 기자가 당국자들을 불러내 설명을 시키고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발표 자료가 기사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 일부만 바꿔 그대로 자신의 기사로 하는 예도 있을 것 같은데, 이는 기자의 윤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절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도, 보도자료를 내는 측도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의심이 사실이라면 정책적인 면에서라도 이것은 점차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제는 국가가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취재 관행을 확립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가가 제공한 정보를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당성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 사건에서처럼 보도의 여파로 오랜 시간 터를 닦은 기업체들이 순식간에 도산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태 앞에 단지 언론사들은 상당성을 근거로 결과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던지고 싶다.

(2) 사례 5-2

판례를 읽다보면, 문제된 기사 중 상당수가 사건 당사자 본인을 취재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였다. 솔직히 이것은 의외다. 물론, 그 주된 원인은 기자에게 있기 보다는 사건 당사자에게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당사자 본인을 취재하고자 접촉했으나 소재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거나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는 기자들의 호소를 자주 접한다. 그러나 그런 사정만으로 쉽게 면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단 사건 당사자 본인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사는 불성실한 보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판례는 당사자 본인에 대한 취재과정을 생략한 이 사건 보도의 상당성을 다음과 같이 부정했다.

“일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미리 조사, 점검하여야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기본적 책무라고 할 것이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담당 기자가 미성년자인 ○의 보호자인 원고를 만나보는 등의 필요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²⁵⁾

또 다른 판례에서는 당사자 본인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으나 알 수 없어 불가피하게 생략했다는 언론사 측의 항변을 “(소재를 파악하려는) 방법이 부적절하였거나 그 노력을 다하지 못하여 실패하자 … 만연히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배척했다.²⁶⁾ 당사자 본인에 대한 취재는 상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최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초상권 관련 문제

* (6-1)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다. 강풍까지 불어 체감

24) 다카츠키 타다나오(2007, 8월). 주한 특파원에게 듣는다.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0호, 서울, p. 92.

2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26)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기온은 더 뚝 떨어졌다. 이런 계절이면 방승이나 신문에서 의례히 보도되는 것이 날씨스케치다. 오늘 아침 평균기온이 몇 도라는 통계수치보다는 잔뜩 웅크린 행인들의 모습, 코트의 깃을 세우고 총총 걸음으로 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실감한다. 이런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마침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며 웅크리고 서있는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 눈에 띄어 즉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 여성의 사진 동의는 물론이고 촬영 후에도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행동이 그 여성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가?

* (6-2) 신입생 환영식에서 음주를 강권당한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모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이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으로 신입생 환영식의 폐단을 취재, 보도했다. 문제는 작가가 학생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신세대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는 환영식 장면을 취재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일까?

* (6-3) 기사에 삽입할 사진이 급해 DB를 검색해보니 아주 괜찮은 사진이 발견되었다. 사진의 입수경위도 분명했다. 1년 전, 동료 기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찍은 사진이다.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당시 기사와도 관련 있는 내용이고 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사용했다. 당사자의 초상권 침해일까?

가. 문제의 제기

내용이 아무리 좋고 사회적 반향을 크게 일으킨 사진이라도 그 속엔 윤리적,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

다. 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많은 사진들이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기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작년 가을, 언론중재위원회 세미나에서 만난 한 기자와 이 문제에 대해 잠시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기자의 주장 요지는 이랬다. “초상권 문제에 얽매이면 사진을 못 찍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초상권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 생각된다. 물론, 과거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틀을 정립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진을 찍으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도 없는 현재의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할 것이다. 그러나 초상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진을 찍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취재방식의 문제점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된다.

나. 사례 검토

(1) 사례 6-1

초상권 침해로 조정이 신청된 사례 중에서 '길거리 사진'이 문제된 경우가 많다. 미니스커트가 유행이라며 한 여대생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걷는 장면을 촬영한 사건(2006서울조정103), 벚꽃이 활짝 핀 여의도 윤중로를 걷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문제된 사건(2006서울조정130), 무더운 여름날 음료수 컵을 들고 길을 걷는 젊은 여성 3인을 촬영하여 조정이 신청된 사건(2006서울조정259) 등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2007서울중재6)도 그 중에 하나다.²⁷⁾

27) 필자는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그곳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길거리 사진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관한 호주와 뉴질랜드 언론인들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이에 대해 『시드니모닝헤럴드』 편집장인 Sam North와 뉴질랜드 언론평의회 한 위원은 거리나 공원은 Public place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진을 찍어도 무방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언론인들이었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공통되었다. 이에 대한 우리 언론의 입장은 무엇일까 궁금하다.

아마도 이런 유의 사진 촬영에 관해 기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별 거리낌이 없었을 것이다. 촬영된 장면이 개인의 평판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한 것인데 번거롭다거나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기인한 회피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 같다.

촬영된 장면이 개인의 평판과는 무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초상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다. 초상권은 명예와는 별개의 인격권이다. 다시 말해, 그 내용이 당사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지 않아도 초상권 침해는 인정될 수 있다. 명예권과 초상권은 서로 완전히 다른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타인이 자신의 용모, 자태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널리 공포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정신적 평온이 방해를 받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상의 이익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라고 할 이 상당하다."²⁸⁾

관결문의 실시 중에 핵심 구절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다. 초상권은 넓은 의미에서의 자기결정권이다. 내 얼굴이니까 그것에 대한 촬영 여부와 공표 여부를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이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 문제다. 따라서 내용에 상관없이 동의 없는 촬영 및 보도는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라 할 수 있다.

(2) 사례 6-2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동의만 있으면 문제는 안 생기는 것일까?

이 사안을 살펴보면,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다. 동의를 얻었으니 다 된 것일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촬영에 동의 내지는 협조한 학생들은 프로그램 제작진의 말에 속은 것일 뿐이다. 만일 본래의 제작 의도를 정확히 알았다면 십중팔구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조차 동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원고들은 ... 여흥장면 및 식사장면이 방송되는 것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신세대 대학생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노는 신입생 환영회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방송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은 「공포의 통과외레」라는 제목으로 방송함으로써 ... 원고들의 ... 초상권을 침해하였다."²⁹⁾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르면, 무릇 속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각을 일으켜 표시한 의사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사후에 취소하여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았다는 구색만 갖추려고 급급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언론에

28)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5.11.24. 선고 95가합13495 판결

29)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7.8.7. 선고 97가합8022 판결

대해 불신만 키울 뿐이다. 취재의도를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동의 받는 관행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한다.

(3) 사례 6-3

전에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이제는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여대생인데, 입시철만 되면 대입수험생이 된다는 것이다. 몇 해 전, 자신이 고3일 때 수능시험 성적표를 긴장된 표정으로 펼쳐보는 모습이 찍혀 보도된 이후로 해마다 수능 시즌이 되면 자신의 사진이 신문지면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소 황당한 해프닝이 앞으로는 더욱 빈번해질 수도 있다. 각 언론사마다 수십 년 전 자료까지 DB화하여 오래 전의 기사나 사진, 영상들까지도 쉽게 검색이 가능해졌으니 말이다. 취재 및 보도의 효율성이 증진된 것은 좋은 일이나 초상권이라든가 개인의 인격권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으니 무작정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

DB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촬영 당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인 사진이나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을 다시 받아야 한다. 과거 한 번의 승낙이 오늘의 작업에까지 효력이 미칠지 여부는 그 사람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의 동의할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한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⁰⁾

7. 기타 문제점들

가. 탈북자 관련 보도

북한 관련 보도에 있어서 탈북하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신원이 공개되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북측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협한 지경에 빠졌다는 호소가 몇 번 있었다. 이것 역시 앞에서 다룬 철저한 익명보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다만, 일반적인 익명보도의 문제보다도 탈북자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보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꼭 탈북자 관련 보도가 아니더라도 보도가 나간 후 관련자의 처벌이라든가 죽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는 다른 경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탈북자의 신원이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는 사전에 얼마든지 예측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뻔히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도로 인한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는 신중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 미성년자 관련 보도

TV 뉴스 시간이면 초·중학생들이 까불며 인터뷰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9.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하는 장면을 가끔 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는데, 과연 해당 기자가 부모나 담임선생님, 학교 측의 동의를 얻었을까 하는 의심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얻지 않았을 것 같다.

이것은 미성년자들의 초상권 내지는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격권과 관련된 사안이다. 인격권에 관하여서는 설령 보도 내용이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으면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동의의 법적 성격이다. 인격권에 관한 동의의 법적 성격을 다수의 견해는 법률 행위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완전하고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³¹⁾ 그렇다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뷰에 응한 미성년자들의 행위는 유효할까?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뷰에 응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즉, 당장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민법 제141조). 이것은 보도가 나간 후에도 마찬가지다. 취소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보도라면 언제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취재에 관한 관행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취재에 앞서 일단, 학교 측에 취재의도를 정확히 설명한 다음 협조공문을 띄우고 학교에서 촬영에 관한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절차를 갖추는 것이 당장은 번거롭고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신뢰를 더욱 높이 쌓아가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Ⅲ. 나오며

1. 우리 언론보도의 현실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

판결이나 조정사건, 상담사건에는 우리 언론보도의 현실이 투영되어 있다. 이미 많은 경우 소송으로까지 번져 언론사들이 패소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현실은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져 왔거나 별 문제시 되지 않았던 취재관행과 보도관행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쇄신은 언제나 쉽지 않다. 부단한 자기반성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거나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본다는 심정으로 분쟁에 뛰어들어 사건을 무마시키고 해결하는 데에 집중할 뿐, 분쟁이 종료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면 절망스럽다. 모든 분쟁이 항상 그러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언론보도 관련 조정이나 소송은 기존 관행에 대한 나름의 피드백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새로운 취재 절차나 관행을 정립하는 것이다. 인물사진을 찍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을 것인지 정립해나가야 한다. 인터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확보된 언론사 내 DB의 자료를 사용할 때에도 당사자의 명예나 초상권 등을 고려하여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세워야 한다. 새로운 관행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 이 길에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과 학자들의 연구물일 것이다. 특히, 법원의 판결이 개별적인 사안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보도 관행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31)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법학』, 제39권 1호, 서울대학교, pp. 204-205.

2. 언론에 대한 부탁

대선을 한 달 여 앞두고 있기에 정국이 어수선한 데다 개인적으로는 김용철 변호사에 의한 삼성의 비리 폭로로 인해서 더욱 어수선함을 느낀다. 이럴 때 역시 믿고 의지할 것은 언론의 충실한 보도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언론보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디서 삼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각 대선후보자들의 신상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드는 생각이 이 발제문에서 지적한 것이 너무 미미한 것들,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사소한 지적은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이라고 했던가. 언론의 막중한 기능과 사명에 비추어 지나치게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다보면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수도 생길 수 있다는 노파심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론이 결국 추구해야 할 것과 각 개인의 인격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언론의 막중

한 사명이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고, 점점 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으로서의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작은 실수조차 엄정히 다루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발행되는 신문들 중 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뉴질랜드헤럴드』의 John Gardner 편집부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자신의 신문사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지도 않고서는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를 썼다가 거짓이 탄로 나는 바람에 해고되었다고 한다. 또, 그가 한 말 중에 'accuracy is very important'라는 짧은 문장이 가슴에 깊이 남는다.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제도조차 없는 그곳에서 보도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언론사에 직접 항의를 하고, 많은 항의가 언론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았다. 법규나 제도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지만 언론사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독자들의 불만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를 한참이나 앞서가고 있었다. 언론의 역할이 아주 대단하고 막중할지라도 작은 실수조차 허용하지 않고 한 사람의 초상권, 인격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세심한 우리 언론이 되기를 바란다. □

2007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및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국신용정보(주) 리서치사업본부에 의뢰해 최근 1년 여 간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했던 신청인, 피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에서는 ‘조사개요’, ‘조사 결과 요약’ 등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언론 조정·중재제도의 이용만족도 평가
- 상담 및 교육 등 고객서비스 점검
- 위원회 정책과제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 활용
- 2006년도 이용만족도 조사 이후 위원회 업무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를 축적함으로써 업무 개선방향 설정

2. 조사설계

- 조사대상
 - 최근 1년간(2006. 7. 28.~2007. 7. 31.)
조정/중재 신청인 499명
 - 최근 1년간(2006. 7. 28.~2007. 7. 31.)
조정/중재 피신청인(언론인) 378명
 - 최근 5개월간(2007. 5. 1.~2007. 9. 30.)
상담이용자 63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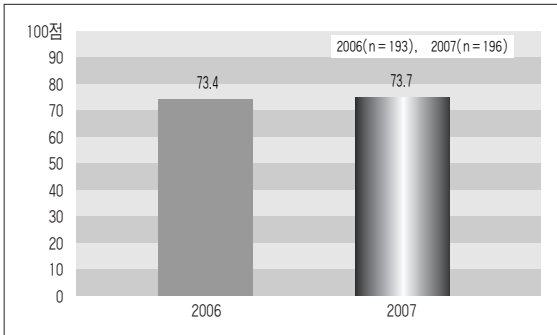
- 최근 1개월간(2007. 11. 1.~2007. 11. 23.)
교육수강자 352명(일반인 202명/언론인 150명)
- 조사응답자
 - 신청인 : 196명 (회신률 38.7%)
 - 언론인 : 115명 (회신률 30.4%)
 - 상담이용자 : 342명 (회신률 53.8%)
 - 교육수강자 : 300명
- 조사방법
 - 신청인/피신청인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
 - 상담이용자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교육수강자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현장
조사
- 조사기간
 - 2007년 10월 29일~11월 21일
- 주관 및 수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 한국신용정보(주) 리서치사업
본부

II. 조사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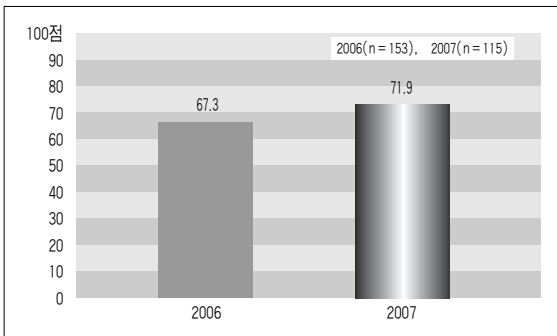
1. 조정(중재) 종합만족도 및 차원별 중요도/만족도

1) 조정(중재) 종합만족도

〈신청인〉 조정(중재) 종합만족도



〈피신청인〉 조정(중재) 종합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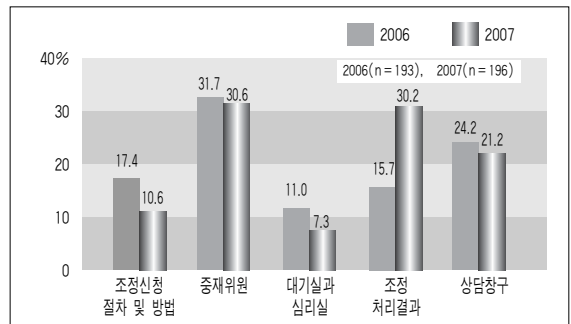
종합만족도를 산출하기 위해 문항을 각각의 차원(신청인 5개 차원, 피신청인 3개 차원)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차원별 평가점수(5점 척도 5점 만점)에서 각각의 차원과 체감만족도(전반적 만족도)의 상관계수² 값을 이용하여 산출된 중요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한 결과, 신청인 196명의 종합만족도는 73.7점, 피신청인 115명의 종합만족도는 71.9점으로 조사되어 신청인의 종합만족도가 피신청인보다 다소 높은(+1.8점)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06년 대비, 피신청인의 만족도는 46점 상승하였으며, 신청인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 차원별 중요도

차원별 중요도는 각 차원별 만족도 응답 점수(5점 만점)와 체감만족도(전반적 만족도) 응답 점수와의 상관관계 통계기법을 통해 상관계수를 구한 후, 상관계수²의 합에 대한 각 차원의 상관계수² 값의 비율로 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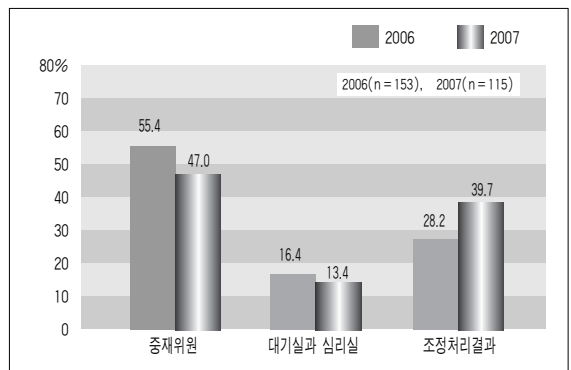
〈신청인〉 차원별 중요도(가중치)



신청인의 차원별 중요도(가중치)를 살펴보면, 『중재위원』(30.6%) 차원과 『조정 처리결과』(30.2%) 차원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창구』 차원은 21.2%, 『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 차원은 10.6%, 『대기실과 심리실』 차원은 7.3%로 나타났다.

'06년 대비 『조정 처리결과』(+14.5%) 차원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한 반면, 『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6.8%) 차원에 대한 중요도는 감소하였다.

〈피신청인〉 차원별 중요도(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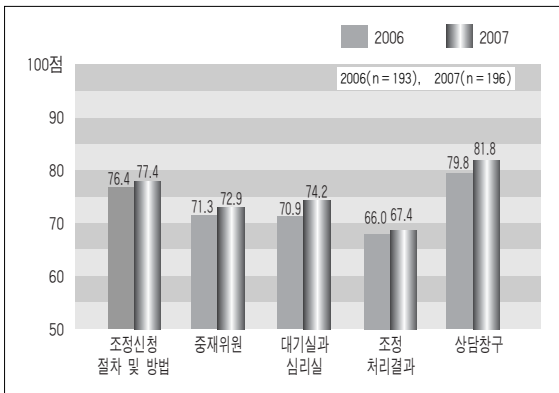
피신청인의 차원별 중요도(가중치)를 살펴보면,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중재위원』 차원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정 처리결과』 차원은 39.7%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실과 심리실』 차원은 1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06년 대비 『조정 처리결과』(+12.5%) 차원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한 반면, 『중재위원』(-8.4%) 차원에 대한 중요도는 감소하였다.

3) 차원별 만족도

차원별 만족도는 각 차원별 만족도 응답 점수(5점 만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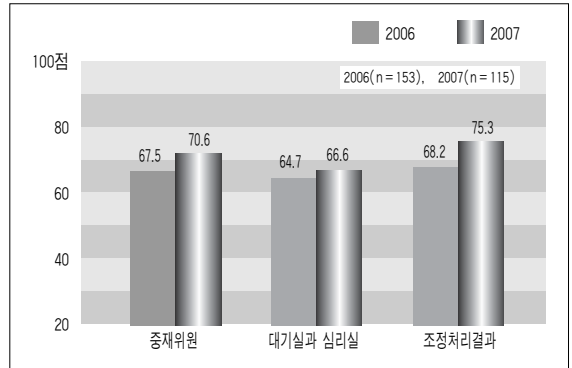
〈신청인〉 차원별 만족도



신청인의 각 차원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상담창구』 차원에 대한 만족도가 81.8점, 『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 차원에 대한 만족도가 77.4점으로 타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실과 심리실』 차원은 74.2점, 『중재위원』 차원은 72.9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 처리결과』 차원은 67.4점으로 5개 차원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모든 차원에서 미약하나마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피신청인〉 차원별 만족도



피신청인의 각 차원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조정 처리결과』 차원에 대한 만족도가 7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재위원』 차원에 대한 만족도는 70.6점, 『대기실과 심리실』 차원에 대한 만족도는 66.6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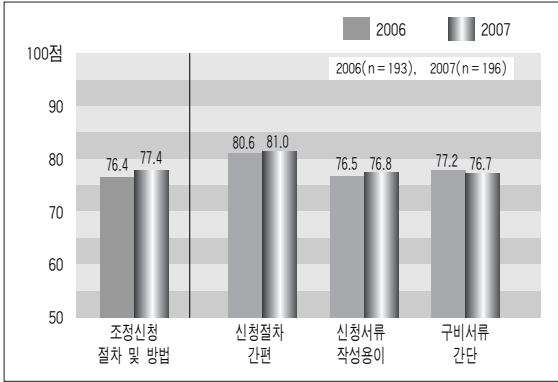
한편, '06년 대비 3개 차원의 만족도가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조정 처리결과』 차원에 대한 만족도의 상승폭이 크게(+7.1점) 나타났다. 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와 비교해보면 『중재위원』과 『대기실과 심리실』 차원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나 『조정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신청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4)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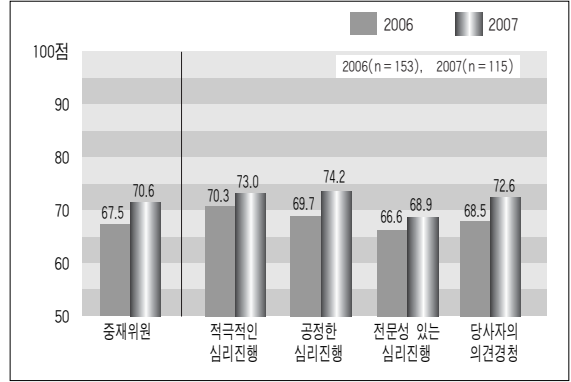
(1) 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인의 『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 차원의 만족도는 77.4점으로 조사되어 '06년(76.4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1.0점)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청절차 간편”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81.0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청서류 작성 용이”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76.8점, “구비서류 간단”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76.7점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 항목별 만족도



〈피신청인〉『중재위원』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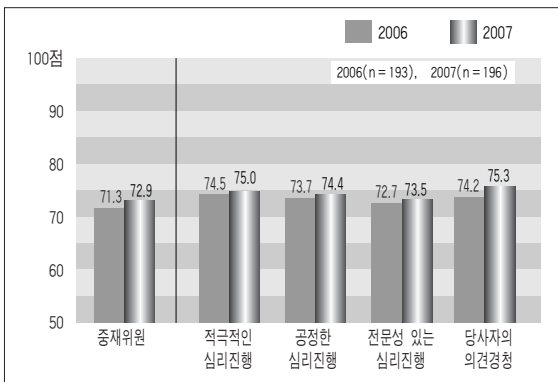


(2) 중재위원

『중재위원』 차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72.9점, 피신청인은 70.6점으로 신청인의 중재위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06년 대비 피신청인은 3.1점 상승하였으며, 신청인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중재위원』 차원의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당사자의 의견 경청”(75.3점)과 “적극적인 심리진행”(75.0점) 항목의 만족도가 타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정한 심리진행” 항목은 74.4점, “전문성 있는 심리진행” 항목은 73.5점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중재위원』 항목별 만족도



또한, 피신청인은 “공정한 심리진행” 항목의 만족도가 7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성 있는 심리진행” 항목의 만족도가 68.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06년 대비 『중재위원』 차원 내 5개 항목의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피신청인의 “공정한 심리진행”(+4.5점)과 “당사자의 의견 경청”(+4.1점) 항목은 4.0점 이상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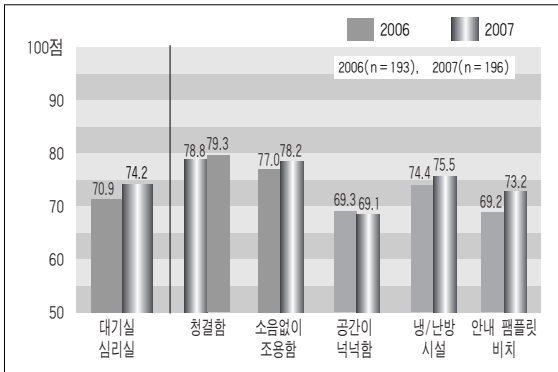
(3) 대기실과 심리실

『대기실과 심리실』 차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74.2점, 피신청인은 66.6점으로 조사되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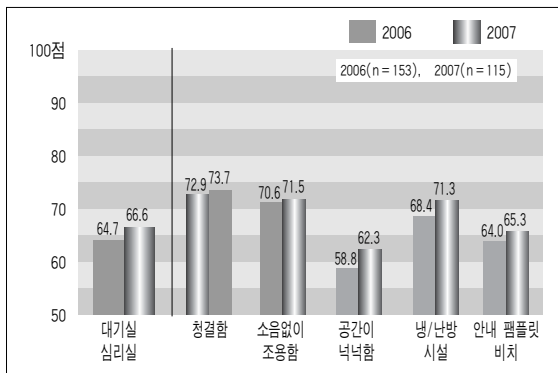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청결함”(신청인 79.3점, 피신청인 73.7점), “소음없이 조용함”(신청인 78.2점, 피신청인 71.5점), “냉/난방 시설”(신청인 75.5점, 피신청인 71.3점)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06년 대비 신청인의 “안내 팸플릿의 비치”(+4.0점), 피신청인의 “공간이 넉넉함”(+3.5점)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3.0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대기실과 심리실』 항목별 만족도



〈피신청인〉 『대기실과 심리실』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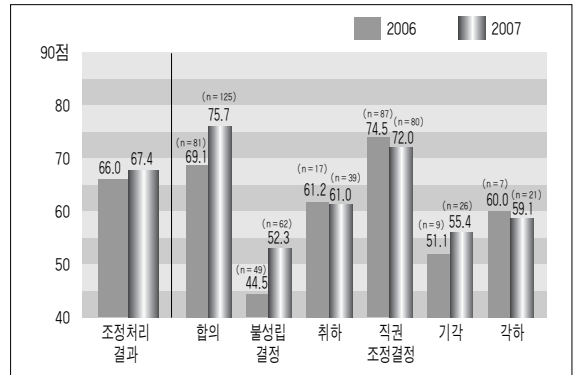
(4) 조정 처리결과

『조정 처리결과』 차원의 만족도는 신청인이 67.4 점, 피신청인이 75.3점으로 조사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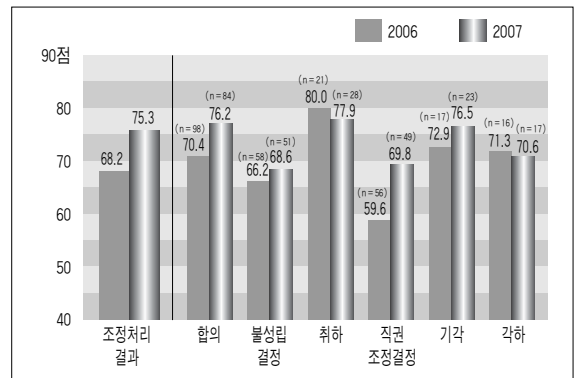
항목별로는 “직권조정결정” 항목을 제외한 “합의”, “불성립 결정”, “취하”, “기각”, “각하” 항목의 만족도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피신청인은 “취하”(77.9점), “기각”(76.5점), “합의”(76.2점)된 결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신청인은 “합의”(75.7점), “직권조정결정”(72.0점)된 결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합의”에 이른 경우의 만족도가 전년도보다 약 6% 가량 높게 나타난 것은 중재부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 『조정 처리결과』 항목별 만족도



〈피신청인〉 『조정 처리결과』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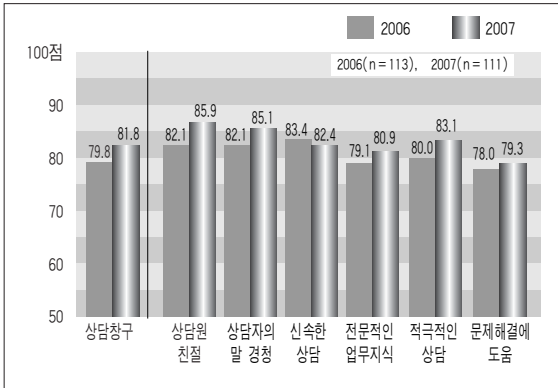


(5) 상담창구

신청인의 『상담창구』 차원의 만족도는 81.8점으로, “신속한 상담”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차원에서 전년도보다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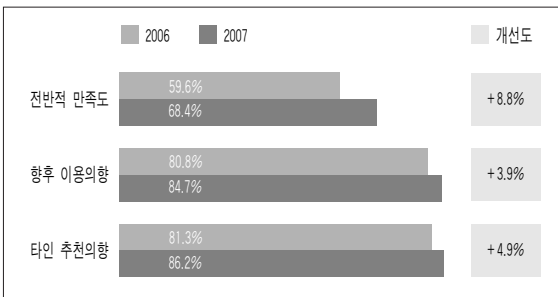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담원 친절”(85.9점)과 “상담자의 말 경청”(85.1점) 항목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문제해결에 도움” 항목의 만족도는 79.3점으로 6개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상담창구』 항목별 만족도



2. 언론중재위원회 지지도

『언론중재위원회 지지도』(TOP2 %)¹⁾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인 196명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TOP2 %는 68.4%('매우 만족' 15.3%, '만족' 53.1%),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1%('불만족' 7.1%, '매우 불만족'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 향후 이용의향 TOP2 %는 84.7%('반드시 이용할 것이다' 49.0%, '아마 이용할 것이다' 35.7%)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고, '그

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7%, '아마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6%,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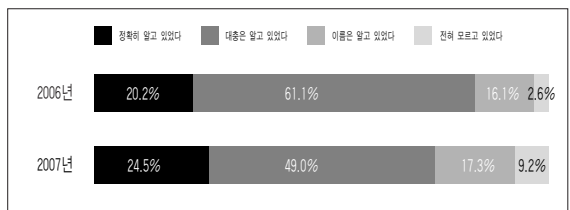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타인 추천의향 TOP2 %는 86.2%('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 52.0%,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권유하겠다' 34.2%)이며, '권유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1%('별로 권유할 의향이 없다' 4.1%, '전혀 권유할 의향이 없다' 2.0%)에 불과하였다.

3. 언론중재위원회 인지 여부 및 인지경로

먼저 인지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청인 196명 중 24.5%, 피신청인 115명 중 40.9%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한 피신청인은 없었으며, 신청인은 9.2%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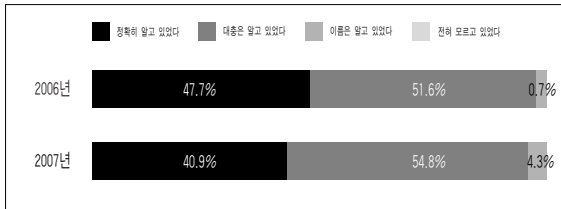
주목할 만한 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전년도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 언론중재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지 여부



1) 전반적 만족도 TOP2 % : '매우 만족' or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향후 이용의향 TOP2 % : '반드시 이용' or '아마 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
 타인 추천의향 TOP2 % : '적극적 권유' or '권유'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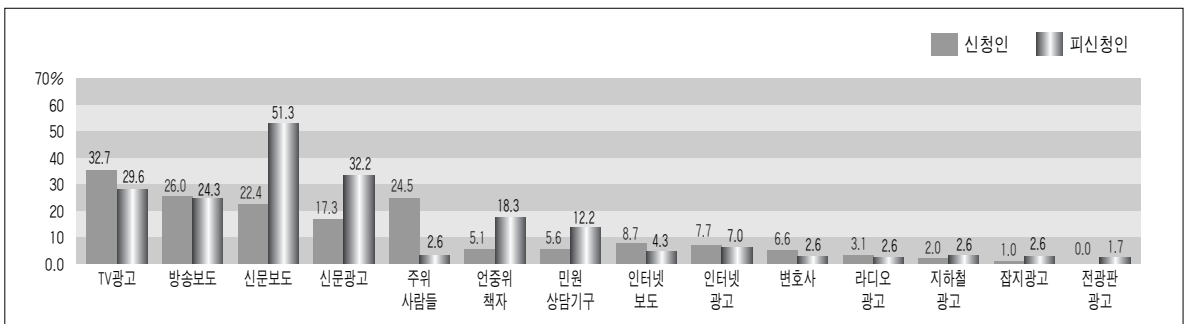
〈피신청인〉 언론중재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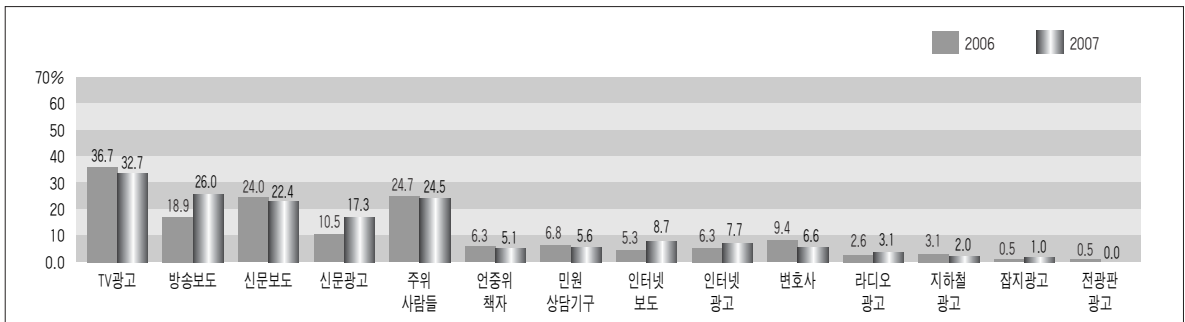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가장 빈번한 인지 경로는 'TV광고' (32.7%)와 '방송보도' (26.0%), '주위사람들' (24.5%), '신문보도' (22.4%)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은 '신문보도' (51.3%), '신문광고' (32.2%), 'TV광고' (29.6%)와 '방송보도' (24.3%) 등이 높게 나타났다.

신청인의 기타 인지경로로는 "근무중인 회사"(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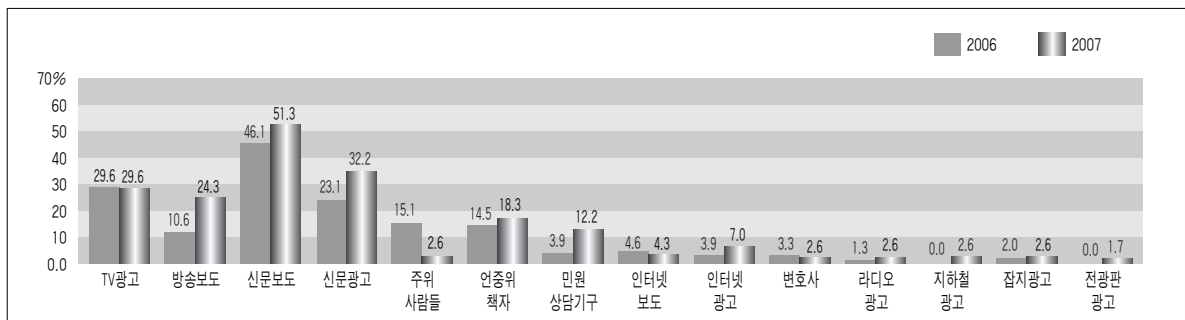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인지경로 - 복수응답



〈신청인〉 언론중재위원회 인지경로('06 대비) - 복수응답



〈피신청인〉 언론중재위원회 인지경로('06 대비) - 복수응답



청인 13건, 피신청인 14건)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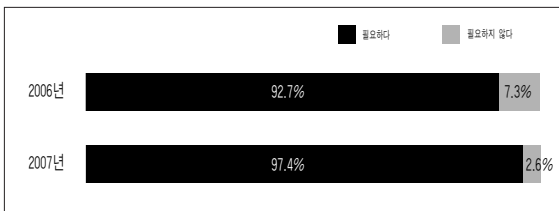
한편, 신청인은 “주위 사람들”과 “인터넷 광고, 보도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한 인지비율이 피신청인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피신청인은 “신문보도 및 광고”, “언중위 발행책자”를 통한 인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06년 대비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방송보도’와 ‘신문광고’를 통해 언중위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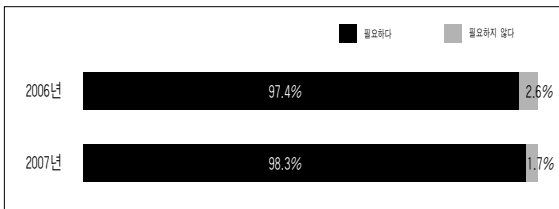
4.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필요성 인식

언론보도 분쟁해결을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신청인 196명 중 97.4%(191명), 피신청인 115명 중 98.3%(113명)로 중재위원회 필요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절대 다수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언론중재위원회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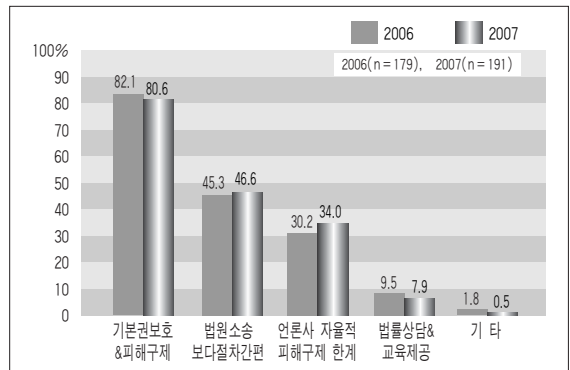
〈피신청인〉 언론중재위원회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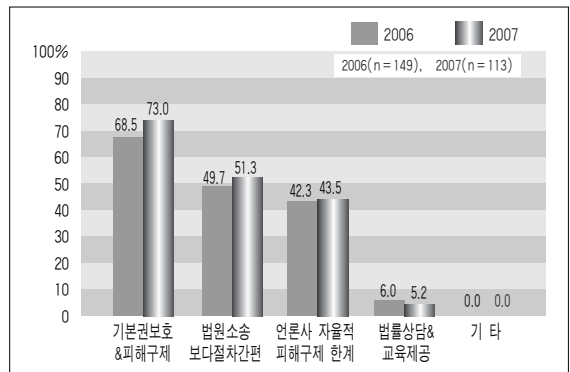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신청인 (80.6%)과 피신청인(73.0%) 모두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법원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들지 않으므로” (신청인 46.6%, 피신청인 51.3%), “언론사의 자율적인 피해구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신청인 34.0%, 피신청인 4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언론중재위원회 필요 이유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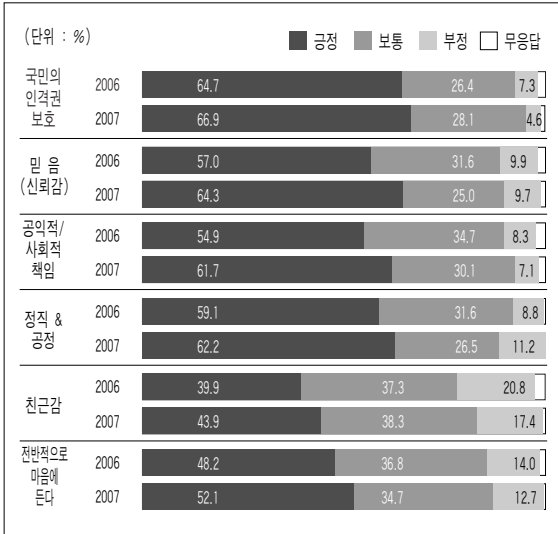
〈피신청인〉 언론중재위원회 필요 이유 - 복수응답



5. 언론중재위원회 이미지 및 이미지/선호도 변화

언론중재위원회 전반적인 이미지에 대하여 신청인의 52.1%, 피신청인의 38.3%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청인(+3.9%)과 피신청인(+7.6%) 모두 ’06년 대비 긍정응답률이 상승한 수치이다.

〈신청인〉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속성별 이미지('06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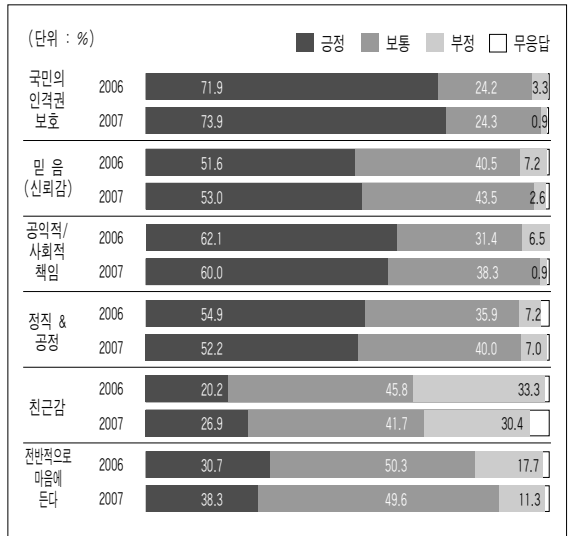
이미지 속성별로 살펴보면,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미지에 대하여 신청인(66.9%)과 피신청인(73.9%) 모두 가장 긍정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보다 각각 약 2.0% 상승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신청인은 ‘믿음(신뢰감)이 간다’(64.3%), ‘정직하며 공정하다’(62.2%), ‘공익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61.7%) 순으로 위원회에 대한 이미지 공감율이 높은 반면, 피신청인은 ‘공익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60.0%), ‘믿음(신뢰감)이 간다’(53.0%), ‘정직하며 공정하다’(52.2%) 순으로 위원회의 이미지가 조사되었다.

’06년 대비 신청인의 ‘믿음(신뢰감)이 간다’(+7.3%), ‘공익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6.8%) 항목, 피신청인의 ‘친근감이 든다’(+6.7%) 항목 응답률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분쟁 조정기구로서 “언론평해구제”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뚜렷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미지도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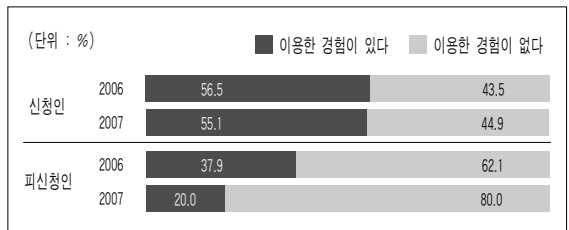
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속성별 이미지('06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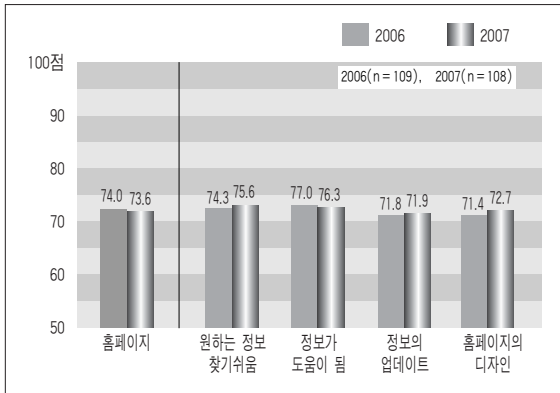
6.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경험 및 평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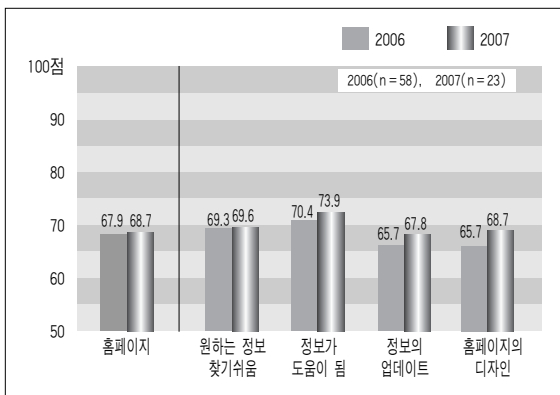


196명의 신청인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유경험자는 55.1%(108명), 무경험자는 44.9%(8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15명의 피신청인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유경험자는 20.0%(23명), 무경험자는 80.0%(92명)로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신청인은 1.4%, 피신청인은 무려 17.9%나 홈페이지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이용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한 홈페이지 개선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신청인〉 『홈페이지』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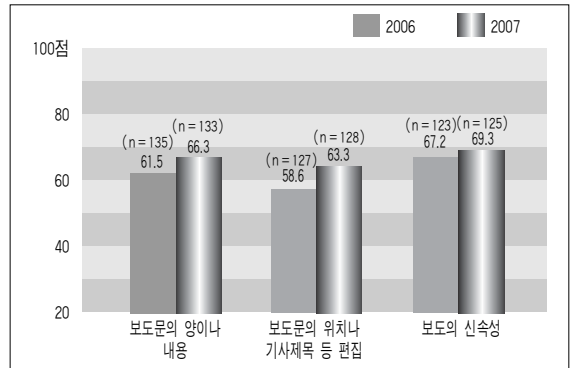
〈피신청인〉 『홈페이지』 항목별 만족도



『홈페이지』 차원의 전반적 만족도는 신청인 73.6 점, 피신청인 68.7점으로 조사되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정보가 도움이 됨” 항목의 만족도가 각각 76.3점, 7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의 업데이트”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신청인 71.9점, 피신청인 67.8점)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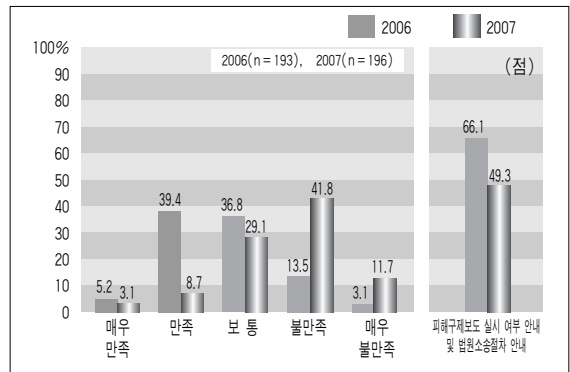
7. 신청인의 피해구제보도 평가 및 사후 안내 만족도

〈신청인〉 피해구제보도문에 대한 만족도



조정 신청 후 피해구제보도에 대한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보도의 신속성”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6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도문의 양이나 내용”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66.3점, “보도문의 위치나 기사제목 등 편집” 항목에 대한 63.3점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보도 실시 여부 안내 및 법원소송절차 안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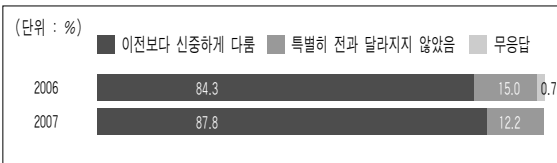


“심리 종결 후 피해구제보도 실시 여부 안내 및 법원소송절차 안내”에 대하여 신청인 196명 중 185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 11.8%(23명)만이 ‘(매우) 만족’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29.1%(57명)는 ‘보통’, 53.5%(105명)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 ’06년 대비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9%나 증가하였다.

한편 100점 점수로 환산하면 “심리 종결 후 피해구제제도 실시 여부 안내 및 법원소송절차 안내”에 대한 만족도는 49.3점으로 '06년(66.1점) 대비 16.8점 하락하였다.

8. 피신청인의 심리참석 후 기사작성, 편집 태도의 변화

〈피신청인〉 심리 참석 후 기사 작성, 편집 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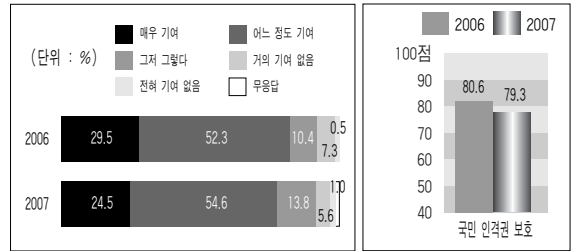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 참석 후 기사 작성이나 편집 태도의 변화에 대하여 피신청인 115명 중, 87.8%(101명)가 ‘이전보다 신중하게 다룸’이라고 응답하여 조정심리 참석 후에도 ‘특별히 전과 달라지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12.2%, 14명)보다 월등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언론조정제도가 취재보도과정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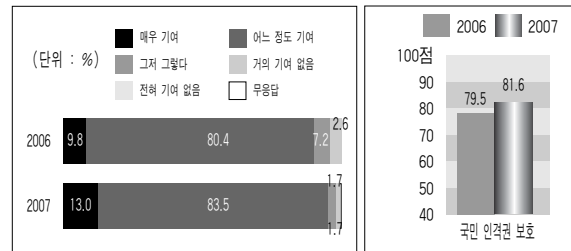
9. 언론중재위원회의 국민 인격권 보호 기여도 및 사회적 공정성

언론중재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국민 인격권 보호에 기여한 측면에 대하여, 신청인의 79.1%(155명), 피신청인의 96.5%(111명)가 ‘(매우)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신청인의 경우에는 24.5%(48명)가 ‘매우 기여한다’, 54.6%(107명)가 ‘기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13.0%(15명)가 ‘매우 기여한다’, 83.5%(96명)가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신청인〉 국민 인격권 보호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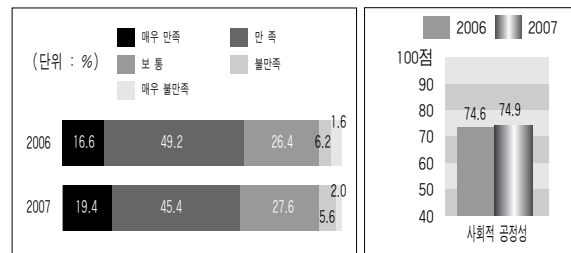


〈피신청인〉 국민 인격권 보호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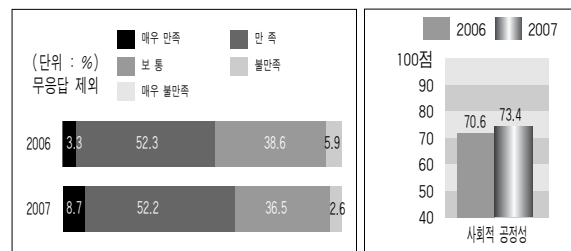


한편, 100점 점수로 환산하면, 신청인은 79.3점, 피신청인은 81.6점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공정성



〈피신청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공정성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 등 공공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신청인의 64.8%(127명), 피신청인의 60.9%(70명)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사회적 공공성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신청인 7.6%(15명), 피신청인 2.6%(3명)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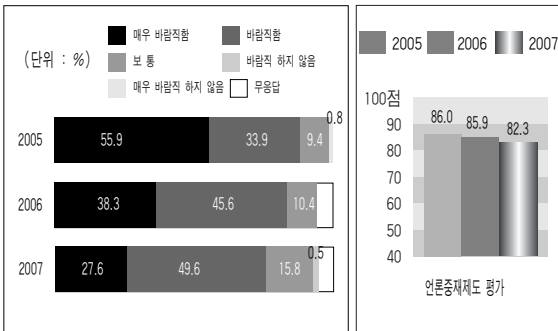
100점 점수로 환산하면, 신청인은 74.9점, 피신청인은 73.4점으로 나타나 신청인이 피신청인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사회적 공공성에 대해 다소 높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달라진 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27.6%가 '매우 바람직하다', 49.5%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여 긍정평가가율이 77.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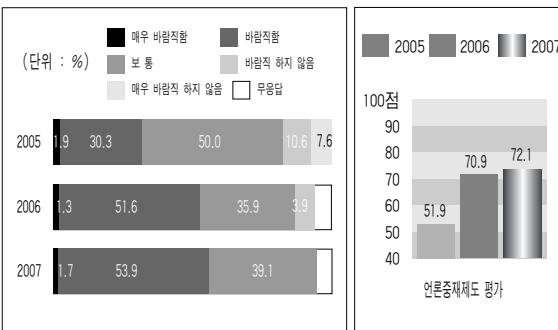
반면 피신청인의 경우, 1.7%만이 '매우 바람직하다', 53.9%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여 긍정평가가율이 55.6%인 것으로 나타나 신청인이 상대적으로 피신청인보다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피신청인의 긍정평가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새 제도에 대한 이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0.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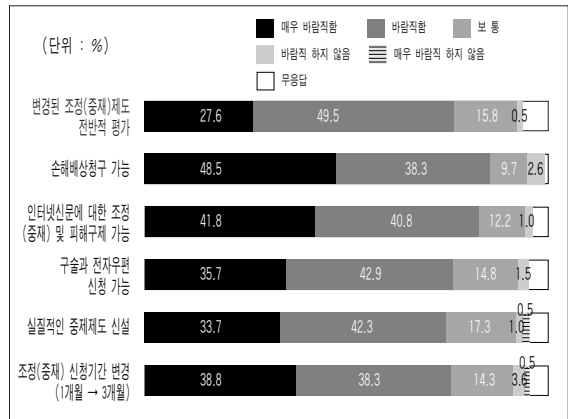
〈신청인〉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평가('05 ~ '06년 대비)



〈피신청인〉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평가('05 ~ '06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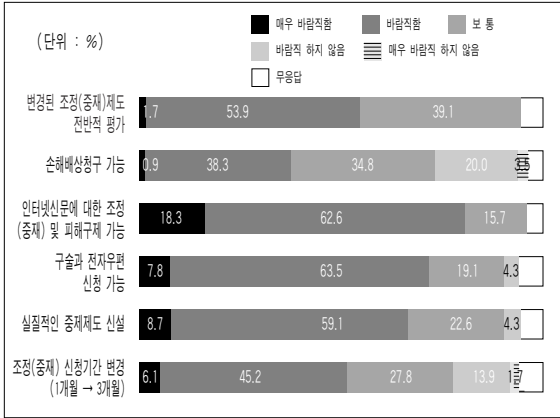


〈신청인〉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항목별 평가



신청인이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달라진 제도들에 대하여 내린 평가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 가능”(86.8%)과 “인터넷신문 피해구제 가능”(82.6%)한 제도가 “구술/전자우편 신청 가능”(78.6%), “조정신청기간 변경”(77.1%), “실질적인 중재제도 신설”(76.0%) 제도보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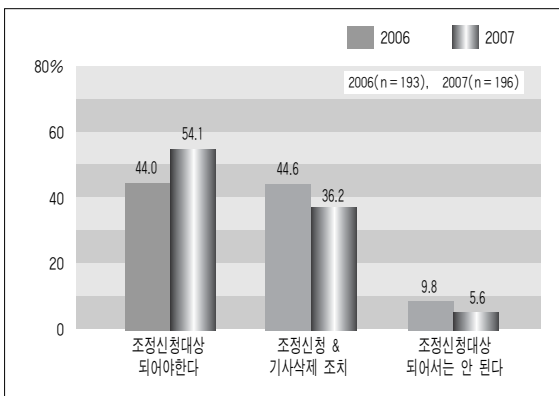
〈피신청인〉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항목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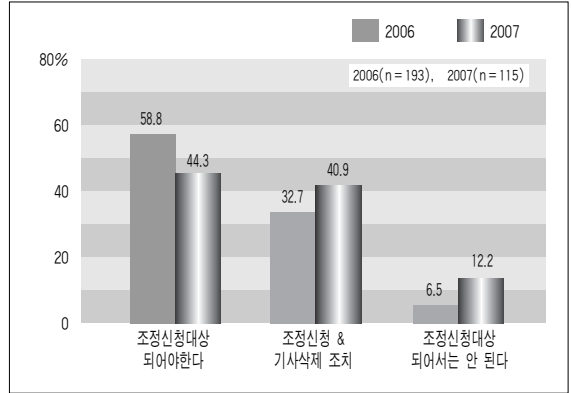
피신청인의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달라진 제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인터넷신문 피해구제 가능”(80.9%) 제도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손해배상청구 가능”(39.2%)과 “중재신청 기간 변경”(51.3%) 제도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60.0% 미만으로 타 제도에 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피신청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포털사이트, 온라인신문의 조정대상 포함에 대한 태도

〈신청인〉 포털/온라인신문 조정대상 포함



〈피신청인〉 포털/온라인신문 조정대상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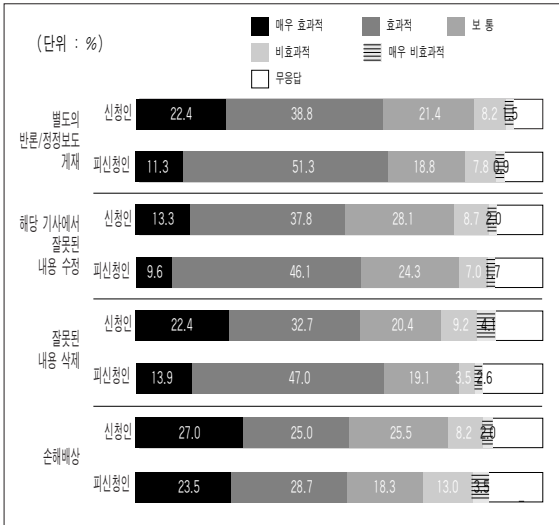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는 인터넷 포털, 언론사닷컴에 대한 조정 신청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하여 신청인 54.1%, 피신청인 44.3%가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사닷컴도 “조정신청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신청인의 36.2%, 피신청인의 40.9%는 “조정 신청은 물론, 기사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신청인의 90.3%, 피신청인의 85.2%가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사닷컴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에 대하여 '06년과 달리 피신청인보다 신청인이 찬성하는 입장이 많은 반면, 기사삭제 조치까지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 포털사이트, 온라인신문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방법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신문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 상 급속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인터넷 언론의 매체적 특성을

고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피해구제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피해구제 방법별 효과



그 결과 신청인(61.2%)과 피신청인(62.6%) 모두 별도의 정정·반론보도 게재가 가장 효과적인 피해구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잘못된 기사 삭제' (신청인 55.1%, 피신청인 60.9%)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신청인의 경우 '잘못된 기사를 삭제' 하는 것에 대하여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구제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각 입장에 따라 생각하는 효과적인 피해구제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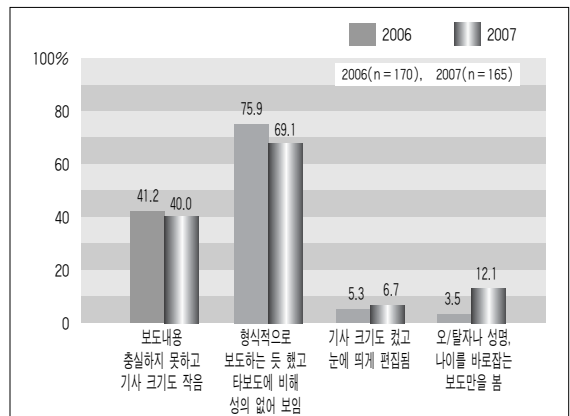
13. 신청인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에 대한 경험 여부 및 평가

신청인 가운데 평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접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84.2%(165명)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노출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조정신청 전 게재(방송)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접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신청인 165명 중, 조정신청 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문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하여 '06년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보도이며 타 보도에 비해 성의 없어 보였다"(69.1%, 114명), "보도 내용이 불성실하고 기사크기도 작았다"(40.0%, 66명)고 생각하는 신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조정신청 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평가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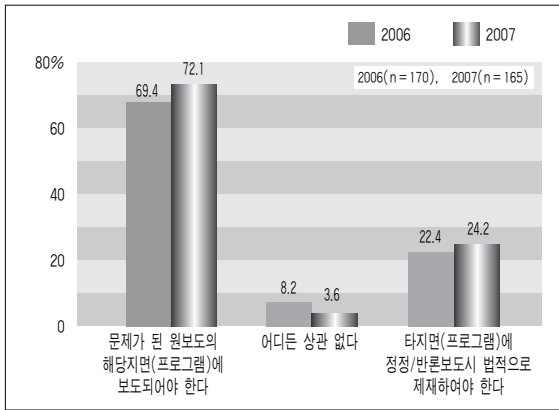


한편 "기사 크기도 컸고 눈에 띄게 편집되었다"고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신청인은 6.7%(11명)에 불과하여 신청인의 대다수가 정정·반론보도문의 형식 및 내용이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원 보도가 실렸던 지면이 아닌, '바로잡습니다', '고침' 등의 고정란에 게재되거나, 방송의 경우 원 프로그램이 아닌 시청자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보도되는 경우에 대하여, 72.1%(119명)가 "문제가 된 원 보도의 해당지면에 보도되어야 한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24.2%(40명)는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되면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어디든 상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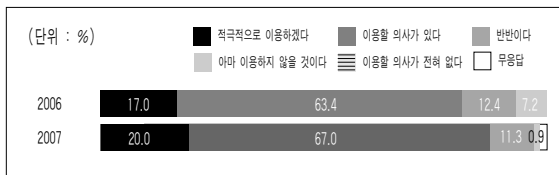
〈신청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게재면(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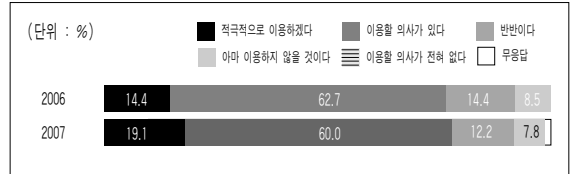
14. 피신청인의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교육프로그램 이용의향

변호사 등 전문 상담인으로 구성된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87.0%(100명)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상담창구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0.9%(1명)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피신청인〉 향후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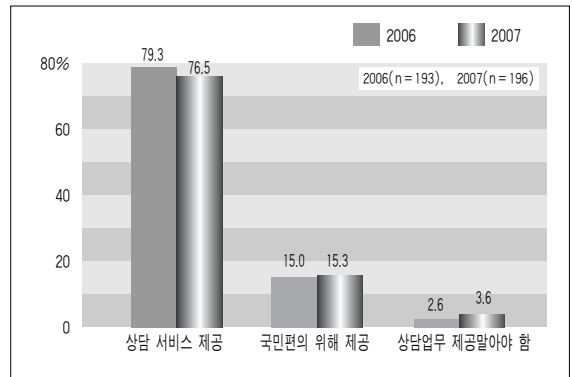
〈피신청인〉 향후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프로그램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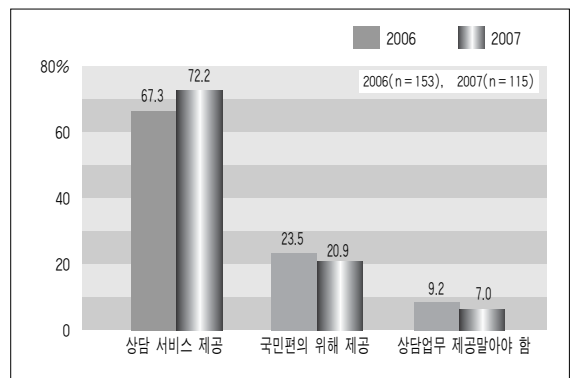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향후 이용의향에 대하여, 79.1%(91명)가 이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7.8%(9명)로 나타났다.

15. 언론분쟁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

〈신청인〉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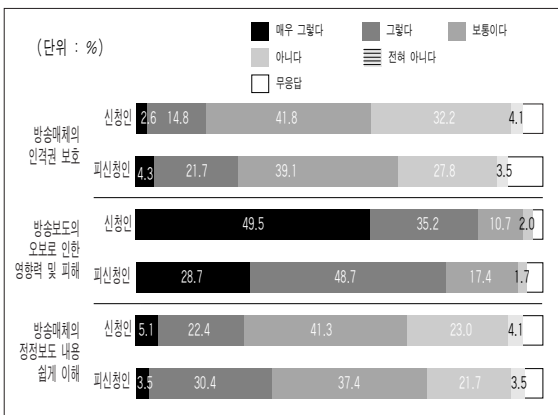
〈피신청인〉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



신청인 196명 중 91.8%(180명), 피신청인 115명 중 93.1%(107명)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분쟁과 관련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분쟁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6. 방송매체에 대한 의견

방송매체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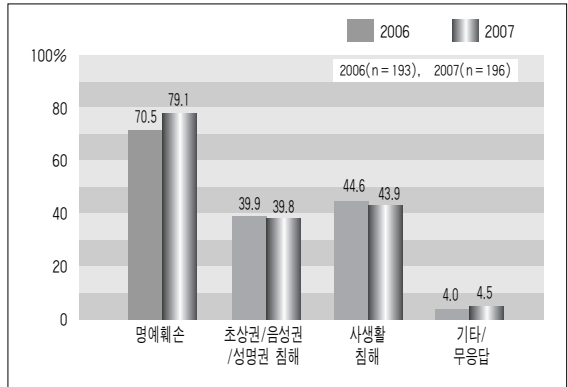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방송매체가 인격권을 잘 보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신청인 17.4%, 피신청인 26.0%,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신청인 36.3%, 피신청인 31.3%로 나타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방송매체의 인격권 보호가 다른 매체에 비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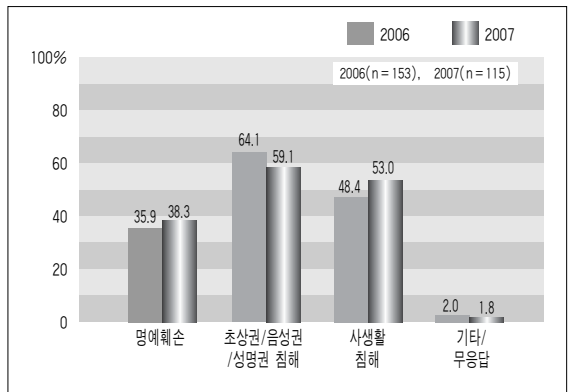
다른 매체와 비교할 때 방송보도의 오보로 인한 영향력이나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의 84.7%, 피신청인의 77.4%가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신청인의 2.0%, 피신청인의 1.7%만이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방송매체의 정보도 내용이 쉽게 잘 이해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의 27.5%, 피신청인

의 33.9%가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신청인의 27.1%, 피신청인의 25.2%가 '(전혀) 아니다' 고 응답하였다.

〈신청인〉 방송보도에 의해 침해될 권리-복수응답



〈피신청인〉 방송보도에 의해 침해될 권리-복수응답



방송보도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권리에 대하여 신청인은 "명예훼손"(79.1%), "사생활 침해"(43.9%),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침해"(39.8%) 순으로 나타난 반면, 피신청인은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침해"(59.1%), "사생활 침해"(53.0%), "명예훼손"(38.3%) 순으로 조사되어, 피신청인이 영상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유형을 보다 실제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 상담이용자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분쟁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취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342명 중에서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 신청”한 경우가 77.5%(265명)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언론사에 먼저 연락한 뒤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한 경우가 17.5% (60명)순으로 나타났다.

본절 이후,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상담창구를 이용한 상담이용자 265명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를 담당하는 주요기관”이라는 이유로 상담창구를 바로 이용한 상담신청인이 66.4% (17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주변 사람의 추천으로”(15.8%, 42명), “언론중재위원회의 광고를 본 적이 있어서”(12.5%, 3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조치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상담창구를 이용한 응답자 77명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를 이용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다른 상담 후 만족할 만한 상담결과를 얻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3.6%(49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상담기구보다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8.2%(14명)로 두 번째로 높은 이유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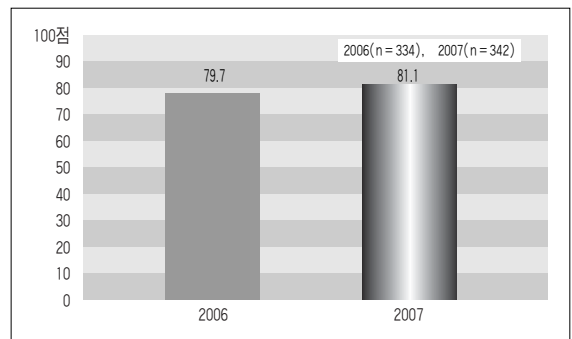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을 신청한 방법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42명 중 81.3%(215명)가 ‘전화상담’을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상담(인터넷 실시간/인터넷 게시판)’ 18.7%(50명), ‘방문상담’ 12.3%(33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상담 가능 등으로 인한 접근성 및 편리성 차원에 대해서는 상담이용자의 57.9% (198명)가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1.4%(39명)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여 언론중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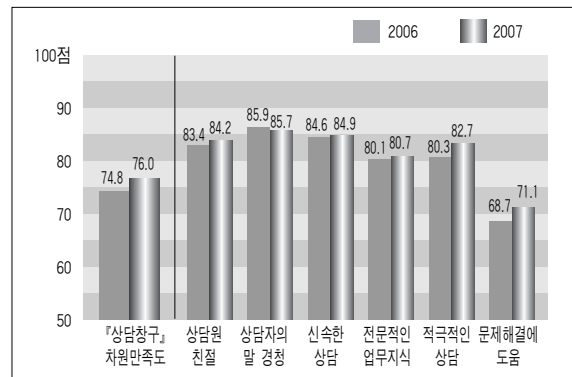
의 상담창구에 대한 접근성 및 편리성 차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항목별 평가점수(5점 만점)에 각각의 항목과 체감만족도의 상관관계² 값을 이용하여 산출된 중요도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산출한 상담이용자의 종합만족도는 81.1점으로 조사되었으며, '06년(79.7점) 대비 만족도가 다소 상승(+1.4점)하였다.

상담 이용자 종합만족도



『상담창구』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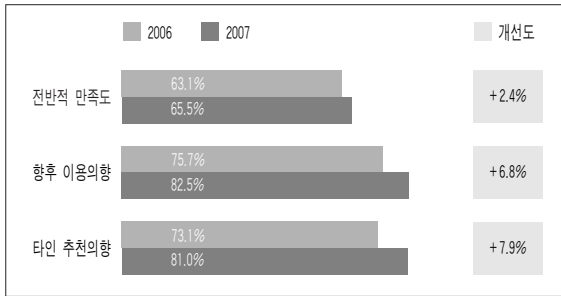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에 대한 만족도는 76.0점으로 조사되어, '06년(74.8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1.2점)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담자의 말 경청” 항목이 85.7점으로 '06년에 이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신속한 상담”(84.9점)과 “상담원 친절”(84.2

점) 항목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제 해결에 도움” 항목은 71.1점으로 타 항목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지지도』 TOP2 % 비율



전반적 만족도 TOP2 %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상담 창구의 모든 면을 고려한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에 대한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 혹은 ‘만족’이라고 응답한 상담이용자들의 비율로, '07년 전반적 만족도 TOP2 %는 65.5%로 '06년(63.1%) 대비 2.4%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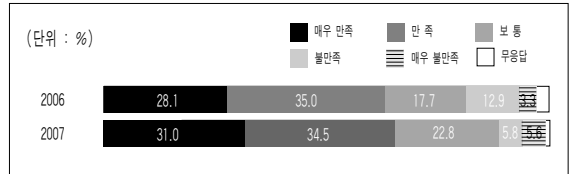
향후 이용의향 TOP2 %는 향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분쟁 발생 시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이용 여부 물음에 “반드시 이용할 것” 혹은 “아마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로, '07년 향후 이용의향 TOP2 %는 82.5%로 나타났으며, '06년(75.7%) 대비 6.8% 증가한 것이다.

타인 추천의향 TOP2 %는 앞으로 주변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분쟁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을 권유하겠다는 물음에 “적극적으로 권유” 혹은 “적극적은 아니지만 권유”라고 응답한 비율로, '07년 타인 추천의향 TOP2 %는 81.0%로, '06년(73.1%) 대비 7.9% 증가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이용자의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하여 31.0%가 ‘매우 만족’, 34.5%가 ‘만족’이라고 응답하여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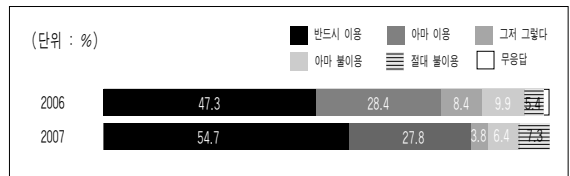
TOP2 %는 65.5%로 나타나, '06년(63.1%) 대비 2.4% 증가하였다.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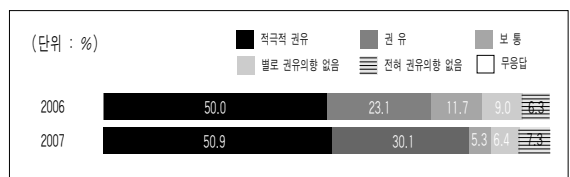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이용자 중 향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또는 분쟁 발생 시 ‘반드시 이용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상담 신청인의 비율은 54.7%, ‘아마도 이용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신청인의 비율은 27.8%로, 향후 이용의향에 대한 TOP2 %는 82.5%로 나타났으며, '06년(75.7%) 대비 6.8% 증가하였다.

향후 이용의향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이용자 중 앞으로 주변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또는 분쟁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을 권유하겠다는 물음에 50.9%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 30.1%가 ‘적극적은 아니지만 권유하겠다’라고 응답하여 향후 추천의향에 대한 TOP2 %는 81.0%로 나타났으며, '06년(73.1%) 대비 7.9% 증가하였다.

타인 추천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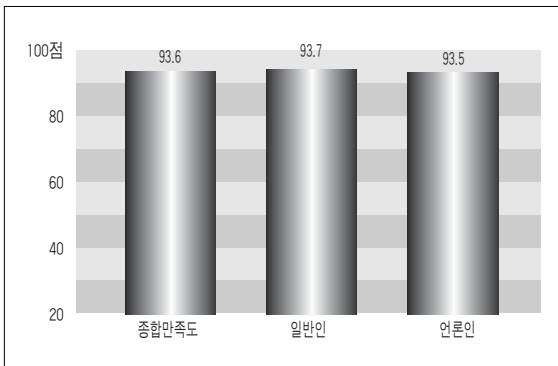


18. 교육수강자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수강자 중 일반인의 90.4%(227명), 언론인의 100.0%(49명)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의 13.1%, 언론인의 16.3%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인의 47.4%, 언론인의 71.4%는 “대충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언론인이 일반인 대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비율이 10.0% 가량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언론사 등 관련연계에 근무하는 언론인의 직업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본 결과, 일반인과 언론인 모두 “TV광고”(49.4%, 49.0%), “방송보도”(31.1%, 53.1%), “신문보도”(17.5%, 32.7%)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인의 경우 “인터넷광고”(10.4%)와 “변호사”(10.4%)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비율이 언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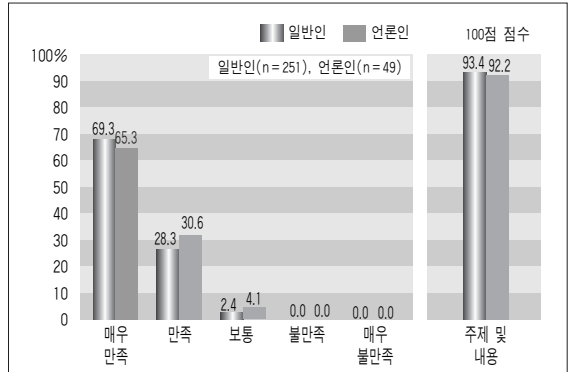
교육 수강자 종합 만족도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산출 결과, 일반인의 종합만족도는 93.7점, 언론인의 종합만족도는 93.5점으로 조사되어 ‘일반인’과 ‘언론인’ 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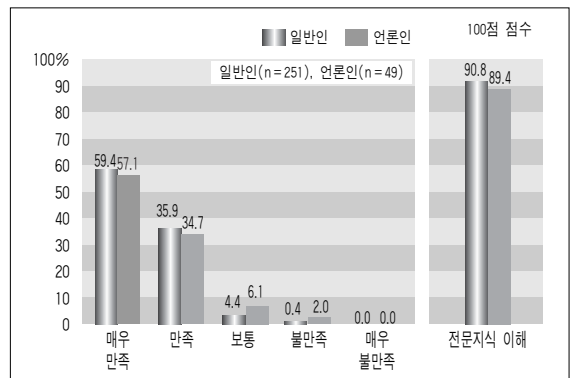
“주제 및 내용” 항목에 대하여 일반인은 97.6%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93.4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며, 언론인은 95.9%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92.2점으로 나타났다.

“주제 및 내용” 항목 만족도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 항목에 대하여 일반인은 95.3%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90.8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며, 언론인은 91.8%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89.4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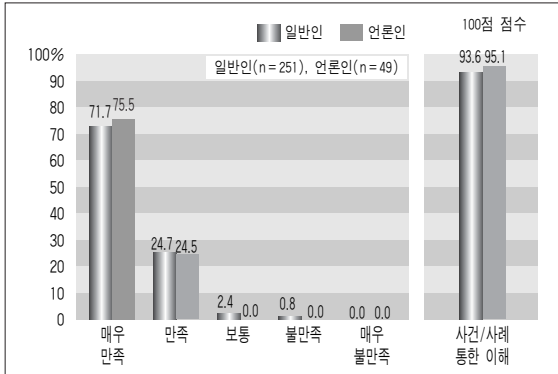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 항목 만족도



“사건/사례를 통한 이해” 항목에 대하여 일반인은 96.4%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93.5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며, 언론인은 100.0%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95.1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일반인과 언론인 모두 언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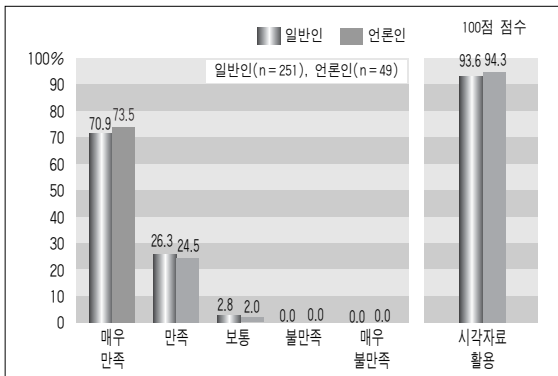
재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에서 사건/사례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사례를 통한 이해” 항목 만족도



“시각자료/동영상을 통한 이해” 항목에 대하여 일반인은 97.2%가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하여 93.6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며, 언론인은 98.0%가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하여 94.3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일반인과 언론인 모두 언론중재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에서 시각자료나 동영상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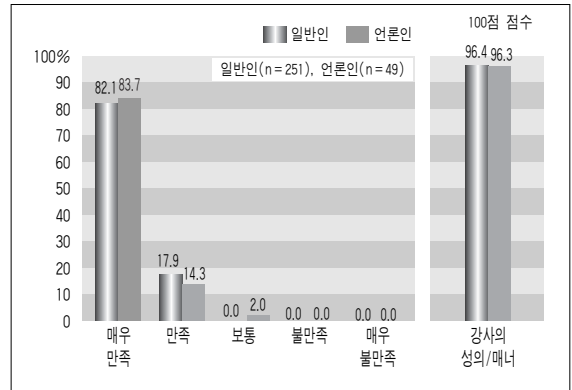
“시각자료/동영상을 통한 이해” 항목 만족도



“강사의 성의 및 매너” 항목에 대하여 일반인은 100.0%가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하여 96.4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며, 언론인은 98.0%가 ‘(매우) 만족’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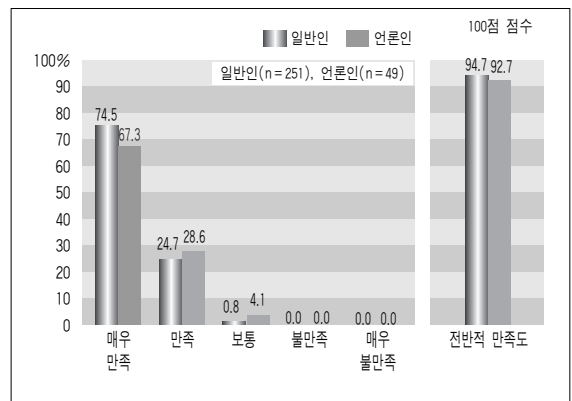
다고 응답하여 96.3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여 5개 항목 중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일반인과 언론인 모두 강사가 성의있고 매너있는 자세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의 성의 및 매너” 항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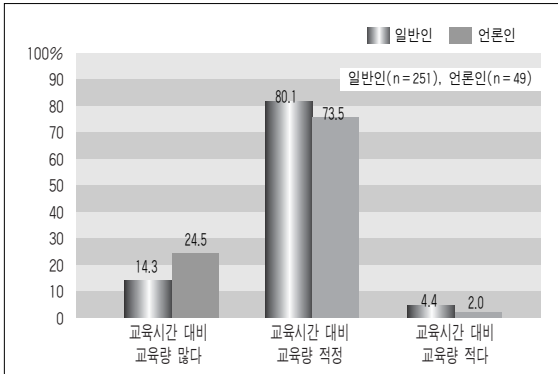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일반인의 99.2%가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하여 94.7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며, 언론인은 95.9%가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하여 92.7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교육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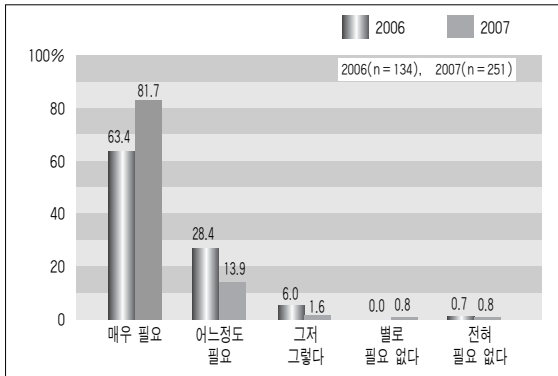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80.1%, 언론인의 73.5%가 “교육시간 대비 교육량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시간 내 이루어진 교육량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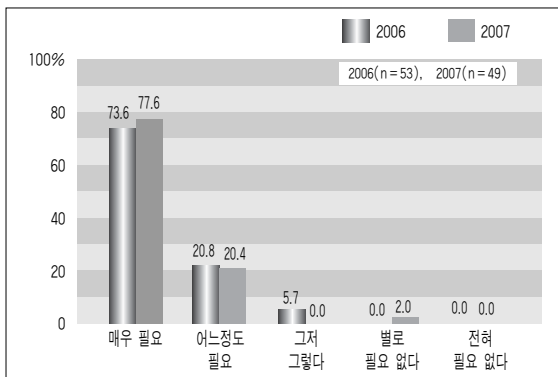


일반인의 95.6%, 언론인의 98.0%가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이 '매우/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06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인〉 언론중재위원회 교육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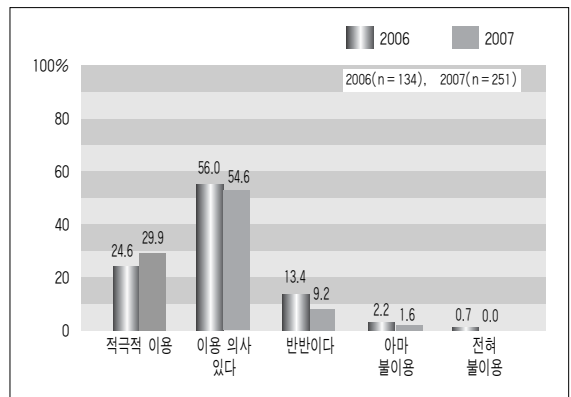
〈언론인〉 언론중재위원회 교육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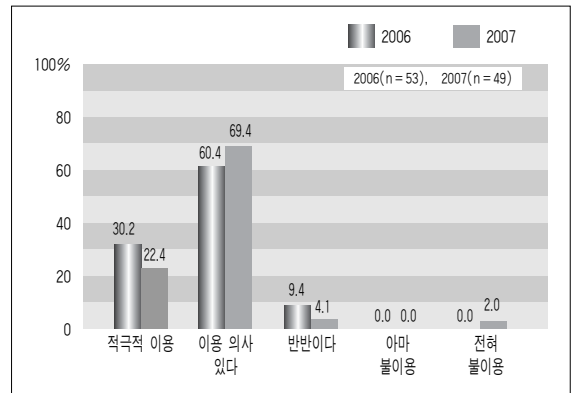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을 살펴보면, 일반인의 84.5%(212명)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29.9%(75명)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언론인의 91.8%(45명)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22.4%(11명)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일반인〉 언론중재위원회 교육 이용 의향



〈언론인〉 언론중재위원회 교육 이용 의향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언론소비자 입장을 중심으로 -

김 성

광주 중재위원, 전 호남신문 편집국장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또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16일 광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 위원(광주 중재위원, 전 호남신문 편집국장)이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언론소비자 입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광주 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규장 중재부장(광주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필요성 높아져가는 언론중재제도

가. 다매체 사회에서의 언론소비자 환경

현대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불린다. 인류의 사 고나 철학적·학술적 범위뿐만 아니라 각기 분리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영역간의 교차범위 확대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졌 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현의 방법만을 별도로 생 각해 볼 때 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매체 가 존재하는 ‘다매체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특 히 기존에 존재해 온 신문, 방송 매체를 뛰어넘어 인터넷 신문·방송, 포털, 블로그 등의 등장으로 매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더구나 인터넷 등 새로 등장한 매체는 파급효과 가 엄청나 그 피해의 규모가 크고, 자칫하다간 개 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겨 줄 가능성 이 높아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보의 이동이 시

스템에 의하거나, 훈련된 게이트키퍼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 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뉴스의 전달자, 즉 ‘중간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무의식적으로 기능하 게 되었다는 점이다.

언론의 주변 환경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수용자 들은 언론기관을 ‘제4의 권력’, ‘민주주의 수호의 파수대’로 보아오던 견해에서 벗어나 언론소비자 의 입장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상업적 정보회사’ 로 간주하는 견해가 높아지면서 여기에 부응하는 소구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언론매체에 의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로서 의 권리행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 향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를 보 호하는 법률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 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해주 고 있다.

주제논문

또 전통적인 피해구제방식인 재판에 의한 것 보다, 우선 처리기간이 짧은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재판에 의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언론소비자 의식에 맞춰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한 형편이다.

나. 새로운 언론환경의 특징

새로운 언론환경의 특징은 첫째, 매체의 다양화 및 매체수의 증가이다. 기존 언론매체부터 살펴보면 신문의 경우는 종합일간신문 외에 수없이 많은 전문지, 주간지, 지방지 등이 생겨났고, 영상매체 역시 대형 라디오, TV 방송사는 차치하고라도 케이블TV, DMB, IPTV, 영화 등이 더 수용자와 밀착되어 있다. 혁명적인 변화는 인터넷의 보편화에 있다. '포털'이라는 공용인터넷 사이트에서 1인 1개 시대를 맞고 있는 '블로그'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보가 무차별로 공개되고 있고, 특히 UCC를 통해 동의되지 않는 초상권의 침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다.

둘째, 언론소비자들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자세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언론인들이 통제받지 않고 작성한 글을 보고 싶어 하는 권리는 언론인이나 정치인 등 제한적인 집단들의 요구사항이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희망하면서도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요구자의 입장을 갖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악법이 개정되고, 민주화를 근거로 한 새로운 법률이 어느 정도 제정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언론의 피해구제를 요

구하는 경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권리의식이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나 과급효과가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가 과거 '언론권력'을 가급적 회피하려 했던 것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서슴지 않는 자세로의 전환을 가져 온 것이다.

셋째, 이러한 수용자 의식변화와 달리 언론의 시대적 변화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는 점이다. 언론의 최대 기능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기존의 언론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물론 포털의 정보는 기존 언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수용자의 생각은 영리행위를 하는 포털이나 기존의 언론이나 모두 똑같은 상업적 정보제공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 언론중재제도의 변천

언론관련 법의 제정과 개정은 언론자유 확보, 언론민주화와 궤를 함께 해 왔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으로 비난 받아 온 '언론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언론민주화운동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탄생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0년 12월 31일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근거하여 1981년 3월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언론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여망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이 들어선 1989년 폐지되었다. 다만 '반론권'과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간법(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조항을 통해 존속되고, 1999년 헌법

재판소로부터도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 계속 존재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각 분야에서 민주적 제도의 정착을 향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언론피해에 대한 조정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기존의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나름대로 효용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간법이나 방송법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중재제도로는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5년 정간법 개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직권중재결정권'을 부여하고 '반론보도'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법률용어로 채택되는 등 언론중재제도가 강화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언론소비자의 본격적인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는 단일 법률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각 정당 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2005년 1월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어 이 해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 조정신청 및 처리결과의 변화

가. 변화된 언론중재제도

(1) 중재기능의 도입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중재위원회는 종래의 조정 및 심의기능 이외에 중재기능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소송 외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수단의 하나인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제3자(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률적으로 '중재'는 중재인이 쌍방의 요구를 절충한 타협적

인 중재판정(이른바 절반중재)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잘못된 중재판정에 사실상 불복할 방법이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재판정은 사전에 당사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그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을 통한 판결과 구분되며, 당사자들의 의지를 통해 중국적 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2) 인터넷 신문의 포함

언론중재법은 과거 정간물법에서 제외된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여론형성을 주도적으로 담당해 온 '오프라인'의 역할이 감소하고 '온라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에 의한 피해구제도 법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는 하나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포털의 경우는 피해구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존 언론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처리문제도 소홀히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손해배상의 포함

과거 언론피해구제제도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면서 물질적 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 손해배상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권리구제에 철저를 기할 수 있고,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

주제논문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은 심의기간이 짧고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청인들에게는 효율적인 피해구제체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재위원회가 소액이 아니라 거액의 손해배상을 심의하기에는 기간과 전문성에서 극히 제한적이라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중재위원회가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과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정간물법 제19조 제1항)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했던 이유는 중재위원회가 언론관계 법률에 밝은 법조인과 경험이 축적된 언론인, 기타 덕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속히 결정할 수 있고, 법원의 상세한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는 보도의 사실여부를 판가름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도입되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더욱 필요해졌다. 따라서 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에 의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통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나. 조정신청 추세의 변화

지난 1981년부터 언론중재제도가 언론피해구제

체도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벌써 26년이 흘렀다. 이 제도는 언필칭 언론피해구제를 명분으로 해서 출발하였지만 초기였던 1980년대 전반에는 군부독재정권의 시대라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서 조정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2001년 대비 2006년의 조정신청 건수만을 비교하더라도 증가율이 64.9%나 되었고, 2006년에는 연간 신청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는 기록을 보였다.

1995년까지는 중재위원회가 사실상 '조정' 역할 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의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한다거나 신청인의 '취하'를 조건으로 '속보' 및 'PR기사 게재'로 피해구제를 높이는 방법을 구사하였다. 피신청인이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불성립이 됐을 때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취하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전반적인 피해구제율은 1990년대나 2000년대와 비교해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직권중재결정권이 중재위원회에 도입되면서 이를 활용한 조정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적으로는 정정보도 청구건수가 60%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2003년도에는 69.5%까지 차지하기도 했으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 2005년 이후에는 평균치(59.0%)와 비슷한 수준(60.1%)에 머무르더니 2006년에는 평균치보다 적은 50.2%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법 시행 첫 해인 2005년에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16.0%를 차지했고, 2006년에는 29.3%로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겨우 2년간 시행된 통계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정확히 분석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향후에는 조정의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언론피해에 대해서는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정신청인의 경우 '개인' 신청인은 점차 줄어들고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의 신청이 늘어났는데 이는 행정기관들이 언론과 적대적인 관계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전혀 다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특징은 언론을 상대로 피해를 구제하려는 집단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언론민주화 이후 언론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정신청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의 경우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경제인, 전·현직 공무원, 정치인 순서이며 학생·주부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경제인이 많다는 것은 언론에 의한 피해가 심대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언론에 약하다고 이야기되던 공무원에서부터 주부까지 있는 것은 앞서의 지적처럼 언론피해에 대해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 대상 매체는 큰 흐름으로 볼 때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청구대상 비율이 크게 낮아진 반면, TV와 인터넷 신문은 증가하였다. 반면 지방일간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TV와 인터넷이 현대 미디어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청구 건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 언론조정신청 처리결과 분석

지난 25년간 조정신청한 건수 중 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은 피해구제율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는 50%를 밑도는 경우가 많았고 민주화 이후에도 50%대에 머문 경우가 몇 차례 있었지만 대략 60%대에서 정착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피해구제율이 60%대라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은 언론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그 처리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것을 뜻한다. 매체별로는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주간신문은 피해구제율이 60%내외인데 반해 TV와 라디오는 43.7%와 50%로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 케이블TV(68.2%), 통신(92.9%), 인터넷 신문(72.2%)은 다른 매체에 비해 피해구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 언론중재제도에서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의 조정 방안

가. 인격권 침해 사례의 확대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언론소비자의 의식제고로 '인격권' 문제가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인격권에 관한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권리들을 의미한다.

언론으로부터 인격권을 침해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길은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정정이나 반론,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고, 승소하였을 때 공표청구 등을 하며 마지막으로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다.

2005년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금지와 손해

주제논문

배상청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명예권(신용권),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전체 건수의 10%를 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언론중재제도가 가지고 있는 신속성 그리고 지금까지의 높은 피해구제율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 인격권의 개념 및 보호범위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은 인격권을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인격권은 헌법에서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조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 조항, 언론중재법과 민법 기타 앞서 본 실정법들 규정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 인격권의 주체는 태아로부터 사망하기까지의 자연인은 인격권을 가지며, 생명·자유·신체·건강·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음성·대화에 관한 인격권, 정조에 관한 인격권, 자기운명결정권의 경우 자연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명예, 초상, 성명, 저작물 및 사적문서에 관한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관리권, 학문과 예술에 관한 권리, 퍼블리시티권 등의 경우 법인, 조합, 단체까지 주체가 될 수 있다.

(2) 명예권의 개념 및 보호범위

명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하는 내적 명예, 사람의 인격적 가치

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외적 명예,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말하는 명예 감정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명예가 훼손되려면 사실에 대한 적시가 되어야 하는데 라디오 및 TV에 의한 뉴스보도, 드라마, 다큐멘터리, 연예오락물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일간·주간·월간지에 의한 스트레이트 기사, 인터뷰·논평·비평·사설·가십기사, 풍자·만평·독자투고·폭로·광고 등에 의한 경우,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되거나, 인터뷰의 조건이 무시된 보도 등을 들 수 있다.

(3) 초상권의 개념 및 보호범위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써,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영리적으로 사용된 경우 그 대가를 구할 수 있는 권리(초상영리권)를 말한다. 초상에는 사진, 동영상, 컴퓨터 합성 화면, 목탄 스케치로 작성한 인물화, 몽타주, 소묘, 풍자만화, 인형, 일러스트레이션, 캐리커처 등 제한이 없다.

(4)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및 보호범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지 않

고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자기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고 침해받지 않으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남녀관계, 가족관계, 학력 및 사회적 경력, 결혼 및 이혼 경력, 병력이나 신체 및 정신상의 결함, 재산관계, 사상이나 정치적 신조, 민·형사 사건에 관련된 정보 등이 해당된다.

(5)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보호범위

대중매체의 발달로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예술가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성명, 초상, 기타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격적 요소가 본인의 승낙 없이 또는 계약 범위를 넘어 광고나 달력, 카드 등 물품에 사용되는 경우 생기는 침해를 말한다. 침해의 유형으로는 허락 없이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 그 모습이 새겨진 상품이나 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 특정 공간이나 물품에 타인의 성명을 붙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상의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의 방법 및 종류

(1)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로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실제 조정결과에서

도 살펴볼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종류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

재산상 손해배상은 언론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당해 영업이 부진해졌거나 파산, 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악의, 의도적 무시, 고의성 있는 경우 장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3) 손해배상 신청액의 비교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재판을 통하는 방법과 2005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으로 이원화됐다. 두 청구방법은 두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결정의 시간적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3주 이내에 조정 및 중재를 결정하는 초스피드 결정 방식이지만 재판은 비교적 긴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 입증자료의 범위가 다르고 이에 따라 결정액도 다르다는 점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손해배상 말고도 정정 또는 반론, 추후보도가 함께 수반되는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자료만을 입증의 근거로 삼고 결정액도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다.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주제논문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동적으로 법정에 소가 제기된다. 이런 경우 재판의 일차적 여과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4) 손해배상 신청내용의 비교분석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언론침해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미니스커트를 입은 뒷모습을 찍은 사진의 경우에도 소액이지만 손해배상이 이루어졌고, 벚꽃 구경을 하는 회사직원들의 모습을 연인관계로 오인하게끔 했다는 이유로 조정신청된 경우도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명예훼손의 경우 3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100만 원에서 2억 원, 프라이버시 침해는 500만 원에서 1억 원, 음성권 침해는 100만 원에서 3,000만 원, 신용훼손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었으나 실제로 조정은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이루어졌다.

다. 언론중재제도의 장점과 단점

지금까지의 내용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중재제도의 단점과 장점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통한 손해배상은 그 액수가 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신청인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②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재판의 경우는 판결액이 1억 원을 넘는 등 그 액수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조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아 신청인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③ 언론보도로 인한 조정신청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재판과 비교해 빠른 피해구제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④ 언론중재부의 조정이 인간적 화해로 이루어져 마무리가 깔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⑤ 조정에 의한 피해배상 액수가 낮아 언론사가 인격권 침해를 남용할 우려를 가지고 있다.

⑥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아, 자칫 법원 소송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사에 지나친 부담을 가져오는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

4. 결 론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언론중재제도는 여러가지 긍정적 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피해구제율의 증가이다. 이렇게 피해구제율이 높아지는 것은 중재위원회의 조정이 평면적 위치에서 자연스러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중재위원들이 법조·언론·학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조정의 성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둘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구제를 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현대인의 특성과 함께 언론중재제도를 신뢰하는 정도가 높아진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단.

반면 언론중재제도가 보완해 나갈 과제도 없지 않다.

첫째, 언론피해구제를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 인

정하고 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도 손해배상액이 높아지는 것을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위협적인 존재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제도를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언론사도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이 높아져 언론자유가 위축되었다고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사내 고충처리인의 배치와 적절한 활용을 통해 사전에 손해배상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고충처리인-언론중재위 협의 등을 통해 그 보도의 선에 합법성을 강화한다면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는 제한 없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피해구제의 매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일이다.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인터넷 신문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포털과 블로그 또한 언론피해를 가져오는 매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포함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는 형편이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이고, 스피드 사회이다. 정보는 급속도로 이동하는데 침해를 방지하는 법과 제도는 거북이걸음을 한다면 그 의미가 없을 것이다.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자유를 침해하거나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토 론

사 회 김 규 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정두숙(광주KBS 제작부장) : 프로그램 제작 시 어떻게 하면 취재원의 성명권이나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을지를 늘 고민한다. 많은 제작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겠지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다보면 의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니터링에 의해 만들어진 평가와 판단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한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도 시 제작의도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가끔 제작의도를 충분히 알렸음에도 일방적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취재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진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중재부는 조정결정시 제작진의 프로그램 제작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주었으면 한다.

우리 제작진 역시 언론중재위원회가 기획하는 다양한 토론회나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토 론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방송의 경우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체심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방송심의기준에 근거해 보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예방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사전 심의 등 예방적 성격이나 기능을 갖고 있는 언론사의 부서와 언론중재위원회가 서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보를 교류하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언론피해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옥조(광주전남기자협회 회장) : 우스갯소리지만 언론중재제도가 활성화되면 아마도 현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오히려 싫어하지 않을까 싶다. 기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로 인해 언론소비자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당연히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특히 최근 독자와 시청자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법조기자들과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있는데 결론은 '사안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과 언론인 간의 시각 차이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쓸 기사가 없다'는 것이다.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기사가 아닌데도 그러한 여지가 있는 듯한 시각이 존재하면 기사의 의도와 편집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당하다해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론나게 현실이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언론소비자, 생산자가 모여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모든 것이 소비자 위주로 움직이는 시대인 이상 편집방향이나 기자들의 의식도 이에 맞게 바뀌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윤수(무등일보 고충처리인) : 옴부즈맨 제도나 형식적인 제도라는 지적에 공감하며 또 옴부즈맨의 역할이 자사의 홍보나 타사를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하기 전에 신문, 방송이 먼저 문제가 있는 보도를 걸러내자는 취지에서 옴부즈맨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기자들과 상충되는 일들이 많아 옴부즈맨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론중재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신문·방송사의 옴부즈맨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언론피해구제에 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선호(인터넷 광양만권 뉴스 발행인) : 인터넷 언론의 강점은 현장을 가급적 많이 취재해 기사화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을 취재한 기사가 나가면 대개 관계자들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소멸시켜 버린다. 만약 이런 현장취재 기사와 관련해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자들은 현장 복원의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 않는 한 기자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 취재현장을 복구하고 또 보존할 수 있는 방안도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강구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나정호(보해양조 홍보부 차장) : 일반 기업들이 업무상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언론중재제도가 중요한 것은 오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언론중재제도의 이용과 절차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고 있으며, 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조정신청을 하며 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무지한 편이다. 위원회가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많은 사람들이 언론중재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김덕모(호남대 신방과 교수) : 최근 한 언론의 신정아씨 누드 사진 보도가 언론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공익을 위한 보도로 위법성이 조각될 것인가 아니면 인격권을 침해한 보도인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요즘과 같은 매체 환경에서는 신정아씨 것처럼 알권리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빈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의 법익과 알권리의 충돌에 따른 법적 분쟁이 빈번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언론중재제도라는 효용성있는 법적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신방과 학생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상근 변호사에게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강한 바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김갑숙(광주YWCA 회장) : 최근 광주지역 여성단

체들이 언론의 오보에 대해 공동 대응한 적이 있는데 언론중재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느라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YWCA가 운영하는 소비자개발센터에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여성들의 문의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YWCA가 운영하는 소비자개발센터와 언론중재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한다.

조준식(나주시청 홍보팀) : 전직 기자출신으로 많은 점을 느끼게 하는 토론회이다. 기사시절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언론중재제도였지만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가 된 것 같다. 현재 단체나 기관이 조정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조정대리자가 신청 범위를 너무 좁게 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범위를 부국장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신청인에게도 이와 동등한 정도의 대리인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의 경우 4급 서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리인으로 조정회의에 참석할 경우 시청 업무는 올스톱되다시피 한다. 조정신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실무진으로 대리인 자격을 낮춰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설동희(전광일보 논설위원) : 언론소비자의 입장에서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언론

도론

소비자를 위해서는 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며 이럴 경우 취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강제로 취재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이 오보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언론은 책임만 지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게 오늘날 취재환경의 현실이다. 취재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사실적 주장에 일부 의견이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되려면 사실적 주장에 의견이나 견해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용인되어야 하며, 용인되는 범주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이를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본다.

윤종채(무등일보 논설주간) : 기자들은 진실보도를 생명으로 알아야 하며 실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선에서 뛰고 있다. 진실보도를 하다보면 가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라면 일정부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육하원칙에 입각해 빈틈없는 보도를 했음에도 상습적으로 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악의적인 신청인들이 있다. 이런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과감히 기각을 해야 한다. 기각률을 높이는 것이 악의적인 신청 남발을 막고 언론중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김종일(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 언론중재법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그리고 직권 조정의 경우는 21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14일이나 21일이라는 기간을 경과하여 조정 결정을 유보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과거 KBS 보도국장 재직 시 공무원 비리를 보도하였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당한 적이 있다. 그 공무원은 자신의 불법행위가 명백함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다음 우리를 압박했다. 조정신청부터 사건처리까지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만약 당시 조정처리 기간이 조금만 길었더라면, 중재위원회에서 결정을 유보했더라면, 기간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명쾌하게 사건을 매듭지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중재위원회가 그 공무원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언론중재제도에 직권유보결정 제도가 도입되면 악의적 신청과 같은 병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포털로 인한 인격권 침해도 사회적 문제이지만 악의적인 댓글이나 성명서도 인격권 침해의 또 다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세워야 한다고 본다.

김순홍(한국사회조사연구소 소장) : 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하는 일이 정치,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제 현상을 조사·분석하고 때로는 이를 보도자료로 가공하여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는데, 보도시 언론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회일비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특히 공익성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할 경우 언론들은 자신들의 입장 때문에 조사의도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보도자료를 해석하여 보도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악의는 없으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악의적인 보도는 아니지만 전문성이 없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조정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해외시찰 보고서

- 호주와 뉴질랜드의 언론보도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단상¹⁾ -

상담교육팀장 양재규

I. 2007년 해외시찰 개요

올해 해외시찰의 대상지는 드넓은 태평양 너머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였다. 조준희 위원장, 양재규 팀장, 여운규 부산사무소장 3인으로 구성된 시찰팀은 11월 8일 저녁 7시 25분 인천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811 항공편을 이용하여 8박 9일의 시찰길에 올랐다. 첫 목적지는 시드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호주언론평의회와 시드니모닝헤럴드를 9일과 12일에 각각 방문했다.

호주언론평의회(Australian Press Council: APC)는 지난 2001년 해외시찰팀이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했다. 2001년 당시 위원장이었던 Ken McKinnon 교수 그리고 사무총장

이었던 Jack R. Herman 씨는 여전히 같은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고, 우리의 면담에 기꺼이 응해주었다. 이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소식지(APC news), 연구보고서²⁾ 등의 다양한 자료를 우리 숫자에 맞추어 준비해놓고 있었다. 덕분에 면담만으로 해소되지 않은 의문 점들에 큰 도움이 되었다.

12일 오전 두 번째 방문처인 시드니모닝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 SMH)가 위치하고 있는 Fairfax 사옥을 찾았다. Fairfax는 'SMH',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를 비롯한 다수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언론기업이다.³⁾ Fairfax 사옥은 관광명소이자 분위기 좋은 카페와 식당이 즐비한 달링하버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방문한 날이 마침 새로운 사옥으로의 이전을 기념하는 개

-
- 1) '단상'이라는 보고서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고심 끝에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글을 쓰다 보니 주관적인 관점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언론과 관련 제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8박 9일의 일정만으로 그곳 언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보고를 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글이라는 점을 표시하고자 했다.
 - 2) 자료의 표제는 'State of the News Print Media in Australia'이다. 책 내용을 살펴보니, 호주에서의 언론 현황에 대한 조사보고서로 생각된다.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신문의 미래는 있는가?"이다. 신문 산업의 위기는 우리나라나 호주에서나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듯하다.
 - 3) 거대 언론기업인 Fairfax 사에 대해 부연설명을 덧붙인다. 이 회사의 정식 명칭은 'John Fairfax Media'이다. APC 발행의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이 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매체는 4종의 전국지, 수십 종의 지역지, 5종의 잡지, 다수의 경제지 그리고 10여 종의 인터넷 신문을 포함하여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나아가 Fairfax 사는 뉴질랜드에서도 'The Dominion Post'를 비롯한 다수의 신문 및 잡지,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Annual Report, 2006, No.30, APC, p.83-85.)



관일이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니 아직 풀지 않은 박스들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었다. 면담자는 친절하고, 온화해 보이는 Sam North 편집국장이었다. 하지만 통역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자들에게는 엄격하고 호랑이처럼 무섭다고 한다. 1시간 20분에 걸친 대담은 시종일관 편안하면서도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시드니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다음날인 13일 새벽, 우리는 수직꼬리날개에 캥거루가 그려져 있는 콰타스항공 QF47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의 수도인 웰링턴으로 향했다. 웰링턴의 기후는 좋지 않았다. 초여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춥고, 비가 오고, 바람이 거칠었다. 비가 오는데도 바람이 강해 우산을 쓴 사람이 없었다. 우리의 세 번째 방문처인 뉴질랜드언론평의회가 숙소 바로 옆에 있어서 걸어서 이동했다. 뉴질랜드언론평의회(New Zealand Press Council: NZPC)는 아주 소규모였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와 대담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 부의장인 Denis McLean 씨, 위원을 맡고 있는 Alan Samson 교수, 기업체에서 일하면서도 동시에 공익을 대표하고 있는 위원인 Lynn Scott 씨 그리고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Mary Major 씨까지 도합 4명이 배석하였다. 특히, Denis McLean 부의장의 프로필을 사전에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 차관에 주미대사까지 지낸 거물이었다. 프로필로 인해 갖게 된 선입견 때문이었는지 막상 대면했을 때의 느낌은 소탈하고, 수수했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면담은 12시를 넘도록 끝날 줄을 몰랐다. 12시가 점심시간인 점을 감안하여 4~50분 만에 면담이 끝나리라

예상했었다. 그런데 면담을 마치고 사진까지 찍고 나니 1시가 다 되었다. 면담 후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대사관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 이런 일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한다.

시찰팀의 마지막 목적지는 오클랜드였다. 오클랜드는 웰링턴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웰링턴으로 수도를 옮기기 이전의 뉴질랜드 수도였다고 한다. 완만한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규모 면에 있어서 웰링턴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오클랜드에 와보니 웰링턴은 한 나라의 수도라기보다는 지방의 한 소도시 같은 느낌이 든다. 이곳에서는 뉴질랜드 최대의 신문⁴⁾이라 할 수 있는 뉴질랜드헤럴드(New Zealand Herald: NZH)를 방문했다. 우리 일행을 맞이한 John Gardner 편집부국장은 자기 방으로 가는 도중에 편집국 내부를 둘러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는데 기자들이 취재차 현장으로 나가서인지 사무실은 한산했다. 면담은 Gardner 씨의 방에서 1시간 20분 동안 이루어졌다. 그는 오랜 기자생활을 통해 훈련이 된 듯 질문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 논리적인 대답을 해주었다. 면담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Gardner 씨가 정년퇴직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년을 채우기까지 기자로서의 외길을 달려온 그의 경주에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마음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이로써 이번 해외시찰의 공식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4) 뉴질랜드헤럴드가 뉴질랜드 제1의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오클랜드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이라고 한다. 현재 뉴질랜드 내에는 전국지가 없다. John Gardner 씨는 전국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뉴질랜드 전 지역에서 이 신문이 팔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설명했다. 현재 뉴질랜드헤럴드의 발행부수는 21만 4천부 정도다.

II. 방문처별 주요 면담내용에 대한 요약보고

1. 호주언론평의회(Australian Press Council: APC)

1976년 설립된 APC는 현재까지 30년 이상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무처 규모만 놓고 본다면 우리 위원회 사무처와 비교도 안 되는 소규모 조직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APC와의 면담에 임함에 있어서 아래 두 가지 점에 집중하고자 했다.

가. 독자불만처리절차

APC 독자불만처리절차의 성격에 대한 정의부터 시도해보면, 결정(adjudication)⁶⁾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지향하는 다양한 ADR의 집합이라 할 만하다. APC에 접수된 사건은 가장 먼저 '알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APC 사무처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사무처장⁷⁾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알선이 실패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는 정식으로 언론사 측에 송부되고 이에 대한 언론사의 답변 또한 신청인에게 송부된다. 이 단계에서 언론사가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신청인이 사건을 취하하는 경

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결국 최종절차라 할 수 있는 '결정'⁸⁾으로 넘어간다.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과 유사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중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즉, 불만처리위원회(The Complaints Committee)⁹⁾라는 APC 산하의 소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한 후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초안이 APC 전체 회의에 상정되어 승인받는 것이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통상적으로 전체회의 하루 전날 개최되며 소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전체회의에서 수정, 변경되는 일도 많다고 한다. 신청에서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상 특이한 점들에 대해서는 항목을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소위원회 심리절차상의 특징

소위원회 회의는 우리로 치면 심리기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당사자들에게 통보되고 나면 사건에 관한 더 이상의 추가 서면이나 자료제출이 양측 모두에게 금지된다. 그리고 회의에 당사자가 출석해서도 이미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할 수 없다. 이것은 상대방의 공격,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한다.¹⁰⁾ 기일에 임박하

5) APC 사무처 직원은 총 4명이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22명을 포함한다 해도 전체 직원 수는 26명에 불과하다.
6) '평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결정과 평결 사이에 내용적 차이는 없는 듯하다. 언론평의회의 결정이라는 의미에서 '평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7) 편의상 The Executive Secretary를 사무처장이라고 번역했다. 상담에서 사건 접수, 소식지 및 연차보고서 발간 등 여러 중요 업무를 맡고 있었다.
8) 물론, 결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양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각 지역에 있는 위원을 조정자로 선임해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 절차도 있다.
9) 소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위원장 1명, 공익 대표 3명, 발행인 대표 1명, 언론인 1명, 편집인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7명의 위원은 매달 전체 위원 중에서 자원자 중심으로 위원장에 의해서 임명된다(Annual Report, 2006, No.30, APC, p.74.)
10) The Australian Press Council Booklet No.9, "Objects, Principles and Complaints Procedure", 2006, APC, p.13.



여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고 반박서면을 제출한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회의 출석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2) 소송포기각서(a legal waiver)의 제출의무

접수된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무처장은 신청인에게 소송포기각서를 제출하게끔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신청인이 소송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무처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APC의 절차가 일종의 대체적분쟁해결절차(ADR)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소송에서의 승패가능성을 미리 점검보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전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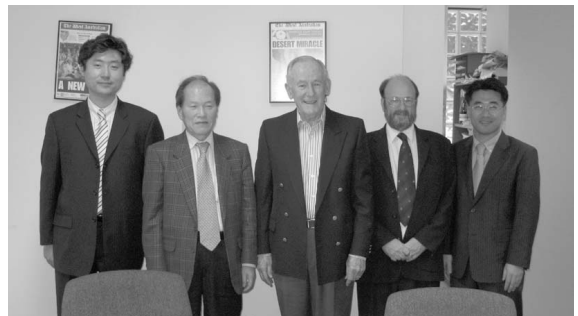
(3) 결정의 유형 및 기준

APC 결정의 유형은 크게 인용(upheld)과 기각(dismissed)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인용에는 당사자의 불만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에 이르는 1년 동안에 총 30건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중에서 인용된 사건은 17건으로 56.7%의 인용률을 보였다.¹²⁾ 같은 기간, APC에 접수된 전체 신청건수는 420건이

고, 그 중에서 218건은 결정에 이르기 전에 취하되거나 알선, 조정 등에 의해 해결되었다.¹³⁾

이러한 결정의 근거 내지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일까? APC가 자율규제기구이므로 결정의 근거 또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다. 9개 조문의 'Statement of Principles'와 8개 조문의 'Print Media Privacy Standards' 두 가지다. 이들 지침의 내용을 모두 소개하면 좋겠지만 지면 관계상 최근 개정된 바 있는 'Statement of Principles'의 다섯 번째 원칙만을 소개한다.

'언론사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이를 읽는 독자들이 혼동하지 않게끔 배려하기만 하면 논쟁 중인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관점을 보도할 수 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확하게 전달해서는 안 되며, 기사의 표제들은 본문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지를 조작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독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¹⁴⁾



<APC 방문>

11) *ibid*, p.11.

12) Annual Report, 2006, No.30, APC, p.49.

13) *ibid*, p.46.

14) 원문은 다음과 같다. 'Publications are free to advocate their own views and publish the views of others on controversial topics, as long as readers are readily able to recognize what is fact and what is opinion. Relevant facts should not be misrepresented or suppressed, headlines and captions should fairly reflect the tenor of an article and readers should be advised of any manipulation of images and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4) 정리

앞에서 이미 APC 절차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정의를 시도해보았지만 APC의 절차는 ADR로서 흔히 논의되는 협상, 조정, 중재 어느 한 가지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여러 방법들이 절차 진행에 따라 시도되는 매우 특이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절차 진행 초기에는 알선에 의한 당사자 간 협상(negotiation)이 시도되기도 하고, 중반부에 이르러서는 당사자의 승낙에 의한 조정(conciliation)이 시도될 수도 있다. 그런 후에는 결국 강제력도 없는 결정(adjudication)으로서 사건을 마무리한다. 다소 산만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은 채 사건의 신속, 원만한 타결을 위해 다채로운 노력을 기울이는 점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 온라인 뉴스에 대한 불만처리

온라인 뉴스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호주도 예외가 아니었다. 2004년 내지 2005년을 기준으로 호주에서의 인터넷 보급률은 56%라고 한다.¹⁵⁾ 이에 따라 APC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문사들이 빠른 속도로 멀티미디어 회사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계 내 5가지 주요한 경향 중 하나로 꼽혔다.¹⁶⁾ 다만, 포털사이트에 관해서만큼은 우리와 상황이 달랐다. Herman 사무처장에게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뉴스에 대한 신청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물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호주 내의 대표적인 포털로는 야후, MSN, 구글 등을 들 수 있

는데 야후나 MSN에 게재되는 뉴스들은 모두 케이 블채널로 방송되고 있고, 구글의 경우에는 뉴스 검색이 가능하지만 자료실 내지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설명을 듣고 보니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한국 내 포털의 뉴스서비스 형태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온라인 뉴스의 유통을 포털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고, 나아가 그날그날의 주요 뉴스를 선택하여 초기 화면에 올리는 방식의 서비스는 우리의 독특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⁷⁾

2. 시드니모닝헤럴드

(Sydney Morning Herald: SMH)

Sam North 편집국장과의 면담에 있어서 주된 초점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독자들이 제기한 불만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현황이었고, 둘째는 호주언론평의회에 대한 평가였으며, 셋째는 온라인 뉴스 관련 문제였다.

가. 독자불만처리시스템

SMH는 제법 체계적인 독자불만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우선 사내에 독자불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ReaderLink' 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 팀 내에는 2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독자와 기자 사이의 가교 내지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독자가 제기한 불만은 이 부서에 접수되고, 담당 직원은 불

15) State of the News Print Media in Australia, APC, sydney, 2006, p.5.

16) *ibid*, p.5-6.

17) 송경재, 포털 뉴스서비스와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표현의 자유와 포털 규제' 토론회 자료집, 2007, 서울, 43-48쪽.; 이 글에서는 뉴스의 유통과 확산을 포털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뉴스서비스 편집을 통한 제2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포털들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켜 '한국형 포털서비스' 라고 명명하였다.



만이 제기된 기사를 쓴 해당 기자에게 e-mail로 불만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한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해당 기자는 2일 내에 불만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한다. 만일, 이들의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해명이나 응답이 없으면 이 사건은 편집국장에게 보고되며, 편집국장이 직접 해당 기자와의 접촉에 나선다.

Sam North 편집국장이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1,166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사건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사에 대한 문의(Inquiry)가 5,7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Complaint)이 2,337건, 반론(Comment)이 1,468건, 오류(Error)¹⁸⁾가 1,21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사건 중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섹션은 사회란(National)과 오피니언란 등이다.

'ReaderLink' 팀의 인적 구성에 관련된 보충 질문을 시도했다. 사내 직원들이 불만처리를 담당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부 인사로 불만처리를 담당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Sam North 편집국장은 20여 년 전에 외부 옴부즈맨 제도를 시도한 바 있었는데 실패로 끝났으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호주 정부의 언론에 대한 대응태도에 대해서도 물었다. 정부도 독자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담담하게 답변했다. 동시에 정부는 늘 좋은 소리(good news)만 듣기를 원한다고 했고, 좀 시끄러운 독자라고 했다. 정부의 언론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이 있기는 하나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한다.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정정 등을 요구해오면 기꺼

이 들어줄 용의가 있으나 정부의 시책 등에 대한 비판적 기사의 논조나 의견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못 박아 말했다.

나. APC에 대한 평가

Sam North 편집국장은 현직 언론인이면서 동시에 APC의 위원이기도 하다. APC가 언론사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보니 이러한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Sam North 편집국장에게 APC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난처할 수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APC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통보가 오면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다고 Sam North 편집국장은 말했다. 또한 APC의 결정이 항상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언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위원들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렇지만 APC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총평을 내렸다. 특히 언론계 외부의 인사와 언론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APC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바람직한 구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 온라인 뉴스 관련 문제

SMH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당일 아침, 호텔 식당 입구에 비치된 SMH 신문을 훑어보다가 사무실 이전과 더불어 온라인 뉴스부를 대폭 확대, 개편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에 온라인 뉴스 관련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18) 통계표상으로는, 'error'와 'downgraded error'가 구분되어 있으나 양자의 차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합쳐서 'error'로 표시한다.

우선 온라인 뉴스에 대한 정정보도의 게재 방식과 관련해서 Sam North 편집국장은 잘못된 기사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원 기사를 수정하여 올린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에 더해 기사 하단부에 “초판은 잘못되어 수정했다”는 알림글을 같이 띄우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또 온라인 뉴스와 관련된 흥미 있는 소송 한 건을 소개했다. 2003년, 멜버른에 사는 조셉 굿닉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발행한 온라인 뉴스에 대해 호주 법원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피고가 미국의 언론사이고 기사의 발행지도 호주가 아니었으므로 관할이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명예훼손이라는 결과가 호주 내에서 발생했으므로 호주에서의 소송제기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내려졌다. 결국 해당 사건에서 조셉은 승소했다고 한다.



〈SMH 편집국장과 면담〉

3. 뉴질랜드언론평의회

(New Zealand Press Council: NZPC)

호주와 뉴질랜드 두 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꼴이다. 호주의 콰타스 항공사가 뉴질랜드 국내노

선에 취향하고 있을 정도였다. 두 나라가 서로 닮은 것처럼 NZPC 역시 APC와 비슷했다. 설립연도에 있어서는 NZPC가 1972년으로 APC보다 4년이 빠르다. NZPC 방문에 있어서 주안점을 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가. 위원구성의 절차, 방법

NZPC는 위원장 1인과 공익 대표 5인, 신문발행인들의 연합체 대표 2인, 잡지 발행인 대표 1인, 출판 산업 대표 2인 포함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주로 은퇴한 법관들이 맡는다고 한다. 현재의 위원장인 Barry Paterson 역시 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공익 대표를 맡고 있는 위원들의 직업은 아주 다양하다. 변호사가 두 명, 교사가 한 명, 은퇴한 외교관이 한 명 그리고 회사원이 한 명이다. 특이한 것은 공익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었는데 전국에 위원 모집 광고를 내서 이 광고를 본 사람들 중에 위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고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터뷰를 해서 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한다. 심사단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NZPC 위원 구성과 우리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미국의 배심제와 우리의 재판부 사이의 차이만큼이나 이질적이라고 생각된다. 위원들의 전문성, 객관성이나 공정성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위원 구성 방식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 민주성 면에 있어서는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여지도 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자발적인 소원을 가진 국민 중에서 신청에 의해 위원으로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NZPC 방문〉

나. APC 절차와의 차이점

NZPC 절차는 APC 절차와 유사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APC 절차는 결정에 이르기 전에 알선을 통한 당사자 간 협상이라든가, 위원을 통한 조정 등 다양한 분쟁해결의 방법을 시도한다. 그러나 NZPC의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면 당사자 간 서면에 의한 공방을 거친 후에 곧바로 결정에 회부된다. 협상, 조정 등의 방법에 의한 사전해결을 전혀 시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의 절차는 위원회에 대한 당사자나 언론사 측의 깊은 신뢰 없이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도를 30년 이상 운영해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나 언론사들로부터 NZPC가 신뢰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심리절차의 차이점이다. 심리에 당사자들 및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참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심리에 참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한다. 2006년의 경우, 전체 55건의 사건 중에 심리에 참석한 사람 한 두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결국 당사자들 간에 오고 간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다. 정리

조금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으나, 최근 들어 NZPC에 접수 처리되는 사건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2003년에는 79건, 2004년에는 75건, 2005년 80건, 2006년 55건이다. 그 이유를 묻자, NZPC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언론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으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듯 했다. NZPC에서 절차나 제도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 위원회 제도나 절차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졌다. NZPC와 우리 위원회 간에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이루는 방안 대해서도 강구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다.

4. 뉴질랜드헤럴드(New Zealand Herald: NZH)

John Gardner 편집부국장과의 면담에서도 SMH 방문 때와 비슷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만 한 가지, 뉴질랜드 내 한국이민자들과 같은 소수민족에 대한 보도태도와 관련해서 시사적인 질문을 추가했다.

가. 오보방지 및 오보가 발생한 경우 대처방안에 대하여

SMH와는 달리 NZH에는 독자불만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부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신문 내에 'correction & clarification'이라는 섹션이 있고, 이 섹션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자 한 사람이 독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을 처리하고 있다. 독자불만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부서가 없다고 해서 자신들이 독자의 불만을 소홀하게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John Gardner

편집부국장은 말했다. 독자들이 기사에 대한 불만이 나 이의를 제기하면 즉각적으로 이에 반응하고, 일단 들어주고 불만을 수용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독자들의 불만제기건수가 많지 않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2006년도에 NZPC는 NZH에 대한 총 3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¹⁹⁾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한 건도 없었으며 13건의 불만신청 문건이 변호사를 통해서 접수되었으나 원만히 타결되었다고 한다.

불만처리를 위한 시스템 측면에서는 다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으나 오보방지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면에서는 몇 가지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다. 우선 한국의 몇몇 신문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변호사 사전기사 열람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NZH를 발행하는 회사인 APN 내에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변호사가 한 명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를 통해 범죄보도라든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큰 기사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사전에 열람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오보에 대해서는 엄격하리만큼 매우 철저하게 다루고 있음을 한 예를 통해 설명했다. 한 기자가 실제로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 실린 기사를 토대로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었다. 이 일로 인해 담당 기자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회사 차원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낸 것은 물론이고, 이전에 그 기자가 쓴 다른 기사에는 혹시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체크했다는 것이다. 오보가 발생했을 때 어물쩍 넘어가지 않고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제2, 제3의 오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

나. NZPC에 대한 평가

John Gardner 편집부국장 역시 SMH의 Sam North 편집부장과 같이 현직 언론평의회 위원이다. 이런 그에게 NZPC에 대한 평을 부탁했다. John Gardner 편집부국장은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기자로서의 평가임을 전제로 하고서 만족스럽다고 했다. 현직 언론인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평의회로서의 독립성, 공정성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John Gardner 편집부국장은 평의회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정확히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평의회 운영재원 문제다. 언론사들이 출연한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평의회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무엇인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NZPC의 경우처럼 언론사들이 출연한 돈으로 운영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예산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며 부러움을 나타냈다.



〈NZH 편집부국장과 함께〉

19) The 34th report of the NZPC, 2006, NZPC, p.92.



다. 언론보도 관련 각종 인권문제들

그 외에 언론보도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인권문제들에 대해 질문과 대답이 오고갔다. 개인의 초상보호와 관련해서 물었는데, 아직 뉴질랜드에서는 초상권이나 사생활이 문제되어 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서서히 느끼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당노 관련 기사에 뉴질랜드 사람의 사진을 내보내지 않는다. 또 DB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라도 뚱뚱한 사람의 사진과 같이 당사자로서 불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원이거나 거리 등에서의 사진촬영은 공공장소(public place)에서의 문제이므로 큰 걸림이 없다. 그러나 만일 이 경우에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다민족 국가인 뉴질랜드는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마오리 족의 문화를 보존하고, 대부분의 공공표지판에 영어와 더불어 마오리족 언어를 기재하는 등 최소한 외견상으로는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과연 뉴질랜드의 언론 역시 소수 이민자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John Gardner 편집부국장은 답변하기가 곤란한 듯 난색을 표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극히 사적인 감상이었지만, 문득 현지 언론의 편파적이거나 왜곡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을 교민을 상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정기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외국민 보호 및 법률지원 차원에서 그곳 언론평의회를 통한 불만 신청절차라든가, 각 언론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제도 등을 연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장기적

으로 세계적인 언론피해구제기구를 지향하는 우리 위원회의 비전에 비추어 진지하게 고려해봄직하다.

Ⅲ. 보고를 마치며

비록 호주와 뉴질랜드 두 나라를 돌아본 것에 불과했지만 우리 위원회의 제도와 절차가 언론보도를 위한 피해구제에 얼마나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절차인지 이번 시찰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 제도 운영의 근거도 확실하고, 조정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온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운영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얻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서구 언론들로부터 아직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도 들었다. 언론보도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든가, 그저 말로만 외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혹은 자정노력이 아니라 오보에 대처하는 냉정한 태도 등 우리 언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국민은 언론을, 언론은 정부를, 정부는 또한 언론을 경원시하고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자율적인 규제 장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호주나 뉴질랜드의 사회 분위기가 그곳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만큼이나 부럽다. 혼탁한 서울의 공기도 하루 속히 정화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언론환경 또한 맑고 깨끗해져서 의심 없이 신문 읽고, 방송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 □

1. 들어가는 말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크게 확대됐다. 이는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언론중재제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언론피해구제기관과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유럽 4개국의 언론자율규제 현황과 언론사의 움부즈만 사례에 대해 현지 언론학 교수들 및 언론관계자들과의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 유럽 4개국의 언론자율 규제와 움부즈만

1) 영국의 언론자율규제

영국 언론의 언론불만처리시스템은 오랫동안 언론평의회(Press Council)에서 담당했으나 1947년부터 1948년까지 조직이 재편성되었고, 1953년 이후 자율규제 시스템의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1991년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 Press Complaints Commission)로 모든 업무가 통합되었는데, 독자의 권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언론평의회는 만족할 만한 협상과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기자와 언론 노조의 긴 협상이 있던 후 PCC를 통해 자율 규제라는 의미가 재정립된 것이다.

영국의 언론은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념을 중시하며,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철저하게 자율 규제, 자율 등록 제도를 지켜왔다. PCC가 독자나 시청자를 대신해 언론사와 방송사로 부터 직접 사과를 받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당위적 모순이 있다. PCC는 신문사들에게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정 분쟁으로 번지기 이전 불만 청구인과 해명을 해야 하는 피청구인(주로 언론사와 방송사)의 관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PCC의 역할이 제한된 자율 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이다. 독자의 불만을 듣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분명 언론의 책임이다. 그런데 언론사의 구조상 움부즈만 같은 제도를 모두 갖추기엔 무리가 있다. 때문에 영국에서는 PCC라는 기관이 위임을 받아 이를 중재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PCC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에 그치고 있어, PCC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좀 더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이를테면 악의적 보도를 한 기자에게는 더 강한 제재와 벌금을 선고하고, 언론의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개별 언론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BBC는 대표적인 공영방송답게 오보 예방을 위해 각각의 주제에 대해 보도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편집 가이드라인(Editorial Guideline)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고참 기자들과 지속적으로 상의한다. 보도 가이드라인은 Accuracy, Impartiality, Politics & Public policy, War, Terror

& Emergency 등으로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다.

BBC의 웹사이트에서는 최근의 여러 이슈, 중요한 불만이나 이슈가 제기될만한 것들에 대해 답변을 한다. 'Visit Read' 나 에디터들의 블로그에는 BBC의 에디터들이 새로운 뉴스보도에서 나온 이슈들에 대한 설명을 올린다. 각각의 답변은 보통 6개월가량 게재된다. 답변에는 설명, 수정, 사과, 개선 등 적합한 조치들이 기술되며 이후 모든 불만 사항을 요약해 분기별로 ECU(Editorial Complaints Unit) 리포트로 게시한다.

불만 검토 리포트(Review Complaint Reports)에는 두 가지 내용이 실리는데 하나는 분기별로 모든 불만의 주제를 요약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ECU에 언급된 불만에 대한 요약이다. 후속 조치와 월간 리포트가 감독기관인 BBC 트러스트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답변은 각 부서별 담당자나 BBC 인포메이션에서 한다.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에 대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불만에 대해서는 BBC의 후속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12주 이내에 처음 답변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면 된다.

BBC에서 방송하거나 게시한 특정한 아이템에 관한 것일 경우, 그것이 BBC의 편집 기준(Editorial Standards)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면 12주 이내 ECU에 연락하면 된다. 만약 ECU의 판정에 대해서 논하고 싶다면 8주 안에 BBC 트러스트의 편집기준위원회(BBC Trust's Editorial Standards Committee)에 어필하면 된다. BBC의 Complaints Management Board(CMB) 소속 고위임원들은 매월 회의를 통해 편집이나 관리 과정을 통해 접수된 불만사항으로부터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점검하며 BBC 트러스트 역시 BBC를 모니터링하고 BBC의 불만 처리의 효용성에 관해 리포트한다. 불만처리 기간은 12주 내의 전송과 10일 이내에 회신을 목표로 한다.

가디언의 옴부즈만은 일주일에 한번씩 'Open Door' 섹션을 통해 직접 칼럼을 쓰며, 매일 'Corrections

and Clarifications' 섹션을 통해 정정 기사 보도를 내고 있다. 하루 평균 50~100건이 접수되며 대부분 이름 또는 사진 등의 정정을 요구하며 때에 따라서는 사실 여부가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옴부즈만은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처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접수 항목을 정리한 후 편집국에 사실 확인을 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답변한다. 주로 오프라인 신문 위주지만 인터넷 기사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옴부즈만은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있으며 편집자나 기자를 대신해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주 업무는 기사에 대한 오보 확인과 정정 처리이다.

일반적으로 영국 언론사들에는 6~7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전문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가디언의 경우 현재 5명의 위원이 있다. 영국은 명예훼손에 대해 아주 엄격하다. 신문사와 독자의 불만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다. 옴부즈만의 행동강령이자 편집자와 기자의 규범인 "Code of Practice"는 PCC에 의해 지난 2007년 6월 수정되어, 2007년 8월 새롭게 발효됐다. 이 "Code of Practice"는 "가디언의 편집자 가이드라인(2002)"에 담겨 있으며, 익명의 정보원 인용, 표절, 출처, 취재 당시 취재인의 동의 여부 상황, 특정 사고나 범죄자에 관한 인종 보도 자제 등의 내용이 추가돼 있다.

2) 프랑스의 '사법부에 의한 구제'

프랑스에서는 미디어에 보도된 기사 내용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프랑스 언론이 겪어온 역사적 특수성 때문인데, 프랑스에서는 18세기 이후 근대적 신문이 처음 등장한 이래 정보의 내용을 둘러싸고 언론사와 국가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이 벌어졌다. 당시에 국가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사후 검열의 형태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통제했다. 1789년에 대혁명이 일어난 이후, 언론 분야에서 정보의 자유에 대한 원칙이 확립된 이후, 이 분야에 있어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기사 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틀도 존재해서는 안 되며, 또 그러한 제도를 통해 저널리스트의 작업 내용물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심판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이 새롭게 확립된 것이다.

하지만 대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19세기 내내 크나큰 혼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법적인 형태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1881년에 이르러 프랑스 정부는 마침내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을 공포하였는데, 이 법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에서의 언론 자유에 관한 기본법으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 있다. 이 법의 근본 원리는 (법률 제1조에 언급된 것처럼) “모든 정보는 자유롭다” 그리고 “누구도 이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로서는 이러한 언론의 완전한 자유 속에서도 언론 보도로 인한 각종 피해가 여러 분야에서 속출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적으로 “법에 의거하여”,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이러한 피해를 구제받도록 한다는 원칙을 확립시켰다. 그래서 프랑스의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 제도의 근본 원칙을 흔히 “사법 원칙(principe juridique)”이라고 부른다.

결국 1881년 언론법의 원칙 속에는 “설사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직무에 있어 실책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가 다시 개입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모두의 근본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만약 저널리스트가 실책을 저질렀다면, 그는 법과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기도 하다.

1940년부터 1944년까지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다. 나치 괴뢰 정권인 비시(Vichy) 정부는 이 기간 중 저널리스트 직업에 대한 명령을 제정한 바 있는데, 여기서 언론의 오보나 각종 오류들에 대하여 정부가 규제(검열)할 수 있는 기관이 다시 탄생했다. 종전 이후, 이 기관은 프랑스의 저널리스트들이나 프랑스 사회 모두에게 ‘점령’과 ‘나치 부역(Collaboration)’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종전 직후 이 기관이 폐지된 이후, 이와 유사한 기관을 다시 창설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금기시되었다.

언론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사례에 대한 규정은 1993년 신설된 민법(Code Civile)의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 존중의 권리”란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따라서 “자신의 이름, 이미지, 목소리, 사생활, 명예 및 평판, 망각 및 자신의 삶의 여정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찍었을 경우, 형사법정이 아닌 민사법정으로 향하며, 이에 대한 피해 구제는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재판은 해당 미디어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행해진다. 프랑스의 언론사들은 80% 이상이 파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대부분의 언론 관련 재판들은 파리 지방법원에서 행해진다. 지방의 경우는 지방법원에서 여타 사건들과 같이 다루어지지만, 파리에 사는 언론 보도 관련 분쟁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파리 지방법원 내에 언론 소송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Chambre de la presse)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다. 언론 관련 재판은 셀 수 없이 많고 그 대부분은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침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윤리 위반에 대하여 아주 엄격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곧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거의 모든 책임을 저널리스트에게 부과한다는 뜻으로, 실제 재

판 과정에서도 판사는 이와 같은 민법 조항을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한다. 그래서 프랑스의 저널리스트들은 흔히 “이 법제 하에서는 저널리스트가 뉴스를 전달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한다.

프랑스의 이처럼 엄격한 사생활 보호 법제에 대해 언론사들은 지극히 적대적이다. 왜냐하면 현재 프랑스의 법제나 판례를 살펴보면, 언론의 거의 모든 기사들이 잠재적으로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훼손으로 사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 상당 부분은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저널리즘 외부 영역,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대기업 그리고 시민사회(특히 각종 인권단체들)에서는 저널리즘 윤리 강령의 준종을 보장하기 위한, 즉 언론 보도의 윤리강령 위반이나 오보 혹은 언론 보도에 따른 독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윤리위원회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의 설치가 바로 1971년 뮌헨 협약에 의해 채택된 유럽 차원의 저널리스트 윤리 강령을 보다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3) 독일의 언론자율규제

독일언론평의회는 언론관련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지난 1958년 페르시아 소라야 공주의 사생활이 언론에 보도된 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폐해에 관한 논란이 초래되자 연방정부는 「해외국빈 명예보호 강화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언론평의회가 정부보다 먼저 해당 보도를 낸 언론사에 ‘질책’ 결정을 내려서 언론 자체적인 정화과정을 주도함으로써 동법의 제정을 중단시킨 바 있다. 한편 1973년 언론평의회가 제정한 <언론강령>은 각종 언론관련 판결의 기준이 되고 있고 1976년에는 연방의회에서 「불만처리위원회 독립보장법」이 통과되어 독일언론평의회 위상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지난 1960년

에는 독일언론평의회가 제정한 언론법 표본이 현재의 주 언론법 모체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국가의 언론개입에 대해서 언론평의회를 비롯한 언론계가 강력한 비판의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언론자율규제 노력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언론사들은 언론강령에 명시된 저널리즘의 실천규범에 따른 언론평의회 결정사항을 비교적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언론평의회에 한계가 되고 있다. 언론인의 직업윤리와 의무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자율규제는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빨 없는 사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자율규제만으로는 황색 대중저널리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언론자율을 지키려다 보니 법적 구속력 부재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에, 자율규제의 한계는 오히려 언론평의회 존재근거가 된다.

독일언론평의회는 지난 1956년 11월 26일 설립된 언론자율규제기구이다. 당시 아데나워 보수정권이 국가기구로서의 언론규제기관을 설립하려하자 주요 언론단체가 규합하여 국가개입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설립한 순수 언론자율규제기관이다. 언론평의회 설립단체는 신문발행인협회(BDZV)와 잡지발행인협회(VDZ), 독일기자협회(DJV), 독일언론노조(DJU)이다. 독일언론평의회는 운영위원회와 위원총회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이들 4개 단체가 각각 2인씩 파견하여 구성되어 있고 위원총회는 각 단체에서 7인이 파견되어 총 2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총회는 불만처리위원회 위원 6인을 임명한다(임기 2년). 나아가 위원총회에서 위원 5인과 독일연방 무료광고지협회가 파견한 1인으로 이루어진 편집국 정보보호 불만처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지난 2001년 신설된 편집국 정보보호 불만처리위원회는

언론사가 취재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불만처리위원회는 당시 연방정부가 「연방개인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을 개정하면서 언론사 편집국의 개인정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될 경우 이는 언론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의 언론개입 범위는 크게 축소됐다.

한편 언론평의회 사무처에는 6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독일언론평의회는 연간 예산은 약 70만 유로이고, 이 가운데 약 18만 유로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불만 접수 후 처리방식은 ‘암시’, ‘비난’, ‘질책’ 3단계로 되어있다. ‘암시’는 언론강령을 가볍게 어긴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로, 해당 언론사는 언론평의회로부터 ‘암시’를 받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도 된다. ‘비난’은 언론강령을 ‘암시’ 수준보다 심하게 어긴 경우이지만, 역시 해당 언론사는 이를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언론평의회는 다만 해당 언론사에 ‘비난’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질책’은 언론평의회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해당 언론사는 ‘질책’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도해야한다.

독일언론평의회는 지난 1973년 최초로 언론강령을 제정했고 이는 지난 2001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일부 언론사는 언론평의회 업무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예컨대 지난 50년대 말 시사주간 슈테른지는 표현과 비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언론평의회를 함부르크 법원에 제소했었다. 당시 법원은 언론평의회 활동이 독일기본법 정신을 준수하는 합헌적인 기구라고 판시해 언론평의회 활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편 독일언론평의회는 ‘유럽 독립언론평의회 연맹’(Alliance of Independent Press Council of Europe) 창립을 주도했다. ‘유럽 독립언론평의회 연맹’은 지난 1999년 6월 영국에서 창립식을 갖고 유럽 각국의 언론평의회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특

히 동부와 중부 유럽 국가에서 언론평의회가 신설되고 있어서 이 기구가 국제적인 언론평의회 협력기구로 성장하고 있다.

4) 오스트리아의 언론자율규제

오스트리아언론평의회는 국가권력의 언론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지난 1961년 설립된 언론자율규제기관이다. 언론평의회는 오스트리아신문협회와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잡지협회, 기자·작가 공동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면서 총 4개 주요 언론단체가 공동 설립했다. 언론평의회는 신문협회와 언론노조에서 각각 10인, 기자·작가 공동협회와 잡지협회에서 각각 2인이 지원되어 총 24인의 명예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언론평의회 의장은 신문협회와 언론노조의 대표가 각각 일 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맡아 왔다.

언론평의회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언론에 대한 국가개입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론 스스로 정화를 통해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매체와 온라인 신문에 대한 윤리강령 준수여부를 감독해 왔었다. 특히 언론 보도나 오보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개인 명예가 훼손된 경우, 나아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따른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다. 언론평의회가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불만을 초래한 언론보도를 낸 해당 언론사와 불만신청자를 각각 불러서 입장 표명을 통해 중재 기능을 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언론평의회는 현재 사실상 해체된 상태이다. 그동안 언론평의회를 재건하려는 작업이 있었으나 당분간은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 2001년 12월 신문협회가 언론평의회를 공식적으로 탈퇴하면서 발생했다. 신문협회는 당시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데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언론노조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지나

치게 사회개혁적인 프로그램들이 논의되는 데 대한 반발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협회는 언론평의회의 역할이 신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신문사가 언론평의회의 주도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당시 신문협회는 언론평의회의 규제 수단이 너무나 약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강화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언론사가 언론강령을 훼손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언론평의회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평의회 사태로 인해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언론자율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요약해보면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뉜다. 신문윤리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과 규제 법률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새 규제기관을 커뮤니케이션청 산하에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아직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점증하는 신문자본집중의 추세에 따라 신문시장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면서 언론윤리가 훼손되는 경향이 짙어짐에 따라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언론불만위원회 내지는 시민언론중재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언론자율규제기관의 부재 현상이 점차 막을 내리고 새로운 형태의 자율규제기관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 6월부터 새로운 언론자율규제포럼이 출범해 시범업무를 개시하고 있다. 독자변호인단이라는 이 단체는 이름과는 달리 법률적 행위를 통한 규제는 행사하지 않고 자율규제 차원에서 언론사의 언론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언론강령을 위반한 언론사에 이를 통보하고 또 언론보도 불만을 접수하여 해당 언론사와 불만접수자의 중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랜 동안 언론계에 몸담은 현직 언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개입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신문협회는 언론노조에 반쪽 언론평의회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포기하라는 주장을 전달하고 있고, 또 신문협회도 단순히 주도권에 대한 향수로 인해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음을 감안하면, 당분간 독자변호인단의 활동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3.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영국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여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철저하게 자율 규제, 자율 등록 제도를 지켜오고 있다. 프랑스는 언론의 보도 내용을 규제하는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법 앞에서 저널리스트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국가가 개입하기 전 언론단체 스스로가 언론평의회를 구성하여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언론강령을 거부하는 대형언론사들과 그 밖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언론평의회가 해체된 상태이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언론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번 실무연수에서 만난 유럽의 언론학 교수들과 언론관계자들은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다양한 형태의 언론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언론중재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언론과 관련된 피해구제 방식은 각 나라의 정치·사회·문화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각기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성장해 온 다양한 언론피해구제제도들을 검토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언론의 성적 선정적 보도와 여성의 인격권

조 연 하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선임연구원

1. 문제제기

언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공적인 현상을 보도하고 논평해 줌으로써 여론을 형성해 주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그동안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던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가 바로 지나친 선정주의(sensationalism)이다. 이것은 언론이 다루어야 할 사건의 본질적인 측면을 조명하기보다는 독자나 시청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만한 자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언론의 선정적 보도는 시대와 나라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매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내에서도 선정적인 저널리즘으로 스포츠 신문들을 손꼽고 있지만, 불행히도 정론지에 해당하는 신문 들조차도 같은 대열에 동참하고

있어, 소위 정론지와 황색 언론지 간에 구별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1년 황수정 마약복용 사건을 일제히 선정적으로 다루었던 언론보도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신문의 품위 훼손이란 이유로 ‘공개경고’ 조치를 취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도 48개 언론사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의 언론 자유에 관한 허친슨 위원회의 보고서(1947)에서는 언론이 선정적인 사건 보도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시민 각자가 지역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토론을 언론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국 언론의 선정주의의 핵심은 언론이 금지되어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과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

으로서, 한마디로 작위와 부작위의 실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사회 미풍양속을 파괴하거나 풍기문란을 조장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언론의 선정주의적인 보도로 인해, 한 개인의 이익과 언론의 공적 기능의 이익 간에 비교형량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던 최근의 사례로 문화일보의 신정아 누드사진 게재를 지적할 수 있다.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란 제목으로 문화일보가 기사와 사진을 처음 보도한데 이어 다른 신문들도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톱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학력 위조와 횡령 혐의, 미술계의 부조리 등 사건의 핵심과 누드 사진과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개인의 사적인 사진공개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

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여성을 선정적 소재로 취급,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접근의 대상을 여성 연예인에서 전문직 여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사건의 당사자인 여성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선정적으로 접근, 해당 여성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 언론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여성에 대한 성적 선정주의적인 언론보도를 놓고, 성적 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윤리적 차원에서 논의가 될 뿐, 여성이란 사회적 약자의 인격권에 대한 법제도적인 접근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적 표현이나 성관계를 이용한 언론보도가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로 논의의 범위를 국한시켜 그것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언론보도의 선정성과 여성

1) 언론보도의 선정성에 관한 개념적 논의

미디어의 선정성은 넓은 의미에서 미디어의 내용이 특정 의미를 극도로 강조하고 도덕적, 심미적 감성을 자극하여 실제의 사실보다 흥미롭고 중대한 것처럼 윤색하고 과장하는 일련의 선정주의(sensationalism)를 지칭하는 개념이다(이은택, 2000, p. 14). 선정주의는 전율과 긴장감을 제공하고 불건전하면서 유해한 감정을 불

사건 당사자인 여성을
사건 본질과 무관하게
선정적으로 다루
인격권 훼손하는 사례
계속 반복돼

러일으킬 뿐 아니라, 공포, 범죄, 재난, 성추문에 대해 듣고 싶어 하는 인간의 탐욕에 호소하려는 속성을 지닌다(Tannenbaum & Lynch, 1960, p. 382). 이런 속성은 소위 황색 언론(yellow journalism)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황색언론이란 19세기 말 경쟁적이고 침투력이 강한 상업적인 매스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서, 판매부수를 늘리기 위해 대중의 원시적 본능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흥미 본위의 보도를 하는 저널리

즘을 뜻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쟁의 논리가 심화됨에 따라 신문이 스스로 상품화됨으로써 대중에 영합하여 취재하는 행위로서, 미디어의 내용을 선정적인 사건으로 채우고 이를 과도한 비중으로 다루는 현상을 일컫는다(성동규, 2002).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선정성은 성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동작이나 언어, 과도한 노출, 성적인 신체 접촉 등 성(sex)과 관련된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 방송에서도 저속한 성표현물과 같은 의미에서도가 지나친 성적 표현의 속성을 선정성이란 용어로 대신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선정성의 기준으로 선정적 동작, 신체 노출, 이성간의 신체 접촉을 주로 사용한다(유의선, 조연하, 2000, p. 92). 성표현물은 인간의 성에 관한 행위와 행동을 문자나 영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개별적인 입장 또는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이나 도덕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규범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성표현물은 어느 문화에서든, 공공연한 긴장

을 불러일으키거나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어서 법적 문제보다는 윤리적인 이슈를 야기시키는 속성이 있다. 이에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성적 표현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보도에서의 선정적인 양태는 소재의 부도덕성과 표현의 자극성 등으로 수용자의 현실인식에 왜곡을 가져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유홍식, 2003).

하지만 선정주의에 대해 언론보다는 언론이 반영하는 사회제도의 탓이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수용자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선정주의가 독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언론은 그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Tannenbaum & Lynch, 1960, p. 381). 같은 맥락에서 언론의 선정주의는 우리 사회의 집단 관음증이 그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화일보의 누드사진 게재 소식이 퍼지자, 한때 문화일보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었고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 1위로 올랐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한편 넓은 의미이든 좁은 의미이든 언론보도의 선정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무엇을 다루었는가”

와 “어떻게 다루었는가”가 핵심 논제가 되어야 한다. 이는 언론보도의 선정성 판단기준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전자는 기사의 내용과 그 내용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보는 것으로, 여기에는 취재원의 사용, 제목과 본문의 일치도, 취재원 표시방식 등의 세부기준을 적용시켜볼 수 있다. 그리고 후자는 기사가 어떻게 포장되어서 독자에게 전달되는가와 같은 형식적인 차원이다(성동규, 2002). 사실 그동안 미디어의 선정적인 보도에 관한 문제제기는 많았어도 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많지 않았던 주원인은 선정성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고, 따라서 선정성을 판단하는 적절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보도의 선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보도의 형식과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인 선정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선정성의 수준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성적 선정적 보도 소재로서의 여성

현실 속의 여성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가 바로 미디어의 여

성묘사이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묘사가 현실에서의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현실에서의 여성문제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고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에서의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해 왔던 부분은 미디어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TV 프로그램의 선정적 표현은 통상적으로 드라마, 영화, 버라이어티쇼에서 자주 관찰되며, 남자보다는 여자를 대상으로, 자극적인 춤 또는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카메라 앵글 조작으로 인해 주로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의 상품화로 설명되고 있기도 한데, 여성을 소비상품의 대상으로 삼는 환경을 조장하면서 여성들 스스로가 성과 육체를 자신의 것이기보다는 남에게 즐거움이나 쾌락을 주기 위한 소재로 취급하는 성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미디어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했지만, 미디어에서의 왜곡된 여성묘사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김선남(2001)은 텔레비전의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폐해로 외모 중심적인 여성관을 강화시키

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성공한 연예인의 아름다운 외모와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클로즈업 장면을 화려하게 연출해냄으로써 연예인의 성공은 연예인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그녀가 지닌 외모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선정적 장면을 통해 상대적으로 시청자들은 남의 사생활 엿보기를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게 된다.

여성운동에 관한 미국 신문의 프레임 분석에서도, 여성의 외모를 묘사하면서 평등이란 용어를 인용하거나 여성운동 내의 분쟁을 강조하는 반면, 반(反) 여성주의자들은 매력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여성운동의 목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Ashley & Olson, 1998). 결국 여성운동의 표면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들만 상세히 보도하는 신문의 편향된 틀 짓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로, 언론이 여성의 이슈를 보수적이고 젠더 차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성표현물과 미디어의 상업 논리

미디어에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하는 현상과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성표현물의 과잉 공급 현상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소설, 영화, 만화 등에서 성에 대한 표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매스미디어에서 자주 다루는 공적인 소재가 되었다. 매체에 따라 그 수위만 다를 뿐 성에 대한 선

**언론보도의 선정성 문제
해결 위해서는
객관적 선정성 판단 기준 및
선정성 수준 측정 척도 개발해야**

정적 표현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미디어에서 성표현물이 만연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 미디어 산업에서 성이 갖는 대중성, 둘째, 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또는 공적 성담론의 범람을 지적할 수 있다(유의선, 조연하, 2000, pp. 77 ~ 80).

먼저 성의 대중성이란 성은 가장 대중적인 소재이며, 따라서 미디어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산업적 생존을 위해 성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 본위로 다루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성에 대한 선정적 표현의 산업적 매력은 다양한 매체의 성장 기제로 작용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 예는 VCR, 신문의 소설, 방송의 연예오락 프로그램, 인터넷의 성인사이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다매체 방송 환경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지상파 TV에서도 여성을 노골적인 신체부위 노출이나 자극적인 동작을 통해 자주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현상들은 기본적으로 성의 대중성이 미디어의 산업적 수익성을 상당 부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 성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이유로 그동안 감춰져야 하는 사적 비밀 영역으로서 비공개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도덕적 관념에서 규율되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상당 기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고정 관념에 대한 예술가와 문학인들의 도전과 성개방화 추세로 인해 성 표현이 자유로워지고 있다. 문제는 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주도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상업 메커니즘의 폐해가 크다는 점이다. 이윤 추구를 우선 목표로 하는 상업 메커니즘은 표

현의 자유, 성에 대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등 다양한 가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청률, 구독률, 접속률 등 다양한 형태로 측정되는 표현의 시장적 성과에 상당 부분 주목한다. 따라서 미디어의 표현 성과는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을 감안할 때, 거대 상업 자본주의가 고용한 미디어 종사자들에 의해 표현물의 대중성 강화가 일정 부분 주도됨은 매체 산업적 특성상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 것이다. 문제는 매체의 산업적 특성만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과도한 성표현물이 분별없이 지나치게 유통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체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또는 시장실패로 시장의 자율 기능이 상실될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 언론보도의 인격권 침해의 법적 근거 및 사법적 판단

인격권이란 인격적 이익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사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다른 사

람에게 양도, 처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며, 이에 대한 침해를 민법에서는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5조에서는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라 할지라도 중대한 공적인 관심사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¹⁾ 단 언론의 공공성과 개인의 인격권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중재절차를 진행하는지는 각 사안에 따라 보도내용 중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보도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衡量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 검토하고 각각의 보호법익의 가치를衡量해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²⁾ 이렇게 볼 때 헌법적 차원의 인격권 개념은 개인이 누리는 기본권의 개념인 반면, 민법이나 언론중재법 등에서 명시한 인격

권의 개념은 비교衡量 시에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인들의 권리를 의미한다(이재진, 2006, pp. 16~17).

인격권에는 초상권, 명예권, 생활권, 성명권, 음성권 등이 포함된다.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용모·자태 등)에 관한 개인의 존중·명예·신용 등에 관련한 인격적 이익이다. 여기에는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 초상이 함부로 영리적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가 포함된다(임병국, 1999, pp. 230~231). 신정아 누드사진 사건의 경우, 누드사진 촬영의 진위여부를 떠나 얼굴 사진으로 인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가 명백하다.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초상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와 민법 제750조

1) 법원은 “보도기관이 영리추구의 입장에서 공·사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즐겨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이익을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언론기관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서울민사지법 1989. 7. 11, 88가합31161)”라고 해석하고 있다.

2) 대법원 1988. 10. 11, 86다가29.

제1항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언론 관련법으로는 언론중재법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⁴⁾의 인격권 조항에서 초상권을 포함하고 있다.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 국가와 영미법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헌법 제21조 4항에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법은 형법 제307조부터 310조이다.

인격권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개념인 사생활권은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또는 타인에게 알려지기 싫은 사생활의 비밀을 지키는 권리이다. 사생활권 관련법은 언론 또는 언론학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복잡하고도 광범위한 법적 관심사에 속하며, 법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영역에 속한다(Zelzny, 1997, p. 154). 대륙법 국가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일반적

인격권의 한 영역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어도 연방법이나 주법을 통해 보호한다. 국내에서도 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권을 포괄적이면서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유형에는 사적 공간 또는 생활에 대한 침범, 감추고 싶은 사적 사실에 대한 공표, 사적 사실에 대한 왜

국민의 호기심 충족과 관음증 해갈이 결코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의 기준되서는 안 돼

곡된 공표 그리고 성명이나 초상 등에 대한 영리적 이용이 있다. 각각의 유형이 서로 다른 법리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면책사유가 유형별로 각기 다르지만, 보도가치성과 동의가 주 면책사유가 된다. 특히 언론이 보도가치성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대상 인지가 중요한 판단요소인데, 공공

의 이해와 관련된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인지에 대한 고도의 자율적 판단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호기심 충족과 관음증 해갈이 결코 정당한 관심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이승선, 2005, p. 81).

4. 사례분석

: 성적 선정적 보도로 인한 여성의 인격권 침해

본고에서는 증가 추세에 있는 언론의 성적 선정적 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공인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격권 침해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은 보도의 선정성과 인격권 침해의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는데, 선정성은 공익적 보도가치성, 사실관계 확인여부, 추가 의혹 부풀리기 여부로 판단하였고, 인격권 침해는 침해 가능한 인격권 유형, 침해 가능한 인격권 영역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엇보일 경우, 그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실제 분석 대상은 성관계 비디오 또는 동영상 유출이 문제가 되었던 O양 비

3)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제5조.

디오 사건과 백지영 몰래카메라 사건, 마약음용 및 밀애관계를 다룬 황수정 사건과 성현아 사건, 이태란 섹스 동영상 공개협박 사건, 함소원 섹스 몰래카메라 비디오 협박사건 그리고 최근의 신정아 누드사진 공개 사건, 아이비 동영상 유포 협박사건 등 모두 8건이다. 분석에서는 특별히 사건에 대해 성적으로 접근한 선정적인 보도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분석 결과, 해당 사건들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주요 매체를 통해 모두 보도되었으며, 사건의 주인공들은 연예인이 대부분이었다. 먼저 선정성 차원의 경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면서까지 과연 알권리의 대상이 될 만한 내용이었는가를 사건의 전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판단하였다. 황수정, 이태란, 성현아, 아이비 사건의 경우, 공익적 보도가치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가 공권력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 마약복용혐의, 폭력, 협박 사건 등의 범죄사건과 유명 연예인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국민의 알권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을 연속적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내연남이나 애인과의 성적 관계나 지극히 사적인 생활을 자세히 다루었으며, 특정 사진을 무단 게재

하는 등 전혀 보도가치성이 없는 내용을 다루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역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선정적 기법을 채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언론보도의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있어서는 함소원과 신정아 사건의 경우, 동영상이나 사진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미확인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의혹 부풀리기 식의 보도는 분석대상 모두에서 볼 수 있었는데, 당사자들이 섹스비디오나 동영상의 부재를 밝혔음에도 '이태란 섹스비디오 있나 없나', '의혹투성이 아이비 협박 동영상 사건 실체 추적' 등의 제목으로 흥미위주의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였다. 신정아 누드사진 사건의 경우에도 사진 자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신정아 누드사진 찍은 사람은 누구?', '신정아 누드사진, 성 로비 가능성 파문 예고' 등의 자극적인 표제를 사용하면서 또 다른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추측성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본래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보도방식을 취했다.

한편 인격권 침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사생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의 왜곡된 공표 유형에 속하는 함소원 사건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감

추고 싶은 사적인 사실을 무단 공표하는 유형에 속했다.

언론보도가 침해할 수 있는 인격 영역을 남녀 간의 성관계와 같은 내밀영역, 일기나 서신, 통화와 같은 비밀영역, 결혼설, 이혼설 등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사사(私事)적 영역, 사적인 것을 넘어선 개인의 생활영역인 사회적 영역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식될 수 있고 인식되어야 할 공개적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로부터 얻는 이익과 인격권이 충돌할 경우 법익 형량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데, 영역이 공공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침해받는 자의 이익보호가 두터워진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임병국, 2002). 분석 결과, 모든 사건에서 남녀관계나 성관계를 다루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밀영역에 대한 침해가 모두 해당되었다. 단 사안에 따라 다른 영역과의 중복 현상을 보이는 사건도 있는데, 이것은 내밀영역에만 속한 사건에 비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가 줄어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종합하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언론이 공적인 관심의 대상인 여성에 대해 성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해당 여성이 받게 되는 인격권 침해는 치명적이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할 때,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했던 여성은 매스미디어에서 주로 사건의 피해자 또는 성적인 소재로서 묘사되고 있다. 과거 O양의 비디오 사건이나 최근의 신정아 누드사진 파문의 경우를 보

더라도, 남녀가 함께 관련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비난의 초점이 맞추어지거나 인격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주체는 항상 여성이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언론의

횡포로서, 언론이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언론이 여성을 바라보는 왜곡되고

〈표 1〉 성적 선정적 보도로 인한 여성 공인의 인격권 침해 사례분석

구 분 사 건 명	선 정 성				인격권 침해			
	보도 언론매체	공익적 보도 가치성	사실관계 확인여부	의혹 부풀리기 여부	피해자 신분	침해 가능한 인격권 유형	사생활 침해 경우 침해 가능한 인격영역	침해 가능한 인격 영역
0양 비디오 사건 (1998)	신문 방송 인터넷	없다	확인	있음	연예인	· 사생활침해 · 초상권침해	사적 사실의 공표	· 내밀영역
백지영 몰래카메라 사건 (2000)	신문 방송 인터넷	없다	확인	있음	연예인	· 사생활침해 · 초상권침해	사적 사실의 공표	· 내밀영역
황수정 최음제 사건 (2001)	신문 방송 인터넷	있다	확인	있음	연예인	· 사생활침해	사적 사실의 공표	· 내밀영역 · 사사적 영역 · 공개적 영역
이태란 비디오 사건 (2001)	신문 방송 인터넷	있다	확인 (비디오 미확인)	있음	연예인	· 사생활침해	사적 사실의 공표	· 내밀영역 · 사사적 영역 · 공개적 영역
성현아 엑스터시 사건 (2002)	신문 방송 인터넷	있다	확인	있음	연예인	· 사생활침해	사적 사실의 공표	· 내밀영역 · 사사적 영역 · 공개적 영역
함소원 비디오 사건 (2003)	신문 방송 인터넷	없다	미확인	있음	연예인	· 명예훼손 · 초상권침해	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공표	· 내밀영역
신정아 누드사진 보도사건 (2007)	신문 방송 인터넷	없다	미확인	있음	교수	· 명예훼손 · 사생활침해 · 초상권침해	사적 사실의 공표	· 내밀영역 · 사사적 영역 · 공개적 영역
아이비 동영상 사건 (2007)	신문 방송 인터넷	있다	확인 (동영상 미확인)	있음	연예인	· 사생활침해	사적 사실의 공표	· 내밀영역 · 사사적 영역 · 공개적 영역

편향된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5. 결론

언론의 선정성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사회에서든 대부분의 매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이 다양한 정보제공을 해줌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사회를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언론도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하나의 기업이란 점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매체의 수가 급증하고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최근의 언론 환경에서, 선정적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언론으로서의 완벽한 틀을 갖추지 못한 채, 속도성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매체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본고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소재를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선정성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언론보도에 주목하고, 과연 해당 여성이 받게 되는 인격권 침해의 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사례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이 여성에 대해 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사실

에 입각한 보도원칙을 지키지 않고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허친슨 위원회의 지적대로 시민이 지역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토론을 언론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이 문제는 언론이 처해 있는 전체적인 구조적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할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인한 여성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약자이자 소외계층에 속하는 여성을 성적 선정적인 보도의 소재로 일삼는 언론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기준이나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특별히 여성에 대한 성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이다. 현재 방송심의규정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금지조항, 소외계층의 인권보호 조항, 양성평등 조항 등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여성에 대한 성적 선정적 보도로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적용시킬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하다. 성적 표현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청소년 보호나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지고 있고, 여성의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의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둘째, 시민 차원에서의 대처방안으로 방송의 연예오락 프로그램이나 신문 연예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여성의 성 상품화 관행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시민의 집단적 대응장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청자 운동단체 등 시민단체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적인 지식과 잣대를 갖고 언론의 내용을 모니터하고 비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언론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언론계 내부에서도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체 내에서 이러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언론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윤리 및 법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사내 전문적인 옴부즈맨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인터넷에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인터넷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기에는 입법상의 미비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통합 법령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정책이나 법률제정에 성평등적 관점이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즉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언론보도에 나타난 성불평등적인 요소의 원인이 제작 관행이나 시스템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언론조직에 여성의 진출을 권장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조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선남(2001). 방송의 선정성 실태와 그 대처방안, 시청자연대회의 발표문.
- 성동규(2002). 스포츠 신문의 연예인 보도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 2002년 봄호, pp. 82~87.
- 유의선·조연하(2000). 방송의 선정성과 법적 규제의 적정범위. 『여의도저널』 창간호, 2000, pp. 76~102.
- 유홍식(2003).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방송저널리즘 윤리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보도의 선정성·폭력성과 디지털 영상조작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2003년 여름호, pp. 61~87.
- 이승선(2005). '알게 할 권리'와 '알리지 않을 권리'. 『언론중재』, 2005년 여름호, pp. 76~81.
- 이은택(2000). TV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미디어 윤리. '미디어와 성담론: 늘어나는 성이야기', 한국언론학회·여성커뮤니케이션연구회 주최 쟁점토론 발제문.
- 이재진(2006).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

울: 한나래.

- 임병국(1999). 『언론법제와 보도』. 서울: 나남출판.
- 임병국(2002). 여성 연예인 인격권 침해 사례분석. '방송에 의한 여성 연예인 인권 침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발제문, 한국여성단체연합.
- Ashley, L. & Olson, B.(1998). Constructing reality: Print media's framing of the women's movement, 1966 to 1986.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2, pp. 263~277.
- Tannenbaum, P. H. & Lynch, M. D.(1960). Sensationalism: the Concept And Its Measurement. *Journalism Quarterly*, 1960 Vol. 37, pp. 381~391.
- Zelezny, J. D.(1997)(2nd). *Communications Law: Liberties, Restraint and the Modern Media*. Belmont:Wadsworth Publishing Company.

**「배신(配信)의 항변 인정할 수 없다」
통신사 무죄, 수신한 신문사는 유죄**

-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

도쿄 여자의대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소녀가 사망한 사건을 둘러싼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당시의 담당의사(업무상과실치사죄로 피소되어 1심 무죄, 검찰 측이 항소)가 배신원(配信元)인 「교도통신」과 기사를 게재한 「秋田魁」, 「上毛」, 「静岡」의 세 신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법 민사12부는 지난 9월 18일 「교도통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지방 3개 신문에 대해 총 385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이는 「배신(配信) 서비스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은 지난 2002년 1월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답습한 판단이다.

문제가 된 것은 「교도통신」이 2002년 7월 「최악의 사태, 왜?」라는 제목으로 송고한 기사인데, 재판부는 기사의 진실성을 부정한 다음, 「교도통신」에 대해서는 수사본부 등의 발표에 근거하여 사고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는 견해를 보도한 것이므로 진실상당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방 3개 신문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기사를 송고 받았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기사게재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교도통신」江渡 편집국 차장은 판결 결과에 대해 『통신사의 배신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내용으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했으며, 지방 3개

신문은 9월 25일 항소했다. 「교도통신」은 소송에 보조적으로 참가한다.

(『신문협회보』, 2007년 10월 2일자) □

**영국 축구 스타 Ashley Cole,
『Daily Mail』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영국 축구 스타 Ashley Cole이 『Daily Mail』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shley Cole은 5월 8일자 『Daily Mail』지 ‘Des Kelly’ 칼럼이 “Ashley Cole이 전 소속팀이었던 아스날과의 경기를 피하고자 실제로는 전혀 부상당하지 않았으면서도 의도적이고 부정직하게 부상당한 척 했다”고 보도하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shley Cole은 “문제의 칼럼이 공격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Daily Mail』지가 문제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또 기사 발행 전에 자신에게 그 문제에 대해 발언할 적절한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shley Cole은 “『Daily Mail』지가 문제의 칼럼을 보도하기 전에 자신과 접촉했다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shley Cole은 “『Daily Mail』지가 어떤 종류의 사과문도 게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명예와 감정에 입힌 피해를 경감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현재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에 더해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고 밝혔다.

한편 Ashley Cole은 문제의 보도에 포함된 몇몇 단어들만 반복되어 사용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치분 신청도 요구하고 있다.

(Press Gazette 2007년 9월 14일자) □

‘해리포터’ 작가 Rowling, 자신의 아들 초상 출판 금지 처분 소송에서 패해

영국 고등법원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Rowling이 제기한 잡지 발행 금지 처분 신청에 대해 “유명인들과 그의 가족들은 그들이 공공장소에 있을 때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며 Rowling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owling이 문제를 삼은 것은 한 장의 사진으로 2륜 경마차에 타고 있는 Rowling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들 David를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은 『Big Pictures』 소속 사진사가 장거리 렌즈로 찍었고 이를 『Sunday Express』지를 통해 공개했다. 현재 4살인 David는 이 사진이 찍혔을 당시 20개월이었고 2004년 11월 Edinburgh 거리에 있었다. Rowling과 그녀의 남편은 신뢰와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인권법과 정보 보호령 하에서 사적인 정보의 남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잡지 발행 금지 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영국 고등법원 Patten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자녀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표현하려는 미디어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감을 표현할 수 있지만 법 자체는 원고가 원하는 모든 것

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면서 자녀들에게 언론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을 구축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Patten 판사는 “원고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공공장소에서 개인들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Patten 판사는 “언급된 법이 성인이나 아동들이 공공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동의 없이 사진 찍히지 않을 것을 합법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 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초상을 보호하게 하는 권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거리에서 잠깐 거니는 모습도 초상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 무엇이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디어 전문 변호사 Mark Stephens는 “모나코의 공주 Caroline이 지난 2004년, 유명인사가 공공장소에 있지만 사적인 행위를 하다 사진에 찍혔을 때 출판물이 그들의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며 “이번 사건과 Caroline 케이스 간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도 Rowling의 사건에 대해 영국 판사들이 내린 판결은 다소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Patten 판사는 Rowling 부부에게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문제의 사진에 대한 발행을 보류시켰다.

(Press Gazette 2007년 8월 8일자) □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보건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러가 취소한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경남조정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시 보건소 (소장 조 ○ ○)

피신청인 : 경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남도민일보 : 『보건소가 가짜약 처방』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16일자 5면)

내 용 : 경남지역 일부 보건소가 효능실험 조작
으로 허가가 취소된 복제약품(제네릭)을 처방해온 것
으로 드러났다.

○○시보건소를 비롯해 □□시·△△시 보건소 등 3곳은
지난해 9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 시험)에서
약효시험 데이터 조작으로 회수·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의약품 중 일부를 처방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중략)

도내 일부 보건소가 회수·폐기하도록 한 이들 ‘가
짜 약’을 처방한 횟수는 ○○보건소 3건을 비롯해 □
□시보건소 2건, △△시보건소 1건 등 모두 6건이었
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16일자 5면 『보건소가 가짜약 처
방』 제하의 기사에서 “○○시보건소를 비롯해 □□
시·△△시보건소 등 3곳은 지난해 9월 생물학적 동
등성 시험에서 약효시험 데이터 조작으로 회수·폐기
처분 명령을 받은 의약품 중 일부를 처방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시보건소는 가짜약을 처
방한 사실이 없이 적법하게 처방한 것으로 밝혀져 이
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16일자 5면에서 <보건소
가 가짜약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시보건소가 지
난해 9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서 약효시험 데이터
조작으로 회수·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의약품 중 일

부를 처방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보건소는 허가 취소된 가짜 약을 처방한 사실이 없이 적법하게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도민일보 2007년 11월 1일자 5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이견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폐기명령 받은...)과 같은 크기로 하고, 내용활자 크기는 동 기사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도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경찰서가 타 경찰서 경찰관이 관련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제식구 봐주기식 조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전북조정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찰서 (서장 이○○)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11. 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술값 지불 않은 뺑소니 용의자 알고보니 경찰』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5일자

6면)

내 용 : ○○경찰이 음주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의혹을 사고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서만 조사한 뒤 답변이 없어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중략)

피해자 나씨는 “흔적도 크게 남지 않아 이것은 뺑소니라고 볼 수도 없다고 조사경찰이 회유했다”며 “피해자 조서를 받은 지 넉달이 다 되어 가도록 답변이 없는 것을 보면 제식구 봐주기식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뿌리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술값 지불 않은 뺑소니 용의자 알고보니 경찰』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25일자 사회 6면 『술값 지불 않은 뺑소니 용의자 알고보니 경찰』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이 음주 후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뺑소니 용의자인 경찰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조사경찰관이 “흔적이 크게 남지 않아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제식구 봐주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가해용의차량의 소유주는 경찰관이지만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은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경찰서 사고조사담당 경찰관이 사건 접수 즉시 양쪽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피해차량 확인 및 가해용의차량 확인,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조사한 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부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없고 가해용의차량에는 전혀 사고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설명했을뿐 보도내용처럼 같은 경찰관을 봐주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회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제 식구 감싸기 사고처리 사실 없다”, ○○경찰서 밝혀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새전북신문 2007년 11월 8일자 6면 우측 하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경찰서, “제 식구 감싸기 사고처리 사실 없다”」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경찰, 피해자만 조사 후 석달간 답변없어 감싸주기 의혹”과 같게,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새전북신문 : 『○○경찰, “제 식구 감싸기 사고처리 사실 없다”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9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종단이 스님들의 비리가 담긴 문건을 노조에 전달해 전 총무원장을 퇴임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1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한불교 ○○종(총무원장 주 ○ ○)
피신청인 : 동양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7. 10. 17.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동양일보 : 『○○사측, □□사 노조 조종 의혹』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8일자 3면)

내 용 : ○○종 총 본산인 ○○사의 현 종단이 지난해 총무원장의 교체 과정에서 부산 □□사 노조를 배후 조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 □□사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월 ○○사측에 고용안정 보장과 노동조합인정을 요구하는 노조활동을 벌이고 있을때 노조사무실로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전○○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의 비리와 일반 신도들이 노조를 비방하는 문건이 노동조합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서류를 보낸다는 편지와 함께 배달이 됐다는 것이다.

□□사 노조는 이 자료를 토대로 당시 전○○ 총무원장의 퇴임을 요구하고 결국은 2006년 3월 26년간 장기 집권하던 전○○ 총무원장이 □□사 사태와 관련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현 주○○ 스님이 총무원장에 부임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문제의 서류는 스님들이 개인 비리와 진정서 등으로 보낸 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사의 감사나 규정부에 보관해야할 극비 문서임에도 어떻게 이 서류가 노조한테 보내져왔는지가 뻔한 사실 아니냐”며 “발신지를 확인해 보니 현 주○○ 총무원장이 주지로 있던 대구 △△사가 있는 곳에서 발송됐으며 보낸 사람은 ●●(이○○)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전○○ 전 총무원장이 물러나고 현 주○○ 총무원장이 부임한 이후 현 종단의 한 스님이 “종단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사 노조들이 그동안 큰일했다”며 격려까지 했다고 □□사 노조 측은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사측, □□사 노조 조종 의혹 사실과 달라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8일자 3면 『○○사측, □□사 노조 조종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종 총본산인 ○○사의 현 종단이 지난해 총무원장 교체과정에서 □□사 노조에 전 총무원장이던 전○○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의 비리가 담긴 문건을 보내어 노조를 조종하여 전○○ 총무원장을 퇴임시킨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종 총본산인 ○○사의 현 종단은 위 문건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고, ○○종 총본산인 ○○사의 현 종단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8일자 사회면에 『○○사측, □□사 노조 조종의혹 - 지난해 ○○종 총무원장 교체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종 총본산인 ○○사의 현 종단이 지난해 총무원장 교체과정에서 □□사 노조에 전 총무원장이던 전○○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의 비리가 담긴 문건을 보내어 노조를 조종하여 전○○ 총무원장을 퇴임시킨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종 총무원장의 교체는 ○○종 중정이 결정하는 사안으로 □□사 노조의 탄핵이 작용한 것이 아니며, 전○○ 전 총무원장이 26년간 장기 재직하고 연로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종 총본산인 ○○사의 현 종단이 □□사 노

조에 전 총무원장이던 전○○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의 비리가 담긴 문건을 보내어 노조를 조종한 의혹에 대해, 현 종단에서는 노조 측에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사의 현 종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보는 해당기사 내용 중 사실 확인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종 총본산인 ○○사의 현 종단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동양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하여 2007년 10월 26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조정대상기사와 ○○종 관련 2007년 3월 11일자 및 2007년 3월 19일자 기사를 삭제한다.

• 피신청인 기자는 ○○종 총본산인 ○○사 현 종단에 의전을 갖추어 공식 사과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2007년 11월 11일부터 그 이행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2007가합3923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소송을 취하한다.

• 피신청인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조정대상기사 및 2007년 3월 11일자 및 2007년 3월 19일자 기사 포함)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으로 ○○사와 관련하여 기사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양일보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25일자 4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최근의 국내 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문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중앙지법 2007. 6. 27. 자 판결(2006가합70429)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금○○ ‘시사저널’ 발행인 겸 편집인(이하 원고)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한겨레21’의 편집장 고○○와 편집인 이○,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상임대표였던 최○○, 한국기자협회장 정○○(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시사저널에서 기사삭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시사저널 경영진의 기사삭제 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 논평, 성명을 보도하거나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기사를 삭제한 것은 발행인 겸 편집자로서의 정당한 권한행사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작성하거나 발표한 이 사건 기사

등에는 ‘① 원고가 편집국장 몰래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광고로 대체하도록 지시하였다. ② 원고가 ○○일보 출신으로 ○○고위층과의 친분이 두터워 ○○그룹 관련 기사의 삭제를 지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통적으로 적시하면서 원고의 위와 같은 기사의 삭제 지시가 편집권의 침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 등은 시사저널에서 ○○그룹 관련 기사의 게재를 둘러싸고 발생한 언론매체의 발행인 겸 편집인과 편집국장 사이의 편집권 침해 여부의 논란을 다룬 것으로서 그 공공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편집국장 몰래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광고로 대체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원고는 편집국장 이△△이 원고의 기사 삭제 권유 또는 지시에 불응할 것 같은 태도를 보

인 후 전화를 받지 않자 편집인의 자격으로 시사저널 회장 등과의 간부회의를 열면서 더 이상 이△△에게는 회의 개최 사실 및 그 후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이 직접 인쇄소에 기사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편집국장이 이미 기사 삭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는 하나 편집실무책임자인 편집국장을 간부회의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하여 기사 삭제를 결정한 점과 그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충분히 편집국장 등 정상적인 편집 체계를 통하여 위 결정 내용을 수행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편집국장 등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편집인과 편집국장 등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할 경우 언론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집인의 문제 해결 방식 또는 편집권의 수행방식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기사 등에서 원고의 이러한 기사 삭제 지시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과 관련된 기사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일보 출신으로 ○○ 고위층과의 친분이 두터워 ○○그룹 관련 기사의 삭제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역시 “원고의 이력 및 그 스스로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고위층과) 개인적인 친분은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황이라면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친분이 두텁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표현의 진실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기사 삭제를 지시한 이유가 ○○그룹 고위층과의 친분 때문인 것처럼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를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들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

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원고가 이△△에게 기사 삭제를 권유 또는 지시하면서 강조한 것은 위 기사로 인한 ○○그룹 관계자들의 명예훼손보다는 자신의 ○○ 고위층과의 친분관계였으며, 당시까지 원고는 자신이 삭제를 권유하던 기사를 본 사실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본 원고의 이력과 간부회의를 통한 기사 삭제지시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태를 직접 겪은 시사저널의 기자들과 그들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고들이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70429 손해배상(기)
 원 고 : 금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 상 준, 이 현 지

Ⅲ 고 : 1. 고 ○○
 2. 이 ○
 3.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정태기
 4. 최 ○○
 5. 정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결
 담당변호사 문 건 영

변 론 종 결 : 2007. 6. 13.

판 결 선 고 : 2007. 6. 27.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원고에게, 피고 고○○, 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50,000,000원, 피고 최○○, 정○○은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독립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시사저널'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고, 피고 고○○, 피고 이○○은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한겨레21'의 편집장과 편집인이고, 피고 최○○은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상임대표이었고, 피고 정○○은 한국기자협회의 회장이다.

나. ○○그룹 관련 기사의 게재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

(1) 시사저널의 이□□ 기자가 2006. 6.경 작성한 ○○그룹 관련 기사의 게재를 둘러싸고 그 게재를 강행하려는 편집국장 이△△과 이를 막으려는 원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시사저널의 발행 및 편집의 최종책임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인쇄소에 위 기사의 삭제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 기사의 게재를 막았다.

(2) 이△△은 위 사건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표는 시사저널의 경영진에 의해 바로 수리되었다. 이에 시사저널 소속 기자들이 편집권 수호를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이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였고, 그 무렵부터 미디어 오늘, 오마이뉴스 등이 위와 같은 분쟁을 상세하게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 등의 보도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사저널에서 발생한 기사삭제를 둘러싼 분쟁이 일부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피고들은 시사저널 경영진의 기사삭제

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각 기사, 논평, 성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사 등'이라고 한다)을 보도하거나 발표하였다.

(2)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기사, 논평은 2006. 7. 4. 자 및 2006. 7. 14.자 한겨레21에 실린 것이고(별지 1, 3 기재 논평은 피고 고○○가 작성한 것이다), 별지 4 기재 성명은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명의로 2006. 6. 22. 작성되어, 각 언론사의 미디어 및 엔지오 담당기자들에게 보내졌고, 별지 5 기재 성명은 한국기자협회의 명의로 2006. 6. 22. 발표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기자가 작성한 '2인자 이◇◇의 힘 너무 세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담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이□□ 기자와 편집국장 이△△에게 위 기사의 게재가 부적절함으로 이를 신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양해를 구했으나, 편집국장이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게재를 강행함으로써 부득이 시사저널의 발행 및 편집의 최종책임자인 원고가 시사저널의 회장, 상무, 광고국장과의 경영진 회의를 거쳐 인쇄소에 위 기사의 삭제를 지시함으로써 그 게재를 막은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발행인 겸 편집자로서의 정당한 권한행사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작성하거나 발표한 이 사건 기사 등에는 '① 원고가 편집국장 몰래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광고로 대체하도록 지시하였다. ② 원고가 ○○일보 출신으로 ○○고위층과의 친분이 두터워 ○○그룹 관련 기사의 삭제를 지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통적으로 적시하

면서 원고의 위와 같은 기사의 삭제 지시가 편집권의 침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또는 그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원고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하는 사실 중 위 사실 이외의 부분은 위 사실을 전제로 원고의 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평가 또는 의견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등의 일부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의견의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어떠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고, 그렇게 전제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책임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기사 등에서 표명된 의견 역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위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 명백한 이상 그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의 성부는 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3. 판 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일반론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사 등에서 적시된 사실은 시사저널의 발행인 겸 편집인인 원고가 ○○그룹의 고위층과의 두터운 친분관계로 인하여 ○○그룹의 인사에 관하여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가 시사저널에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기사를 게재하려던 편집국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쇄소에 기사삭제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 기사의 게재를 막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음은 명백해 보인다.

나. 위법성 조각

(1) 일반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공익성

이 사건 기사 등은 시사저널에서 ○○그룹 관련 기사의 게재를 둘러싸고 발생한 언론매체의 발행인 겸 편집인과 편집국장 사이의 편집권 침해 여부의 논란을 다룬 것으로서 그 공공성은 인정된다.

(나) 진실성 및 상당성

1) 이 사건 기사 등의 내용 중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3, 4, 7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65.경 ○○일보 기자로 시작하여 2002.경까지 약 37년간 ○○일보 사장, 부회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03. 4.경부터 시사저널 대표이사 및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래 ○○그룹 계열

사였던 ○○일보는 1999.경 ○○그룹과 계열 분리된 바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고위층과 친분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개인적인 친분은 있으나, 편집인으로서의 관련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② 시사저널 기자인 이□□은 2006. 6. 15.경 ‘○○그룹 이●●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자신의 측근들을 ○○그룹의 주요 보직 또는 계열사 사장에 임명하는 등 독선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그룹 인사 관련 기사를 작성 중이었다.

③ 원고는 6. 15. 15:00경 ○○그룹 홍보실 관계자로부터 ○○그룹 관련 기사가 작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사 게재를 재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편집국장 이△△을 사장실로 불러 “나와 ○○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기사의 보류 등을 권고하였고, 이△△은 확인해 보고 다음날 보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당시까지 원고와 이△△은 이□□ 기자가 작성한 위 기사를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였다).

④ 이△△이 6. 16. 오전 사장실로 찾아가 원고에게 위 기사가 기사로서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으므로 이 번호에 빼기 어렵다고 보고하자, 원고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화를 내었고, 이에 이△△은 “기사를 내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바로 사장실을 나왔다.

⑤ 원고 등은 6. 16. 저녁 무렵 이△△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⑥ 원고는 6. 16. 22:00경 시사저널 회장, 상무, 광고국장 등 4인의 간부회의를 열어 위 기사의 삭제결정하고, 같은 날 24:00경 인쇄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제작부서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기사를 빼고 광고를 넣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⑦ 당시 위 간부회의가 열린 사장실은 건물 6층에

있었고, 이△△이 근무하는 편집국 사무실은 건물 5층에 있었는데, 위 간부회의 당시 원고 등은 이△△과 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이후에는 5층으로 직접 부르러 가거나 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5층에 있는 이△△에게 위 간부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고, 이△△은 위와 같은 기사 삭제 결정 등을 알지 못한 채 6. 17. 00:30경까지 위 편집국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근하였다.

⑧ 이△△은 위 기사 삭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다음 근무일인 6. 19.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표는 경영진에 의하여 즉시 수리되었다.

2) 먼저, ‘원고가 편집국장 몰래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광고로 대체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편집국장 이△△이 원고의 기사 삭제 권유 또는 지시에 불응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후 전화를 받지 않자 편집인의 자격으로 시사저널 회장 등과의 간부회의를 열면서 더 이상 이△△에게는 회의 개최 사실 및 그 후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이 직접 인쇄소에 기사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편집국장이 이미 기사 삭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는 하나 편집실무책임자인 편집국장을 간부회의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취하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하여 기사 삭제를 결정한 점과 그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충분히 편집국장 등 정상적인 편집 체계를 통하여 위 결정 내용을 수행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편집국장 등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편집인과 편집국장 등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할 경우 언론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집인의 문제 해결 방식 또는 편집권의 수행방식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기사 등에서 원고의 이러한 기사 삭제 지시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과 관련된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가 ○○일보 출신으로 ○○ 고위층과의 친분이 두터워 ○○그룹 관련 기사의 삭제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원고의 이력 및 그 스스로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고위층과) 개인적인 친분은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친분이 두텁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표현의 진실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기사 삭제를 지시한 이유가 ○○그룹 고위층과의 친분 때문인 것처럼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를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원고가 이△△에게 기사 삭제를 권유 또는 지시하면서 강조한 것은 위 기사로 인한 ○○그룹 관계자들의 명예훼손보다는 자신의 ○○ 고위층과의

친분관계였으며, 당시까지 원고는 자신이 삭제를 권유하던 기사를 본 사실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본 원고의 이력과 간부회의를 통한 기사 삭제지시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태를 직접 겪은 시사저널의 기자들과 그들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고들이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사 등의 내용은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한 창 호
 판 사 노 태 홍
 판 사 최 인 화



미국 판결

원고가 상아 무역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해임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제한적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요건인 현실적 악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

Lapointe 대 Van Note 사건
 Columbia 특별구 연방지방법원
 원고 : Eugene Lapointe
 피고 : Craig van note 등
 No. 03-2128(RBW)
 2006. 12. 15

미디어 내용의 규율¹⁾

[1] 명예훼손 - 공직자(공무원, public official)/공인(공적인물, public figure) - 제한적 공인(Limited purpose public figures)(§ 11.2005)

야생생물 보호 협약에 따라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UN 사무소의 사무총장을 지냈던 원고는 환경 잡지 기사로 유발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제한적 공인에 해

당한다. 위 기사는 원고가 상아 무역에 대한 전면적 금지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위 사무총장의 자리에서 해임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제한적 공인이라는 근거로, 아프리카 코끼리에게 주어질 보호수준 문제가 토론에 참가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에 발생 가능한 실질적 파생 효과를 가져다주는 공적 논쟁(public controversy)인 점, 원고는 단체의 최고 책임자 및 지도

1) (번역자 주) 편집자가 판결 내용을 요약한 판시 요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판결 원문에 실려 있지 않다. 이하에서 판결 원문에 실려 있는 각주는 '각주'로, 번역자의 각주는 '번역자 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로는, 문재완,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 연구, 『언론중재』 24권 1호(통권90호 2004. 3. 봄)와 한위수,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 판결의 경향, 『언론중재』 24권 1호(통권90호 2004. 3. 봄)가 있다.

자로 활동하였고, 단체 구성원들에 의하여 승인된 정책들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의사를 결정한 지위에 있고, 공개적으로 상아 무역에 대한 전면적 금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점, 원고의 논쟁 참가가 토론에서 특별히 현저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정도로 충분한 관여에 이르는 점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기사내용이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 및 원고의 사무총장 해임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명예훼손 - 책임의 기준 -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 11.3002)

원고는 직능 단체 및 언론인이 아프리카 코끼리의 보호수준에 대한 논쟁 관련 기사(특히 원고가 상아 무역의 완전한 금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여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해임되었다는 부분)를 공포함에 있어서 그들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 언론인이 기사의 문제된 부분을 작성함에 있어 그의 개인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공표된 보도자료에 의존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한 점, 피고들이 원고의 해임 결정을 반복한 UN항소위원회(U.N. appeals board)의 결정 또는 그러한 조치를 언급한 원고의 보도자료를 사전에 접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는데 실패한 점, 설사 피고들이 위 위원회의 결정 요약문을 포함한 원고의 보도자료를 입수하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위 위원회 결정 전문이 공표되었고 피고들 및 다른 비정부기구들과 같은 제3자가 검토를 위하여 위 위원회 결정 전문을 구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공표자들은 당사자가 아무리 격렬하게 부인하더라도 부인의 진술(denials)을 받아들이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들이 기사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몇몇 편견 있는 취재원에 의존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진실에 대한 무모한 경시(reckless disregard of truth)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환경 잡지의 발행인, 직능 단체와 언론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 연방지방법원은 발행인이 제기한 인적 관할권의 흠결을 이유로 한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을 인용하였고, 아울러 직능 단체와 언론인이 제기한 제한 법령(statute of limitations)을 이유로 한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인용하였다.

피고 Van Note 및 Monitor Consortium의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에 관하여, 인용.

이전 결정(decision) : 33 Med.L.Rptr. 1497.

WALTON, J. 판사

원고 Eugene Lapointe는 피고 Craig Van Note와 Monitor Consortium을 상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명예훼손과 지속적인 비방공격을 가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각주 1)²⁾. 현재 이 법원에는 (1) 피고의 사실심

2) (각주1) 2004. 11. 9. 이 법원은 Earth Island Institute가 인적 관할권의 흠결을 이유로 사건의 각하를 구하는 신청을 인용하여 비영리기관을 피고로 한 부분을 각하하였다. 2004. 11. 9. 명령 : 2004. 11. 9.자 간략한 판결(Memorandum Opinion). 그 판결에서 이 법원은 제한 법령(the statute of limitations)은 1989년의 공개서한(open letter) 청구에 대하여 효력이 종료되었고, 계속적인 불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시간적 제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0. 17. 이전에 발생한 명예훼손에 관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남아 있는 원고의 청구는 피고 Monitor의 부책임자인 피고 Van Note가 2003년 봄에 써서 Earth Island Journal에 공표한 기사에 관한 것이다.

* (번역자 주) 공개서한이란 신문 또는 잡지에서 공표된 편지를 말한다.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되지만 보통 어떤 것에 항의하거나 의견을 줌으로써 일반적 독자를 위하여 의도된 것이다.

리생략판결 신청³⁾ (2) 피고의 위 신청에 대한 원고의 반대답변 (3) 원고의 반대답변에 대한 피고의 재답변이 계류되어 있다(각주 2)⁴⁾.

I. 사실관계

A. CITES와 COP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약 170개국의 다양한 정부들 사이의 국제 협정으로서, 야생 동·식물 표본들의 국제거래로 말미암아 야생 동·식물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협약의 가입국은 위 협약의 결정에 구속을 받으며, 당사국들(parties)로 알려져 있다.

위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들 총회(COP)인데, COP는 모든 당사국들 또는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COP는 대략 매년 2~3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특정 동·식물종이 국제 무역과 관련하여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COP는 수차의 개별 모임으로 이루어지고, 이 개별 모임들에 대하여 COP 다음에 숫자를 부여하는데, 가령 6차 COP는 COP 6, 7차 COP는 COP 7이다. COP는 종들(species)을 다음의 3개 부록으로 분류하여 해당 종들의 처우를 표시하고 있다.

1. 부록 I은 멸종의 위협을 받는 종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종들의 표본 거래는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허용된다.

2. 부록 II는 반드시 멸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종들의 생존과 상반되는 이용을 막기 위하여 거래가 통제되어야 하는 종들을 포함한다. 부록 II에 속하는 종들의 국제 거래는 수출허가증 또는 재수출증명서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허가증 또는 증명서는 일정한 조건들 특히 그러한 종들의 거래가 야생종들의 생존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관계기관이 발급한다.

3. 부록 III은 적어도 한 나라에서 보호되는 종들을 포함한다. 그 종들을 보호하는 나라는 다른 당사국들에게 거래의 통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CITES는 국제 거래를 통한 남획으로부터 약 5,000의 동물종들을 보호한다. 이러한 동물들은 앞서 언급한 부록들에 실려 있다.

B. CITES 사무총장

CITES 사무국이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통제를 받으면서 수행하는 임무는 CITES의 운영을 조정하고 권고하며 도움을 제공하는 것, CITES 규정들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CITES의 의사소통

3) (번역자 주) summary judgment는 사실심리생략판결, 완전한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은 재판, 약식판결, 약식재판, 즉결판결, 중간 판결로 불리는데,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보통 Fed. R. Civ. P.라 인용되나, 여기서는 편의상 FRCP라 칭한다)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재판(trial)은 사실이 다투어질 때에 필요한데, 사실의 다툼이 없는 것이 명백해지면 당사자는 재판을 통한 사실심리절차를 생략하고 판결을 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FRCP §56). 이 신청은 피고의 답변이 제기된 이후 어느 때나 제기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통상 실질적인 증거개시절차(discovery)가 행하여진 후에 제기된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심문 없이 이 신청을 인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전부 인용 시 사건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며, 일부 인용 시 분쟁 중인 쟁점만 본격적인 재판절차로 나아가고, 기간 시 모든 쟁점에 대한 재판절차로 나아간다. 2000년도에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summary judgment로 처리된 사건 비율이 전체 사건의 약 7.7%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4) (각주 2) 원고는 또한 피고의 위 신청에 반대되는 입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사실에 관한 피고의 진술서를 반박하는 답변서 및 진정한 쟁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을 돕고 이행을 감시하는 것, 당사국들에게 부록의 수정 제안 등 적절한 정보를 배포하는 것이다.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감독하고 사무국의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사무총장으로서 원고 Lapointe는 CITES와 그 COP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원고 Lapointe는 COP를 대표하여 사무국을 지휘통솔하고 최고책임자로서 기능하므로 CITES에서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CITES 회원국들이 합의한 정책을 집행할 책임이 있었다. 그는 사무총장의 지위가 환경 커뮤니티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지위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원고 Lapointe는 CITES 회의에서 제안된 견해뿐만 아니라 토론되는 쟁점들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 자료와 권장안을 전달하였다. 사무국은 두 개의 다른 시각을 가진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정하고 중재할 의무를 가졌다. 사무국에 권고를 함에 있어 원고 Lapointe는 CITES 회원국들과 비정부기구들(NGO) 뿐만 아니라 언론(대중매체, 미디어)에게도 그의 생각을 전달하였다.

C. 사무총장 자격에서 행한 원고 Lapointe의 업무 수행 :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

원고 Lapointe는 1982년부터 채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1990년까지 CITES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다. 사무총장으로서의 원고의 지위는 환경 커뮤니티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자리였다. 원고 Lapointe는 본질적으로 사무국의 수장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9년 10월 COP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협약 부록 II에서 부록 I로 옮겨져야 하는지 여부, 다시 말

하면 상아 무역에 대한 완전한 금지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다. 사무총장의 자격 및 사무국의 대표자 자격으로 원고 Lapointe는 상아 무역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전 세계적으로 부록 I로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였다. 모든 아프리카 코끼리들을 부록 I로 포함시키길 원했던 사람들은 1989년 5월 또는 6월 경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원고 Lapointe가 보여준 행동들과 입장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부패의 형태로 CITES 사무국 내부와 연계된 불법적 활동에 대한 혐담이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비판들은 제7차 COP 모임에 앞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게다가 어떤 보존기구들은 UNEP의 사무국장에게 전달된 1989. 10. 16.자 서한을 회람시켰다. 이 서한은 아프리카 코끼리에 대한 원고 Lapointe의 태도를 비판하고 그를 사무총장에서 해임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 원고 Lapointe의 해임

원고 Lapointe는 1990년 11월 해임되었다. UNEP의 사무국장이 원고 Lapointe와의 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원고는 국제연합공동항소위원회(the United Nations Joint Appeals Board, 약칭 JAB)에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⁵⁾ JAB는 원고 Lapointe의 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UNEP 사무국장의 결정을 뒤집었다. 비록 JAB의 결정이 국제연합(UN)의 공식적 기록의 일부이지만, 당사국들은 UNEP가 그 결정을 공표할 것으로 믿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 Lapointe는 UNEP

5) (번역자 주) UN의 전·현직 직원이 그의 임용조건과 위배되는 행정적 결정이 내려졌다고 판단한다면, 먼저 사무총장에게 그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할 수 있고, 만일 사무총장이 일정한 시간 안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그 답변이 호의적이지 않다면, 그 직원은 JAB에 청원(appeal)을 제기할 수 있다(<http://www.un.org/jab/how.html>).

의 결정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발행하였다. 원고 Lapointe는 CITES 당사국들, 그의 개인 친구들, 그가 접촉하였던 언론인들(미국과 영국 언론 구성원들 포함), 공개서한(Open letter)에 서명했던 비정부기구들 및 많은 대사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는 보도자료에 JAB 결정 전문을 첨부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그가 배부한 몇몇 보도자료 사본에서만 JAB의 권고안을 언급한 몇 구절을 부가하였다.

E. IWMC(국제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의 원고 Lapointe의 지위

원고 Lapointe는 현재 IWMC 세계 보존 신탁기금(World Conservation Trust Foundation)의 의장 겸 최고 책임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원고 Lapointe는 자주 환경문제에 대한 기사를 기고하거나 강연을 한다. 원고 Lapointe는 끊임없이 그 자신을 CITES의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내세우고 있다.

F. 피고 Craig Van Note와 분쟁 기사

피고 Craig Van Note는 자연보호론자로서 30년 이상을 일하였다. 피고 Van Note는 1970년대 초에 자연보호연합 및 동물복지기구들로서 피고 Monitor의 최초 사무소를 창설하였다. 그 기구들로는 무엇보다도 미국 동물애호협회 및 야생생물 보호자들(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and Defenders of Wildlife)을 들 수 있다. 피고 Van Note는 Monitor의 부책임자이다. 그는 환경 운동 모임들과 야생생물 및 서식지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는 다른 단체들 모임에 참석한다. 피고 Van Note는 원고 Lapointe의 해임을 불러온 1989년 모임을 포함하여 몇 번의 COP 모임에 참석하여 왔

다. 피고 Van Note는 몇 번 CITES 모임에 참석하였지만 그 모임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유하지 않고 버렸다.

피고 Van Note는 1989년의 제7차 COP 모임 동안 다루어진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을 알고 있었다. 사실 그는 상아 전쟁 때문에 협약의 온전성과 효율성이 위협받는 위기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 Van Note는 뉴스 보도와 사무총장의 자리를 광고하는 결원 공고와 같은 공표된 정보를 통하여 원고 Lapointe의 해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Van Note는 소송의 제기에 앞서 원고 Lapointe의 결백에 관하여 특히 알 수 있었던 유일한 서류가 원고 Lapointe가 스스로 배포한 보도자료였다고 증언하였다. 게다가 피고 Van Note는 다른 기관들이 UNEP의 결정 서류에 접근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UNEP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그 정보가 UN의 공식적 기록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UNEP가 공개적으로 JAB의 결정을 발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G. 논쟁 중인 기사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기사는 CITES 사무국의 개요와 야생생물의 보존 경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CITES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한다. 기사는 또한 다른 자연보존 관련 쟁점들 가운데서도 포경, 상아의 판매, 마호가니 나무와 같은 다양한 쟁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였다. 게다가, 그 기사는 CITES가 전달하는 환경적 쟁점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많은 나라들과 개인들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그 기사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특별한 개인에 초점을 두지 않고 CITES 활동에 대한 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넓은 시각과 관련하여 그 기사는 원고와 그의 해임을 둘러싼 사건에 대한 짧은 언급을 하고 있다.

특히 그 기사의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980 년대에 사무국은 매년 아프리카 풍광을 뒤덮는 100,000마리의 사체를 남기는 밀렵 침입과 절망적으로 약해지는 CITES의 상아 감시 시스템의 완벽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상아 무역을 금지하는 것에 결렬하게 반대하였다. 1989년 스위스에서 열린 CITES 모임에서, CITES의 사무총장이었던 원고 Eugene Lapointe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부록 I에 올리자는 제안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로비활동을 벌였다(아시아 코끼리들은 이미 전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다). 심지어 그는 그 제안을 뒤집기 위하여 모임 동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고 Lapointe는 자연보호 국가 들을 이끌어가는 데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UNEP의 조사는 원고 Lapointe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임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 불행하게도 원고 Lapointe의 해임 후에도 사무국에는 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의 후임자는 무능한 UNEP의 관리자로 원고 Lapointe의 추종자들인 CITES 직원들이 반보호적 방법을 고수하도록 허용 하였다. 4면 짜리 기사 중 이 부분이 현재 소송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II. 심사기준

pleadings,⁶⁾ 진술녹취서(depositions)⁷⁾, 질문서(interrogatories)에 대한 답변, 자백요구(admission)가

선서진술서(affidavit)와 함께 '사실인정에 대한 진정한 쟁점이 없고, 신청 당사자가 법률문제로서의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법원은 FRCP 제56조 (c)항 소정의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인용할 것이다.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검토함에 있어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관점에서 증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Bayer v. Dep't of Treasury, 956 F.2d 330, 333-334 (D.C.Cir.1992) 또한 Anderson v. Liberty Lobby, Inc., 477 U.S. 242, 255 (1986)(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모든 정당한 추론을 도출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증거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형이상학적 의심이 있다고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Bias v. Ad-vantage Intern., Inc., 905 F.2d 1558, 1561(D.C.Cir. 1990)(인용 Matsushita Elec. Indus. Co v. Zenith Radio, 475 U.S. 574, 586 (1986)). 오히려, 상대방 당사자는 합리적인 사실인정자⁸⁾가 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Laningham v. U.S. Navy, 813 F.2d 1236, 1242 (D.C.Cir.1987). FRCP 제56조 (c)항 하에서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 본질적 요소의 존재를 확정시키지 못하였고, 그 당사자가 본 재판에서 입증의 책임을 부담한다면, 사실심리생략판결이 주어진다. Hazward v. Runyon, 14 F.Supp.2d 120, 122 (D.D.C.1998) (인용 Celotex Corp. v. Catrett, 477 U.S. 317, 322 (1986)).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고려함에 있어 법원은 ... 확실한 판단 또는 증거의 우열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

6) (번역자 주) pleadings란 소답절차(訴答節次), 소답서면이라고 번역되는데, pleading은 사실적 법적 측면에 대한 당사자들의 서면 의견 진술서를 말한다. 소장(complaint), 피고의 답변서(answer) 및 원고의 재답변인 반대답변서(repl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7) (번역자 주) depositions이란 진술녹취, 증언조서, 증언녹취서, 진술조서, 증언녹취록, 선서녹취서, 구두 혹은 서면으로 행해지는 증인신문,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증거조서라고도 불리는데, FRCP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다.

8) (번역자 주) 배심원에 의한 재판에서 배심원, 배심원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에서 담당 판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 *Reeves v. Sanderson Plumbing Prods., Inc.*, 530 U.S. 133, 150 (2000) 참조.

III. 법률적 분석

피고들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심리생략판결을 구한다. 구체적 근거는 (1) 원고는 법률문제로서의 공인이라는 것, (2) 피고가 문제가 된 기사를 쓸 때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스스로를 공적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대신에 원고는 피고들이 야기한 모호한 논쟁이 원고를 제한적 공인의 지위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는 비록 법원이 원고를 제한적 공인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논쟁 중인 기사가 악의를 가지고 작성되었다는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는 명예훼손으로 주장되는 기사내용이 공직자 또는 공인일 때 피고에게 적용된다.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원고가 공인인지 여부의 쟁점은 법원이 결정할 법의 문제이다. *Waldbaum v. Fairchild Pubs., Inc.*, 627 F.2d 1287, 1294 n. 12 (D.C.Cir.1980) 참조. 법원은 두 가지 유형의 공인이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 : (1) 일반적 공인(*general public figures*) - 모든 범위(*all purposes*)에서 그러한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 (2) 제한적 공인(*limited-purpose public figures*) - 특정한 공적 논쟁에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참여시키거나 참여가 되고, 그리하여 제한적 범위의 쟁점들에 한하여 공인이 되는 사람 (인용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51 (1974)). 여기서 이 법원은 원고가 일반적 공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Waldbaum*, 627 F.2d 1292 (매우 엄격한 검증 하에서 '설득력 있는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위... 그리고 '설득력 있는 명예 또는 악명'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때만 공인이고... 그러한 지위가 '명백한 증거'로 입증된다면 모든 상황에서 공인이 된다) 참조(각주 3).⁹⁾ 나아가 당사자들은 현재 소송에서 원고가 제한적 공인인지 여부가 하나의 쟁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Columbia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어떤 개인이 제한적 공인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 가지 검사 기준을 고안해왔다. *Lohrenz v. Donnelly*, 350 F.3d 1272, 1279 (D.C.Cir.2003) (인용 *Waldbaum*, 627 F.2d at 1294). 첫째로, 법원은 공적 논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Waldbaum*, 627 F.2d at 1296 참조. 이러한 접근은 법원으로 하여금 공적 논쟁을 분리시킬 것을 요구한다. 말하자면 직접적 참가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 논쟁의 파생문제를 느끼기 때문에 사실상 대중적 관심을 받는 논쟁이었던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법원은 그 논쟁에 있어서 원고의 역할을 분석하여야 한다. 사소하거나 결가지 참가는 충분하지 않다.... [제한적 공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그 토론에서 특별히 현저한 활동(*special prominence*)을 하여야 한다. 위 연방항소법원은 특별히 현저한 활동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가 의도적으로 논쟁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 것이

9) (각주 3) 일반적 공인은 보기 드문 존재로 커뮤니티에서 일반적 명성 또는 악명을 가지면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다. *Waldbaum*, 627 F.2d 1292 (인용 *Gertz*, 418 U.S. at 352) 참조. "유명인사이고 그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때에만 일반적 공인이 될 수 있다" *Waldbaum*, 627 F.2d 1292. 대중은 일반적 공인의 생각, 행동 또는 판단을 경청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거나 일반적 공인이 그러한 고려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므로, 통상 일반적 공인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틀림없거나 또는 논쟁에서의 그의 지위 때문에 논쟁의 해결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주장된 명예훼손이 원고의 논쟁 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Waldbaum의 세 가지 검사기준에 의할 때 피고들은 원고가 제한적 공인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1] Waldbaum의 첫 번째 검사기준에 의할 때, 논쟁이 진실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접근함에 있어…… 판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토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Waldbaum, 627 F.2d at 1297. 여기서, 원고 Lapointe의 CITES에서의 재직기간 동안, 특히 제7차 COP 모임에서 논의된 쟁점은 어떤 아프리카 코끼리들을 부록 I(사냥으로부터의 완벽한 보호 제공) 및/또는 부록 II(제한된 보호 제공)에 둘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논쟁이 공적인 측면을 취하는지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언론이 대중으로 하여금 어떠한 판단을 형성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보도내용으로 토론을 다루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사실 및 이론들을 밝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피고들은 언론(미디어)의 보도를 통해서 아프리카 코끼리에 관한 논쟁이 CITES 관련 당사국들을 넘어 대중적 관심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원고는 또한 그가 언론과 대표자들에게 그의 권고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증언하였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일반적 대중 또는 어떤 부류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물인 실질적 논쟁(a real dispute)”이 공적 논쟁이라고 판시해왔다. 유사한 취지로 Thompson v. Nat'l. Catholic Reporter Publishing Co., 4 F.Supp.2d 833, 838 (E.D.Wis.1998) 사건에서, 법원은 2,000개의 밀위키 지역 일자리를

미국 남부의 비노조 지역으로 옮기는 회사의 결정은 Waldbaum의 첫 번째 검사기준에 의할 때 공적 논쟁에 관한 것이고, 그 이유는 일자리의 제거 문제가 커뮤니티 및 종교지도자들이 그 결정의 반복을 구하는 호소를 한 점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공적 논쟁과 논쟁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Clyburn v. News World Communications, Inc., 903 F.2d 29, 32 (D.C.Cir.1990)(Columbia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시청공무원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여성의 약물 제공자였는지 여부, 시청공무원들이 약물 과다복용이 발생한 파티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는 공적 논쟁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Trotter v. Jack Anderson Enters., Inc., 818 F.2d 431, 434-35 (5th Cir.1987)(제5연방항소법원은 과테말라 코카콜라 음료회사에서 발생한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폭력은 과테말라가 다른 서반구 나라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정치적 혼란이 미국에서 언론(미디어), 정치지도자들, 인권기관들, 노동조합들 및 코카콜라 주주들 등 사이에서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공적 논쟁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Smith v. A Pocono Country Place Prop. Owners Ass'n, 686 F.Supp. 1053, 1057-58 (M.D.Pa.1987)(연방지방법원은 단체 이사회 회원들에 대한 논쟁이 전국적 또는 심지어 주(州)차원의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 커뮤니티 거주자들, 특히 단체 구성원들이 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라면 그것은 공적 논쟁에 관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Schiavone Constr. Co. v. Time, Inc., 619 F.Supp. 684, 703 (D.N.J.1985)(미국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장관 업무 수행에 적합할지, FBI가 그러한 잠재적 연방공무원들의 업무적합성을 어떻게 조사하는지의 문제는 “진정한 공적 논쟁”에 관한 것이다) 참조. 위에서 언급한 대로, Columbia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그

문제가 공적으로 토론되고 비참가인에게 실제적이고 예견할 수 있는 파생 문제를 가지는 것이라면 공적 논쟁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Waldbaum, 627 F.2d at 1297. 아프리카 코끼리에 관한 논쟁이 부록 I에 전체적으로 등재됨으로써 멸종으로부터 완벽한 보호가 주어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은 확실히 그 토론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견되고 또한 실질적 내용을 가지는 파생문제였다.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 수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를 격상시킬지 여부는 상아 무역에 대한 필연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COP 회원국들은 회의에서 채택된 종들의 명단과 관계된 결정을 따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법원은 아프리카 코끼리 문제는 토론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예견되고 실질적인 파생문제를 가지는 공적 논쟁에 관한 것이었다고 인정한다(각주 4).¹⁰⁾ 그러므로, Waldbaum의 첫 번째 검사기준 요건은 충족되었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제한적 공인이라는 Waldbaum의 두 번째 검사기준 요건을 충족시켰다. 원고는 UNEP의 통제를 받으면서 1982년부터 1990년까지 CITES 사무국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사무총장으로서 COP와 CITES에 책임을 진다. 원고는 CITES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COP를 대표하여 사무국의 지도자 겸 최고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또한 회원국들에 의하여 승인된 정책을 집행할 책임이 있었다. 원고는 CITES 회의에서 제기된 견해들뿐만 아니라 토론되는 쟁점들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자료와 권장안

을 전달하였다. 그러한 쟁점들 가운데 아프리카 코끼리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전면적으로 부록 I에 등재함으로써 상아 무역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행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 사무국은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을 포함하여 쟁점들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가질 수 없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지지자들 사이에 조정 중재하고 [어느 한편을 선택할] 의무”를 가진다(각주 5).¹¹⁾ 권고를 함에 있어 원고는 CITES 회원국들과 비정부기구들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자신의 입장을 말하였다. 비록 원고는 그가 자신을 공적 논쟁에 참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원고는 CITES 사무총장으로서 결정을 내렸고 공개적으로 상아 무역에 대한 전면적 금지에 반대한다고 진술하였다. Columbia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원고가 의도적으로 논쟁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 것이 틀림없거나 또는 논쟁에서의 그의 지위 때문에 논쟁의 해결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대될 수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Waldbaum, 627 F.2d at 1297. 원고가 CITES의 사무총장으로 가졌던 책임(아프리카 코끼리를 부록 I에 두어 그 종들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제공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전세계적 파생문제를 가지는 쟁점들에 대하여, CITES 회의에서 제기된 견해들뿐만 아니라 토론되는 쟁점들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자료와 권장안을 전달하는 것)의 결과로서, 법원은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에 대한 원고의 참가가 “사소하거나 약간 스치는 정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만

10) (각주 4) 원고의 해임은 또한 아프리카 코끼리에게 주어져야 할 보호수준과 관련된 원고의 공적 참여 및 권고안과 얽혀 있다. 원고는 상아 무역에 대한 전면적 금지에 대하여 공적으로 반대하였고, COP 모임에 앞서 그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되었기 때문에, UNEP의 사무국장인 Tolba박사는 원고의 행동들이 허용될 수 없고 당사국들에 대한 보호자인 사무총장의 중립성이 위배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사무총장 채용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11) (각주 5) 앞서 언급한 대로 사무국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인 원고는 사무국의 수장과 같다.

하겠다. Waldbaum, 627 F.2d at 1297. 오히려, 원고가 토론에서 특별히 현저한 활동을 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관여가 있었다. Contemporary Mission Inc. v. New York Times Co., 842 F.2d 612, 618 (2d Cir.1998)(제2연방항소법원은 원고들이 “공개적으로 스스로 언론을 이용하였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으며, 공개적으로 진술하고 ‘공개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제한된 공인이었다는 판단의 기초로 삼았다); Little v. Breland, 93 F.3d 755, 758 (11th Cir.1996)(제11연방항소법원은 공적인 조사와 관련된 기구의 법인 대표로서 지도자 지위를 맡기로 한 원고의 결정은 공적인 논쟁과 유사한 상황에 스스로를 맡기는 원고의 자발적 결정을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Perks v. Town of Huntington, 251 F.Supp.2d 1143, 1168 (E.D.N.Y.2003)(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언론과 자발적이고 계속적인 접촉을 갖는 것을 통하여 그 스스로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공인이 되도록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Carr v. Forbes, Inc., 121 F.Supp.2d 485, 492 (D.S.C.2000)(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논쟁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정부-민간 협력 사업들의 지도자 겸 두드러진 대변인으로 자주 활동함으로써 공적 논쟁에서 “특별히 현저한 활동 역할을 맡았다”고 판결하였다) 참조.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또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진술들이 원고의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에 대한 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Waldbaum의 세 번째 검사기준 요건을 충족시켰다. 피고들은 문제된 진술들이 논쟁들과 서로 떼어 놓을 수 없게 얽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진술들이 원고의 논쟁 참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원고]가 논쟁의 결과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거나 하려고 노력하였고, 주장된 명예훼손이 그 논쟁과 관

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Waldbaum, 627 F.2d at 1298. 법원은 기사에서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진술들이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 및 원고의 사무총장 해임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결론을 내린다. 먼저, 기사의 문제된 부분은 원고의 CITES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전달한다. 둘째로, 그 기사는 원고가 사무총장 겸 사무국의 대표자로서 권고한 내용이 아프리카 코끼리를 부록 I에 등재하여 상아 무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로, 그 기사는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과 관련하여 CITES 회의에서 제기된 견해뿐만 아니라 개인적 조사자료와 권고안을 옹호하기 위하여 언론을 이용한다고 보도한다. 마지막으로, UNEP의 사무국장 Tolba 박사가 원고의 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아프리카 코끼리와 관계된 공적 논쟁에 원고가 참가한 것과 관련되었다. 특히 Tolba 박사는 아프리카 코끼리의 장래 지위에 관하여 제기될 제안에 원고의 견해를 확대하기 위하여 COP 모임에 앞서 언론에 로비를 벌였기 때문에 원고를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Tolba 박사는] 이러한 원고 행동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당사국들의 봉사자로서 사무총장의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평가하였다.

원고의 사무총장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에 대한 참가는 사소하거나 약간 스치는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토론에서 현저히 특별한 활동을 벌였다고 볼 정도로 매우 중요하였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원고]가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 결과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였거나 하려고 노력하였고 주장된 명예훼손이 그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Waldbaum, 627 F.2d at 1298. 법원은 원고의 지도자

로서의 공적 지위 또는 논쟁적 쟁점들에 대한 옹호 때문에 그 쟁점들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기사내용들이 원고의 논쟁 참가와 관련이 있다고 본 유사 판결례를 접하여 왔다. Thompson 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은 Corporate Communications for Briggs & Stratton의 이사 겸 부책임자로 근무하였고 밀워키 지역 시설에서 2,000개의 일자리를 없애는 회사 결정을 자주 공개적으로 옹호했던 원고가 논쟁에서 “사소하거나 결가지” 역할 이상을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명예훼손이라고 알려진 “기사들은 Briggs & Stratton 및 다른 회사들에 관하여 이직(移職)의 사회적·경제적 결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공표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원고가 Corporate Communications for Briggs & Stratton의 핵심적 공적 대변인이자 부책임자였기 때문에, 법원은 명예훼손이라고 알려진 진술들이 원고의 논쟁 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O'Donnell v. CBS, Inc., 782 F.2d 1414, 1417 (7th Cir.1986)(제7 연방항소법원은 원고의 논쟁 참가에 초점을 두고 “[원고]가 [환경보호청] 논쟁에서 특정한 견해의 옹호자로서 활동하였고, 그가 논쟁에 영향을 미치는 창구인 언론인 신분에서 해임된 것은 필연적으로 그의 논쟁 참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였다]”고 판결하였다); Nicholson v. Promoters on Listings, 159 F.R. D. 343, 344 (D.Mass.1994)(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공적인 강연장에서 관리역할을 맡고 재정분야 논쟁의 결과물 또는 해결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을 때, 주장된 명예훼손은 원고의 논쟁 참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고 판시하였다) 참조. 여기서, 피고의 기사가 다른 사항은 원고가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록 I에 아프리카 코끼리를 등재시키는 것에 반대하였다는 것과 원고가 UNEP의 사무국장에 의하여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국제 상아 무

역의 전면적 금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위 2가지 점이 원고의 아프리카 코끼리 논쟁 관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법원은 CITES의 사무총장으로서 원고가 자발적 제한적 공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공인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기사내용을 공표함에 있어서 단지 통상의 과실이 아닌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공인인 원고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피고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명예훼손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는 한, 수정 헌법 제1조가 피고를 명예훼손 소송 책임에서 보호한다고 판결하여 왔다. Sullivan, 376 U.S. 254 at 279-280, 285-286 참조. 그리하여, Columbia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Tavoulareas v. Piro 사건에서 피고들이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기사를 공표할 당시 그 기사내용이 “(1) 짜 맞추어졌고, (2) 본질적으로 사실 같지 않아서 오직 부주의한 사람만이 유포시킬 것으로 보이거나, (3) 증명되지 않는 익명의 전화 제보 또는 피고[들]이 명백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다른 몇몇 취재원에 전적으로 기초”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피고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서 원고가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817 F.2d 762, 790 (D.C.Cir.1987) 원고는 “격렬하게 상아 거래 금지에 반대하였다”, “부록 I 등재 제안에 맹렬히 반대하는 로비를 벌였다”, “그 제안을 뒤엎기 위하여 기자 회견을 열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그러한 진술들이 허위이거나 진실을 무모하게 무시해서(with reckless disregard of

their truthfulness) 행하여진 것임을 피고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 자신이 진짜 취재원이었고 악명 높은 추문 폭로자들이기 때문에 피고들의 취재원은 명백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Van Note는, 그가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 여부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품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기사의 문제된 부분을 공표하였다는 원고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은 피고들이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기사를 공표할 당시 기사의 표현이 허위일 개연성이 매우 크거나 진실을 무모하게 경시해서 행동하는 것임을 주관적으로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원고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피고 Van Note는 기사의 문제된 부분들을 작성할 때 다른 공표된 보도기사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 지식에 의존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왔다. 특히 피고 Van Note는 COP의 7차 모임과 수많은 기사들의 검토를 통하여 원고와 아프리카 코끼리를 둘러싼 논쟁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각주 6).¹²⁾

원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JAB의 결정은 피고들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기사를 공표하였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피고들이 사전에 위 JAB의 결정과 원고의 보

도자료를 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들이 진실을 무모하게 경시하면서 행동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피고 Van Note는 원고의 해임을 반복한 위 결정을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구할 수 없다는 피고 Van Note의 믿음은 UN이 그 결정을 공표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측할 수 없었다는 원고 자신의 증언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나아가, 원고는 UNEP가 누구에게도 그 [결정]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위원회의 결정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원고 자신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최소한 그의 언론 보도자료를 접하였다고 주장한다. 보도자료는 첨부자료로서 원고의 해임과 관련된 갖가지 주장들에 관하여 원고의 결백을 입증해주는 위원회 결정의 요약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비록 당사자들은 피고들이 원고의 보도 자료를 입수하고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다툰다고 하더라도, 사실심리생략판결의 단계에서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관점에서 증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FRCP 제56조 (c)항 참조, 또한 Anderson, 477 U.S. at 255; Bayer, 956 F.2d at 333-34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증거를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들이 명예훼손으로 주장되는 기사를 공표할 당시 그 기사내용이 허위일 개연성이 매우 크거나 피고들이 진실을 무모하게 경시하면서 행동하고 있음을 피고들이 주관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명백하고

12) (각주 6) 원고(피고의 오기로 보여 짐, 번역자 주)는 그가 2003년 기사의 문제된 구절을 작성함에 있어 (1) “상아 금지를 반대한 UN 고위 관리 해임되다”라는 제목의 The Times of London 기사(1990); (2) Ted Gup이 쓴 “부끄러움의 꼬리”라는 제목의 Time 잡지의 표지기사 요약문(1989, 10, 16.); (3) Iain과 Oria Douglas-Hamilton이 쓴 “코끼리에 관한 전쟁”이라는 제목의 책 요약문(1992); (4) Matthew Scully가 쓴 “지배”라는 제목의 책 요약문(2002); 그리고 Douglas H. Chadwick이 쓴 “코끼리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책 요약문(1992) 등 몇몇 공표된 이야기들에 의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설득력 있는 증거로서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사건은 *Lohrenz v. Donnelly*, 350 F.3d 1272 (D.C.Cir.2003) 사건과 유사하다. 그 사건에서, 미해군의 첫 번째 여자 전투기 조종사들 중 한명인 원고가 the Center for Military Readiness와 그 사장을 상대로 원고가 전투기를 조정할 자격에 미달되었으나 여자였기 때문에 해군이 그녀에게 특혜를 베푼 것이라는 명예훼손적 기사내용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전에 원고에 대한 F-14기 교관이었던 Patrick Burns 대위가 쓴 자세한 편지에 의존하였다. Patrick Burns는 원고가 “비행기를 조종하지 말아야 했지만, 정치적으로 추진된 정책 때문에 F-14기 프로그램에 투입된 표준 이하의 조종사”였다는 정보를 피고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법원의 다른 판사는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기사내용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결하자 원고는 그 판결에 항소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이전에 ... 믿었던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명백한 근거들’이 될만한 믿을 만한 증거가 피고들 앞에 놓여졌다면, [원고]의 직무수행기록이라는 특정한 사실들에 관하여 의심들을 해소하였어야만 했다”고 주장하였다. Columbia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배척하고 “의심을 불러들이는 증거가 발견될 수 있는 경우에도 취재원을 ‘의심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공표자는 여전히 그러한 증거를 찾지 아니하고 알려진 정보에 의존할 선택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인용 *McFarlane v. Esquire Magazine*, 74 F.3d 1296, 1305 (D.C.Cir.1996)). 현재의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 자신이 진정한 취재원이고 악명 높은 추문 폭로자들이기 때문에 피고

[들]의 취재원들이 부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들은 피고 Van Note가 문제된 기사를 작성할 당시 그의 개인적 지식과 독립적인 제3자 공표물을 참조로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Lohrenz* 사건에서 Columbia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단지 피고들이] 편견이 있는 취재원과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행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그들의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그들이 기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심각한 의심을 주관적으로 품었다는 점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러한 결론과 마찬가지로, 이 법원은 피고들이 명예훼손으로 주장되는 기사를 공표할 당시 기사 표현이 허위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거나 진실을 무모하게 경시하고 행동하였음을 주관적으로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를 원고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심지어 피고들이 위원회의 결정 요약문이 포함된 원고의 보도자료를 입수하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록상 위원회의 결정 전문이 공표되었고 피고들 및 다른 비정부기구들과 같은 제3자가 구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명예훼손적 기사내용들의 공표자들은 “아무리 격렬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부인의 진술(denials)을 받아들이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한 부인은 논쟁과 반론의 세계에서 매우 흔한 일어서 그 자체적으로는 양심적 보도자에게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거의 보내지 못한다”. 나아가, 비록 위원회의 결정 전문을 요구한 모든 사람들이 결정 전문을 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일치하는 기사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몇몇 편견어린 취재원들에 의존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진실에 대한 무모한 경시에 이르지 않는다”. *Lohrenz*, 350 F.2d at 1286(인용 *Loeb v. New Times Commu-*

nications Corp., 497 F.Supp. 85, 93 (S.D.N.Y.1980)).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앞서 본 분석에 기초하여, 원고의 명예훼손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인용한다(각주 7).¹³⁾

IV. 결 론

출 처 : Media Law Reporter Vol. 34, No. 19. PP. 1577-1587

번 역 : 흥 기 만 (춘천지방법원 판사)



13) (각주 7) 또한 피고의 재판 전 증거 배제 신청(Motions In Limine)이 현재 미결인 상태로 남아 있다. 위 신청은 2006. 8. 18. 제기되었는데, 그 내용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위한 의학적 증언의 증거 제출을 막아달라는 것과 IWMC의 수입 감소를 이유로 실제 손해의 증거 제출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법원이 피고의 사실심리생략판결 신청을 인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재판 전 증거 배제 신청은 판단하지 않고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과 일치된 명령이 이와 동시에 주어질 것이다.

* (번역자 주) Motions In Limine : limine은 '입구에서(at the threshold)'를 뜻하는 라틴어로서, Motion in limine이란 판사에게 어떠한 증거가 재판에서 배심원에게 제출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 시작 전에 요구하는 신청을 말한다. 이 신청은 배심원이 들을 수 없도록 판사실에서 통상 행하여진다. 이 신청은 보통 잠재적으로 채택될 수 없고 해로운 증거로부터 배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통상 당사자가 신청하게 되는데, 비록 판사가 재판에서 배심원에게 그 증거를 무시하라고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재판에서 증거로 언급한 것만으로도 배심원에게 그 당사자에게 불리한 편견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사용된다. 증거가 헌법적 제한을 받는 형사 재판에서 가장 흔히 사용된다. 예를 들면,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이 자백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시켜 달라고 재판 시작 전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영국사례

**자살 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모방 자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영국 PCC는 '전기쇼크자살' 이란 헤드라인으로 Wigan Evening Post지가 2007년 5월 25일 발행한 기사가 자살에 관한 지나친 세부묘사를 해 PCC 윤리강령 제5항(슬픔과 충격에 관한 침입)을 어겼다고 한 여성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제의 기사는 지역 선생님이었던 불만신청인 남편의 자살에 관한 조사를 보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만신청인은 그 기사가 남편이 어떻게 자살을 했는가에 관한 세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불만신청인의 죽은 남편이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Wigan Evening Post지는 해당 기사가 관련 사건을 정확히 보도한 것이라 말하고, 다만 기사에 자살 방법에 관하여

너무 많은 세부사항을 포함시켰음을 인정하고 불만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PCC 윤리강령 제5항은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사용된 자살 방법에 관한 지나친 세부사항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에 새로 개정되었다. 이 조항은 모방 자살의 위

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PCC는 신문사들이 자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묘사하면서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을 포함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불만신청인의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PCC는 자살 사건에 관한 조사는 공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신문사들은 그 조사의 진행 상황 등을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PCC는 신문사들이 PCC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자살 방법에 대한 상세한 보도는 피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PCC는 자살 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 및 표현을 할 경우 자살에 관한 지나치게 세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다. □

호주사례 1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은 인정할 수 있다**

호주언론평의회는 David Bruckner가 2007년 6월 23일과 24일자에 발행된 기사와 관련해 The Courier-Mail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에 대해 이를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기사는 Queensland 건강당국이 '최신 유행하고 있는 Gaji

주스를 마신 후 간 중독으로 사망한 여자'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기사는 “의사들이 현 시점에서는 여러 테스트들이 Goji 주스가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 주스가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힌 부분도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여자의 사망이 새로운 건강 경향과 관련됐다는 언급을 담은 포인터를 몇 개의 Goji 딸기 사진과 나란히 14면에 게재했다.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에 나온 포인터와 비난조의 헤드라인 그리고 Goji 주스와 딸기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기사 내용이 불만신청인의 회사 사업에 심각한 영

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주언론평의회는 Goji 주스와 딸기에 대한 편견 있는 주장이 기사의 내용에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호주언론평의회는 The Courier-Mail지가 문제의 사건이 공공의 건강 문제와 관련 있으므로 한 달 간 Goji 주스를 마시고 간 중독으로 인해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호주언론평의회는 14면의 포인터에 좀 더 신중한 단어를 써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제의 포인터는 어떤 관련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모호했다고 판단하고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

이에 대해 Canberra Times지는 다른 호주 신문사들처럼 토착원주민 아이들의 일반적인 사진들을 연방 중재에 관한 기사와 더불어 게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Canberra Times지는 또한 불만신청이 제기된 사진은 토착원주민 지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집을 보여주었고 사진에 등장한 여자 아이는 부모의 사전 동의 후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Sydney Morning Herald지 역시 사진 게재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진들은 Sydney Morning Herald지를 초청한 북부의 두 지역사회의 풍경과 관련 있었다. 두 지역사회는 그 사진들이 북부의 토착원주민 지역사회들만의 특수한 문제점을 언급하는 기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호주언론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의 진심 어린 걱정은 인정하지만 문제의 사진들의 발행이 그 아이들이 학대받은 적이 있음을 가리킨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호주언론평의회는 신문과 잡지가 일반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알릴 의무와 그 문제들을 사진과 함께 설명할 권리를 가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호주언론평의회는 신문과 잡지는 잘못된 추론이 도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에 아이들을 포함시킬 때는 각별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

호주사례 2

언론은 일반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를 알릴 의무와 그 문제를 사진과 함께 설명할 권리를 갖는다

호주언론평의회는 Frances Killey가 Canberra Times와 Sydney Morning Herald가 지난 6월 22일에 게재한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두 신문의 6월 22일자 각 일면 및 다른 면에 등장한 토착원주민과 아이들의 사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들이 등장한 문제의 사진은 북부 지역사회에서 아동 학대 문제에 관한 연설

을 하려는 수상의 계획을 보도하면서 함께 게재됐다. 불만신청인은 사진에 등장한 아이들의 사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제시됐고 아이들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학대당했다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신문사들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호주언론평의회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신정아 씨, 문화일보 상대 10억 손해소 “nud 사진 게재 명예훼손”

신정아 씨가 자신의 nud 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신 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nud 사진을 촬영하거나 문화계 인사들을 상대로 성 로비를 벌인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nud 사진을 지면에 게재해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고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손해배상 외에 ‘신문에 실린 사진은 합성사진으로 신 씨가 nud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성 로비를 한 적도

없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화일보는 nud 사진을 신고 마치 이 같은 사진의 존재가 문화계 유력 인사에 대한 성 로비의 증거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교묘하게 기사를 작성했다”며 “이는 사적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들끓는 여론과 강도 높은 수사의 와중에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가한 가혹한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문화일보에 실렸던 신 씨 nud 사진

이 합성사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nud 사진은 개인의 사생활이고 우리가 수사한 범죄 혐의와 관련도 없기 때문에 조사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9월 13일자 1면에 ‘신정아 nud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3면 기사에서 nud 사진과 함께 성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일보는 ‘인격살인’ 등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한 달 뒤인 10월 18일자 1면에 사과문을 내보냈다.

경향신문 2007년 11월 9일

“허위기사 책임, 1억 6천만 원 배상”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허위 기사로 경기도 양평군수 보궐선거에 나온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시켜 결국 낙선하게 한 책임을 물어 취재기자와 해당 지방 일간지는 피해자에게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석상 부장판사)는 17일 한나라당 양평, 가평 지역구 국회의원 정병국 의원과 지난 4.25 양평군수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강 모 씨가 지방 일간지 P일보와 이 신문사 기자 K(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정 의원에게 3천만 원씩, 강씨에게 5천만 원씩 총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P일보는 지난 4월 13일 K기자의 취재를 통해 신문 1면에 ‘양평군의 준공업지역을 매입한 C개발의 회장이 정 의원과 친구이고, 강 후보와도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강 후보가 군수

로 당선된 이후에 C개발에 아파트 건설 관련 특혜를 주기로 하는 밀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정 의원과 강 후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중재위에서의 사실확인 결과 기사에 나온 토지매입과 원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

그러자 P일보는 4월 19일 정정보도문과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 기사가 나간 직후 기사를 인용해 원고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우편을 통해 양평군 일대 각 가정에 유포됐고, 다른 후보자들이 기사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을 성토하는 유세활동을 벌였으며 결국 강 후보는 4.25 양평군수 보궐선거에서 낙선했다.

이에 정 의원과 강 후보는 K기자를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P일보와 K기자를 상대로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

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며, K기자는 지난 7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되어 있는지 아무런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호소문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이 기사에 담긴 허위사실이 보궐선거를 불과 12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후보자로 출마했던 원고 강씨의 후보로서의 정직성과 자질을 실추시킬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사 보도 후 강씨가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7년 10월 17일

“포털도 언론으로 규정 책임 지우자”

인터넷 포털은 과연 언론일까 아닐까.

올 대선 여론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뜨겁게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언론재단·언론중재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포털 사이트에 사실상 인터넷 언론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과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포털 사이트도 언론(?) =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포털로 인한 각종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가 늘고 있는데도 여타의 인터넷 신문들과 달리 (포털은) 최소한의 피해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언론조정 및 중재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빠른 확산성, 무한 복제성,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포털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언론중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털과 관련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2004년 8건, 2005년 28건, 2006년 36건, 2007년 32건(9월 30일 기준)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학원 의원도 “포털이 기사제목을 수정하고 나름의 해석 작업을 통해 기사의 중요도를 평가·배열하는 등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언론의 범위 안에 포털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포털을 인터넷 신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커진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종이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지 않고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접하는 경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포털 사이트의 뉴스 배치가 기존 언론의 편집방향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포털 사이트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직접 기사를 생산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포털 사이트에 ‘언론’이라는 맞지 않는 옷을 끼워 입히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은 미디어다음과 블로거 기자단 등 일부 기사를 생산하고 있어 중간적인 위치에 있지만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는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를 인터넷에 띄우는 기능에 머무르고 있어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만을 놓고 언론이나 아니냐를 논하기는 어렵다.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단순 수치적 결과가 아니라 포털 사이트를 통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피해를 따져보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법 개정으로 가는 것은 좀 빠르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다.

◇ 포털에 의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 받을 것인가 =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의 범위로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포털 사이트의 피해 구제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데서 시작되기도 한다.

언론중재법은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 신문의 정의에 준해 현재 포털 사이트를 언론중재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어 포털 사이트의 파급력에 비해 피해 구제 방안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중재를 거칠 수 있다. 하지

만 정작 기사 접근성을 높은 포털 사이트로부터는 구제받을 방법이 민간상담센터를 찾거나 소송을 내는 데 그친다.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에 포함시켜 언론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포털 사이트를 언론으로 볼 수 있느냐가 선결 과제라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 다음 제외 대부분 포털 ‘부정적’ =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 신문으로 정의하는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다음을 제외한 대부분 포털 사이트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정훈 다음 부사장은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통해 포털 뉴스로 인한 신속한 피해구제 등이 가능해지면 우리로서도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이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하는 입법에 찬성 입장을 내비친 것.

하지만 야후 코리아 관계자는 “우리는 언론이라기보다 기성 언론사의 뉴스를 공급하는 중립적인 채널 역할을 하며 그런 방향을 지향한다”며 “뉴스를 배치하고 제목을 약간 바꾸는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이 자사 정책에 바탕해 의제 설정을 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데 비해 우리는 그런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명을 요구한 다른 포털 사이트 관계자도 “기사를 직접 생산하는 것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은 엄연히 다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해 보인다”며 “뉴스서비스는 포털이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 중 하나일 뿐이고 포털의 영향력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신문 2007년 10월 28일

법원 “SBS, 디앤샵·이재웅에 5천만 원씩 손해배상하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지난해 ‘바다이야기 사건’ 당시 SBS가 삼풍건설 합법체 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금전적 손실을 끼쳤으며 ‘디앤샵’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재웅 전 대표이사가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씩 배상하고 방송 등을 통해 정정보도문을 내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보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암시하거나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한다”며 “(해당 보도는) 우연히 검찰의 압수

수색 영장을 입수한 것을 계기로 충분한 조사 없이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디앤샵과 이재웅 전 대표는 ‘바다이야기 사건’ 당시 SBS의 보도에 대해 157억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노컷뉴스 2007년 11월 1일

임종인 의원, YTN 돌발영상 항소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19일 임종인 국회의원이 “동의 없이 촬영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YTN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포함돼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 국회의원들의 비인기 상임위 기피와 일

부 의원들의 불만을 보도하려는 것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물이고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표시한 것도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적 관심 대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TN은 지난해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장에서 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사적인 대화 등을 나누는 장면을 ‘돌발영상’으로 보도하고 인터넷에 게시했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파이낸셜 뉴스 2007년 9월 19일

심형래 퍼블리시티권 침해업체 2천만 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영화 ‘용가리’의 심형래(49) 감독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10억을 배상하라”며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 유통업체 (주)하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며,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과는 구별된다.

또한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 없이 성명이나 초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때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어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된다.

하림은 1999년 7월 심 감독이 대표이사인 (주)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측과 독점적으로 용가리 영화 및 디자인 캐릭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용가리 치킨’ 포장지에 심 감독의 모습을 형상화한 인물 캐릭터와 용가리 캐릭터를 담았다.

심 감독은 그러나 하림이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포장지에 캐릭터를 사용하자 용가리 캐릭터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하림은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진 지난해 5월까지 계속해서 심 감독 및 용가리 캐릭터를 포장지에 사용했다.

이에 심 감독은 자신을 희화화한 캐

릭터를 사용해 영화제작자 및 영화감독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약 1년 5개월 가량 캐릭터를 계속 사용한 것은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심 감독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초상권은 일반인들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2007년 11월 1일

박상은 경인방송 전 대표 ‘한겨레’ 상대 소송 패소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상은(58) 전 경인방송 대표이사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경인방송을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원심을 확정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다양한 정치인 경력

이 있는 점, 방송의 영향력과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령 등에 비춰 볼 때 <한겨레>의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2심 재판부도 “공익성과 함께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며 한겨레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04년 초 경인방송 노조는 박 씨의

서울 사무실에서 경인방송을 이용한 박 씨의 단계별 홍보전략 문건을 발견하고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겨레는 추가 취재를 거쳐 이를 보도했다. 이에 박씨는 “한겨레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1심에서 5억 원, 항소심에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겨레신문 2007년 9월 19일자

안기부 X파일 관련, 조선일보 비판한 MBC 정당

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19일 조선일보가 ‘안기부 X파일’을 다룬 매체비평 프로그램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MBC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MBC ‘뉴스플러스 안미음니’가 2005년 7월 29일 X파일 내용을 토대로 조선·중앙일보 등이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건강 문제를 다루면서 이회창 후보에 유리하도록 보도하고 자사 이익을 위해 X파일 사건의 초점을 불법 도청에 맞췄다고 보도하자,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 방송이라며 1억 원의 손해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의 보도가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측면이 있지만 방송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언론과 재벌,

정치권력의 관계 등과 관련해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당시 기자들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신문 2007년 9월 19일

문국현 ‘월간조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범여권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자신의 스톡옵션 관련 의혹을 다룬 월간조선 10월호의 판매를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현 수석부장판사)는 18일, 문 후보가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낸 잡지발행판매 배포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잡지의 전면적인 판매 금지 또는 기사 말소를 명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잡지가 계속 판매돼 문 후보가 추가적으로 입게 될 피해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비해 그다지 크거나 급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 후보가

본안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도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언론기관은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음에 반해 명예훼손 피해자는 반론보도나 손해배상 등의 사후 구제 수단이 있다”며 “기사 게재 금지 등을 명하기 위해서는 표현내용이 허위이고 공익을 위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잡지가 이미 지난달 말 발행돼 상당수가 일반인에게 판매,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월간지 성격상 가처분 결정 이후에 추가로 서적을

발행해 배포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문 후보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시점을 전후해 각종 언론에 가처분 제기 사실 및 문 후보의 주장 내용이 상세히 보도됐고, 문 후보로서도 인터뷰 등을 통해 잡지 기사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후보는 “월간조선 10월호의 ‘추적, 문국현의 대선 출마선언과 스톡 옵션’ 제목 기사는 허위의 내용이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 권상희(2007). 경제뉴스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방송과 인권 연구회 주최 '방송과 인권' 토론회 발제문. 2007. 9. 13.
- 김 성(2007).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언론 소비자 입장을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광주지방토론회 발제논문. 2007. 10. 16.
- 김기중(2007). 한국의 인터넷 포털 문화와 법제 -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주최 2007 국제학술세미나 '한·중·일 인터넷 포털의 문화와 법제 비교' 세미나 발제논문. 2007. 9. 28.
- 김영호(2007). 지역특별법 성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최 '2007 지역신문 컨퍼런스' 발제문. 2007. 9. 14.
- 김옥조(2007).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 신문과 방송의 자유와 권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재협(2007, 가을). 정정보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파장. 언론중재, 통권 제104호, 78-97.
- 김진웅(2007). 언론자유와 인권. 언론인권센터 주최 세미나 발제문. 2007. 9. 14.
- 박 민(2007). 지역신문발전지원법 3년 평가와 바람직한 발전방향.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발제문. 2007. 11. 5.
- 박선영(2007).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2007 추계 학술세미나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언론의 선거 보도' 세미나 발제논문. 2007. 11. 26.
- 방석호(2007).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설원태(2007, 11월). 선정주의의 보도 - 내부의 자정노력.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3호, 66-79.
- 성낙인(2007). 공직선거법과 선거 방송 심의. 서울: 나남.
- 성동규·이재신(2007). 인터넷 포털을 둘러싼 법적, 사회적 쟁점과 대안 모색.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2007 추계정기학술대회 발제논문. 2007. 10. 26.
- 송경재(2007). 17대 대선, 인터넷 언론의 바람직한 선거보도 어떻게 해야 하나.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 '17대 대선, 신문과 인터넷 언론의 바람직한 선거보도' 토론회 발제문. 2007. 10. 9.
- 송호창(2007, 10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논란: 규제 통한 '건전한 문화' 인터넷 창의성 훼손 우려.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2호, 97-101.
- 심재철(2007). 선거보도의 공정성: 현실과 이상.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2007 추계학술세미나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언론의 선거보도' 세미나 발제논문. 2007. 11. 26.
- 심재철(2007, 여름). 한미 FTA와 언론 : 한미 FTA와 언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관훈저널, 통권 제103호, 11-17.
- 양재규(2007, 10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19 - 오보에 대한 안정장치, 상당성(2).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2호, 118-121.
- 양재규(2007, 11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20 - 프라이버시와 공적 관심사의 경계.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3호, 92-95.
- 엄기열(2007). 독자/시청자 권익제도 운영과 개선방안. 언론인권센터 주최 토론회 발제문. 2007. 11. 9.
- 오창우(2007). 매체특성과 선거법 간의 부적합성에 근거한 TV 토론 방송의 공정성 실현위기 해석. 방송협회·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주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방송' 토론회 발제문. 2007. 10. 17.
- 윤재홍(2007, 3월). 한국 보도방송 심의제도에 대한 방송기자의 인식 : KBS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

- 송학보, 제21권 2호, 428-474.
- 이선민(2007, 8월). 정기국회 방송관련 법안 쟁점. 방송문화, 312, 32-39.
- 이승선(2007). 범죄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언론인권센터 주최 '범죄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7. 11. 29.
- 이승선(2007). 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2007 추계학술세미나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언론의 선거보도' 세미나 발제논문. 2007. 11. 26.
- 이용성(2007). 17대 대선, 신문의 바람직한 선거보도 어떻게 해야 하나.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 '17대 대선, 신문과 인터넷 언론의 바람직한 선거보도' 토론회 발제문. 2007. 10. 9.
- 이종구(2007, 가을). 판례평석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의 부정 이용과 일반불법행위 책임. 저작권, 통권 제79호, 59-72.
- 이진아, 조준원, 최승민(2007, 가을). 선거보도관련 피해구제 시스템 개선방안. 언론중재, 통권 제104호, 98-112.
- 장성원(2007, 가을).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보호와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통권 제104호, 113-139.
- 장호순(2007, 11월). 선정주의 보도 - 원인과 해결책.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3호, 62-65.
- 전희락(2007). 선거보도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 방송협회·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주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방송' 토론회 발제문. 2007. 10. 17.
- 정종섭(2007). 언론과 법의 지배. 서울: 박영사.
- 정진근(2007). 표절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제재 가능성. 한국저작권법학회 주최 세미나 발제문. 2007. 11. 2.
- 조연하(2007). 지상파 방송에 대한 방송법제와 정책의 현실.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지상파 방송 비대칭 규제와 개선방안' 세미나 발제문. 2007. 10. 4.
- 차병직·문건영(2007, 9월). 언론보도로 인한 불법 행위와 손해배상 금액. 인권과 정의, 통권 제373호, 94-108.
- 최진순(2007, 상반기). 포털규제 논란, 표현자유 가치 실종. 열린미디어 열린사회 통권 제19호, 97-105.
- 하봉준(2007). 사회사건 보도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방송과 인권 연구회 주최 '방송과 인권' 토론회 발제논문. 2007. 9. 13.
- 한희정(2007). 방송 드라마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방송과 인권 연구회 주최 '방송과 인권' 토론회 발제논문. 2007. 9. 13.
- 홍성구(2007). 선거와 인터넷언론 규제. 한국언론학회·강원언론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와 인터넷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 세미나 발제논문. 2007. 11. 2.
- 황근(2007, 11월). 방송·통신 융합법 문제와 전망. 신문과 방송, 통권 제443호, 122-125.
- 황용석(2007). 한국의 인터넷 포털 문화와 법제 - 융합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인터넷 포털의 이용패턴에 대한 탐색. 한국언론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주최 2007 국제학술세미나 '한·중·일 인터넷 포털의 문화와 법제 비교' 세미나 발제논문. 2007. 9. 28.
- 황정규(2007). 언론중재에 대한 새로운 모색.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사회부장 세미나 발제논문. 2007. 9. 13. ~ 14.

언론조정 및 중재 신청과 처리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업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언론(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운영

언론중재위원회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상담센터는 언론피해와 관련된 법률문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객 방문시 상근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며,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하루 24시간 실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언론사, 대학, 기업,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에 관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정 권 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통해 언론의 보도를 심의하여 해당 기사의 내용이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언론사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위원회 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공정치 못한 선거보도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게재 또는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6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

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80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80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 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조정 및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6개, 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춘천·청주·전주·창원·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6개 곳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 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 구역

• 조정 및 중재관할권은 조정 및 중재대상이 되는 언론사(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등)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조정과 중재

청구의 종류

▶ 정정보도청구

• 언론보도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이 언론사에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위 기간 내에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에 그 보도내용과 대립되는 자신의 주장을 보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위 기간 내에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 언론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무죄판결 등을 받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도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와는 상관없이 위 기간 내에 법원에 추후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자신의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및 처리 절차

▶ 조 정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과 언론사 사이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제3자인 언론중재위원회가 객관적, 법률적 입장에서 개입,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신청은 피해자 또는 언론사가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 처리결과로는 합의, 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등이 있습니다.

▶ 조정신청 방법

- 서면에 의한 신청

• 신청인은 신청서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보도문 또는 손해배상액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문제가 된 보도 본문(방송의 경우 녹음, 녹화물과 녹취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구술에 의한 조정신청

• 신청인은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담당 직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 조정 대상 표현물의 내용, 보도일 및 인지일,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 원하는 보도문, 손해배상액, 작성일 등을 진술하여 담당직원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조서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표현물과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정신청

• 신청인은 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부장은 신청인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 즉시 이를 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표현물과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정 신청인, 대상 매체, 기간 등

- 조정신청인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이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 대상 매체

•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기간

•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처리절차

•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

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취지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재부는 조정기일에 양쪽의 진술을 듣고 합의가 되도록 적극 조정합니다.

•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 조정대리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위임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조정처리결과

• 합의 : 피해자와 언론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가 나가게 되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합의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결정 :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신청은 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언론사를 피고로 합니다.

• 조정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 절차

▶ 중 재

• 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국

적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재신청 방법

- 중재합의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 중재신청인은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신청서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보도문 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언론중재위원회 소정 양식).

• 문제가 된 보도본문(방송의 경우 녹음, 녹화물과 녹취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인, 대상 매체, 기간 등

- 중재신청인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

사,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이 중재신청을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중재대상매체

•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방송·정기간행물(신문, 잡지)·뉴스통신·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재신청기간

•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재신청 처리절차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중재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 신청인은 중재신청시 언론사와 피해자 간의 중재합의(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언론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예 : 합의서)을 첨부해야 합니다.

•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합의서를 첨부한 중재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한 날로부터 개시됩니다.

• 중재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 중재대리허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위임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에 화해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부는 합의된 화해의 내용을 결정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절차는 중재결정 또는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종료에 합의하여 중재부가 종료결정을 한 경우 종료됩니다.

•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의 비협조로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중재부가 판단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주장 및 입증을 대만히 하여 중재절차의 계속적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리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쌍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부는 중재절차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중재처리 결과

•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내리면 언론사는 결정된 내용대로 정정 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고,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언론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합의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 권 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 심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합니다.

• 개인적 법익으로는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금지, 형사사건 피의자 및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신고자 등에 대한 신원공개 금지, 성폭력피해자 보호 등이 있습니다.

• 사회적 법익으로는 범죄사건에 대한 필요 이상의 설명, 성과 관련된 선정적 묘사, 자살 보도에 대한 상세묘사, 마약에 대한 상세보도 금지 등이 있습니다.

• 국가적 법익으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보도, 국가기밀 누설의 금지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시정권고 신청 가능

▶ 자체심의 이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해당 보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도 언론 보도가 시정권고심의기준에서 정한 법익을 침해하였고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며 강제력은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대표 02)397-3114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 (세전빌딩 302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